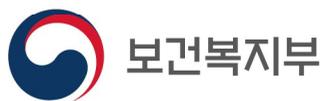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100513-10



MINISTRY OF HEALTH & WELFARE





## 2026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안내 대비표

구분	기존 내용	개정 내용	페이지
<b>I. 시작하기에 앞서</b>			
1. 용어	<p><b>④ 법령 등 약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li> <li>● 영: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li> <li>● 규칙: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li> </ul>	<p><b>④ 법령 등 약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u>지원</u>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li> <li>● 영: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u>지원</u>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li> <li>● 규칙: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u>지원</u>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li> </ul>	4p
2. 위기임산부 상담기관 목록	<p><b>2 위기임산부 상담기관 목록(25.6월 현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상담지원기관 홈페이지 : <a href="https://www.1308.or.kr">https://www.1308.or.kr</a></li> <li>● 위기임산부 핫라인(통합전화) : 1308 (표 생략)</li> </ul>	<p><b>2 위기임산부 상담기관 목록(26.1월 현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상담지원기관 홈페이지 : <a href="https://www.1308.or.kr">https://www.1308.or.kr</a></li> <li>● 위기임산부 핫라인(통합전화) : 1308 <b>&lt;표 현행화&gt;</b></li> </ul>	5p
<b>II. 사업 개요</b>			
5.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	<p><b>③ 사업 예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5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예산은 국비 총 4,609백만원</li> <li>① 위기임산부 상담기관 운영 지원 : 2,617백만원 (중략)</li> <li>② 보호출산 산모 지원 : 720백만원 (중략)</li> <li>③ 보호출산 시스템 등 운영 지원 : 340백만원 (중략)</li> <li>④ 보호출산 정책수행 경비 : 364백만원 (중략)</li> <li>⑤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시스템 구축 지원 : 28백만원 (중략)</li> <li>⑥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보호비 지원 : 540백만원 - (주요내용) 보호출산 신생아의 후견인이 된 시·군·구(지역상담기관 소재)가 보호조치 결정</li> </ul>	<p><b>③ 사업 예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6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예산은 국비 총 <u>3,800</u>백만원</li> <li>① 위기임산부 상담기관 운영 지원 : <u>2,393</u>백만원 (중략)</li> <li>② 보호출산 산모 지원 : <u>480</u>백만원 (중략)</li> <li>③ 보호출산 시스템 등 운영 지원 : <u>349</u>백만원 (중략)</li> <li>④ 보호출산 정책수행 경비 : <u>175</u>백만원 (중략)</li> <li>⑤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시스템 구축 지원 : 28백만원 (중략)</li> <li>⑥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보호비 지원 : <u>375</u>백만원 - (주요내용) 보호출산 신생아의 후견인이 된 시·군·구(지역상담기관 소재)가 보호조치 결정</li> </ul>	14p

구분	기존 내용	개정 내용	페이지
	전까지 보호출산 신생아(약300명)을 보호하여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아동 1인당 월 100만원 지원(3개월)	전까지 보호출산 신생아(약200명)을 보호하여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아동 1인당 월 100만원 지원(3개월)	
<b>Ⅲ. 위기임산부 상담·지원</b>			
중앙상담지원 기관	<p><b>③ 상담 지원 체계 구축</b></p> <p>1) 온라인·모바일 상담 운영 (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바일 상담) 위기임산부 상담 모바일 채널 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상담기관에게 '관리자(매니저)' 권한을 부여하여 위기임산부가 상담 요청 시 지정한 지역상담기관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기반 마련</li> <li>- 채팅 담당자(지역상담기관) 지정 및 채팅 운영 등에 관한 채널 운영 가이드 제작·배포</li> </ul> </li> </ul>	<p><b>③ 상담 지원 체계 구축</b></p> <p>1) 온라인·모바일 상담 운영 (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바일 상담) 중앙 차원의 위기임산부 상담 모바일 채널 개설·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 차원의 모바일 상담 채널의 주요 정보(사업개요 등), 지역상담기관별 상담채널 안내 등의 챗봇 설계·관리</li> <li>- 지역상담기관별 모바일 상담채널 개설 등에 관한 운영가이드 제작·배포</li> </ul> </li> </ul>	22p
지역상담기관	<p><b>④ 지자체의 지역상담기관 지원</b></p> <p>(중략)</p> <p>4) 지역 내 홍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지역 내 위기임산부가 위기임산부 상담전화(1308)와 지역상담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체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함</li> </ul> <p>(생략)</p>	<p><b>④ 지자체의 지역상담기관 지원</b></p> <p>(중략)</p> <p>4) 지역 내 홍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지역 내 위기임산부가 위기임산부 상담전화(1308)와 지역상담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체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함</li> </ul> <p>(생략)</p> <p>5) 지역상담기관 및 지자체 협력체계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 보호를 위해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필요시, 지역상담기관-지자체 간 정기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협력기반 조성</li> </ul>	43p
3. 위기임신 상담의 방법 및 절차	<p>3) 심층상담 (생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징구) 위기임산부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해 [서식 제8호]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징구</li> </ul> </li> </ul>	<p>3) 심층상담 (생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징구) 위기임산부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해 [서식 제8호]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징구</li> </ul> </li> </ul>	48p

구분	기존 내용	개정 내용	페이지
	(생략)	<p>* 만약, 위기임산부가 의사결정능력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징구 시 보호자의 입회하에 위기임산부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진행</p> <p>** 정보주체가 만14세 미만 아동,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민법 제5·10·13조)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필요한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음</p> <p>(생략)</p>	
4. 위기임산부 대상 제도 안내 및 서비스 연계	<p><b>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여성가족부)</b></p> <p>2. 2025년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대상 (생략)</p>	<p><b>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성평등가족부)</b></p> <p>2.-2025년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대상 (생략)</p>	54p
	<p>3) 기타 서비스 안내·연계·지원 (생략)</p> <p>* 국가·지자체에서 제공 중인 사회보장제도 전체 목록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발간)과 [임신·출산·양육 관련 급여·서비스 목록](p67)참고, 개별 지자체는 자체 지원하는 급여·서비스·제도 등에 대하여 [임신·출산·양육 관련 급여·서비스 목록] 등과 같이 정리하여 지역상담기관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변동 사항이 있을 시 지역상담기관에 공유</p> <p>(중략)</p> <p>● (민간 복지자원 연계)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아동권리보장원 등은 전국 단위 민간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시·도 및 시·군·구는 지역 내 민간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지역상담기관이 위기 임산부에게 민간 복지자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p> <p>(생략)</p>	<p>3) 기타 서비스 안내·연계·지원 (생략)</p> <p>* 국가·지자체에서 제공 중인 사회보장제도 전체 목록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발간)과 [임신·출산·양육 관련 급여·서비스 목록](p.58) 참고, 개별 지자체는 자체 지원하는 급여·서비스·제도 등에 대하여 [임신·출산·양육 관련 급여·서비스 목록] 등과 같이 정리하여 지역상담기관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변동 사항이 있을 시 지역상담기관에 공유</p> <p>(중략)</p> <p>● (민간 복지자원 연계)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아동권리보장원 등은 전국 단위 민간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시·도 및 시·군·구는 지역 내 민간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지역상담기관이 위기 임산부에게 민간 복지자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p> <p>(생략)</p>	55~56p

구분	기존 내용	개정 내용	페이지																																																									
	<p>〈2025년 기준 전국단위 민간 복지자원(예시)〉 (생략)</p>	<p>〈삭제〉</p>	57p~																																																									
<p>임신·출산·양육 관련 급여·서비스 목록</p>	<table border="1"> <thead> <tr> <th>법적 근거</th> <th>지원 내용</th> <th>소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제7조 (급여)</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계 급여 (생략)</li> </ul> <p>(단위 : 원/월)</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1인</th> <th>2인</th> <th>3인</th> <th>4인</th> <th>5인</th> <th>6인</th> </tr> </thead> <tbody> <tr> <td>기준 중위소득</td> <td>2,392,013</td> <td>3,932,658</td> <td>5,025,353</td> <td>6,097,773</td> <td>7,108,192</td> <td>8,064,805</td> </tr> <tr> <td>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2%)</td> <td>765,444</td> <td>1,258,451</td> <td>1,608,113</td> <td>1,951,287</td> <td>2,274,621</td> <td>2,580,738</td> </tr> </tbody> </table> <p>(생략)</p> </td> <td>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td> </tr> </tbody> </table>	법적 근거	지원 내용	소관	제7조 (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계 급여 (생략)</li> </ul> <p>(단위 : 원/월)</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1인</th> <th>2인</th> <th>3인</th> <th>4인</th> <th>5인</th> <th>6인</th> </tr> </thead> <tbody> <tr> <td>기준 중위소득</td> <td>2,392,013</td> <td>3,932,658</td> <td>5,025,353</td> <td>6,097,773</td> <td>7,108,192</td> <td>8,064,805</td> </tr> <tr> <td>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2%)</td> <td>765,444</td> <td>1,258,451</td> <td>1,608,113</td> <td>1,951,287</td> <td>2,274,621</td> <td>2,580,738</td> </tr> </tbody> </table> <p>(생략)</p>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2%)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table border="1"> <thead> <tr> <th>법적 근거</th> <th>지원 내용</th> <th>소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제7조 (급여)</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계 급여 (생략)</li> </ul> <p>(단위 : 원/월)</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1인</th> <th>2인</th> <th>3인</th> <th>4인</th> <th>5인</th> <th>6인</th> <th>7인</th> </tr> </thead> <tbody> <tr> <td>기준 중위소득</td> <td>2,564,238</td> <td>4,199,292</td> <td>5,359,036</td> <td>6,494,738</td> <td>7,556,719</td> <td>8,556,952</td> <td>9,515,150</td> </tr> <tr> <td>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2%)</td> <td>820,556</td> <td>1,343,773</td> <td>1,714,892</td> <td>2,078,316</td> <td>2,418,150</td> <td>2,737,905</td> <td>3,044,848</td> </tr> </tbody> </table> <p>*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959,158원씩 증가(8인가구: 10,474,348원) ** 8인 이상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06,943원씩 증가(8인가구: 3,351,791원)</p> <p>(생략)</p> </td> <td>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td> </tr> </tbody> </table>	법적 근거	지원 내용	소관	제7조 (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계 급여 (생략)</li> </ul> <p>(단위 : 원/월)</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1인</th> <th>2인</th> <th>3인</th> <th>4인</th> <th>5인</th> <th>6인</th> <th>7인</th> </tr> </thead> <tbody> <tr> <td>기준 중위소득</td> <td>2,564,238</td> <td>4,199,292</td> <td>5,359,036</td> <td>6,494,738</td> <td>7,556,719</td> <td>8,556,952</td> <td>9,515,150</td> </tr> <tr> <td>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2%)</td> <td>820,556</td> <td>1,343,773</td> <td>1,714,892</td> <td>2,078,316</td> <td>2,418,150</td> <td>2,737,905</td> <td>3,044,848</td> </tr> </tbody> </table> <p>*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959,158원씩 증가(8인가구: 10,474,348원) ** 8인 이상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06,943원씩 증가(8인가구: 3,351,791원)</p> <p>(생략)</p>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6,952	9,515,150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2%)	820,556	1,343,773	1,714,892	2,078,316	2,418,150	2,737,905	3,044,848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58p
법적 근거	지원 내용	소관																																																										
제7조 (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계 급여 (생략)</li> </ul> <p>(단위 : 원/월)</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1인</th> <th>2인</th> <th>3인</th> <th>4인</th> <th>5인</th> <th>6인</th> </tr> </thead> <tbody> <tr> <td>기준 중위소득</td> <td>2,392,013</td> <td>3,932,658</td> <td>5,025,353</td> <td>6,097,773</td> <td>7,108,192</td> <td>8,064,805</td> </tr> <tr> <td>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2%)</td> <td>765,444</td> <td>1,258,451</td> <td>1,608,113</td> <td>1,951,287</td> <td>2,274,621</td> <td>2,580,738</td> </tr> </tbody> </table> <p>(생략)</p>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2%)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2%)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법적 근거	지원 내용	소관																																																										
제7조 (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계 급여 (생략)</li> </ul> <p>(단위 : 원/월)</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1인</th> <th>2인</th> <th>3인</th> <th>4인</th> <th>5인</th> <th>6인</th> <th>7인</th> </tr> </thead> <tbody> <tr> <td>기준 중위소득</td> <td>2,564,238</td> <td>4,199,292</td> <td>5,359,036</td> <td>6,494,738</td> <td>7,556,719</td> <td>8,556,952</td> <td>9,515,150</td> </tr> <tr> <td>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2%)</td> <td>820,556</td> <td>1,343,773</td> <td>1,714,892</td> <td>2,078,316</td> <td>2,418,150</td> <td>2,737,905</td> <td>3,044,848</td> </tr> </tbody> </table> <p>*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959,158원씩 증가(8인가구: 10,474,348원) ** 8인 이상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06,943원씩 증가(8인가구: 3,351,791원)</p> <p>(생략)</p>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6,952	9,515,150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2%)	820,556	1,343,773	1,714,892	2,078,316	2,418,150	2,737,905	3,044,848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6,952	9,515,150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2%)	820,556	1,343,773	1,714,892	2,078,316	2,418,150	2,737,905	3,044,848																																																				
	<table border="1"> <thead> <tr> <th>법적 근거</th> <th>지원 내용</th> <th>소관</th> </tr> </thead> <tbody> <tr> <td>제7조 (급여)</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급여 (생략)</li> </ul> </td> <td>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td> </tr> </tbody> </table>	법적 근거	지원 내용	소관	제7조 (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급여 (생략)</li> </ul>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table border="1"> <thead> <tr> <th>법적 근거</th> <th>지원 내용</th> <th>소관</th> </tr> </thead> <tbody> <tr> <td>제7조 (급여)</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급여 (생략)</li> </ul> </td> <td>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과</td> </tr> </tbody> </table>	법적 근거	지원 내용	소관	제7조 (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급여 (생략)</li> </ul>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과	59p																																													
법적 근거	지원 내용	소관																																																										
제7조 (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급여 (생략)</li> </ul>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법적 근거	지원 내용	소관																																																										
제7조 (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급여 (생략)</li> </ul>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과																																																										
<p>● 「한부모가족지원법」</p>	<table border="1"> <thead> <tr> <th>법적 근거</th> <th>지원 내용</th> <th>소관</th> </tr> </thead> <tbody> <tr> <td>제12조 (복지급여)</td> <td> <p>(생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급기준 : '25년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 이하)</li> <li>*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중위소득 65% 이하</li> <li>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부모가족</li> </ul> </li> </ul> </td> <td>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td> </tr> </tbody> </table>	법적 근거	지원 내용	소관	제12조 (복지급여)	<p>(생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급기준 : '25년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 이하)</li> <li>*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중위소득 65% 이하</li> <li>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부모가족</li> </ul> </li> </ul>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table border="1"> <thead> <tr> <th>법적 근거</th> <th>지원 내용</th> <th>소관</th> </tr> </thead> <tbody> <tr> <td>제12조 (복지급여)</td> <td> <p>(생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급기준 : '26년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 이하)</li> <li>*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중위소득 65% 이하</li> <li>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부모가족</li> </ul> </li> </ul> </td> <td>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td> </tr> </tbody> </table>	법적 근거	지원 내용	소관	제12조 (복지급여)	<p>(생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급기준 : '26년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 이하)</li> <li>*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중위소득 65% 이하</li> <li>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부모가족</li> </ul> </li> </ul>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59~60p																																													
법적 근거	지원 내용	소관																																																										
제12조 (복지급여)	<p>(생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급기준 : '25년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 이하)</li> <li>*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중위소득 65% 이하</li> <li>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부모가족</li> </ul> </li> </ul>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법적 근거	지원 내용	소관																																																										
제12조 (복지급여)	<p>(생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급기준 : '26년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 이하)</li> <li>*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중위소득 65% 이하</li> <li>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부모가족</li> </ul> </li> </ul>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구분	기존 내용			개정 내용			페이지
	법적 근거	지원 내용	소관	법적 근거	지원 내용	소관	
		구분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아동 양육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3만원 지급</li> <li>*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 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포함</li> </ul>		아동 양육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3만원 지급</li> <li>*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 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포함</li> </ul>	
		추가 아동 양육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추가 지급</li> <li>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추가 지급</li> <li>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원 추가 지급</li> </ul>		추가 아동 양육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추가 지급</li> <li>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추가 지급</li> <li>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원 추가 지급</li> </ul>	
		학용 품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아동 1인당 연 9만 3,000원 지급</li> </ul>		학용 품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아동 1인당 연 10만원지급</li> </ul>	
	생활 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5만원 지급</li> </ul>		생활 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10만원 지급</li> </ul>		
		(생략)			(생략)		
	법적 근거	지원 내용	소관	법적 근거	지원 내용	소관	61p
	제14조 (직업능력 개발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부모가족복지시설 고용지원 연계〉</li> <li>(생략)</li> </ul>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제14조 (직업능력 개발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부모가족복지시설 고용지원 연계〉</li> <li>(생략)</li> </ul>	성평등 가족부 가족지원과	
	제14조의 2 (고용지원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족센터〉</li> <li>(생략)</li> </ul>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제14조의 2 (고용지원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족센터〉</li> <li>(생략)</li> </ul>	성평등 가족부 가족정책과	
	법적 근거	지원 내용	소관	법적 근거	지원 내용	소관	61~ 62p
	제17조 (가족지원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가족보듬사업〉</li> <li>(생략)</li> <li>〈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li> <li>(생략)</li> </ul>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제17조 (가족지원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가족보듬사업〉</li> <li>(생략)</li> <li>〈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li> <li>(생략)</li> </ul>	성평등 가족부 가족정책과 성평등 가족부 가족지원과	

구분	기존 내용			개정 내용			페이지
	법적 근거	지원 내용	소관	법적 근거	지원 내용	소관	62p
	제17조의6 (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등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생략) 〈온가족보듬사업〉 (생략)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제17조의6 (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등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생략) 〈온가족보듬사업〉 (생략)	성평등 가족부 가족지원과	
	법적 근거	지원 내용	소관	법적 근거	지원 내용	소관	62p
	제19조 (시설이용)	(생략)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제19조 (시설이용)	(생략)	성평등 가족부 가족지원과	
	법적 근거	지원 내용	소관	법적 근거	지원 내용	소관	66p
	제14조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 서비스 내용 :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총 9개월 동안 지원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 가능) - 신청자격 :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이하, 다만 양육비 채권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긴급 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중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 지원법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받는 경우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 : 불가능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제21조 (양육비 선지급 신청)	- 서비스 내용 :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18세까지 지원(단, 지원 금액은 집행권원 상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청자격 : 양육비 채권을 보유 하고 있으나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 서비스 이용 신청 : 양육비이행 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 support.or.kr)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 우편 접수 * 상담, 및 문의 : 양육비 상담 전화(☎1644-662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 지원법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받는 경우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 : 불가능	성평등 가족부 가족지원과	
	구분	지원내용	소관	구분	지원내용	소관	67p
	시설입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p.71 시설 이용 지원 상담 참조 ※ 「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대 상자의 범위 고시」 2. 2025년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대상 (생략)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시설입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p.62 시설 이용 지원 상담 참조 ※ 「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대 상자의 범위 고시」 2. 2025년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대상 (생략)	성평등 가족부 가족지원과	

구분	기존 내용	개정 내용	페이지																					
	<p><b>② 기타 지원 제도</b></p> <p>● 임신 지원 제도</p> <table border="1" data-bbox="382 472 784 1528"> <thead> <tr> <th>구분</th> <th>지원내용</th> <th>소관</th> </tr> </thead> <tbody> <tr> <td>태아 검진 시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내용: 임신한 근로자 청구시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신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 부여(임금 삭감금지)</li> <li>* 임신 28주까지(4주 1회), 임신 29주~36주까지(2주 1회), 임신 37주 이후(1주 1회)</li> <li>- 지원대상: 임신근로자</li> <li>-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사업주에게 태아검진시간 신청</li> </ul> </td> <td>고용노동부 여성고용 정책과</td> </tr> <tr> <td>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내용: 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후 여성근로자는 1일 2시간씩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할 의무(임금 삭감 금지, 1일 6시간이 되도록 단축 허용)</li> <li>- 지원대상: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근로자</li> <li>-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사업주에게 3일 전까지 신청</li> <li>* (‘25.2.23.부터 제도 확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제도 확대(19대 질환 등이 있는 고위험 임신부의 경우 임신 전 기간 확대)</li> </ul> </td> <td>고용노동부 여성고용 정책과</td> </tr> <tr> <td>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내용: 임신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시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함</li> <li>- 지원대상: 임신근로자</li> <li>-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사업주에게 3일 전까지 신청</li> </ul> </td> <td>고용노동부 여성고용 정책과</td> </tr> </tbody> </table>	구분	지원내용	소관	태아 검진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내용: 임신한 근로자 청구시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신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 부여(임금 삭감금지)</li> <li>* 임신 28주까지(4주 1회), 임신 29주~36주까지(2주 1회), 임신 37주 이후(1주 1회)</li> <li>- 지원대상: 임신근로자</li> <li>-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사업주에게 태아검진시간 신청</li> </ul>	고용노동부 여성고용 정책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내용: 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후 여성근로자는 1일 2시간씩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할 의무(임금 삭감 금지, 1일 6시간이 되도록 단축 허용)</li> <li>- 지원대상: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근로자</li> <li>-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사업주에게 3일 전까지 신청</li> <li>* (‘25.2.23.부터 제도 확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제도 확대(19대 질환 등이 있는 고위험 임신부의 경우 임신 전 기간 확대)</li> </ul>	고용노동부 여성고용 정책과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내용: 임신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시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함</li> <li>- 지원대상: 임신근로자</li> <li>-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사업주에게 3일 전까지 신청</li> </ul>	고용노동부 여성고용 정책과	<p><b>② 기타 지원 제도</b></p> <p>● 임신 지원 제도</p> <table border="1" data-bbox="799 472 1200 1780"> <thead> <tr> <th>구분</th> <th>지원내용</th> <th>소관</th> </tr> </thead> <tbody> <tr> <td>태아 검진 시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신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하고,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됨</li> <li>* 임신부 정기 건강진단 실시 기준 : 임신28주까지 4주마다 1회,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li> </ul> </td> <td>고용노동부 고용문화 개선정책과</td> </tr> <tr> <td>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됨(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 허용 가능)</li> <li>- 대상: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li> <li>- 신청방법: 단축 개시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li> <li>* (‘25.2.23.부터 제도 확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12주 이내 또는</li> </ul> </td> <td>고용노동부 고용문화 개선정책과</td> </tr> </tbody> </table>	구분	지원내용	소관	태아 검진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신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하고,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됨</li> <li>* 임신부 정기 건강진단 실시 기준 : 임신28주까지 4주마다 1회,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li> </ul>	고용노동부 고용문화 개선정책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됨(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 허용 가능)</li> <li>- 대상: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li> <li>- 신청방법: 단축 개시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li> <li>* (‘25.2.23.부터 제도 확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12주 이내 또는</li> </ul>	고용노동부 고용문화 개선정책과	69p
구분	지원내용	소관																						
태아 검진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내용: 임신한 근로자 청구시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신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 부여(임금 삭감금지)</li> <li>* 임신 28주까지(4주 1회), 임신 29주~36주까지(2주 1회), 임신 37주 이후(1주 1회)</li> <li>- 지원대상: 임신근로자</li> <li>-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사업주에게 태아검진시간 신청</li> </ul>	고용노동부 여성고용 정책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내용: 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후 여성근로자는 1일 2시간씩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할 의무(임금 삭감 금지, 1일 6시간이 되도록 단축 허용)</li> <li>- 지원대상: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근로자</li> <li>-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사업주에게 3일 전까지 신청</li> <li>* (‘25.2.23.부터 제도 확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제도 확대(19대 질환 등이 있는 고위험 임신부의 경우 임신 전 기간 확대)</li> </ul>	고용노동부 여성고용 정책과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내용: 임신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시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함</li> <li>- 지원대상: 임신근로자</li> <li>-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사업주에게 3일 전까지 신청</li> </ul>	고용노동부 여성고용 정책과																						
구분	지원내용	소관																						
태아 검진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신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하고,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됨</li> <li>* 임신부 정기 건강진단 실시 기준 : 임신28주까지 4주마다 1회,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li> </ul>	고용노동부 고용문화 개선정책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됨(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 허용 가능)</li> <li>- 대상: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li> <li>- 신청방법: 단축 개시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li> <li>* (‘25.2.23.부터 제도 확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12주 이내 또는</li> </ul>	고용노동부 고용문화 개선정책과																						

구분	기존 내용	개정 내용	페이지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798 369 881 410">구분</th> <th data-bbox="881 369 1115 410">지원내용</th> <th data-bbox="1115 369 1202 410">소관</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798 410 881 500"></td> <td data-bbox="881 410 1115 500">32주 이후로 제도 확대(19대 질환등이 있는 고위험 임신부의 경우 임신 전 기간 확대)</td> <td data-bbox="1115 410 1202 500"></td> </tr> <tr> <td data-bbox="798 500 881 889"><b>임신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b></td> <td data-bbox="881 500 1115 889">                     - 내용: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함                      - 대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 신청방법: 변경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예정 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에 임신 사실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                 </td> <td data-bbox="1115 500 1202 889">고용노동부 고용문화 개선정책과</td> </tr> </tbody> </table>	구분	지원내용	소관		32주 이후로 제도 확대(19대 질환등이 있는 고위험 임신부의 경우 임신 전 기간 확대)		<b>임신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b>	- 내용: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함 - 대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 신청방법: 변경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예정 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에 임신 사실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	고용노동부 고용문화 개선정책과				
구분	지원내용	소관													
	32주 이후로 제도 확대(19대 질환등이 있는 고위험 임신부의 경우 임신 전 기간 확대)														
<b>임신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b>	- 내용: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함 - 대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 신청방법: 변경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예정 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에 임신 사실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	고용노동부 고용문화 개선정책과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379 915 462 956">구분</th> <th data-bbox="462 915 703 956">지원 내용</th> <th data-bbox="703 915 789 956">소관</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79 956 462 1283"><b>에너지 바우처</b></td> <td data-bbox="462 956 703 1283">                     (생략)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세대원 특성*을 만족하는 가구 * 임신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혹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 : 2024. 5. 29. ~ 12.31.                 </td> <td data-bbox="703 956 789 1283">산업통상 자원부 에너지 정책과</td> </tr> </tbody> </table>	구분	지원 내용	소관	<b>에너지 바우처</b>	(생략)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세대원 특성*을 만족하는 가구 * 임신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혹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 : 2024. 5. 29. ~ 12.31.	산업통상 자원부 에너지 정책과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798 915 881 956">구분</th> <th data-bbox="881 915 1115 956">지원 내용</th> <th data-bbox="1115 915 1202 956">소관</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798 956 881 1481"><b>에너지 바우처</b></td> <td data-bbox="881 956 1115 1481">                     (생략)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세대원 특성*을 만족하는 가구 * 임신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영유아(7세 이하의 취학전 아동) 다자녀(19세 미만인 자녀 2명 이상)                      한부모(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혹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 : 2026.6월 경~12월말 (보도 등을 통한 별도 공지)                 </td> <td data-bbox="1115 956 1202 1481">기후환경 에너지부 기후적응과</td> </tr> </tbody> </table>	구분	지원 내용	소관	<b>에너지 바우처</b>	(생략)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세대원 특성*을 만족하는 가구 * 임신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영유아(7세 이하의 취학전 아동) 다자녀(19세 미만인 자녀 2명 이상) 한부모(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혹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 : 2026.6월 경~12월말 (보도 등을 통한 별도 공지)	기후환경 에너지부 기후적응과	70p
구분	지원 내용	소관													
<b>에너지 바우처</b>	(생략)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세대원 특성*을 만족하는 가구 * 임신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혹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 : 2024. 5. 29. ~ 12.31.	산업통상 자원부 에너지 정책과													
구분	지원 내용	소관													
<b>에너지 바우처</b>	(생략)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세대원 특성*을 만족하는 가구 * 임신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영유아(7세 이하의 취학전 아동) 다자녀(19세 미만인 자녀 2명 이상) 한부모(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혹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 : 2026.6월 경~12월말 (보도 등을 통한 별도 공지)	기후환경 에너지부 기후적응과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379 1498 462 1539">구분</th> <th data-bbox="462 1498 703 1539">지원 내용</th> <th data-bbox="703 1498 789 1539">소관</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79 1539 462 1774"><b>영양플러스 사업</b></td> <td data-bbox="462 1539 703 1774">                     (생략)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임신부, 출산·수유부 및 영유아(6세 미만)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 가진 자                      (생략)                 </td> <td data-bbox="703 1539 789 1774">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td> </tr> </tbody> </table>	구분	지원 내용	소관	<b>영양플러스 사업</b>	(생략)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임신부, 출산·수유부 및 영유아(6세 미만)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 가진 자 (생략)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798 1498 881 1539">구분</th> <th data-bbox="881 1498 1115 1539">지원 내용</th> <th data-bbox="1115 1498 1202 1539">소관</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798 1539 881 1774"><b>영양플러스 사업</b></td> <td data-bbox="881 1539 1115 1774">                     (생략)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임신부, 출산·수유부 및 영유아(5세 미만)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 가진 자                      (생략)                 </td> <td data-bbox="1115 1539 1202 1774">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td> </tr> </tbody> </table>	구분	지원 내용	소관	<b>영양플러스 사업</b>	(생략)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임신부, 출산·수유부 및 영유아(5세 미만)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 가진 자 (생략)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72p
구분	지원 내용	소관													
<b>영양플러스 사업</b>	(생략)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임신부, 출산·수유부 및 영유아(6세 미만)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 가진 자 (생략)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구분	지원 내용	소관													
<b>영양플러스 사업</b>	(생략)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임신부, 출산·수유부 및 영유아(5세 미만)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 가진 자 (생략)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구분	기존 내용			개정 내용			페이지																				
	구분	지원 내용	소관	구분	지원 내용	소관	74~ 75p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p>- 서비스 내용: 소득활동은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인 출산여성에게 150만원(월 50만원씩 3개월)의 출산급여 지원</p> <p>-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 *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수급(180일)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 및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근로자</p> <p>-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고용지원센터 직접신청 또는 고용24 홈페이지 신청)</p>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p>- 내용: 소득활동은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인 출산여성에게 150만원(월 50만원씩 3개월)의 출산급여 지원</p> <p>-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 *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수급(180일)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 및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p> <p>- 신청방법: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고용지원센터 직접신청 또는 고용24 홈페이지 신청)</p>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출산전후 휴가 및 급여제도	<p>- 서비스 내용</p> <p>1) 휴가: 출산 전과 후를 통해 90일(다태아 120일)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 잔여 30일(다태아 45일)은 무급</p> <p>2) 급여 지원: 휴가종료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최초 60일</th> <th>마지막 30일</th> </tr> </thead> <tbody> <tr> <td>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td> <td>〈정부〉 최대 월 210만원(통상 임금 100%) 지급 〈사업주〉 월 210만원 초과분 지급</td> <td>〈정부〉 최대 월 210만원(통상 임금 100%) 지급 * 〈사업주〉 미지급</td> </tr> <tr> <td>대규모 기업 소속 근로자</td> <td>〈사업주〉 통상 임금 100% 지급 (상한 없음) * 정부지원 없음</td> <td>〈정부〉 최대 월 210만원(통상 임금 100%) 지급 * 〈사업주〉 미지급</td> </tr> </tbody> </table> <p>- 지원대상: 임신 및 출산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사용)</p> <p>-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휴가) 사업주에게 신청, (급여) 출산전후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급여신청</p>				구분	최초 60일	마지막 30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정부〉 최대 월 210만원(통상 임금 100%) 지급 〈사업주〉 월 210만원 초과분 지급	〈정부〉 최대 월 210만원(통상 임금 100%) 지급 * 〈사업주〉 미지급	대규모 기업 소속 근로자	〈사업주〉 통상 임금 100% 지급 (상한 없음) * 정부지원 없음	〈정부〉 최대 월 210만원(통상 임금 100%) 지급 * 〈사업주〉 미지급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출산전후 휴가 및 급여지원	<p>- 서비스 내용</p> <p>1) 휴가: 사용자가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 부여,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 잔여 30일(다태아 45일)은 무급</p> <p>2) 급여 지원: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최초 60일 (다태아 75일)</th> <th>마지막 30일 (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th> </tr> </thead> <tbody> <tr> <td>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td> <td>〈정부〉 통상 임金的 100% (상한액 월220만원) 지급 (사업주) 통상 임금과 정부 지원 상한액(월 220만원)과의 차액 지급</td> <td>〈정부〉 통상 임금의 100%(상한액 월20만원) 지급 * 〈사업주〉 미지급</td> </tr> <tr> <td>대규모 기업 소속 근로자</td> <td>(사업주) 통상 임금 지급</td> <td>〈정부〉 통상 임금의 100% (상한액 월220만원) 지급 * 〈사업주〉 미지급</td> </tr> </tbody> </table> <p>- 대상: (휴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p>			구분	최초 60일 (다태아 75일)	마지막 30일 (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정부〉 통상 임金的 100% (상한액 월220만원) 지급 (사업주) 통상 임금과 정부 지원 상한액(월 220만원)과의 차액 지급	〈정부〉 통상 임금의 100%(상한액 월20만원) 지급 * 〈사업주〉 미지급	대규모 기업 소속 근로자	(사업주) 통상 임금 지급
구분		최초 60일	마지막 30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정부〉 최대 월 210만원(통상 임금 100%) 지급 〈사업주〉 월 210만원 초과분 지급	〈정부〉 최대 월 210만원(통상 임금 100%) 지급 * 〈사업주〉 미지급																									
대규모 기업 소속 근로자	〈사업주〉 통상 임금 100% 지급 (상한 없음) * 정부지원 없음	〈정부〉 최대 월 210만원(통상 임금 100%) 지급 * 〈사업주〉 미지급																									
구분	최초 60일 (다태아 75일)	마지막 30일 (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정부〉 통상 임金的 100% (상한액 월220만원) 지급 (사업주) 통상 임금과 정부 지원 상한액(월 220만원)과의 차액 지급	〈정부〉 통상 임금의 100%(상한액 월20만원) 지급 * 〈사업주〉 미지급																									
대규모 기업 소속 근로자	(사업주) 통상 임금 지급	〈정부〉 통상 임금의 100% (상한액 월220만원) 지급 * 〈사업주〉 미지급																									

구분	기존 내용		개정 내용		페이지		
	구분	지원 내용	소관	구분	지원 내용	소관	
		(고용지원센터 직접신청 또는 고용24 홈페이지 신청) * ('25.2.23.부터 제도 확대)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 휴가 90일에서 100일로 확대, 급여지원은 90일에서 100일 (우선지원대상기업), 30일에서 40일(대규모기업)로 확대			(급여)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신청방법: (휴가) 사용자에게 신청 (급여) 고용센터 또는 고용24홈페이지로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25.2.23.부터 제도 확대)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 휴가 90일에서 100일로 확대, 급여지원은 90일에서 100일 (우선지원대상기업), 30일에서 40일(대규모기업)로 확대		
	구분	지원 내용	소관	구분	지원 내용	소관	75~77p
	유산·사산 휴가 및 급여 제도	- 서비스 내용 1) 휴가: 유산·사산에 따른 휴가 청구시 임신기간별 5~90일 부여, 최초 60일 기간까지는 유급, 이후기간은 무급 ※ 임신기간별 휴가일수 - 11주 이내 : 유·사산일부터 5일 - 12주~15주 이내 : 유·사산일부터 10일 - 16주~21주 이내 : 유·사산일부터 30일 - 22주~27주 이내 : 유·사산일부터 60일 - 28주 이상 : 유·사산일부터 90일 2) 급여: 지원출산전후휴가 급여와 동일 - 지원대상: 유산·사산한 근로자 (휴가는 근로자 청구 필요)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유산·사산휴가 시작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후 12개월 이내 급여신청 (고용지원센터 직접신청 또는 고용24 홈페이지 신청) * ('25.2.23.부터 제도 확대)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한 경우 휴가일수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유산·사산 휴가 및 급여 제도	- 내용 1) 휴가: 사용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청구 시 임신기간에 따라 10~90일의 유산·사산휴가 부여, 최초 60일은 유급, 이후기간은 무급 ※ 임신기간별 휴가기간 - 15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16주~2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22주~27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2) 급여 지원: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동일 - 대상: (휴가) 유산·사산한 근로자 (급여)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신청방법: (휴가) 휴가 청구 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 (급여)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구분	기존 내용			개정 내용			페이지
구분	지원 내용	소관	구분	지원 내용	소관		
기간제·파견근로자 출산 전후휴가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내용: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후가 기간 중 계약만료된 경우 남은 법정휴가에 대해 급여지원</li> <li>- 지원수준: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동일</li> <li>- 지원대상: 출산(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계약 만료된 기간제·파견 근로자(계약만료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li> <li>-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급여신청(고용지원센터 직접신청 또는 고용 24 홈페이지 신청)</li> </ul>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기간제·파견근로자 출산 전후휴가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홈페이지로 유산·사산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li> <li>- *(25.2.23부터 제도 확대)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한 경우 휴가일수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li> </ul>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내용: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노무제공자에게 출산전후(유산)급여를 지급</li> <li>- 지원수준: (예술인) 출산일 직전 월평균 보수 100%(상한 월 210만원, 하한 월 60만원) (노무제공자) 출산일 직전 월평균 보수 100%(상한 월 210만원, 하한 월 80만원)</li> <li>- 지원대상: 출산(유산·사산)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이상인 예술인·노무제공자</li> <li>-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출산(유산·사산)후 1년 이내 급여신청(고용지원센터 직접신청 또는 고용24 홈페이지 신청)</li> <li>- *(25.2.23.부터 제도 확대) 출산전후(유산·사산)급여지급 기간이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90일에서 100일로 확대,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한 경우 5일에서 10일로 확대</li> </ul>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내용: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남은 휴가기간에 대해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li> <li>- 지원수준: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동일</li> <li>- 지원대상: 출산(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파견근로자(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필요)</li> <li>- 신청방법: 고용센터 또는 고용 24 홈페이지로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 날 이후 1개월부터 해당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li> </ul>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 급여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내용: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노무제공자에게 출산전후(유산·사산)급여를 지급</li> <li>- 지원수준: (예술인) 출산일 직전 월평균 보수 100%(상한 월 210만원, 하한 월 60만원) (노무제공자) 출산일 직전 월평균 보수 100%(상한 월 210만원, 하한 월 80만원)</li> <li>- 지원대상: 출산(유산·사산)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이상인 예술인·노무제공자</li> <li>-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출산(유산·사산)후 1년 이내 급여신청(고용지원센터 직접신청 또는 고용24 홈페이지 신청)</li> <li>- *(25.2.23.부터 제도 확대) 출산전후(유산·사산)급여지급 기간이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90일에서 100일로 확대,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한 경우 5일에서 10일로 확대</li> </ul>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 급여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내용: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노무제공자에게 출산전후(유산·사산)급여를 지급</li> <li>- 지원대상 : 출산(유산·사산)일 이전에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인 예술인·노무제공자</li> <li>- 지원수준: (예술인) 출산일 직전 1년(또는 18개월)간 월평균 보수의 100%(상한액 월 220만원, 하한액 월 60만원) (노무제공자) 출산일 직전 1년(또는 18개월)간 월 평균 보수의 100%(상한액 월</li> </ul>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배우자 출산 휴가 및 급여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내용</li> <li>1) 휴가: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근로자가 청구시 10일 휴가(유급) 부여(출산일로부터 90일</li> </ul>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구분	기존 내용			개정 내용			페이지						
구분	지원 내용	소관		구분	지원 내용	소관							
	<p>이내 청구)</p> <p>2) 급여 지원: 휴가종료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최초 5일</th> <th>나머지 5일</th> </tr> </thead> <tbody> <tr> <td>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td> <td> <p>&lt;정부&gt; 5일분(통상임금 100%, 최대 401,910원) 지급</p> <p>&lt;사업주&gt; 5일분 통상임금이 401,910원 초과하는 경우 <b>차액 지급</b></p> </td> <td> <p>&lt;사업주&gt; 5일분(통상임금 100%) 지급</p> </td> </tr> </tbody> </table> <p>* 대규모 소속 근로자는 사업주가 10일분 통상임금 전부 지급</p> <p>- 지원대상: 배우자가 출산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남성 근로자(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만 해당)</p> <p>-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휴가) 사업주에게 신청,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종료후 12개월 이내 급여신청 (고용지원센터 직접신청 또는 고용24 홈페이지 신청)</p> <p>* ('25.2.23.부터 제도 확대) ① 휴가일수 10일→20일 ② 사용기간이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 →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③휴가분할횟수 1회→3회 ④ 정부급여지원 기간 5일→20일 확대</p>	구분*	최초 5일	나머지 5일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p>&lt;정부&gt; 5일분(통상임금 100%, 최대 401,910원) 지급</p> <p>&lt;사업주&gt; 5일분 통상임금이 401,910원 초과하는 경우 <b>차액 지급</b></p>	<p>&lt;사업주&gt; 5일분(통상임금 100%) 지급</p>			<p>220만원, 하한액 월 80만원)</p> <p>- 지원대상: 출산(유산·사산)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이상인예술인·노무제공자</p> <p>- 지원기간: (출산) 출산 전과 후를 연속하여 90일(미숙아 100일, 다테아 120일), 출산 후에 45일 (다태아 60일) 이상 필요 (유산·사산) 임신기간에 따라 10일~90일(근로자 유산·사산휴가 기간과 동일)</p> <p>- 신청방법: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홈페이지로 유산·사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25.2.23.부터 제도 확대) 출산전후(유산·사산)급여지급 기간이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90일에서 100일로 확대,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한 경우 5일에서 10일로 확대</p>			
구분*	최초 5일	나머지 5일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p>&lt;정부&gt; 5일분(통상임금 100%, 최대 401,910원) 지급</p> <p>&lt;사업주&gt; 5일분 통상임금이 401,910원 초과하는 경우 <b>차액 지급</b></p>	<p>&lt;사업주&gt; 5일분(통상임금 100%) 지급</p>											
				<p>- 서비스 내용</p> <p>1) 휴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 고지 시 20일의 배우자 출산 휴가 부여, 휴가기간은 유급,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 사용 가능</p> <p>2) 급여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휴가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1,684,210원) 지급)</p> <p>* 통상임금과 정부 지원 상한액 (1,684,210원)과의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p> <p>*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지급</p>		<p>고용노동부 고용문화 개선정책과</p>							

구분	기존 내용	개정 내용	페이지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지원 내용</th> <th>소관</th> </tr> </thead> <tbody> <tr> <td>구분*</td> <td>최초 5월 나머지 5월</td> <td></td> </tr> <tr> <td>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td> <td>                     &lt;정부&gt;- 5일분(통상임금-100%- 최대 401,910원)- 지급                      &lt;사업주&gt;- 5일분- 통상임금이하 401,910원- 초과하는 경우 <b>차액 지급</b> </td> <td>                     &lt;사업주&gt;- 5일분(통상임금 100%) 지급                 </td> </tr> <tr> <td colspan="3">                     * 대규모 소속 근로자는 사업주가 10일분-통상임금-전부 지급                      - 대상:                      (휴가)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신청방법:                      (휴가) 사업주에게 고지                      (급여)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홈페이지로 배우자 출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25.2.23부터 제도 확대)                      ㉠휴가일수 10일→20일 ㉡사용기간이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 →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휴가분할횟수 1회→3회 ㉣정부급여지원 기간 5일→20일 확대                 </td> </tr> </tbody> </table>	구분	지원 내용	소관	구분*	최초 5월 나머지 5월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정부>- 5일분(통상임금-100%- 최대 401,910원)- 지급 <사업주>- 5일분- 통상임금이하 401,910원- 초과하는 경우 <b>차액 지급</b>	<사업주>- 5일분(통상임금 100%) 지급	* 대규모 소속 근로자는 사업주가 10일분-통상임금-전부 지급 - 대상: (휴가)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신청방법: (휴가) 사업주에게 고지 (급여)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홈페이지로 배우자 출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25.2.23부터 제도 확대) ㉠휴가일수 10일→20일 ㉡사용기간이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 →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휴가분할횟수 1회→3회 ㉣정부급여지원 기간 5일→20일 확대			
구분	지원 내용	소관													
구분*	최초 5월 나머지 5월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정부>- 5일분(통상임금-100%- 최대 401,910원)- 지급 <사업주>- 5일분- 통상임금이하 401,910원- 초과하는 경우 <b>차액 지급</b>	<사업주>- 5일분(통상임금 100%) 지급													
* 대규모 소속 근로자는 사업주가 10일분-통상임금-전부 지급 - 대상: (휴가)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신청방법: (휴가) 사업주에게 고지 (급여)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홈페이지로 배우자 출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25.2.23부터 제도 확대) ㉠휴가일수 10일→20일 ㉡사용기간이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 →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휴가분할횟수 1회→3회 ㉣정부급여지원 기간 5일→20일 확대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지원 내용</th> <th>소관</th> </tr> </thead> <tbody> <tr> <td>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td> <td>                     - (생략)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외국인 등록 장애인 포함) 중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및 4개월 이상 태아 유·사산한 자                      (생략)                 </td> <td>보건복지부 장애인 건강과</td> </tr> </tbody> </table>	구분	지원 내용	소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생략)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외국인 등록 장애인 포함) 중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및 4개월 이상 태아 유·사산한 자 (생략)	보건복지부 장애인 건강과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지원 내용</th> <th>소관</th> </tr> </thead> <tbody> <tr> <td>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td> <td>                     - (생략)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여성 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중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또는 임신 기간 4개월 (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사산한 자                      (생략)                 </td> <td>보건복지부 장애인 건강과</td> </tr> </tbody> </table>	구분	지원 내용	소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생략)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여성 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중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또는 임신 기간 4개월 (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사산한 자 (생략)	보건복지부 장애인 건강과	78p
구분	지원 내용	소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생략)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외국인 등록 장애인 포함) 중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및 4개월 이상 태아 유·사산한 자 (생략)	보건복지부 장애인 건강과													
구분	지원 내용	소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생략)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여성 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중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또는 임신 기간 4개월 (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사산한 자 (생략)	보건복지부 장애인 건강과													
	<p>● 양육 지원 제도</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지원 내용</th> <th>소관</th> </tr> </thead> <tbody> <tr> <td>늘봄학교</td> <td>(생략)</td> <td>교육부 방과후돌봄 정책과</td> </tr> </tbody> </table>	구분	지원 내용	소관	늘봄학교	(생략)	교육부 방과후돌봄 정책과	<p>● 양육 지원 제도</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지원 내용</th> <th>소관</th> </tr> </thead> <tbody> <tr> <td>늘봄학교</td> <td>(생략)</td> <td>교육부 늘봄학교 정책과</td> </tr> </tbody> </table>	구분	지원 내용	소관	늘봄학교	(생략)	교육부 늘봄학교 정책과	79p
구분	지원 내용	소관													
늘봄학교	(생략)	교육부 방과후돌봄 정책과													
구분	지원 내용	소관													
늘봄학교	(생략)	교육부 늘봄학교 정책과													

구분	기존 내용			개정 내용			페이지
	구분	지원 내용	소관	구분	지원 내용	소관	
	초등돌봄 교실	(생략)	교육부 방과후돌봄 정책과	초등돌봄 교실	(생략)	교육부 늘봄학교 정책과	
	구분	지원 내용	소관	구분	지원 내용	소관	79p
	유아학비 지원	(생략)	교육부 유아교육 정책과	유아학비 지원	(생략)	교육부 영유아 재정과	
	구분	지원 내용	소관	구분	지원 내용	소관	80p
	자녀세액 공제	(생략) - 지원단가: 첫째 연 15만원, 둘째 연 20만원, 셋째부터 인당 연 30만원 (생략)	기획재정부 소득세세과	자녀세액 공제	(생략) - 지원단가: 첫째 연 25만원, 둘째 연 30만원, 셋째부터 인당 연 40만원 (생략)	기획재정부 소득세세과	
	구분	지원 내용	소관	구분	지원 내용	소관	80p
	다자녀 가정 입장료 감면	(생략) - 지원대상: 막내가 13세 미만인 2자녀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족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다자녀(다둥이) 카드를 소지한 가구원 (생략)	산림청 연구지원과	다자녀 가정 입장료 감면	(생략) - 지원대상: 막내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족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다자녀(다둥이) 카드를 소지한 가구원 (생략)	국립수목원 전시교육 연구과	
	구분	지원 내용	소관	구분	지원 내용	소관	90p
	출산가구 전기요금 감액	(생략)	산업통상 자원부 전략시장과	출산가구 전기요금 감액	(생략)	기후에너지 환경부 전략시장과	
	3자녀 이상 가구 전기요금 감액	(생략)	산업통상자 원부 전략시장과	3자녀 이상 가구 전기요금 감액	(생략)	기후에너지 환경부 전략시장과	
	구분	지원 내용	소관	구분	지원 내용	소관	91p
	에너지복지요금 (지역난방)	(생략)	산업통상 자원부 신산업분산 에너지과	에너지복지요금 (지역난방)	(생략)	기후에너지 환경부 기후적응과	
	구분	지원 내용	소관	구분	지원 내용	소관	91~ 93p
	아이돌봄 서비스	(생략) - 지원대상: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 가정,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아이돌봄 서비스	(생략) - 서비스 내용 및 대상: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성평등 가족부 가족문화과	

구분	기존 내용			개정 내용			페이지																																															
	구분	지원 내용	소관	구분	지원 내용	소관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 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 부모·조손가정에는 정부지원을 5% 추가 지원 *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 0-1세 이하 가정에는 정부지원을 90% 지원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 * 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 부모·조손가정에는 정부지원을 5% 추가 지원 * 중위소득 250% 이하 청소년(한)부모 0-1세 이하 가정에는 정부지원을 90% 지원 * (정부지원 특례) '가형-리형'의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장애 부모의 자녀, 장애 아동, 한부모 청소년 부모, 조손가정에는 연 1,080시간까지 정부지원 * 정기서비스 신청시 대기 우선 순위 가점(5점) 부여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아이돌봄지원법」제13조의2 제3호(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시간제	<table border="1"> <tr> <td>가형</td> <td>취학 전</td> <td>9,886원</td> </tr> <tr> <td></td> <td>취학 후</td> <td>8,723원</td> </tr> <tr> <td rowspan="2">나형</td> <td>취학 전</td> <td>6,978원</td> </tr> <tr> <td>취학 후</td> <td>3,489원</td> </tr> <tr> <td rowspan="2">다형</td> <td>취학 전</td> <td>2,326원</td> </tr> <tr> <td>취학 후</td> <td>1,745원</td> </tr> </table>	가형	취학 전	9,886원		취학 후	8,723원	나형	취학 전	6,978원	취학 후	3,489원	다형	취학 전	2,326원	취학 후	1,745원																																				
가형	취학 전	9,886원																																																				
	취학 후	8,723원																																																				
나형	취학 전	6,978원																																																				
	취학 후	3,489원																																																				
다형	취학 전	2,326원																																																				
	취학 후	1,745원																																																				
	영아종일제	<table border="1"> <tr> <td>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td> <td>9,886원</td> </tr> <tr> <td>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td> <td>6,978원</td> </tr> <tr> <td>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td> <td>2,326원</td> </tr> </table>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9,886원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6,978원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326원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9,886원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6,978원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326원																																																					
	* 기본가격: 영아종일제서비스 11,630원, 시간제서비스 일반형 11,630원,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15,110원(시간당), 질병감염아동 13,950원, 기관연계 18,600원(생략)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시간제 서비스 기준)> ※ 적용대상 : 한부모 가정, 장애 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 부모가정																																																	
	유형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3">기준 중위 소득</th> <th colspan="4">시간제서비스</th> </tr> <tr> <th colspan="2">기본형 (시간당 12,790원)</th> <th colspan="2">종합형 (시간당 16,620원)</th> </tr> <tr> <th>A형 (2019.1.1 이후 출생)</th> <th>B형 (2018.12.31 이전 출생)</th> <th>A형 (2019.1.1 이후 출생)</th> <th>B형 (2018.12.31 이전 출생)</th> </tr> </thead> <tbody> <tr> <td>정부 지원</td> <td>본인 부담</td> <td>정부 지원</td> <td>본인 부담</td> <td>정부 지원</td> <td>본인 부담</td> </tr> <tr> <td>가형</td> <td>75% 이하</td> <td>11 51,291 (80%)</td> <td>10 47,291 (100%)</td> <td>11 51,291 (80%)</td> <td>11 51,291 (100%)</td> </tr> <tr> <td>나형</td> <td>120% 이하</td> <td>7 27,491 (60%)</td> <td>5 19,491 (40%)</td> <td>7 27,491 (60%)</td> <td>8 33,491 (80%)</td> </tr> <tr> <td>다형</td> <td>150% 이하</td> <td>3 10,491 (20%)</td> <td>3 10,491 (20%)</td> <td>3 10,491 (20%)</td> <td>3 10,491 (20%)</td> </tr> <tr> <td>리형</td> <td>250% 이하</td> <td>1 3,491 (15%)</td> <td>10 40,491 (85%)</td> <td>11 41,491 (90%)</td> <td>14 54,491 (100%)</td> </tr> <tr> <td>마형</td> <td>250% 초과</td> <td>-</td> <td>12 45,491 (100%)</td> <td>12 45,491 (100%)</td> <td>16 61,491 (100%)</td> </tr> </tbody> </table>		기준 중위 소득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시간당 12,790원)		종합형 (시간당 16,620원)		A형 (2019.1.1 이후 출생)	B형 (2018.12.31 이전 출생)	A형 (2019.1.1 이후 출생)	B형 (2018.12.31 이전 출생)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가형	75% 이하	11 51,291 (80%)	10 47,291 (100%)	11 51,291 (80%)	11 51,291 (100%)	나형	120% 이하	7 27,491 (60%)	5 19,491 (40%)	7 27,491 (60%)	8 33,491 (80%)	다형	150% 이하	3 10,491 (20%)	3 10,491 (20%)	3 10,491 (20%)	3 10,491 (20%)	리형	250% 이하	1 3,491 (15%)	10 40,491 (85%)	11 41,491 (90%)	14 54,491 (100%)	마형	250% 초과	-	12 45,491 (100%)	12 45,491 (100%)	16 61,491 (100%)		
기준 중위 소득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시간당 12,790원)		종합형 (시간당 16,620원)																																																			
	A형 (2019.1.1 이후 출생)	B형 (2018.12.31 이전 출생)	A형 (2019.1.1 이후 출생)	B형 (2018.12.31 이전 출생)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가형	75% 이하	11 51,291 (80%)	10 47,291 (100%)	11 51,291 (80%)	11 51,291 (100%)																																																	
나형	120% 이하	7 27,491 (60%)	5 19,491 (40%)	7 27,491 (60%)	8 33,491 (80%)																																																	
다형	150% 이하	3 10,491 (20%)	3 10,491 (20%)	3 10,491 (20%)	3 10,491 (20%)																																																	
리형	250% 이하	1 3,491 (15%)	10 40,491 (85%)	11 41,491 (90%)	14 54,491 (100%)																																																	
마형	250% 초과	-	12 45,491 (100%)	12 45,491 (100%)	16 61,491 (100%)																																																	

구분	기존 내용	개정 내용	페이지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지원 내용</th> <th>소관</th> </tr> </thead> <tbody> <tr> <td></td> <td>* 한부모가정에는 조손 가정도 포함 *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요금: (영아종일제) 12,790원, [(시간제) 기본형 12,790원, 종합형 16,620원, (질병간염아동) 15,340원, (기관 연계)19,530원]</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지원 내용	소관		* 한부모가정에는 조손 가정도 포함 *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요금: (영아종일제) 12,790원, [(시간제) 기본형 12,790원, 종합형 16,620원, (질병간염아동) 15,340원, (기관 연계)19,530원]																				
구분	지원 내용	소관																									
	* 한부모가정에는 조손 가정도 포함 *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요금: (영아종일제) 12,790원, [(시간제) 기본형 12,790원, 종합형 16,620원, (질병간염아동) 15,340원, (기관 연계)19,530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지원 내용</th> <th>소관</th> </tr> </thead> <tbody> <tr> <td>가족센터 (구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td> <td>(생략) * '25년 센터 유형별 현황 : 가족센터 228개소 (생략)</td> <td>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td> </tr> </tbody> </table>	구분	지원 내용	소관	가족센터 (구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	(생략) * '25년 센터 유형별 현황 : 가족센터 228개소 (생략)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지원 내용</th> <th>소관</th> </tr> </thead> <tbody> <tr> <td>가족센터 (구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td> <td>(생략) * '25년 센터 유형별 현황 : 가족센터 228개소 (생략)</td> <td>성평등가족부 가족정책과</td> </tr> </tbody> </table>	구분	지원 내용	소관	가족센터 (구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	(생략) * '25년 센터 유형별 현황 : 가족센터 228개소 (생략)	성평등가족부 가족정책과	93p												
구분	지원 내용	소관																									
가족센터 (구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	(생략) * '25년 센터 유형별 현황 : 가족센터 228개소 (생략)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구분	지원 내용	소관																									
가족센터 (구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	(생략) * '25년 센터 유형별 현황 : 가족센터 228개소 (생략)	성평등가족부 가족정책과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지원 내용</th> <th>소관</th> </tr> </thead> <tbody> <tr> <td>공동육아 나눔터 운영</td> <td>(생략)</td> <td>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td> </tr> <tr> <td>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td> <td>(생략)</td> <td>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td> </tr> </tbody> </table>	구분	지원 내용	소관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생략)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생략)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지원 내용</th> <th>소관</th> </tr> </thead> <tbody> <tr> <td>공동육아 나눔터 운영</td> <td>(생략)</td> <td>성평등가족부 가족친화서비스과</td> </tr> <tr> <td>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td> <td>(생략)</td> <td>성평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td> </tr> </tbody> </table>	구분	지원 내용	소관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생략)	성평등가족부 가족친화서비스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생략)	성평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93~94p						
구분	지원 내용	소관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생략)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생략)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구분	지원 내용	소관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생략)	성평등가족부 가족친화서비스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생략)	성평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지원 내용</th> <th>소관</th> </tr> </thead> <tbody> <tr> <td>여성 경제활동 지원</td> <td>(생략)</td> <td>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td> </tr> <tr> <td>청소년 한부모 학습지원</td> <td>(생략)</td> <td>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td> </tr> <tr> <td>청소년한부모의 자립지원</td> <td>(생략)</td> <td>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td> </tr> </tbody> </table>	구분	지원 내용	소관	여성 경제활동 지원	(생략)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청소년 한부모 학습지원	(생략)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청소년한부모의 자립지원	(생략)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지원 내용</th> <th>소관</th> </tr> </thead> <tbody> <tr> <td>여성 경제활동 지원</td> <td>(생략)</td> <td>성평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td> </tr> <tr> <td>청소년 한부모 학습지원</td> <td>(생략)</td> <td>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td> </tr> <tr> <td>청소년한부모의 자립지원</td> <td>(생략)</td> <td>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td> </tr> </tbody> </table>	구분	지원 내용	소관	여성 경제활동 지원	(생략)	성평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청소년 한부모 학습지원	(생략)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청소년한부모의 자립지원	(생략)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94~95p
구분	지원 내용	소관																									
여성 경제활동 지원	(생략)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청소년 한부모 학습지원	(생략)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청소년한부모의 자립지원	(생략)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구분	지원 내용	소관																									
여성 경제활동 지원	(생략)	성평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청소년 한부모 학습지원	(생략)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청소년한부모의 자립지원	(생략)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지원 내용</th> <th>소관</th> </tr> </thead> <tbody> <tr> <td>난임치료 휴가</td> <td>- 서비스 내용 1) 휴가 : 난임치료휴가 청구서 연간 3일(최초1일 유급) 이내의 휴가 부여 * ('25.2.23.부터 제도 확대) 난임치료휴가 연간 6일(최초 1일 유급) 이내의 휴가 부여</td> <td>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td> </tr> </tbody> </table>	구분	지원 내용	소관	난임치료 휴가	- 서비스 내용 1) 휴가 : 난임치료휴가 청구서 연간 3일(최초1일 유급) 이내의 휴가 부여 * ('25.2.23.부터 제도 확대) 난임치료휴가 연간 6일(최초 1일 유급) 이내의 휴가 부여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지원 내용</th> <th>소관</th> </tr> </thead> <tbody> <tr> <td>난임치료 휴가</td> <td>- 내용 : 1) 휴가 : 난임치료휴가 청구서 연간 6일(최초2일 유급) 이내의 휴가 부여 * ('25.2.23.부터 제도 확대) 난임치료휴가 연간 6일(최초 1일 유급) 이내의 휴가 부여</td> <td>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td> </tr> </tbody> </table>	구분	지원 내용	소관	난임치료 휴가	- 내용 : 1) 휴가 : 난임치료휴가 청구서 연간 6일(최초2일 유급) 이내의 휴가 부여 * ('25.2.23.부터 제도 확대) 난임치료휴가 연간 6일(최초 1일 유급) 이내의 휴가 부여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95~97p												
구분	지원 내용	소관																									
난임치료 휴가	- 서비스 내용 1) 휴가 : 난임치료휴가 청구서 연간 3일(최초1일 유급) 이내의 휴가 부여 * ('25.2.23.부터 제도 확대) 난임치료휴가 연간 6일(최초 1일 유급) 이내의 휴가 부여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구분	지원 내용	소관																									
난임치료 휴가	- 내용 : 1) 휴가 : 난임치료휴가 청구서 연간 6일(최초2일 유급) 이내의 휴가 부여 * ('25.2.23.부터 제도 확대) 난임치료휴가 연간 6일(최초 1일 유급) 이내의 휴가 부여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구분	기존 내용			개정 내용			페이지
	구분	지원 내용	소관	구분	지원 내용	소관	
		2) 급여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난임치료휴가 최초 2일분 지원(통상임금100%, 2일분 상한액 160,760원, '25.2.23. 부터 시행) - 지원대상: 1) 휴가 : 난임치료 예정인 근로자 2) 급여 :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1) 휴가 : 사업주에게 휴가 신청 2) 급여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고용센터 직접 신청 혹은 고용 24 홈페이지 신청)			2) 급여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난임치료휴가 최초 2일분 지원(통상임금100%, 2일분 상한액 168,410원) - 대상: 1) 휴가 : 난임치료 중(예정포함) 근로자 2) 급여 :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 신청방법 : 1) 휴가 : 사업주에게 휴가 신청 2) 급여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고용센터 직접 신청 혹은 고용 24 홈페이지 신청)		
	육아휴직 및 급여제도	- 서비스 내용 1) 휴직: 자녀 양육을 위해 신청 시 최대 1년간 휴직 부여 * ('25.2.23.부터 제도 확대)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 휴직 사용, 한부모, 중증 장애 아동의 부모의 경우 6개월 기간 연장 (종략) - 지원대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휴직은 근로자 청구 필요)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휴직)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휴직 신청, (급여) 휴직 시작 후 1개월 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고용지원센터 직접신청 또는 고용24 홈페이지 신청)	고용노동부 여성고용 정책과	육아휴직 및 급여제도	- 내용 1) 휴직: 자녀 양육을 위해 신청 시 1년간 휴직 부여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 휴직 사용, 한부모 중증 장애 아동의 부모의 경우 6개월 기간 연장('25.2.23. 시행) (종략) - 대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휴직은 근로자 청구 필요) - 신청방법: (휴직)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휴직 신청, (급여) 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고용지원 센터 직접신청 또는 고용24 홈페이지 신청)	고용노동부 고용문화 개선정책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급여제도	- 서비스 내용 1) 근로시간 단축: 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신청시 1년간 부여(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시 최대 2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35 시간 이내일 것 2) 급여 지원: 단축 전까지 고용 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고용노동부 여성고용 정책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급여제도	- 내용 1) 근로시간 단축: 만12세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신청시 1년간 부여(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시 최대 2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35 시간 이내일 것 2) 급여 지원: 단축 전까지 고용 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고용노동부 고용문화 개선정책과	

구분	기존 내용		개정 내용		페이지												
구분	지원 내용	소관	구분	지원 내용		소관											
	<table border="1"> <tr> <td>주당 10시간 단축분</td> <td>나머지 단축분</td> </tr> <tr> <td>통상임금 100% (상한 220만원)</td> <td>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td> </tr> </table> <p>- 지원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 (단축근로는 근로자 청구 필요)</p> <p>-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단축 근로)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단축근로 신청, (급여) 단축 시작 후 1개월 이후부터 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고용지원센터 직접신청 또는 고용24 홈페이지 신청)</p> <p>* ('25.2.23.부터 제도 확대) 대상자녀 연령 8세(초2)이하 → 12세(초6) 이하로 상향, 사용기간 최대 3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두배 가산)으로 확대</p>	주당 10시간 단축분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 100% (상한 220만원)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			<table border="1"> <tr> <td>주당 10시간 단축분</td> <td>나머지 단축분</td> </tr> <tr> <td>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td> <td>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td> </tr> </table> <p>- 대상: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 (단축근로는 근로자 청구 필요)</p> <p>- 신청방법: (단축근로)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단축근로 신청, (급여) 단축 시작 후 1개월 이후부터 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고용지원센터 직접신청 또는 고용24 홈페이지 신청)</p> <p>* ('25.2.23.부터 제도 확대) 대상자녀 연령 8세(초2)이하 → 12세(초6) 이하로 상향, 사용기간 최대 3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두배 가산)으로 확대</p>	주당 10시간 단축분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					
주당 10시간 단축분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 100% (상한 220만원)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																
주당 10시간 단축분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																
육아시간	<p>- 서비스 내용: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 부여</p> <p>- 지원대상: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p> <p>-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사업주에게 육아시간 신청</p>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육아(수유)시간	<p>- 내용: 사용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함</p> <p>- 대상: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p> <p>- 신청방법: 사용자에게 청구</p>	고용노동부 고용문화 개선정책과												
가족돌봄 휴가 및 휴직 제도	(생략)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가족돌봄 휴가 및 휴직 제도	(생략)	고용노동부 고용문화 개선정책과												
	<table border="1"> <tr> <td>구분</td> <td>지원 내용</td> <td>소관</td> </tr> <tr> <td>직장 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td> <td> <p>- 서비스 내용</p> <p>1)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인건비 지원: 기준 따라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설치비·인건비 지원(설치비 최대 20억원, 인건비 1인당 월 최대 138만원)</p> <p>2)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보육아동의 교육 및 보육 활동, 행사 등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관리운영비 및 사업 운영비를 보육 현원 기준에 따라 분기별 지원(월 최대 520만원)</p> <p>3) 공공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① 직장어린이집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영세사업장의</p> </td> <td>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 추진단</td> </tr> </table>	구분	지원 내용	소관	직장 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	<p>- 서비스 내용</p> <p>1)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인건비 지원: 기준 따라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설치비·인건비 지원(설치비 최대 20억원, 인건비 1인당 월 최대 138만원)</p> <p>2)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보육아동의 교육 및 보육 활동, 행사 등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관리운영비 및 사업 운영비를 보육 현원 기준에 따라 분기별 지원(월 최대 520만원)</p> <p>3) 공공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① 직장어린이집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영세사업장의</p>	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 추진단			<table border="1"> <tr> <td>구분</td> <td>지원 내용</td> <td>소관</td> </tr> <tr> <td>직장 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td> <td> <p>- 내용</p> <p>1)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를 대상으로 시설비, 교재교구비, 임차료 지원(시설비 최대 20억원, 교재교구비 최대 7천만원, 임차료 최대 3억)</p> <p>2)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보육아동의 교육 및 보육 활동, 행사 등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관리운영비 및 사업 운영비를 보육 현원에 따라 분기별 지원(월200~520만원)</p> <p>3)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등</p> </td> <td>고용노동부 고용문화 개선정책과</td> </tr> </table>	구분	지원 내용	소관	직장 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	<p>- 내용</p> <p>1)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를 대상으로 시설비, 교재교구비, 임차료 지원(시설비 최대 20억원, 교재교구비 최대 7천만원, 임차료 최대 3억)</p> <p>2)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보육아동의 교육 및 보육 활동, 행사 등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관리운영비 및 사업 운영비를 보육 현원에 따라 분기별 지원(월200~520만원)</p> <p>3)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등</p>	고용노동부 고용문화 개선정책과	97~99p
구분	지원 내용	소관															
직장 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	<p>- 서비스 내용</p> <p>1)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인건비 지원: 기준 따라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설치비·인건비 지원(설치비 최대 20억원, 인건비 1인당 월 최대 138만원)</p> <p>2)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보육아동의 교육 및 보육 활동, 행사 등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관리운영비 및 사업 운영비를 보육 현원 기준에 따라 분기별 지원(월 최대 520만원)</p> <p>3) 공공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① 직장어린이집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영세사업장의</p>	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 추진단															
구분	지원 내용	소관															
직장 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	<p>- 내용</p> <p>1)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를 대상으로 시설비, 교재교구비, 임차료 지원(시설비 최대 20억원, 교재교구비 최대 7천만원, 임차료 최대 3억)</p> <p>2)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보육아동의 교육 및 보육 활동, 행사 등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관리운영비 및 사업 운영비를 보육 현원에 따라 분기별 지원(월200~520만원)</p> <p>3)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등</p>	고용노동부 고용문화 개선정책과															

구분	기존 내용		개정 내용		페이지	
구분	지원 내용	소관	구분	지원 내용	소관	
	<p>근로자를 위한 공공직장어린이 집을 운영하고, ② 직장보육 지원센터 운영하여 직장어린이 집 설치·운영하려는 사업주에게 전문적인 통합지원서비스 제공</p> <p>* 설치공사 지원, 인력채용 지원, 보육교사 교육 지원, 특수보육 프로그램 개발·지원 등</p> <p>- 지원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p> <p>-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 신청</p>			<p>인건비 지원: 월평균 근로 시간에 따라 인건비 지원(대규모 월 최대 60만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최대 138만원)</p> <p>-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p> <p>- 신청방법: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 신청</p>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생략)	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 추진단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생략)	고용노동부 고용문화 개선정책과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	<p>- 서비스 내용 (생략)</p> <p>- 지원대상: 육아지원제도 허용에 따른 대체인력 구인 기업 및 기간제 등 대체인력 일자리 구직자</p> <p>-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전국 또는 권역별 बैं크 상담전화 또는 인재채용뱅크 홈페이지를 활용하거나, '인재채용전용관'을 통해 신청</p> <p>(생략)</p>	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 추진단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	<p>- 내용 (생략)</p> <p>- 대상: 육아지원제도 허용에 따른 대체인력 구인 기업 및 기간제 등 대체인력 일자리 구직자</p> <p>- 신청방법: 전국 또는 권역별 बैं크 상담전화 또는 인재채용뱅크 홈페이지를 활용하거나, '인재채용전용관'을 통해 신청</p> <p>(생략)</p>	고용노동부 고용문화 개선정책과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p>- 서비스 내용: 근로자가 일·생활 균형을 위해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허용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용하여야 함</p> <p>(생략)</p>	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 추진단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p>- 내용: 근로자가 일·생활 균형을 위해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허용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용하여야 함</p> <p>(생략)</p>	고용노동부 고용문화 개선정책과	
유리벨일자리 장려금	<p>- 서비스 내용: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지원</p> <p>- 지원대상: 중소·중견 기업 사업주</p> <p>(생략)</p>	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 추진단	유리벨일자리 장려금	<p>- 내용: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지원</p> <p>- 대상: 중소·중견 기업 사업주</p> <p>(생략)</p>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유연근무 장려금	<p>- 서비스 내용: 소속근로자에게 유연근무(재택, 원격, 선택근무)를 허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월 최대 30만원, 1년) 지원</p> <p>* 육아기 근로자는 시차출퇴근</p>	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 추진단	유연근무 장려금	<p>- 내용: 소속근로자에게 유연근무(재택, 원격, 선택근무)를 허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월 최대 30만원, 1년) 지원</p> <p>* 육아기 근로자는 시차출퇴근(월 20만원, 1년) 지원 및 선택·재택·원격근무 활용시 상황 지원(2배 지원)</p> <p>-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업주</p> <p>(생략)</p>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구분	기존 내용		개정 내용		페이지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구분	지원 내용	소관	구분	지원 내용	소관	고용노동부 고용문화 개선정책과
		(월 최대 20만원, 1년) 지원 및 선택·재택·원격근무 활용 시 상향 지원(월 +10만원) -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업주 (생략)		일·생활 균형 시스템 지원	- 내용: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시간 단위 연차 또는 모성보호·일가정양립 제도 도입·개선을 위해 취득 또는 사용하는 프로그램, 시설, 장비 등 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80%, 1,000만원 한도 지원 *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출퇴근 등 관리시스템 사용료는 1년 180만원 한도로 전액 지원 - 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 신청방법: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계획서 제출		
		- 서비스 내용: 유연근무를 활용하기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사업주에게 시스템 투자비의 일부를 지원 * 재택·원격근무 또는 근무혁신 인프라: 근태관리+정보보안 시스템 투자비 지원(투자비용의 50-80% 범위 내 최대 2천만원 지원) * 유연근무(재택·원격·시차·선택) 인프라: 근태관리 시스템 투자비 지원 (사업주 투자비용의 70% 범위 내 최대 750만원 지원) -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 신청방법: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계획서 제출	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 추진단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구분	지원 내용	소관	구분	지원 내용	소관	100p
		- (생략) - 지원대상: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및 다자녀(2인 이상) 가구 (생략)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생략) - 지원대상: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및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다자녀 및 장애인 가구 대상 소득 기준완화(중위소득 80→100% 이하, '26년 7월~)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부모) 보육료 지원	구분	지원 내용	소관	구분	지원 내용	소관	100p
		- (생략) - 지원단가 0세: 540,000원 1세: 475,000원 2세: 394,000원 3~5세: 280,000원	교육부 영유아정책 국	(부모) 보육료 지원	- (생략) - 지원단가 0세: 584,000원 1세: 515,000원 2세: 426,000원 3~5세: 280,000원	교육부 영유아 재정과	

구분	기존 내용		개정 내용		페이지	
	구분	지원 내용 (중략) *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종일반 (기본보육 58만7천원/월, 방과 후 29만3천원/월) 3~5세 누리 장애아보육 58만7천원/월, 가구 소득과 무관) (생략)	소관	구분	지원 내용 (중략) *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종일반 (기본보육 63만4천원/월, 방과 후 31만7천원/월) 3~5세 누리 장애아보육 58만7천원/월, 가구 소득과 무관) (생략)	
	구분	지원 내용 (생략)	소관 교육부 영유아 정책국	구분	지원 내용 (생략)	101p
	가정 양육수당 지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		
	구분	지원 내용 (생략)	소관 (생략)	구분	지원 내용 (생략)	101~ 102p
	부모급여 (신규)			부모급여 (신규)		
	구분	지원 내용 (생략)	소관 교육부 영유아 정책국	구분	지원 내용 (생략)	102p
	시간제 보육			시간제 보육		
	구분	지원 내용 (생략)	소관 교육부 영유아 정책국	구분	지원 내용 (생략)	102p
	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구분	지원 내용 (생략)	소관 교육부 영유아 정책국	구분	지원 내용 (생략)	102p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구분	지원 내용 (생략)	소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구분	지원 내용 (생략)	106p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구분	기존 내용			개정 내용			페이지																														
	구분	지원 내용	소관	구분	지원 내용	소관	107p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생략)	교육부 영유아 정책국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생략)	교육부 영유아정책 총괄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생략)	교육부 영유아 정책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생략)	교육부 영유아정책 총괄과																															
	구분	지원 내용	소관	구분	지원 내용	소관	108p																														
	다함께돌봄사업	- (생략) * 다함께돌봄센터 1,048개소 설치 운영('23.12월말 기준) - 지원대상 : 돌봄 필요한 6~12세 (초등학생) 이하 아동(6세이나 입학 전 아동 포함) (생략)	보건복지부 마을돌봄 TF	다함께돌봄사업	- (생략) * 다함께돌봄센터 1,226개소 설치 운영('24.12월말 기준) - 지원대상 :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 혹은 초등학생 (생략)	보건복지부 아동보호 자립과																															
	구분	지원 내용	소관	구분	지원 내용	소관	109p																														
	국민연금출산크레딧	- 서비스 내용: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추가,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12개월 + 2자녀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 최대 50개월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자녀수</th> <th>2명</th> <th>3명</th> <th>4명</th> <th>5명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추가 산입기간</td> <td>12개월</td> <td>30개월</td> <td>48개월</td> <td>50개월</td> </tr> </tbody> </table>	자녀수	2명	3명	4명		5명 이상	추가 산입기간	12개월	30개월	48개월	50개월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국민연금출산크레딧	- 서비스 내용: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 '08.1.1 이후 출생·입양한 둘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둘째 자녀 12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1인 당 18개월을 추가(최대 50개월) • '26.1.1 이후 부터는 출생·입양한 첫째·둘째 자녀에 대해 각각 12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18개월을 추가(한도 없음) (출생 자녀수에 따른 크레딧 인정기간) (단위: 개월)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1자녀</th> <th>2자녀</th> <th>3자녀</th> <th>4자녀</th> <th>5자녀</th> <th>6자녀</th> </tr> </thead> <tbody> <tr> <td>'08.1.1 이후</td> <td>-</td> <td>12</td> <td>30 (+18)</td> <td>48 (+18)</td> <td>50 (+2)</td> <td>50 (-), 상한 50개월</td> </tr> <tr> <td>'26.1.1 이후</td> <td>12</td> <td>24 (+12)</td> <td>42 (+18)</td> <td>60 (+18)</td> <td>78 (+18)</td> <td>96 (+18), 상한 없음</td> </tr> </tbody> </table>	구분	1자녀	2자녀	3자녀	4자녀	5자녀	6자녀	'08.1.1 이후	-	12	30 (+18)	48 (+18)	50 (+2)	50 (-), 상한 50개월	'26.1.1 이후	12	24 (+12)	42 (+18)	60 (+18)	78 (+18)	96 (+18), 상한 없음
자녀수	2명	3명	4명	5명 이상																																	
추가 산입기간	12개월	30개월	48개월	50개월																																	
구분	1자녀	2자녀	3자녀	4자녀	5자녀	6자녀																															
'08.1.1 이후	-	12	30 (+18)	48 (+18)	50 (+2)	50 (-), 상한 50개월																															
'26.1.1 이후	12	24 (+12)	42 (+18)	60 (+18)	78 (+18)	96 (+18), 상한 없음																															
		- 지원대상: 2008년 이후 둘째 이상 자녀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전국 국민연금공단지사 직접 방문 혹은 우편,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신청			- 지원대상: 2008년 이후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노령 연금을 청구할 때 국민연금공단에서 자녀 수 등을 확인하여 가입 기간 인정																																

구분	기존 내용	개정 내용	페이지
<b>IV. 보호출산 및 출산 후 아동보호</b>			
위기임부의 보호 출산 신청	2) 보호출산 상담 관련 고려 사항 (중략) - 생부가 양육 의사가 있음에도 위기임부가 보호 출산을 결정한 경우에는 생부에게 「민법」,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절차 등 관련 사항을 안내 - 상담 과정에서 생부에게 출생증서 작성과 공개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고 가급적이면 생부에게 출생증서 작성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함	2) 보호출산 상담 관련 고려 사항 (중략) - 생부가 양육 의사가 있음에도 위기임부가 보호 출산을 결정한 경우에는 생부에게 「민법」,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절차 등 관련 사항을 안내 「 <b>민법</b> , 제855조의2」 ■ 제855조의2(인지의 허가 청구) ① 생부(生父)는 제844조제3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생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844조제1항 및 제3항의 추정 미치지 아니한다. 「 <b>가족관계등록법</b> , 제57조」 ■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①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다만,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부가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함에 있어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모가 공적 서류·증명서·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 상담 과정에서 생부에게 출생증서 작성과 공개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고 가급적이면 생부에게 출생증서 작성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함	116p

구분	기존 내용	개정 내용	페이지
	<p>2) 보호자가 위기임부를 대신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략)</p> <p>● 대리 신청 시 신청서 작성 유의 사항 (생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리신청 사유에 따라 위기임부가 피성년 후견인 또는 만14세 미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야 함</li> </ul> <p>(생략)</p>	<p>2) 보호자가 위기임부를 대신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략)</p> <p>● 대리 신청 시 신청서 작성 유의 사항 ※ 비용지원 신청의 경우 3. 비식별화 등 지원 → ② 보호출산 신청인에 대한 비용 지원 → 3)비용지원 절차→● 보호자 신청시 유의 사항 참고(p.142)</p> <p>(생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리신청 사유에 따라 위기임부가 피성년 후견인 또는 만14세 미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u>그밖에 시·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보호자 신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야 함</u></li> </ul>	121p
	<p><b>④ 출생증서 작성</b></p> <p>1) 작성 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위기임부가 보호출산 신청을 할 때 출생증서를 같이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칙적으로 보호출산 아동의 성분창설 이전, 아동의 성명을 제외한 다른 모든 정보를 작성하고 출생증서를 사전 인쇄하여 위기임산부(신청인)에게 서명을 받아야 하며, (생략)</li> </ul> </li> </ul>	<p><b>④ 출생증서 작성</b></p> <p>1) 작성 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위기임부가 보호출산 신청을 할 때 출생증서를 같이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칙적으로 보호출산 아동의 성분창설 이전, <u>아동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다른 모든 정보를 작성하고 출생증서를 사전 인쇄하여 위기임산부(신청인)에게 서명을 받아야 하며, (생략)</u></li> </ul> </li> </ul>	122p
	<p>4) 기타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호출산 신청인 또는 생부가 신청인·생부 또는 아동과 관련된 물품을 추후 아동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상담기관은 보호출산 신청인이 아동에게 남긴 물품을 1차적으로 보관, 추후 출생증서와 함께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해야함</li> <li>다만, 편지·사진 외 출생증서 규격 범위에 벗어나는 물품(예: 이불, 애착인형 등)의 경우 사진 촬영 후 사진 형태로 출생증서와 함께 밀봉하여 보관·이관하며, 소유물품 리스트와 함께 물품 실물은 아동 보호조치 시 아동 보호자에게 인도해야 함</li> </ul> </li> </ul>	<p>4) 기타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호출산 신청인 또는 생부가 신청인·생부 또는 아동과 관련된 물품을 추후 아동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상담기관은 보호출산 신청인이 아동에게 남긴 물품을 1차적으로 보관, 추후 출생증서와 함께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해야함</li> <li>기록물 보관시 주의사항</li> <li>① (편지, 디지털 이미지가 아닌 필름, 동영상 등) 시스템에 첨부문서로 등록하고 저장매체(USB,CD 등)에 보관하여 출생증서 봉투에 동봉</li> </ul> </li> </ul>	124p

구분	기존 내용	개정 내용	페이지
		<p>② (아동소유물품) 생모와 생부가 남긴 물품은 지자체로 아동과 함께 인도하는 것이 원칙, 중도 분실 등 우려로 추후 아동에게 출생증서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이관 봉투에 동봉 가능</p> <p>* 다만, 출생증서 규격 범위에 벗어나는 부피가 큰 물품(ex. 이불, 애착인형 등)의 경우 사진 촬영 후 사진 형태로 출생증서와 함께 보관</p> <p>③ (편지, 사진) 원본 보관이 원칙, 지자체로 기인도한 경우 사본을 출생증서에 동봉하고 원본이 지자체로 인도되었다는 사실을 [서식 제19호]아동소유물품 인도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p> <p>* 편지·사진은 훼손, 분실 등 우려로 원본을 출생증서에 보관, 사본을 지자체로 인도하고 물품의 경우 아동이 직접 보관하고 지닐 수 있도록 지자체로 인도</p> <p>** 육아일기(산모수첩)의 경우 지자체(아동보호자)로 원본을 인도하는 것이 원칙</p>	
3. 비식별화 등 지원	<p>3 비식별화 등 지원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상담기관</span>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지자체</span></p>	<p>3 비식별화 등 지원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상담기관</span>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지자체</span>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의료기관</span>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건보공단</span>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심평원</span></p>	130p
	<p>※ 의료기관의 본인 확인 업무 담당자는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의 임신부에 대해서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며(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 예외 대상에 해당),</p> <p>- 의료급여기관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달리 의료급여 자격 보유자에 대한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할 의무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야 함</p>	<p>※ 의료기관의 본인 확인 업무 담당자는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의 임신부에 대해서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며(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 예외 대상에 해당), 의료급여기관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달리 의료급여 자격 보유자에 대한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할 의무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야 함</p> <p>— 의료급여기관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달리 의료급여 자격 보유자에 대한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할 의무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야 함</p>	133p

구분	기존 내용	개정 내용	페이지
	② 비용 예치(중앙상담지원기관→신한카드) - 중앙상담지원기관 명의 신한카드 통장에 비용 지급 예산 전체(7.2억원)를 입금함	② 비용 예치(중앙상담지원기관→신한카드) - 중앙상담지원기관 명의 신한카드 통장에 비용 지급 예산 전체(4.8억원)를 입금함	143p
4. 보호출산 또는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의 철회	● 보호출산 신청인 등은 제12조에 따라 아동을 인도받았던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아동을 다시 인도받은 때부터 다시 친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는 보호출산 아동의 소재지와 보호자가 파악되면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한 자에게 연락하여 아동 재인도를 위한 장소와 일시를 정하고, 보호출산 아동을 현재의 보호자로부터 인도받아 다시 보호출산 철회를 신청한 자에게 재인도하여야 함	● 보호출산 신청인 등은 제12조에 따라 아동을 인도받았던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아동을 다시 인도받은 때부터 다시 친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는 보호출산 아동의 소재지와 보호자가 파악되면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한 자에게 연락하여 아동 재인도를 위한 장소와 일시를 정하고, 보호출산 아동을 현재의 보호자로부터 인도받아 다시 보호출산 철회를 신청한 자에게 재인도하여야 함 - 아동 재인도시 지역상담기관 담당자가 산모와 동행하고, 출생신고 누락 방지를 위해 인도 후 출생신고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지원	149p
	- 시·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보호출산 신청 등을 철회한 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철회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생신고의 최고를 하여야 하며, 최고를 할 수 없거나 하여도 출생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법」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정정 및 직권기록 수행 * 보호출산 산모 주소지 소재 시·읍·면	- 시·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보호출산 신청 등을 철회한 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철회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생신고의 최고를 하여야 하며, 최고를 할 수 없거나 하여도 출생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법」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정정 및 직권기록 수행 * 보호출산 산모 주소지 소재 시·읍·면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b>가족관계등록법 제121조,122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21조(과태료) 시·읍·면의 장이 제38조 또는 제108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의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li> <li>■ 제122조(과태료)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li> </ul> </div>	150p

구분	기존 내용	개정 내용	페이지
<b>V.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 보호</b>			
	<p>(아동보호절차도)</p> <p>(생략)</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p><b>1 보호출산 아동 출생통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료기관은 보호출산 아동의 출생 정보를 출산 후 14일 이내에 심사평가원으로 통보</li> <li>심사평가원은 중앙상담지원기관으로, 중앙상담지원기관은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역상담기관은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시·읍·면으로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 사실 통보</li> </ul> </div>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p>지역상담기관→ 심사평가원→ 중앙상담지원기관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시·읍·면 (가족관계등록관서)</p> </div>	<p>(아동보호절차도)</p> <p>(생략)</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p><b>1 보호출산 아동 출생통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료기관은 보호출산 아동의 출생 정보를 출산 후 14일 이내에 심사평가원으로 통보</li> <li>심사평가원은 중앙상담지원기관으로, 중앙상담지원기관은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역상담기관은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시·읍·면으로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 사실 통보</li> </ul> </div>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p>의료기관→심사 평가원→중앙상 담지원기관→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시·읍·면 (가족관계등록관서)</p> </div>	156p
아동 인도 및 보호조치	<p><b>2 아동 인도</b></p> <p>1) 아동 인도의 절차</p> <p>(생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상담기관 담당자는 인도 의사를 알게 된 즉시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의 아동보호 담당 공무원에게 인도 의사를 알려야 함</li> <li>* 비밀유지를 위해 친생부모에 관한 정보는 제공 불가 다만,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사례결정 위원회에서 구두로 친생부모의 신원정보가 아닌 정보(ex. 연령대, 흡연·음주여부, 건강 정보 등)를 제공할 수 있음</li> </ul>	<p><b>2 아동 인도</b></p> <p>1) 아동 인도의 절차</p> <p>(생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상담기관 담당자는 인도 의사를 알게 된 즉시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의 아동보호 담당 공무원에게 인도 의사를 알려야 함</li> <li>* 비밀유지를 위해 친생부모에 관한 정보는 제공 불가 다만,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를 위해 사례결정위원회에서 구두로 친생 부모의 신원정보가 아닌 정보(ex. 연령대, 흡연·음주여부, 건강정보 등)를 제공할 수 있음</li> <li>** 구두로 제공된 정보더라도 입양절차 진행 시 구비서류 상 친생부모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li> </ul>	15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상담기관의 장이 입력하지 않은 경우 아동을 인도받은 시·군·구의 아동 보호 담당자가 해당 사실을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상담기관의 장이 입력하지 않은 경우 아동을 인도받은 시·군·구의 아동 보호 담당자가 해당 사실을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li> <li>● 아동 인도 후,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은 아동 인도 후의 후속상황(일시보호 시설명 등)을 지역상담기관과 공유하여야 함</li> <li>- 지역상담기관은 아동 인도 후에도 보호출산 신청인과의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보호출산 신청인은 철회를 숙고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는 아동 인도 후 아동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지역상담기관으로 공유하여야 함</li> </ul>	160p

구분	기존 내용	개정 내용	페이지
		<p>* ▲ 일시보호시설명 및 소재지, ▲ 사례결정위원회 정보(개최일, 결과), ▲ 사례결정위원회 결과에 따른 아동 보호조치 진행 상황, ▲ 이 외 아동 신변상의 변동이 있는 경우 등</p>	
	<p>- 이 경우 '미성년후견 개시 신고서'에는 보호출산 아동 인도 과정에서 작성된 '보호출산 아동 인도 확인서'(서식 제27호)의 사본과 '보호출산 아동 인도 확인 및 후견 개시 보고'(서식 제28호)와 관련하여 실시한 내부공문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p>	<p>- 이 경우 '미성년후견 개시 신고서'에는 보호출산 아동 인도 과정에서 작성된 '보호출산 아동 인도 확인서'(서식 제26호)의 사본과 '보호출산 아동 인도 확인 및 후견 개시 보고'(서식 제27호)와 관련하여 실시한 내부공문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p>	164p
	<p><b>보호출산 아동이 입양대상 아동으로 결정되는 경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견인이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시·군·구청장으로 신고되어 있는 보호출산 아동이 입양대상 아동으로 결정되는 경우, 후견인이 아동 주소지 시·군·구청장으로 변경되므로 '미성년후견 경질 신고서'를 작성하여 아동 주소지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li> <li>■ 이 경우 입양대상아동 인도 과정에서 작성된 '입양대상아동 인도 확인서', '입양대상아동 위탁보호 및 후견 개시보고의 사본, 아동의 주민등록초본(전입 신고 후)을 첨부하여야 함</li> </ul> <p>※ 자세한 내용 및 관련 서식은 2025년 입양실무 매뉴얼 참고</p>	<p><b>보호출산 아동이 입양대상 아동으로 결정되는 경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견인이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시·군·구청장으로 신고되어 있는 보호출산 아동이 입양대상 아동으로 결정되는 경우, 후견인이 아동 주소지 시·군·구청장으로 변경되므로 '미성년후견 경질 신고서'를 작성하여 아동 주소지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li> <li>■ 이 경우 입양대상아동 인도 과정에서 작성된 '입양대상아동 인도 확인서', '입양대상아동 위탁보호 및 후견 개시보고의 사본, 아동의 주민등록초본(전입 신고 후)을 첨부하여야 함</li> <li>■ 단, 해당 아동에 대해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한 시점까지 아동에 대한 성분창설 및 주민등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는 성분창설 및 주민등록 후 아동의 입양 절차 관련 서류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및 재발급하여 사례이관시까지 후견인 역할 수행해야 함</li> </ul> <p>※ 자세한 내용 및 관련 서식은 2025년 입양실무 매뉴얼 69p~ 참고</p>	165p
	<p>- (지급방법) 매월 20일까지 일시보호시설 인프라 계좌로 지급(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p> <p>(생략)</p> <p><b>사용용도 예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비) 아동건강검진비용, 치료비 등 지원</li> <li>■ (상해보험가입) 보호출산 신생아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li> <li>■ (아동용품구입비) 기저귀, 의류, 유모차, 조제분유지원 등 보호출산 신생아 양육에 필요한 물품 구매</li> <li>■ (돌봄인력) 아이돌봄도우미</li> </ul>	<p>- (지급방법) 매월 20일까지 일시보호시설 인프라 계좌로 지급(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단, 최초 일시보호 시작 시 보호기간이 예상되는 경우 선지급 가능하되, 보호기간 단축 시 기 지급한 긴급보호비는 반납함</p> <p>(생략)</p> <p><b>사용용도 예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비) 아동건강검진비용, 치료비 등 지원</li> <li>■ (상해보험가입) 보호출산 신생아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li> <li>■ (아동용품구입비) 기저귀, 의류, 유모차, 조제분유지원 등 보호출산 신생아 양육에 필요한 물품 구매</li> <li>■ (돌봄인력) 아이돌봄도우미 등</li> </ul>	169p

구분	기존 내용	개정 내용	페이지
	<p style="text-align: center;"><b>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 절차</b></p> <p style="text-align: center;">(생략)</p> <p>②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자는 보호출산 아동에 대해 전산관리번호(4번* 또는 5번**)를 부여하고 부여된 전산관리번호로 의료급여를 직권신청*** 이후 의료급여 수급 사실과 부여된 전산관리번호를 시·군·구 아동보호 담당자에게 통보</p> <p>* 가정위탁 등 시설 보호가 아닌 경우 ** 일시보호시설 등 시설 보호인 경우 *** 일시보호시설 등 시설에서 긴급보호하는 경우 시설급여로 책정하고, 이외의 경우(산후조리원, 가정위탁 등)에는 일반 의료급여로 책정</p> <p style="text-align: center;">(생략)</p> <p>** 아동수당·부모급여의 경우 보호조치 결정 전까지 지급을 유보하고, 보호조치 결정된 아동의 보호자에게 보호조치 결정까지의 미지급분을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p>	<p style="text-align: center;"><b>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 절차</b></p> <p style="text-align: center;">(생략)</p> <p>②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자는 보호출산 아동에 대해 전산관리번호(4번* 또는 5번**)를 부여하고 부여된 전산관리번호로 의료급여를 직권신청*** 이후 의료급여 수급 사실과 부여된 전산관리번호를 시·군·구 아동보호 담당자에게 통보</p> <p>* 가정위탁 등 시설 보호가 아닌 경우 ** 일시보호시설 등 시설 보호인 경우 *** 일시보호시설 등 시설에서 긴급보호하는 경우 시설급여로 책정하고, 이외의 경우(산후조리원, 가정위탁 등)에는 일반 의료급여로 책정</p> <p>**** 보호출산 아동에 대해 일반 의료급여(전산관리번호 4번)으로 책정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서 1종 수급권자(근로무능력자)에 준하여 의료급여를 신청하며, 시스템(행복이음)상 급여 자격 취득을 위한 급여유형으로는 '국민기초(1종)(코드번호:11)'로 신청 가능</p> <p style="text-align: center;">(생략)</p> <p>** 아동수당·부모급여의 경우 보호조치 결정 전까지 지급을 유보하고, 보호조치 결정된 아동의 보호자에게 보호조치 결정까지의 미지급분을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p> <p>*** 다만, 아동이 입양으로 보호조치 결정되어 입양 가정 매칭까지 일시위탁 보호를 받고 있다면 입양 전 아동을 보호하는 보호자(위탁가정)에게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지급 가능하고 시설 보호를 받을 경우 디딤씨앗 통장을 통해 아동에게 지급 가능</p>	170p
	<p>※ 추후 다른 시·군·구로 사례가 이관되기 전에 입양 허가 완료, 보호출산 철회 등 보호조치 종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는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보호 조치를 종결하고, 아동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사례 이관</p> <p>4)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입양 절차 진행 시 고려 사항</p> <p style="text-align: center;">(생략)</p>	<p>※ 추후 다른 시·군·구로 사례가 이관되기 전에 입양 허가 완료, 보호출산 철회 등 보호조치 종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는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보호 조치를 종결하고, 아동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사례 이관</p> <p>4) 보호출산 아동 면접 교섭 지원</p> <p>● 보호출산 아동의 입양 허가 전까지 보호출산 신청 철회가 가능하므로, 보호출산 신청인 등 면접교섭 대상자가 면접교섭을 희망하는 경우</p>	176p

구분	기존 내용	개정 내용	페이지
	<p>- '25.7월 입양체계 개편 이후 입양대상아동은 지자체에서 위탁가정, 아동복지시설* 등으로 보호하면서 입양 절차가 진행되므로, 아동의 후견인은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아동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됨</p> <p>5)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예방접종 기록 관리 절차 (생략)</p> <p>- 성분창설 후 아동의 후견인은 아동에 대한 주민등록(전입신고)을 완료한 이후 관할 보건소에 주민등록 사실을 알려야 하며, (생략)</p>	<p><u>아동에 대한 정보제공 및 면접교섭 지원 가능</u></p> <p>● <u>보호출산 신청인 등 면접교섭 대상자가 면접교섭을 희망하는 경우, 지역상담기관에서는 대상자의 상황 및 원가정 복귀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군·구에 면접교섭 지원 요청</u></p> <p>- 지역상담기관과 시·군·구 간 협의를 통해 양 기관 담당자가 동행한 상황에서 면접교섭 진행</p> <p>※ <u>면접교섭 이행 시 위기임신부의 신원 등 개인 정보 보호에 유의하며, 사례회의 등 지역상담 기관을 통해 필요한 최소 정보를 확인하도록 함</u></p> <p>5) <u>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입양 절차 진행 시 고려사항</u> (생략)</p> <p>- '25.7월 입양체계 개편 이후 입양대상아동은 지자체에서 위탁가정, 아동복지시설* 등으로 보호하면서 입양 절차가 진행되므로, 아동의 후견인은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아동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됨</p> <p>* <u>아동복지시설(예)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u></p> <p>6) <u>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예방접종 기록 관리 절차</u> (생략)</p> <p>- 성분창설 후 <u>아동의 후견인(아동을 현재 보호하고 있는 자)은 아동에 대한 주민등록(전입신고)을 완료한 이후 관할 보건소에 주민등록 사실을 알려야 하며,(생략)</u></p>	
<b>VI. 출생증서 공개 청구</b>			
3. 출생증서 공개 청구 절차	<p>• 출생증서 공개 청구서 작성 시 생부 또는 생부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출생증서 공개를 요청하는지 표시하여야 하며, 출생증서 공개 방법과 수령 방법을 표시하여야 함</p>	<p>• 출생증서 공개 청구서 작성 시 생모 또는 생부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출생증서 공개를 요청하는지 표시하여야 하며, 출생증서 공개 방법과 수령 방법을 표시하여야 함</p>	199p
<b>VII. 기타 업무</b>			
2. 사회보장 전산 관리 번호의 부여	<p>• 이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상담 과정에서 위기임신부가 전산관리번호(5번)를 부여받았는지 확인하고 해당 정보를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에</p>	<p>• 이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상담 과정에서 위기임신부가 전산관리번호(5번)를 부여받았는지 확인하고 해당 정보를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에</p>	214p

구분	기존 내용	개정 내용	페이지
	입력하여야 함 * 전산관리번호(5번) 발급 여부를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전산관리번호(8번)로 진료받을 때 의료급여 자격이 아닌 건강보험 자격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함	입력하여야 함 * <u>시설입소자 전산관리번호(5번)에 의료급여가 적용되어 있는 경우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u> 입력 시 '기보유 전산관리번호' 등록 필수 ** 전산관리번호(5번) 발급 여부를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전산관리번호(8번)로 진료받을 때 의료급여 자격이 아닌 건강보험 자격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함	
<b>서식</b>			
3. 기타서식	[서식 제17호]	서식 수정	260p
	[서식 제19호]	서식 수정	265p
붙임1 「위기임신 보호출산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규칙> 제7조(보호출산의 신청 방법과 절차) 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호출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역 상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생략)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규칙> 제7조(보호출산의 신청 방법과 절차) 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호출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u>지역 상담기관의 장에게</u> 제출해야 한다.	294p
붙임1 「위기임신 보호출산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규칙> 제9조(산전 검진 및 출산 비용 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산전 검진 및 출산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전 검진 및 출산 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다.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규칙> 제9조(산전 검진 및 출산 비용 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산전 검진 및 출산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u>별지 제2호의2서식의 보호출산 비용 지원 신청서를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u>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위기임부가 영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해당 위기임부의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전 검진 및 출산 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다.	299p

Chapter

## I

### 시작하기에 앞서 / 1

- 1. 용어 ..... 2
- 2. 위기임산부 상담기관 목록 ..... 5

Chapter

## II

### 사업 개요 / 7

- 1. 추진 배경 및 연혁 ..... 8
  - 1-1. 추진 배경 ..... 8
  - 1-2. 주요 연혁 ..... 9
- 2. 사업 목적 ..... 10
- 3. 법적 근거 ..... 10
- 4. 사업 대상 ..... 10
- 5.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 ..... 11
  - 5-1. 사업 운영 절차 ..... 11
  - 5-2. 추진주체별 역할 ..... 12
  - 5-3. 사업 예산 ..... 14

## Ⅲ

## 위기임산부 상담·지원 / 17

1. 중앙상담지원기관 <b>상담기관</b> .....	18
1-1. 개요 .....	18
1-2. 지정 요건 및 절차 .....	19
1-3. 상담 지원 체계 구축 .....	22
2. 지역상담기관 <b>상담기관</b> <b>지자체</b> .....	24
2-1. 개요 .....	24
2-2. 지정 요건 및 절차 .....	25
2-3.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37
2-4. 지자체의 지역상담기관 지원 .....	42
3. 위기임신 상담의 방법 및 절차 <b>상담기관</b> .....	44
3-1. 상담 원칙 및 개요 .....	44
3-2. 상담 절차 .....	46
4. 위기임산부 대상 제도 안내 및 서비스 연계	
<b>상담기관</b> <b>지자체</b> <b>보장원</b> .....	52
○ 임신·출산·양육 관련 급여·서비스 목록 .....	58

Chapter

## IV

### 보호출산 및 출산 후 아동보호 / 111

1. 위기임부의 보호출산 신청 <b>상담기관</b> .....	112
1-1. 보호출산 개요 .....	112
1-2. 보호출산 상담 .....	114
1-3. 보호출산 신청 절차 .....	117
1-4. 출생증서 작성 .....	122
2. 위기산부의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 <b>상담기관</b> .....	126
2-1. 위기산부의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 .....	126
2-2.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 절차 .....	128
3. 비식별화 등 지원 <b>상담기관</b> <b>지자체</b> <b>의료기관</b> <b>건보공단</b> <b>심평원</b> .....	130
3-1. 보호출산 신청인의 비식별화 .....	130
3-2. 보호출산 신청인에 대한 비용 지원 .....	140
4. 보호출산 또는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의 철회 <b>상담기관</b> <b>지자체</b> <b>심평원</b> .....	146
4-1. 철회 요건 및 절차 .....	146
4-2. 철회에 따른 후속조치 .....	147

Chapter

## V

###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 보호 / 155

1. 아동 인도 및 보호조치	상담기관	지자체	.....	157		
1-1. 숙려기간			.....	157		
1-2. 아동 인도			.....	159		
1-3. 후견인 선임			.....	161		
1-4. 보호조치			.....	165		
2.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출생통보	상담기관	지자체	심평원	보장원	.....	181
2-1.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출생한 경우 출생통보의 절차					.....	181
2-2.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아동이 출생한 경우 출생통보의 절차					.....	184
2-3.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에 따른 출생통보의 절차					.....	187
2-4. 성분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191
2-5. 출생증서 이관 및 영구보존					.....	192

Chapter

## VI

### 출생증서 공개 청구

보장원

/ 195

1. 출생증서 공개 청구 개요	.....	197
2. 출생증서 공개 청구 시 공개되는 정보	.....	197
3. 출생증서 공개 청구 절차	.....	198
4. 출생증서의 공개 절차	.....	203

Chapter

## VII

### 기타 업무 / 205

- 1.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사보원** ..... 206
- 2. 위기임산부 대상 전산관리번호 부여 **상담기관** **지자체** ..... 208
  - 2-1.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개요 ..... 208
  - 2-2.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부여 ..... 210
  - 2-3.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관리 ..... 215
- 3. 위기임산부 대상 실태조사 ..... 217
- 4. 경비의 보조 ..... 217
- 5. 비밀 유지의 의무 **의료기관** **상담기관** **보장원** ..... 218

Chapter

## VIII

### 서식 / 219

- 🔍 서식 목록 ..... 220
  - 1. 시행규칙에 따른 서식 ..... 222
    - [별지 제1호서식] 보호출산 신청서 ..... 222
    - [별지 제2호서식] 임신부확인서 ..... 223
    - [별지 제2호의2서식] 보호출산 비용지원신청서 ..... 224

[별지 제3호서식] 보호출산 등 출생정보 통보서 .....	225
[별지 제4호서식] 보호출산 등 신청 철회서 .....	226
[별지 제5호서식]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서 .....	227
[별지 제6호서식] 출생증서 공개 청구서 .....	228
[별지 제7호서식] 출생증서 공개 동의서 .....	230
<b>2. 대법원예규에 따른 서식 .....</b>	<b>231</b>
[별지 제1호서식] 성·본 창설 허가 신청 .....	231
[별지 제2호서식] 출생기록 통보서 .....	232
<b>3. 기타 서식 .....</b>	<b>233</b>
[서식 제1호] 지역상담기관 지정 신청서 .....	233
[서식 제2호] 지역상담기관 사업계획서 표준 양식 .....	234
[서식 제3호] 지역상담기관 지정서 .....	242
[서식 제4호] 지역상담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	243
[서식 제5호] 지역상담기관 변경사항 신고서 .....	244
[서식 제6호] 지역상담기관 휴업·폐업 신고서 .....	245
[서식 제7호] 지역상담기관 자료 이관·자체보관 신청서 .....	246
[서식 제8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표준 양식) .....	250
[서식 제9호] 위기임산부 사후상담 결과서 .....	252
[서식 제10호] 지역상담기관 사례 이관 동의서 .....	253
[서식 제11호] 복지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요청서 .....	254
[서식 제12호] 전산관리번호 부여 신청 동의서 .....	255
[서식 제13호]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장 .....	256
[서식 제14호] 동일인확인서 .....	257
[서식 제15호] 상담사실 기술서 .....	258

[서식 제16호] 출생증서 관리 대장 .....	259
[서식 제17호] 출생증서(속지) .....	260
[서식 제18호] 출생증서 봉투 .....	264
[서식 제19호] 아동 소유물품 리스트 .....	265
[서식 제20호] 보호출산 신청 사실 등 통보서 .....	266
[서식 제21호] 출생정보 삭제 요청서 .....	267
[서식 제22호] 법정대리인의 정보공개 청구 동의서 .....	268
[서식 제23호] 출생증서 공개 청구 신청서 관리 대장 .....	269
[서식 제24호] 출생증서 공개 청구 결과 통보서 .....	270
[서식 제25호] 보호출산 아동 출생 사실 안내 공문(예시) .....	271
[서식 제26호] 보호출산 아동 인도 확인서 .....	272
[서식 제27호] 보호출산 아동 인도 확인 및 후견 개시 보고 .....	273
[서식 제28호] 미성년후견 개시 신고서 .....	274
[서식 제29호] 보호출산 아동 전입신고 관련 후견인 확인 통보 .....	275

[붙임1] : 「위기임신보호출산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3단 비교표」 ..... 276

[붙임2] : 「위기임신보호출산법 및 대법원규칙·예규 3단 비교표」 ..... 328

[붙임3]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및 가명 기반 의료기관의 업무 처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 349

2026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안내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26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안내

# I. 시작하기에 앞서

1. 용어
2. 위기임산부 상담기관 목록

# I | 시작하기에 앞서



## 1 용어

이 지침의 각 장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아래 용어는 다음과 같이 약칭합니다.

### 1 법률 상 용어

- 위기임산부 :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 여성(위기임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위기산부)으로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법 제2조제1호)
- 상담기관 : 위기임산부에게 출산 및 양육과 자녀인 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정보 및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및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으로 중앙상담지원기관(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과 지역상담기관(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통칭(법 제2조제2호)
- 중앙상담지원기관 :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권리보장원
- 지역상담기관 : 위기임산부 상담·지원을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도별로 지정된 위기임산부 상담기관
- 비식별화 : 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신청을 한 위기임산부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관리번호 부여 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가명처리를 하는 것(법 제2조제3호)
- 보호출산 : 위기임부가 법 제7조에 따른 상담을 모두 마치고 법 제9조에 따른 신청을 한 후 비식별화를 하고 출산하는 것(법 제2조제4호)
- 출생증서 : 보호출산 아동의 출생 당시의 정보 및 생모·생부의 정보로서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록(법 제2조제5호)

- 보호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법 제2조제6호)
  - 가. 「민법」에 따른 친권자 및 후견인
  - 나. 가목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 「민법」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임신부를 보호하는 사람
  - 다. 가목 및 나목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 사실상 해당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시설의 장 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가정위탁보호자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가목에 따른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 산후 아동 보호 또는 출산 후 아동보호 : 법 제9조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위기임부가 아동을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마치지 아니하고 비식별화, 아동 보호조치를 희망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신청을 한 것
- 보호출산 신청인 : 법 제9조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라 산후 아동 보호를 신청한 위기임산부

## ② 시행령, 시행규칙 상 용어

- 임신부확인서 : 규칙 제8조에 따라 전산관리번호를 발급받은 위기임산부 등이 비식별화된 정보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 : 시·도지사가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위기임부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심의하기 위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두는 위원회
-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 :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

### ③ 그 외 용어

- 시·도지사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군·구청장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보호출산 아동 : 보호출산으로 태어나거나 산후 아동 보호에 따라 보호된 아동
- 보호출산 산모 : 보호출산 아동의 모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또는 전산관리번호 :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의2에 따라 위기임산부 또는 보호출산 신청인에게 가상의 신원을 제공하기 위해 부여되는 13자리 번호

### ④ 법령 등 약칭

- 법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 영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규칙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대법원규칙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 대법원예규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
- 「사회보장급여법」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가족관계등록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2 위기임산부 상담기관 목록 ('26.1월 현재)

- 중앙상담지원기관 홈페이지 : <https://www.1308.or.kr>
- 위기임산부 핫라인(통합전화) : 1308

구분	지역	기관명	연락처
중앙상담지원기관	-	아동권리보장원	02-6454-8713~8718 ncrc1308@ncrc.or.kr
지역상담기관	서울특별시	애란원	02-363-1421 aeranwon1308@naver.com
	부산광역시	마리아모성원	051-250-5477 busan1308@naver.com
	대구광역시	가톨릭푸름터	053-763-1308 1308gglade@kakao.com
	인천광역시	인천자모원	032-772-2071 injamo2071@naver.com
	광주광역시	엔젤하우스	062-655-1308 angelhouse1984@hanmail.net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대전자모원	042-721-6934 djamo2@naver.com
	울산광역시	미혼모의집 물푸레	052-244-1308~9 ulsanmam@hanmail.net
	경기도(남부)	사단법인 여성행복누리	1533-7722 happyaurm@hanmail.net
	경기도(북부)	천사의 집	031-858-2004 angelmomcare@naver.com
	강원특별자치도	마리아의 집	033-263-6273 wigimom1308@hanmail.net
	충청북도	새생명지원센터	043-211-3053 cjnewlife1@naver.com
	충청남도	구세군 아람드리	070-4151-7616, 7617 arumdri-1308@naver.com
	전북특별자치도	기쁨의하우스	070-5165-7576, 8604 jeonbuk1308@daum.net
	전라남도	성모의 집	061-277-1308 sungmo8004@hanmail.net
	경상북도	사단법인 더프라미스	054-715-1326 gb1308@naver.com
	경상남도	생명터 미혼모자의 집	055-231-0582 lifemam1308@hanmail.net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법인 청수	064-773-2010 momjeju2010@naver.com

2026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안내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26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안내

## II. 사업 개요

1. 추진 배경 및 연혁
2. 사업 목적
3. 법적 근거
4. 사업 대상
5.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

## II | 사업 개요



### 1 추진 배경 및 연혁

#### 1 추진 배경

- 수원 영아 사망 사건(23.6월) 이후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정보를 국가가 관리하여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 도입

####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개요

- (목적) 출생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의료기관에서 아동의 출생정보를 지자체에 즉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여, 모든 아동이 출생 등록되어 공적 체계에서 보호될 수 있는 기반 마련
- (주요 내용) 의료기관의 장은 아동이 태어나면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심사평가원에 통보하고, 심사평가원은 이를 시·읍·면장에게 통보

\* 시·읍·면장은 출생신고 기간(1개월) 내 미신고 시 신고의무자에게 최고 통지 → 최고기간 내에도 신고되지 않으면 시·읍·면장이 감독법원의 허가 후 직권으로 출생기록

#### < 출생통보제 흐름도 >



-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출생통보제 도입으로 신분 노출을 꺼리는 위기임산부의 병원 밖 출산과 아동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 필요

- UN 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아동 보호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보호출산제 도입 권고**

**UN 아동권리위원회 권고 사항**

- 위원회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면서 익명으로 아동유기를 허용하는 “베이비박스”를 금지하고, **익명으로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허용하는 제도의 도입을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제5차·제6차 국가보고서 최종견해, 2019년)

2) **주요 연혁**

- ‘포용국가 아동정책’(19.5월),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4)’(20.9월), ‘윤석열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23.4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4~28)’(23.12월) 등을 통해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 발표**
- **21대 국회에서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을 위한 법률안 3건 발의**
  - \*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김미애의원 대표 발의, '20.12월)
  -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오섭의원 대표 발의, '21.5월)
  -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영주의원 대표 발의, '23.8월)
- 3건의 법률안에 대한 병합심사를 거쳐 만들어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23.10.6)**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공포(23.10.31) 및 시행(24.7.19)

## 2 사업 목적

-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신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법 제1조)

## 3 법적 근거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총 26조로 구성)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은 특별법이므로 보호출산과 출산 후 아동보호 등에 관하여 일반법인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 대해 우선하여 적용
- \* (법 제5조) 보호출산 및 제14조에 따른 출산 후 아동보호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4 사업 대상

- 위기임산부, 보호출산 산모, 보호출산 아동 및 아동의 생부

## 5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

### 1 사업 운영 절차



- ① (상담) 위기임산부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해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에게 임신·출산·양육 전반에 대한 상담 가능
  - (상담 방법) 대면 상담, 온라인·모바일 상담, 전화 상담 등
  - (상담 내용) 원가정 양육을 위해 임신·출산·양육 시 지원받을 수 있는 공적 제도 안내, 각종 민간 복지 자원 및 후원 연계 등
- ② (보호출산) 원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에도 불구하고 보호출산을 선택한 경우 위기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위한 상담을 추가로 받고,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검진 및 출산할 수 있도록 비식별화 조치, 비용 지원 등 실시
  - \* 출생통보제 도입 시 우려되는 위기임산부의 의료기관 밖 출산과 영아유기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신원을 밝히지 않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

- ③ (아동보호)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의 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해서는 숙려기간(7일 이상)을 거쳐 지자체 인도하여 보호조치(후견인 선임, 일시보호 등), 의료기관은 출생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상담기관으로 통보하며, 상담기관은 지자체(시·읍·면)로 통보하고 지자체는 아동에 대한 출생등록 절차 수행
- ④ (기록관리) 보호출산 아동의 생모·생부의 인적사항, 보호출산 계기 등 상담내용과 아동의 정보가 기록된 출생증서를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하여 영구보존, 추후 출생증서 공개청구 등 절차를 통해 아동의 알 권리 보장

## 2 추진주체별 역할

추진주체	주요 역할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 방향 수립 및 법령 제·개정</li> <li>- 사업 지침 마련 및 시달, 유권해석</li> <li>-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국고지원, 사업 홍보 등</li> <li>- 위기임산부 상담 전화(1308) 구축</li> </ul> </li> </ul>
아동권리보장원 (중앙상담지원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상담기관 관리, 업무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li> <li>- 위기임산부 상담 매뉴얼 개발 및 상담 전문가의 교육·양성</li> <li>- 지자체 공무원, 지역상담기관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li> <li>- 위기임산부 온라인·모바일 상담 체계 운영 및 홈페이지 구축</li> <li>- 보호출산 산모에 대한 비용 지급 총괄·조정</li> <li>-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관련 통계 구축, 해외 정책조사 등</li> </ul> </li> <li>• 출생증서 영구 보존 및 공개 청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생증서 영구 보존</li> <li>- 출생증서 공개 청구 절차 운영</li> </ul> </li> <li>• 보호출산 아동 출생통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출산 아동 출생사실 통보(→지역상담기관)</li> </ul> </li> </ul>

추진주체	주요 역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 개인정보 관리</li> <li>-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 사용자 전산교육</li> <li>-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연계정보 관리 (가명정보, 전산관리번호, 아동정보)</li> </ul> </li> </ul>
국민건강보험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임산부 대상 의료서비스 제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명진료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 제도 및 관련 시스템 운영</li> </ul> </li> </ul>
건강보험심사평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임산부 대상 의료서비스 제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명진료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 제도 및 관련 시스템 운영</li> </ul> </li> <li>• 보호출산 아동 출생통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출산 아동 출생사실 통보(→중앙상담지원기관)</li> </ul> </li> </ul>
광역지자체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 사업 총괄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 사업추진 계획 수립 및 지방비 확보</li> <li>- 위기임산부 지원 관련 조례 제·개정</li> <li>- 위기임산부 대상 (공공·민간)복지자원 발굴 및 지원</li> <li>- 지역상담기관 심사 및 지정</li> <li>- 지역상담기관 관리·감독 및 예산 집행(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실시)</li> <li>- 지역상담기관 실적 등 관리</li> <li>- 보호출산 아동 보호체계에 대한 총괄·조정</li> <li>- 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 구성·운영</li> <li>- 사업 관련 기초지자체의 문의·건의·유권해석 요청 취합 등</li> <li>-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사업 홍보</li> </ul> </li> </ul>
기초지자체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출산 아동 보호체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출산 아동 인도 및 일시보호</li> <li>-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후견인 선임 및 후견인 역할</li> <li>-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및 보호조치 결정</li> </ul> </li> <li>• 위기임산부 전산관리번호 발급</li> </ul>
지역상담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임산부 상담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임산부의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상담·정보 제공 (초기상담, 심층상담 등)</li> <li>- 위기임산부 (공공·민간) 복지자원 연계</li> <li>- 위기임산부 상담 전화(1308) 운영</li> </ul> </li> </ul>

추진주체	주요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출산에 관한 상담·정보 제공 및 지원</li> <li>- 보호출산 신청·철회 절차 운영</li> <li>- 보호출산 산모에 대한 비용 지급</li> <li>-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인도 지원</li> <li>-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주민등록 지원</li> <li>- 출생증서 작성 및 이관</li> <li>• <b>보호출산 아동 출생통보 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출산 아동 출생사실 통보(→시·읍·면)</li> </ul> </li> </ul>
의료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위기임산부 대상 의료서비스 제공</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임산부 및 보호출산 산모 대상 가명진료 제공</li> </ul> </li> </ul>
법원행정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보호출산 아동 출생등록 총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 절차 운영</li> <li>- 대법원규칙 및 대법원예규 제·개정</li> </ul> </li> </ul>
가족관계등록관서 (시·읍·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보호출산 아동 출생등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출생통보 내역 처리</li> <li>-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성분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기록</li> </ul> </li> </ul>

### ③ 사업 예산

● 2026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예산은 국비 총 3,800백만원

① 위기임산부 상담기관 운영 지원 : 2,393백만원

- (주요 내용) 위기임산부에게 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 안내 및 보호출산의 법적 효력 등 상담을 수행하고, 보호출산 아동의 보호조치를 위한 지자체 인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 운영 지원

② 보호출산 산모 지원 : 480백만원

- (주요 내용) 보호출산 산모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아동 양육을 독려하기 위해 의료비 및 보호출산 숙려기간(7일 이상) 비용 지원

- ③ 보호출산 시스템 등 운영 지원 : 349백만원
  - (주요 내용) 보호출산 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출생증서 관리 등을 위한 기관 운영 비용 지원
- ④ 보호출산 정책수행 경비 : 175백만원
  - (주요 내용) 위기임산부 대상 제도 홍보, 법에 명시된 보호출산 실태조사,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연구비용 및 기타 정책수행을 위한 경비
- ⑤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시스템 구축 지원 : 28백만원
  - (주요 내용) 의료기관이 시·읍·면으로 출생정보를 통보할 수 있도록 ①의료기관 시스템 구축 지원, ②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생통보 시스템 구축·운영(복지부장관 위탁) 추진
- ⑥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보호비 지원 : 375백만원
  - (주요내용) 보호출산 신생아의 후견인이 된 시·군·구(지역상담기관 소재)가 보호조치 결정 전까지 보호출산 신생아(약200명)을 보호하여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아동 1인당 월 100만원 지원(3개월)

2026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안내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26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안내

## Ⅲ. 위기임산부 상담·지원

1. 중앙상담지원기관 [상담기관](#)
  2. 지역상담기관 [상담기관](#) [지자체](#)
  3. 위기임신 상담의 방법 및 절차 [상담기관](#)
  4. 위기임산부 대상 제도 안내 및 서비스 연계  
[상담기관](#) [지자체](#) [보장원](#)
-  임신·출산·양육 관련 급여·서비스 목록

# Ⅲ | 위기임산부 상담·지원



## 1 중앙상담지원기관 상담기관

### 1 개요

- (법적 근거) 법 제6조제1항 및 규칙 제3조
- (수행 업무) 위기임산부 지원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 (법 제6조제1항)
  1. 위기임산부의 출산·양육 지원 및 그 아동의 보호를 위한 상담 절차·내용의 개발·보급
  2.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상담기관 및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위기임산부 출산·양육 지원 및 그 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에 관한 교육
  3. 법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관리·운영
  4. 위기임산부 온라인·모바일 상담
  5. 지역상담기관 관리·업무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위기임산부 지원과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 규칙 제3조

- 제3조(중앙상담지원기관의 업무 등) 법 제6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위기임산부 상담 전문가의 교육 및 양성에 관한 업무
  2.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에 대한 통계 구축에 관한 업무
  3. 위기임산부 출산·양육 지원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를 위한 외국의 정책 조사 및 사례 분석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임산부 지원과 그 자녀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② 지정 요건 및 절차

### 1) 지정 주체

- (지정 주체) 보건복지부장관
- (홈페이지 공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상담지원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함

### 2) 설치·운영 기준(규칙 제5조 및 별표 1)

- 시설 기준
  -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용공간을 갖출 것
    - \* 전용면적에 대한 별도 기준은 없으나 업무에 필요한 전용공간을 갖추어야 함
  - 책상, 전화기, 컴퓨터, 복사기 등 사무 처리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수 있는 사무실이 있을 것
    - \* 시설 내 기타 기관과 함께 사용할 수 있음
- 설비 기준
  - 온라인·모바일 상담을 위한 설비를 갖출 것
  -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을 위한 녹취기, 카메라 등 적합한 공간과 설비 등을 갖출 것
- 인력 기준
  - 팀장 1명을 포함한 직원 6명 이상
    - \* 직원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의 업무를 겸할 수 없음. 다만, 기관장은 겸임·비상근으로 가능

기관장	팀장	직원
기관 재량	1명	6명 이상 (팀장 포함)

### 인력 유형별 세부 요건

- (기관장) 기관 재량으로 둘 수 있으며, 검임·비상근으로 일할 수 있음
- (팀장) 중앙상담지원기관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람
  - 전임 상근 팀장 1인을 두어야 함
  - 위기임산부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등을 제고하고, 상담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교육 등을 통해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
- (상담인력) 중앙상담지원기관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람
  - 6인 이상 전임으로 상근(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하여야 함
  - 국비 지원받는 인건비 지원 기준 외의 인력은 법인·시설 등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또는 상근하지 않은 전임 인력이 상담인력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 타 업무와 겸직하는 경우에는 업무비율 범위에 따라 예산 내에서 급여를 지급

### ● 운영 기준

- 중앙상담지원기관은 각 지역의 지역상담기관과 상시소통체계를 갖추어야 함
- 중앙상담지원기관의 장은 운영계획 및 실적, 예산·결산 및 조직운영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받은 운영계획 등을 검토하여 해당연도 중앙상담지원기관 운영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e나라도움 시스템을 활용하여 중앙상담지원기관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교부
  - \*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상담지원기관의 장이 제출한 운영계획 등 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 중앙상담지원기관의 장에게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자료가 부실한 경우 보완 전까지 운영계획 승인, 보조금 교부 등은 중지
- 직원 채용 시 전문상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최대 3개월 범위에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이수하는 수습기간을 둘 수 있음
- 수습기간 중에는 정규직원보다 낮은 임금을 지불할 수 있으나, 교육 등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함
- 중앙상담지원기관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기관을 운영하여야 하며, 다음의 기록 및 서류\*를 갖추는 것
  - \* 1) 기관의 연혁 및 운영에 관한 기록
  - 2) 중앙상담지원기관의 장, 팀장, 직원 등의 인사에 관한 기록
  - 3) 최근 3년 동안의 법 제6조에 따른 업무수행에 관한 자료

### 3) 보조금 교부·집행·정산 및 환수

- (보조금 교부) 중앙상담지원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 회계연도 초에 해당 연도에 대한 사업 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받은 사업 수행 계획서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계획을 승인하고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음
- (보조금 집행) 중앙상담지원기관은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편성·관리하여야 함
- (보조금 정산) 중앙상담지원기관은 회계연도 다음해 초에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금 집행 내역을 확정하고 집행액, 이월액을 제외한 미집행액을 반납받아야 함
- (환수)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상담지원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법 제20조 및 영 제9조에 따라 운영비를 환수할 수 있음

#### 위기임신보호출산법

- 법 제20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중앙상담지원기관 또는 지역상담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9조제1호에 따른 운영비를 환수할 수 있다.
- 영 제9조(비용 환수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용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원받은 자에게 환수 사유, 환수 금액, 납부 기한 및 수납 기관 등을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 기한은 납입 고지를 한 날부터 3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납 기관은 환수 비용을 납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비용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③ 상담 지원 체계 구축

#### 1) 온라인·모바일 상담 운영

- (온라인 상담) 위기임신 상담 지원 등 정보 제공을 위한 ‘위기임신 상담 지원제도’ 홈페이지 구축·관리(제도 개요, 지역상담기관 현황 등)
  - 지역상담기관 홈페이지 구성을 위한 CI, 콘텐츠 등 공동 제작 가이드 배포
    - \* 위기임산부 대상 일원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대표 홈페이지(중앙)와 지역상담기관 홈페이지 통일성 확보
  - 지역상담기관 홈페이지 내 실시간 상담 게시판 생성 → 게시글 작성 시 기본정보(닉네임, 패스워드), 제목, 내용으로 구성된 자유게시판 형태로 운영하며, 홈페이지 관리자가 게시물에 ‘답글’ 형태로 답변 전달
- (모바일 상담) 중앙 차원의 위기임산부 상담 모바일 채널 개설·관리
  - 중앙 차원의 모바일 상담 채널의 주요 정보(사업개요 등), 지역상담기관별 상담채널 안내 등의 챗봇 설계·관리
  - 지역상담기관별 모바일 상담채널 개설 등에 관한 운영가이드 제작·배포

#### 2) 종사자 교육

- (교육프로그램 개발) 제도 개요, 사업 추진절차, 추진체계별 역할 및 세부 수행업무, 출생증서 기록 등 교육과정 개발

#### 〈 위기임신 상담 현장종사자 대상별 교육과정 구성(예시) 〉

구분	교육과정
지역상담기관 상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임신 상담 지원 및 보호출산제 개요</li> <li>• 지역상담기관 역할, 업무 수행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임신 단순상담, 보호출산 신청자, 보호출산 신청자 중 철회자, 산후 보호출산 신청자 등 수행절차, 각종 서류(출생증서 등) 작성 방법 등</li> </ul> </li> <li>• 시스템 활용법(출생증서, 상담기록 등)</li> <li>• 위기임산부 상담 시, 연계서비스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전·산후서비스, 사회보장제도, 아동보호체계, 임산부 건강관리, 임신·출산, 양육·돌봄 등</li> </ul> </li> <li>• 내담자 상담기법(임산부 심리정서, 의사결정지지 등)</li> </ul>

구분	교육과정
의료기관, 유관기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임신 상담 지원 및 보호출산제 개요</li> <li>• 출생통보 등 의료기관 역할, 업무 수행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기관 내 출산 시 진료기록부 기재, 출생통보 등</li> </ul> </li> <li>• 시스템 활용법</li> </ul>
지자체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임신 상담 지원 및 보호출산제 개요</li> <li>• 전산관리번호 발급 등 지자체 업무 수행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산관리번호 발급·통보, 전산관리번호 연계, 성분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등</li> </ul> </li> <li>• 시스템 활용법(전산관리번호 연계 등)</li> </ul>

\* 교육과정 및 세부 내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집합 교육) 지역상담기관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 등 대상으로 개발된 교육과정에 기반하여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대상별 집합 교육 프로그램 운영(연 1~2회 이상 개최)
- (교육 운영관리) 교육 실적관리, 교육과정 개정 등을 위한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 주요 질의 분석 등 교육 실적·운영관리(매년 말 수행)

### 3) 지역상담기관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 기관장 간담회, 실무자 간담회 등 정기적 논의 자리를 마련하여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상담기관 간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협력 기반 조성

### 4) 통계 구축, 해외 정책 조사 등

- (통계 구축) 통계 항목 도출 등 위기임신 상담 지원 및 보호출산 현황관리를 위한 주요 통계 생산방안 마련
  - \* 위기임신 상담, 보호출산 신청, 출생증서 이관, 정보공개 청구 현황 등
- (해외 정책 조사) 독일, 프랑스 등 유사 제도 운영 국가의 정책 현황 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 등

## 2 지역상담기관 상담기관 지자체

### 1 개요

- (법적 근거) 법 제6조제2항·제3항 및 규칙 제4조
- (수행 업무) 위기임산부에게 출산 및 양육과 자녀인 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정보 및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및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법 제2조제2호, 제6조제3항)
  1. 위기임산부의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상담·정보 제공 및 필요한 서비스 연계
  2. 아동 보호에 관한 상담·정보 제공 및 보호조치 연계
  3. 보호출산에 관한 상담·정보 제공 및 지원
  4. 법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입력과 기록관리
  5. 위기임산부 상담 전화 운영
  6. 그 밖에 위기임산부의 출산·양육 지원 및 그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 규칙 제4조

- 제4조(지역상담기관의 업무) 법 제6조제3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산전 검진 및 출산에 관한 비용 지원 등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이용 지원에 관한 업무
  2. 법 제12조제1항의 숙려기간 중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에 관한 업무
  3. 법 제13조에 따른 보호출산 신청 철회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임산부의 출산·양육 지원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② 지정 요건 및 절차

### 1) 지정 주체 및 대상

- (지정 주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 (지정 대상) 영 제2조에 따른 자격과 규칙 제5조 및 별표2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위기임신 상담 능력, 경험 등이 있는 기관
  - ※ 다만, 최초 지정 시에는 예산이 교부되기 이전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추후 갖출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판단하고, 추후 시설 및 인력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지정 기간) 지정권을 가진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함
  - \* 가급적이면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것을 권고함(예 : 3~5년)
- (홈페이지 공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또는 해당 시·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함

### 2) 자격 및 설치·운영 기준(법 제6조제2항, 영 제2조, 규칙 제5조 및 별표 2)

- 자격
  -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의료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임신, 출산, 양육 및 아동 보호 관련 상담 및 지원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단체 또는 기관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3. 그 밖에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 출산, 양육 및 아동 보호 관련 상담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 시설 기준

-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용공간을 갖출 것
- 보건·위생·교통·환경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위기임산부와 그 가족에게 적합한 장소일 것
- 화재 등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등에 따라 소화기구, 경보설비 및 비상구를 설치할 것
- 다음의 기준을 갖춘 시설·장비를 마련할 것
  - (사무실) 책상, 전화기, 컴퓨터, 복사기 등 사무 처리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수 있을 것
    - \* 시설 내 기타 기관과 함께 사용 가능
  - (교육·상담실) 상담, 안내, 설명 등에 필요한 탁자, 의자 등을 갖출 것
  - (화장실)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설치하고,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둘 것
    - \* 시설 내 기타 기관과 함께 사용 가능

● 설비 기준

- 전화·온라인·모바일 상담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함
- 상담 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적합한 공간과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함
  - 상담받는 사람의 신분, 사생활 및 상담내용 등의 노출을 막기 위한 칸막이
  - 효과적인 상담·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을 위한 장비(녹취기, 카메라 등)

● 인력 기준

- (배치기준) 팀장 1명을 포함한 상담인력 4명 이상
  - \* 상담인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의 업무를 겸할 수 없음. 다만, 기관장은 겸임·비상근으로 가능

기관장	팀장	상담인력
기관 재량	1명	4명 이상 (팀장 포함, 전임 2인 이상)

**인력 유형별 세부 요건**

- (기관장) 기관 재량으로 둘 수 있으며, 겸임·비상근으로 일할 수 있음
- (팀장) 지역상담기관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람
  - 전임 상담인력 4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임 상담인력 중 1인을 상담팀장으로 두어야 함
  - 전임 상담인력이 4인 미만인 경우에는 기관 재량에 따라 상담팀장을 별도로 두지 않거나 겸임, 비상근으로 둘 수 있음
  - 위기임산부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등을 제고하고, 상담인력 교육·고충상담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
- (상담인력) 지역상담기관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람
  - 2인 이상 전임으로 상근(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하여야 함
  - 국비·지방비 지원받는 인건비 지원 기준 이상의 인력이 전임으로 상근하여야 함
  - 지역상담기관 인건비 지원 기준을 초과하여 추가로 배치된 상담인력은 법인·시설 등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또는 상근하지 않은 전임 인력이 배치되어 상담인력으로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 타 업무와 겸직하는 경우에는 업무비용 범위에 따라 예산 내에서 급여를 지급
  - 위기임산부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 보호출산에 관련된 업무, 기타 행정업무 등을 실시

- (자격기준) 사회복지사 1급·2급 또는 사회복지 상담 및 사례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운영 기준

- 지역상담기관은 위기임산부가 보호 또는 상담을 요청했을 때 야간을 포함하여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함
- 시·도의 일반적인 위기임신 상담 수요, 예산 등을 고려하여 야간·공휴일 당직 근무, 재택 전화(착신전환 등), 모바일 상담 등 적합한 방법으로 구축할 수 있음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상담계획 및 실적, 예산·결산 및 조직운영 현황 등에 관한 자료 등 지역상담기관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지역상담기관 운영계획을 검토하여 해당연도 지역상담기관 운영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e나라도움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역 상담기관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교부
  - \* 시·도지사는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제출한 운영계획 등 자료 보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상담 기관의 장에게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자료가 부실한 경우 보완 전까지 운영계획 승인, 보조금 교부 등은 중지
- 시·도지사는 지역상담기관 운영계획을 승인한 경우 해당 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상담원 채용 시 전문상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최대 3개월 범위에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이수하는 수습기간을 둘 수 있음
- 수습기간 중에는 정규직원보다 낮은 임금을 지불할 수 있으나, 교육 등에 소요 되는 시간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함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기관을 운영하여야 하며, 다음의 기록 및 서류\*를 갖추어야 함
  - \* 1) 기관의 연혁 및 운영에 관한 기록
  - 2) 지역상담기관의 장, 상담팀장, 상담원 등의 인사에 관한 기록
  - 3) 재산 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4) 최근 3년 동안의 법 제6조에 따른 업무수행에 관한 자료
- 시설 및 인력의 공동이용
  - 지역상담기관 사업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에 병설 운영하는 경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관장은 해당 시설에 필요한 인력을 겸직할 수 있으며, 공통되는 시설 및 설비는 공동으로 사용 가능

### 3) 지정 방식 및 절차

#### ● 지정 방식

- 공모 또는 시·도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위기임산부의 원가정 양육 상담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기관에 대해 필요한 요소를 정량·정성 평가하여 지정

● 공모에 따른 지정 절차

〈공모에 따른 지정 절차〉

절차	담당주체	내용
공고 및 안내	시·도	○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7일 이상 공고 - 지정기준, 지정내용, 신청 시 필요서류 등 안내
신청 및 접수	신청기관/ 시·도	○ 신청자격을 지닌 기관의 신청 서류 제출 - 법인·단체현황 및 사업실적, 운영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허가증, 단체등록증
심사위원회 심사	시·도 사업담당	○ 5인 이상 전문가 및 공무원 구성 - 평가기준 : 사업수행 역량, 상담기관의 전문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결정·통지	시·도 사업담당	○ 심사위원회 상정 및 확정 - 지정된 법인·단체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 (공고 및 안내) 시·도는 자체 공모 계획을 수립한 후 일정기간 공고 실시

**공모 계획을 공고할 때 포함 내용**

- 선정 절차 및 방법
- 공모(신청 및 접수) 기간 : 최소 10일 이상
- 신청기관의 자격
- 지정 유효기간
- 제출서류 및 접수처

- (신청 및 접수) 지역상담기관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주체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시·도 담당자는 제출서류를 확인, 제출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 기관에게 보완 요청

- (지정 신청자)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대표자
- (신청서 접수) 지역상담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신청 시 구비서류**

- [서식 제1호]에 따른 '지역상담기관 지정 신청서' 1부
  - 지정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구비서류
- '지역상담기관 사업계획서' 1부
  - \* [서식 제2호]에 따른 '지역상담기관 사업계획서 표준 양식' 참고 가능
- 그 밖에 지정권자가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서류

- (심사위원회 심사) 심사위원회는 해당 분야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 위원장 포함 5인 내외로 구성하여 심사
- (심사기준) 시·도는 사업에 대한 의지, 사업수행능력, 조직, 인력관리, 공간이나 협력기관의 확보 능력과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상담기관 평가 기준(예시)〉**

평가지표	세부내용	배점
합 계		100
사업단체역량(20)	최근 3년 내 위기임산부 지원 실적	20
사업계획(30)	제시된 세부내용(위기 임산부 상시 대응 체계 운영, 위기임산부 상담·사례 관리 제공, 위기 임산부의 상황을 반영한 관련 기관·서비스 연계 등을 충실히 반영 ① 수(30) ② 우(26) ③ 미(22) ④ 양(18) ⑤ 가(14)	30
사업예산 편성·구성(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비 구성항목 책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① 수(30) ② 우(26) ③ 미(22) ④ 양(18) ⑤ 가(14)</li> <li>• 자체 예산 투입(정량, 10점)</li> </ul>	30
사업수행 능력(20)	사업추진 추진체계(전담인력 확보, 추가 인력 투입 등) 구성, 연계 기관 구성(지역 산부인과·정신과 병원, 양육비 이행 법률 자문 등) ① 수(20) ② 우(17) ③ 미(14) ④ 양(11) ⑤ 가(8)	20

※ 시·도는 예시를 참고하여 별도의 선정기준표 활용 가능

- (결정·통지) 시·도는 지역상담기관을 선정한 후에는 해당기관에 선정결과를 공문으로 통보하며 [서식 제3호]에 따른 '지역상담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보건복지부와 중앙상담지원기관에게 통보
- 중앙상담지원기관은 지역상담기관 지정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

● 적합한 기관 지정에 따른 절차

〈적합한 기관 지정에 따른 절차〉

절차	담당주체	내용
지정계획 수립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정을 위한 내부 추진계획 수립</li> <li>- 자격, 유효기간, 평가 기준 등 포함</li> </ul>
신청 및 접수	신청기관/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자격을 지닌 기관의 신청 서류 제출</li> <li>- 법인·단체현황 및 사업실적, 운영계획서</li> <li>- 법인등기부등본, 법인허가증, 단체등록증</li> </ul>
적합성 평가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기관에 대한 평가 진행</li> <li>* 필요 시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심의 가능</li> </ul>
결정·통지	시·도 사업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확정 및 통지</li> <li>- 지정된 법인·단체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li> </ul>

- (내부계획 수립) 시·도는 자체 지역상담기관 지정 계획을 수립

**내부 지정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 내용**

- 평가 기준
- 신청기관의 자격
- 지정 유효기간
- 제출서류 및 접수처

- (신청 및 접수) 지역상담기관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주체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시·도 담당자는 제출서류를 확인, 제출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에게 보완 요청

- (지정 신청자)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대표자
- (신청서 접수) 지역상담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신청 시 구비서류**

- [서식 제1호]에 따른 '지역상담기관 지정 신청서' 1부
  - 지정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구비서류
- '지역상담기관 사업계획서' 1부
  - \* [서식 제2호]에 따른 '지역상담기관 사업계획서 표준 양식' 참고 가능
- 그 밖에 지정권자가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서류

- (적합성 평가) 시·도는 제출받은 서류를 바탕으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진행, 필요 시 심사위원회를 구성

\* 평가기준, 사업계획서 양식 등은 예시를 참고하여 정하되, 각 시·도에서 필요한 내용을 자유롭게 추가·삭제·수정 가능

〈상담기관 평가 기준(예시)〉

평가지표	세부내용	배점
합 계		100
사업단체역량(20)	최근 3년 내 위기임산부 지원 실적	20
사업계획(30)	제시된 세부내용(위기 임산부 상시 대응 체계 운영, 위기임산부 상담·사례 관리 제공, 위기 임산부의 상황을 반영한 관련 기관·서비스 연계 등)을 충실히 반영 ① 수(30) ② 우(26) ③ 미(22) ④ 양(18) ⑤ 가(14)	30
사업예산 편성·구성(30)	• 사업비 구성항목 책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① 수(30) ② 우(26) ③ 미(22) ④ 양(18) ⑤ 가(14) • 자체 예산 투입(정량, 10점)	30
사업수행 능력(20)	사업추진 추진체계(전담인력 확보, 추가 인력 투입 등) 구성, 연계 기관 구성(지역 산부인과·정신과 병원, 양육비 이행 법률 자문 등) ① 수(20) ② 우(17) ③ 미(14) ④ 양(11) ⑤ 가(8)	20

※ 시·도는 예시를 참고하여 별도의 선정기준표 활용 가능

- 필요 시 시·도는 해당 분야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 위원장 포함 5인 내외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가능
- (결정·통지) 시·도는 지역상담기관을 선정한 후에는 해당기관에 선정결과를 공문으로 통보하며 [서식 제3호]에 따른 ‘지역상담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보건복지부와 중앙상담지원기관에게 통보
- 중앙상담지원기관은 지역상담기관 지정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

● 지정 시 고려사항

- 각 시·도는 필요한 경우 지정 절차를 시·도 사정에 맞게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음

- 각 시·도는 지정되는 기관이 영 제2조의 자격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지역의 출생아 수 및 아동 유기 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함
- 시·도는 가급적 지정 결정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지정하고, 지정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갱신하도록 추진
- 다른 사회서비스 및 국가 지원 사업·기관, 자체 사업·기관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도 중복 지정 가능. 다만, 지역상담기관의 전담인력·회계·관리·운업을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함
- 권리의무 주체가 다른 기관에 사업을 양도할 수 없으며, 새롭게 지역상담기관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규 지정을 받아야 함
  - \* (예시) ▲ 단순 명칭 변경이 아닌 법인이 달라지는 경우, ▲ 납세의무자가 달라지는 경우
- 시·도지사는 새로운 단체·기관을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매년 초 운영계획 수립 시(p.42 참조) 신규 지정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새로운 단체·기관이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함
  - \* 기존에 지역상담기관을 운영하던 단체·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황에서 기존 단체·기관이 아닌 새로운 단체·기관을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도 포함

#### 4) 지정 관리

##### ● 지역상담기관 정보관리

- 시·도 담당자는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한 경우 행복이음 시스템에 지역상담기관 정보를 입력하여야 하고 입력 사실을 지역상담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함(지정정보 변경, 지정 취소 등의 경우에도 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입력)
- 지역상담기관은 입력 사실을 통보받은 이후부터 위기임상부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업무 처리 가능

● 지역상담기관 지정 변경

- (중요사항의 변경지정)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서식 제4호]에 따른 '지역상담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대표자, 소재지(주소) 등

- (기타 변경사항의 신고)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중요사항 외의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될 때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식 제5호]에 따른 '지역상담기관 변경사항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지급계좌, 시설(공간의 축소 및 확대 등)

● 지역상담기관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 시·도지사는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 가능 (법 제22조, 영 제9조·제11조)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지정권자가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서류

-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기준(영 별표)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각각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행정처분이 경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할 것을 알리고, 그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 마. 처분권자는 다음의 가중 사유 또는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업무정지만 해당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가중 사유
    -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감경 사유
    -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2조 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법 제22조 제1항제2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다.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22조 제1항제3호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지정취소

● 지역상담기관의 휴·폐업

- (상담기관)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공문으로 시·도지사에게 신고

### 휴업 또는 폐업 신고 시 제출 서류

- [서식 제6호]에 따른 '지역상담기관 휴업·폐업신고서'
- 휴업·폐업결의서 1부
-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 [서식 제3호]에 따른 '지역상담기관 지정서'(폐업인 경우에만 제출)
- [서식 제7호]에 따른 '지역상담기관 자료 이관·자체보관 신청서'

- (시·도지사) 폐업(지정취소 포함) 또는 휴업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와 중앙상담지원기관에 공문으로 통보
- (휴·폐업 시 서비스 제공 자료의 이관 및 자체보관)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기관의 폐업(지정취소 포함) 또는 휴업 예정일 전까지 [서식 제7호]에 따른 '지역상담기관 자료 이관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자료를 이관받아 직접 보관하거나 중앙상담 지원기관으로 이관을 요청하여 보관
  - 휴업하는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자료를 자체 보관하는 경우 휴업 예정일 전까지 [서식 제7호]에 따른 '지역상담기관 자체보관 신청서'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자체보관을 승인받아야 함
- 지역상담기관 신규 지정에 따른 행정사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새로운 단체·기관을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한 경우 신규 지역상담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다음 사항을 조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신규 지역상담기관의 상담원에 대한 교육(아동권리보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 제도 개요 및 업무 절차, 상담기법 및 위기임산부 지원 제도, 가명진료, 시스템 사용법 등
  - 1308 위기임산부 상담전화와 연결된 전화번호 변경(필요 시 지역 배정 조정도 병행)(보건복지부, KT)
  - 위기임신지원시스템 기관 등록 및 권한 부여(한국사회보장정보원)

- 협력 의료기관 발굴 및 의료기관의 가명진료·출생통보 업무 처리 시범 운영(아동 권리보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신규 지역상담기관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 아동보호 담당자 교육(아동권리보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긴급보호 인프라 구축(시·도, 시·군·구)
-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읍·면 확정 및 가족관계등록관서 업무 담당자 교육(법원행정처)

## 5) 경력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상담기관에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도 유사경력 80% 인정
  - \* 자세한 사항은 2025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지침 VI. 부록 3. 참고

## ③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교부·집행·정산 등에 대하여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따름

### 1) 보조금 교부

- 보건복지부장관은 회계연도 전년도에 국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경우 시·도지사에게 해당 회계연도 보조금에 대한 가내시를 하고,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경우 보조금에 대한 확정내시를 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확정내시를 받은 후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함
  - 다만, 시·도별 여건에 따라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시·군·구청장을 통해서 집행할 수 있음.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보조사업자로서 지역상담기관을 운영·관리하여야 함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시·도지사에게 매 회계연도 초에 해당 연도에 대한 사업 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사업 수행 계획서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계획을 승인하고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음

**사업 수행 계획서 포함 내용(예시)**

- 신청하는 법인 등과 해당 법인 등에서 운영하는 위기 임신·출산 상담 지원 관련 단체·시설의 일반 현황과 지역상담기관 지원 계획
- 위기 임신·출산, 양육 관련 상담 및 지원 등 사업내용 및 추진 실적
- 긴급출동·전화상담 등 상시 대응체계 구축, 원가정 양육 상담 및 정보 제공·서비스 연계, 보호출산 상담 및 제도 운영, 보호출산 아동 보호 등 사후관리, 지역 내 자원 네트워크 구축 등 사업 세부 추진 계획
- 사업비 예산 지출 항목 및 규모 등 계획

- 시·도지사는 사업 수행 계획을 승인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중앙상담지원기관에게 사업 수행 계획을 송부하여야 함

## 2) 보조금 집행

- (원칙) 지역상담기관은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사업 또는 시설(기관)과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편성·관리하여야 함
  - 지역상담기관 운영을 위해 지급된 보조금이므로 모법인이나 지역상담기관이 병설된 시설·기관 또는 다른 시설·기관으로 전출 불가
- 인건비
  - 지역상담기관은 지급된 사업비 중 인건비를 급여, 퇴직금 또는 퇴직적립금, 기관 부담분 사회보험료, 기타 복리후생경비(긴급출동수당, 휴일·야근수당, 장기근속수당, 건강진단비 등) 등에 사용하여야 함
  - 지역상담기관은 전임·상근 상담인력에게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임금(근로소득세,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등 감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함

「근로기준법」 상 임금 관련 규정

★ 본 내용은 기관 운영에 참고할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안내하는 것이며, 근로관계 법령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해석은 고용노동부 또는 지역별 지방고용노동청으로 문의

■ 임금의 지급

-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되,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상여금, 근속수당 등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혼인, 사망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등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용자는 임금 지급 시마다 임금대장에 다음의 사항을 작성

-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 연월일, 종사하는 업무

-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근로일수, 근로시간 수

-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

-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경우 그 품명, 수량, 평가총액)

-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금액

■ 휴일·야간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

-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8시간 초과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실제로 어려운 경우 등 엄격한 요건 아래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함에 따라, 근로계약서 상 임금이 각종 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 형식이라도 연장근로 등에 따른 임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

- 지역상담기관의 기관장 등에게 임의로 수당 등을 마련하여 과다하게 지급하지 않도록 함

- 지역상담기관은 상황에 따라 지역상담기관의 업무를 겸임하거나 상근하지 않는 상담인력에게 지급된 사업비 중 인건비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음. 이 경우 지급되는 임금은 해당 인력이 지역상담기관의 업무에 참여한 비율에 비례하여야 함

- 지역상담기관은 상황에 따라 지정된 단체의 다른 사업 또는 시설(기관)의 인력이 상시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위한 당직, 착신전환 등 업무를 한 경우에는 지급된 사업비 중 인건비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음

● 사업비

- 지역상담기관은 지급된 보조금 중 운영비를 기본경비, 상담인력 교육훈련비, 위기임산부 지원 인프라 구축 등에 사용하여야 함
- 기관 운영비 명목이 아닌 특정 위기임산부에게 의료비 또는 생활비 등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국비 보조금과 매칭된 지방비 보조금으로 집행하지 않아야 함 (후원금 또는 시·도 자체 편성 보조금 등으로 지원하는 것은 무방함)
- (기본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 렌트비, 연료비, 임대료 등 사무실 유지운영비, 여비, 회의비, 홍보비(홍보물품 제작 등) 등
- (상담인력 교육훈련비) 교육프로그램 참여 비용, 강사 초빙 비용 등 상담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비용
- (위기임산부 지원 인프라 구축) 해당 지역상담기관 내에서 불특정 다수의 위기임산부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비용

● 위기임산부 산전 검진비 지원

- 사업비 내에서 위기임산부 임신 확인을 받기 위한 산전검진 비용 편성 가능
- (지원대상) 임신확인을 받고자 하는 위기임산부의 산전검진비
- (지원요건) 급여제한자 및 자격상실자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거나, 청소년 등 신분노출 우려가 있는 위기임산부
- 다만, 의료급여·임신출산바우처·긴급지원·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타 제도를 통한 지원을 우선 모색해야 하며 중복지원은 불가

\* 긴급한 경우라 하더라도 지역상담기관에서 영수증처리한 이후 지자체 등 관계기관 연계를 통해 타 지원 제도 우선 모색 필요

**불특정 다수의 위기임산부 또는 아동 대상 지원(예시)**

- 지역상담기관이 취업에 관심 있는 위기임산부들에게 일자리에 대한 강연을 제공하기 위해 강연장 임대료 및 강사로 지출
- 지역상담기관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위기임산부 또는 보호출산 이후 아동과 숙려기간을 보내야하는 보호출산 신청 산모 등이 일정 기간 일시적으로 머무를 수 있도록 마련한 주거 공간의 임대료 지출
- 위기임산부의 자녀 또는 보호출산 아동 등 아동을 일정기간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주거 공간 임대료 및 돌봄 인력 인건비 지출
- 엽산제·철분제 등 위기임산부에게 필요한 소모성 물품이나, 기저귀·분유 등 아동에게 필요한 소모성 물품
  - 소모성 물품이 아닌 물품의 지원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에 해당하지 않음
  - ※ 위기임산부 또는 아동에게 실질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 목적 없이 특정 기관·시설 등에 위기임산부 이용이 많다는 이유로 임대료나 공과금, 인건비 등을 지출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 대상 지원에 해당하지 않음 (단, 실질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별도 고용된 인력이나 별도 임대된 시설 등에 대한 비용집행 등은 가능)

**3) 보조금 정산**

- 지역상담기관은 회계연도 다음해 초에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보조금 집행 내역을 확정하고 집행액, 이월액을 제외한 미집행액을 반납받아야 함
  - 시·도지사는 지역상담기관으로부터 반납받은 보조금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함
  - \* 시·도지사가 시·군·구청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한 경우, 시·군·구청장은 지역상담기관으로부터 반납받은 보조금을 시·도지사에게 먼저 반납하고, 그 이후 시·도지사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함

**4) 비용의 환수**

- (환수) 시·도지사는 지역상담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법 제20조 및 영 제9조·제11조에 따라 운영비를 환수할 수 있음

**법 제20조 및 영 제9조·제11조**

- 법 제20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중앙상담지원기관 또는 지역상담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9조제1호에 따른 운영비를 환수할 수 있다.
- 영 제9조(비용 환수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용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원받은 자에게 환수 사유, 환수 금액, 납부 기한 및 수납 기관 등을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 기한은 납입 고지를 한 날부터 3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납 기관은 환수 비용을 납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비용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영 제11조(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역상담기관에 대한 운영비 환수

**4 지자체의 지역상담기관 지원**

**1) 시·도의 운영계획 작성**

- 시·도지사는 지역상담기관과 함께 지역 내에서 위기임산부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초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상담기관의 업무를 지원하여야 함
- 운영계획은 시·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하되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할 수 있음

**시·도 운영계획 포함 내용(예시)**

- 시·도의 행정·재정 여건, 위기임산부 관련 지역 현황 및 진단 등 지자체 일반 현황
- 미등록아동 전수 조사 관련 통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 아동 유기 현황 등 사업 대상자 관련 현황 및 지자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위기임산부 관련 상담 서비스 등 현황
- 위기임산부가 이용할 수 있는 의료, 돌봄, 주거, 양육지원, 고용 등 지역 내 서비스 자원 현황
- 가족센터, 관련 단체, 산부인과 의료기관 등 현황
- 지역상담기관 지정·운영 계획 또는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된 단체의 일반 현황과 운영 지원 계획
- 시·도의 업무 담당 부서 및 인력, 관리·감독 계획, 자체 예산 확보 및 집행 계획 등 추진체계
- 위기임산부의 자녀 또는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의 보호를 위한 소관 시·군·구와의 협업 계획

- 시·도지사는 수립한 운영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2) 복지자원 발굴 및 지원

-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필요 시 관내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자체 사업을 적극 추진
-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지역 내 민간 복지자원 발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 시·도/시·군·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시·도/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등
  - 특히, 위기임산부가 미혼모, 청소년모, 고위험임산부, 정신건강증진 필요 임산부 등에 해당하거나 위기임산부의 자녀 또는 보호출산 아동이 미숙아, 다태아, 장애 아동 등에 해당하는 경우 중점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시책 마련 필요

## 3) 지역상담기관 관리·감독

- (목적) 시·도지사는 지역상담기관 운영 및 보조금 집행 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내실 있는 보조금 운용을 도모
- (점검 방법) 시·도지사는 지역상담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내실 있는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보조금 집행의 경우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내역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 실시
  - \* 시·도지사가 시·군·구청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한 경우, 시·군·구청장도 보조사업자로서 시·도지사와 함께 지역상담기관을 관리·감독하여야 함

## 4) 지역 내 홍보

-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지역 내 위기임산부가 위기임산부 상담전화(1308)와 지역상담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체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함
  - ※ (홍보 예시) 미혼모시설·의료기관 등 위기임산부가 자주 방문하는 기관·장소에 홍보물품(포스터, 리플릿 등) 제작·배포

## 5) 지역상담기관 및 지자체 협력체계 구축

-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 보호를 위해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필요시, 지역상담기관-지자체 간 정기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협력기반 조성

### 3 위기임신 상담의 방법 및 절차 상담기관

#### ① 상담 원칙 및 개요

##### 1) 위기임신 상담 원칙

- 지역상담기관은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산전·산후 건강보호와 아동의 안전한 출생 및 아동보호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출산·양육 및 아동 보호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한 위기임산부는 누구라도 언제든지 지역상담기관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음
  - 외국인인 위기임산부가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상담기관에서 가능한 서비스·제도를 연계하고 필요한 경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그 밖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보다 전문적인 기관·시설로 연계
    - \* 외국인은 법과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보호출산 신청이나 전산관리번호 부여의 대상이 아님 (다만,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보장시설에 입소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사회보장급여를 수급하려는 경우에 한하여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음)
- 위기임산부 상담은 대면상담의 방법으로 하되, 대면상담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상담 및 온라인상담 등의 방법으로 가능
- 가정·성폭력, 미성년, 약물중독, 노숙, 장애 등 위기임산부가 놓여있는 위기 상황과 위기임산부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상담과 개입이 이루어져야 함
-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위기임산부들에게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행정기관, 민간기관, 의료기관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며 충분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함
- 지역상담기관은 위기임산부 상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당사자 동의 없이 당사자가 아닌 사람(당사자의 부모 등을 포함)에게 상담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야 함 (모든 상담의 내용은 비공개)

- 위기임산부가 임신,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하여 결정을 내릴 때 상담을 통해 사회안전망에 대한 정보, 아동의 권리, 본인의 상황, 여러 대안의 검토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종적인 결정에 이르도록 지원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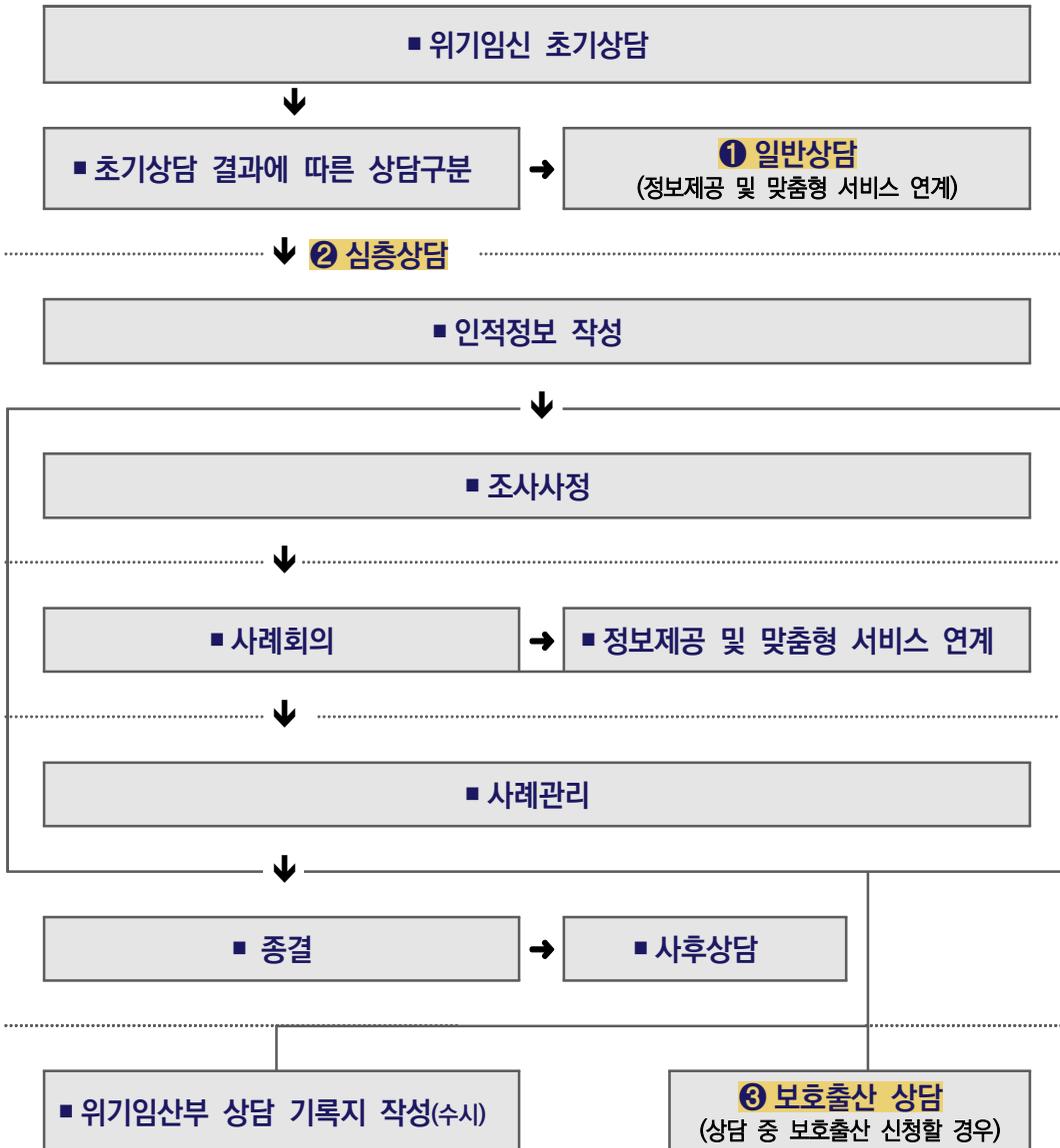
**법 제23조**

- 제23조(비밀유지의 의무) 중앙상담지원기관, 지역상담기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권리보장원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상담을 지속하거나 서비스 연계 및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가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위기임산부의 상담 요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음

## ② 상담 절차

〈 위기임신 상담절차 흐름도 〉



\* 위기임산부 상담 기록지는 상담주제, 상담내용, 요청사항 등으로 구성되며 수시로 기록(위기임신등 지원정보시스템 입력)

\* 보호출산 상담 관련 세부 사항은 “V. 보호출산 및 출산 후 아동보호 → 1. 위기임부의 보호출산 신청 → 2. 보호출산 상담” 부분 참조

## 1) 초기 상담

- (개요) 위기임산부가 모바일(카카오톡 채널, 지역상담기관 운영 sns 등), 온라인(홈페이지, 이메일), 전화(위기임산부 핫라인 1308, 지역상담기관의 핸드폰·전화), 대면 방문 등의 수단으로 지역상담기관에게 처음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상담 접수 및 대응
  - 위기임신 관련 정보 취득 목적의 단순 질의에 대한 대응도 포함
  - 단순 질의응답 및 타 기관 서비스 연계 등 일회성 상담의 경우 답변·관련 기관 등 안내 후 해당 내용을 기록하고 종료 처리하며, 지속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기임산부의 신원 등을 별도로 기록하지 않아도 무방
  - 초기 상담 과정에서 기본적인 산모가 처한 상황, 산모의 특성, 산모의 욕구 등을 파악하여 지속 상담 필요성을 파악

### 위기임산부 핫라인(1308) 개요

- (서비스 명칭) “위기임산부 상담 전화 1308”
- (운영시간) 24시간 운영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는 지역상담기관에 정규 근무하는 전담인력 응대, 평일 심야 시간 및 주말 등 기타 시간대에는 전담인력 당직 혹은 착신전환 등 운영하여 24시간 대응
- (운영기관) 발신 지지역 위치를 기반으로 전국 지역상담기관에서 수신
  - 발신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가장 가까운 지역상담기관에서 수신하여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추후 편리하게 대면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연결되도록 운영
  - 지역상담기관은 위기임산부 핫라인을 통해 연결하기 위한 전화 회선을 구비하여야 하며, 전화 번호가 추가·변경·삭제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함(보건복지부장관은 KT에게 전화번호 변경 사실을 통보)
- (수신자 부담) 보건복지부에서 통화료를 부담하는 수신자 부담으로 운영
- (추진체계) 과기정통부(1308 번호 발급) - KT(1308 번호 관리) - 보건복지부(1308 번호 운영)

- (세부 절차) 초기 상담 시 상담 과정에서 상담주제, 상담유형, 국민행복카드 유무, 접수경로, 임신상태 등을 파악하여 기록

## 2) 일반 상담

- (개요) 위기임산부의 위기 상황이 지속적·복합적이지 않고 당면한 위기를 해소하면 임신·출산·양육을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면 위기 해소를 위한 기관, 서비스 제도를 연계

## 3) 심층 상담

- (개요) 복합적 욕구 및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사례관리의 과정을 통해 심층적으로 이루어지는 상담
  - 위기임산부에 대해 다방면의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 다양한 욕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사례회의를 거쳐 사례관리를 실시하며, 이 과정에서 수시로 상담 기록을 작성
- 세부 절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징구) 위기임산부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해 [서식 제8호]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징구
    - \* 만약, 위기임산부가 의사결정능력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징구 시 보호자의 입회하에 위기임산부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진행
    - \*\*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 아동,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민법 제5·10·13조)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음
  - (인적 정보 작성) 위기임산부의 인적사항, 주거·건강·경제 사항, 임신·출산 상태, 생부정보 등을 확인하여 기록
    - \* 일회성 상담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 상담하게 되는 경우 인적 정보를 작성하여 동일인에 대해서는 연속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다만, 모든 인적 정보의 작성보다 산모가 안심하고 필요한 상담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선하며 산모에게도 모든 정보를 작성해야만 하는 것은 아님을 알림
  - (아동 정보 작성) 위기임산부가 이미 자녀를 출산한 경우 또는 상담 이후 아동을 출산한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해당 아동에 대한 기본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담 기록지에 관련 내용을 (추가) 기록하여야 함(보호출산 신청인 또는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인에 대해서도 작성)

- \* 태어난 의료기관의 주소·명칭, 의료기관 외 출생 시 출생 장소·방법, 아동의 출산 시 키·몸무게·특이사항, 현재 건강상태 등
- \* 필요 시 위기임산부에게 아동에 대한 출생증명서(의료기관 내 출산) 또는 진단서(의료기관 외 출산)를 요청하여, 출생증명서 또는 진단서에 적혀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 (아동의 생부 정보 작성) 아동 정보를 입력한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한 생부의 정보도 같이 작성
- (조사·사정) 사례 선정 및 서비스 연계 계획 수립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위기임산부의 욕구\*와 강점·약점 등 위기임산부 관련 정보를 추가로 수집하고 기록
  - \* 원가족과의 관계, 아동 양육, 직업, 주거, 경제적 문제, 신체적·심리적 건강 문제 등
- (사례회의) 위기임산부의 욕구, 조사·사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기관장, 담당자 등(필요 시 외부 전문가 포함 가능)이 함께 논의하여 사례관리 여부를 선정하고 지원 방향을 논의하는 등 대상자의 사례관리 과정에 대한 협의 및 조정
  - \* 사례회의 개최 시 결과를 기록하여야 하며, 누적된 결과가 이력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 (사례관리) 위기임산부에 대한 자료를 종합하여 정서적지원, 사회경제적 지원, 산전산후 지원, 원가정양육 지원, 아동보호 지원 등 각종 서비스 제공 계획과 공공·민간의 복지자원 연계 계획 등을 수립하고, 서비스 또는 자원이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점검 및 모니터링 수행
  - \*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 서비스 제공 계획 등의 변경 필요성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재사정과 사례회의를 다시 진행
  - \*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위기임산부에 대해서는 정보제공 및 맞춤형 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고 종결 처리(필요한 경우 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 가족센터 등 유관기관으로 사례이관 지원)
- 위기임산부가 원하는 정보와 서비스·자원이 명확한 경우 해당 서비스·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이 직접 서비스·자원을 찾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연계까지 지원

#### 4) 긴급 상담

- (개요) 긴급한 위기 상황으로 인해 즉각적인 현장 출동을 통한 개입이 필요한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상담

- (현장 출동) 응급분만, 폭력, 노숙, 신체·정신적 건강 위험 등 응급 대응이 필요한 긴급 상황 또는 위협에 처해있는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현장에 긴급 출동하며, 필요 시 공공기관, 경찰, 구급대(119) 등의 도움을 요청하여 위협 상황에 대비
- (긴급 위기 지원) 긴급 현장 출동 이후 추가 상담, 신속한 서비스·자원 연계, 일시 보호 등을 통해 위기임산부의 위험도를 낮추고, 필요한 경우 심층 상담을 통해 사례관리 및 후속 서비스 지원

## 5) 상담 종결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을 종결 가능. 다만 위기임산부에게 추가적인 상담이나 사후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속하여 상담을 진행할 수 있음
    - 서비스·자원 연계를 통해 위기임산부의 욕구가 해소된 경우
    - 위기임산부가 출산 후 6개월이 지난 경우
    - 다른 지역상담기관으로 사례를 이관하거나 위기임산부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거주시설에 입소\*한 경우
- \* 다만,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한 경우에는 시설 입소에도 불구하고 보호출산 신청·상담 등을 위해 상담을 종결하지 않아야 함

## 6) 사후 상담

- 지역상담기관은 심층 상담을 받던 위기임산부가 출산한 경우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사후 상담하고 필요한 경우 욕구를 추가로 파악하여 지역사회 사례관리 연계(가족센터, 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 등) 또는 복지 자원 연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 (종결유형1) 심층상담 대상

- 보호출산 신청 후 출산한 위기임산부의 경우, 출산 후 6개월동안 사후상담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상담 종결함
- 다만, 추가적인 사후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담 종결 후 추가적인 사후관리를 진행·기록하면 됨

## (종결유형2) 욕구해소/타지역 사례이관/시설 입소 유형

- 상담 종결 후, 출산 시점을 기준으로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사후관리 진행

### 지역사회 사례관리 연계 기관(예시)

- (희망복지지원단) 위기임산부가 생계곤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 (드림스타트)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이 포함된 가족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에 해당하는 경우
  - (가족센터) 위기임산부가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 ※ 위기임산부가 관외 거주자인 경우에는 위기임산부의 주소가 속한 지자체의 담당기관으로 연계(거주지가 주소와 다른 경우 거주지 소재 기관으로 연계)

- (사후 상담 사항) 생활 안정화 여부, 아동 출생신고 여부, 아동 양육·보호 상황, 아동 관련 의사결정 상황, 각종 서비스 욕구

\* 확인·점검 시 [서식 제9호]에 따른 '위기임산부 사후 상담 결과서' 작성

- (사후 상담 방법) 대면으로 사후 상담하는 것을 권장하나 유선으로 사후 상담도 가능
- (사후 상담 횟수 및 기간) 월 1회 이상 사후 상담을 실시하며, 출산 후 6개월까지 실시(필요 시 연장 가능하며, 연장 횟수의 제한은 없음)

## 7) 다른 지역상담기관으로 사례 이관

- (요건) 위기임산부가 거주지 이전 등으로 다른 지역상담기관에서 상담을 이어나가고자하는 경우 다른 지역상담기관에 사례 이관 가능
- 사례 이관 절차
  1. 지역상담기관이 사례관리 과정에서 위기임산부의 사례 이관 욕구 확인
  2. 사례를 이관하고자하는 다른 지역상담기관에게 사례 이관 가능 여부 확인
  3. 위기임산부에게 사례 이관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사례 이관 및 그간 상담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서식 제10호]에 따른 '지역상담기관 사례 이관 동의서'를 제출 받음
  4.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사례 이관 업무 처리

4

위기임산부 대상 제도 안내 및 서비스 연계

상담기관

지자체

보장원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위기임산부 대상 상담·안내 사항

- 지역상담기관은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에게 자녀인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상담과 안내를 제공하여야 하며 가능한 서비스를 연계 가능
- 자녀인 아동을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및 지원 사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및 제27조제2항에 따른 급여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제13조에 따른 복지 자금의 대여, 제1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제14조의2에 따른 고용지원 연계,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제17조의6에 따른 건강관리 등 지원, 제18조에 따른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및 제19조에 따른 시설 이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의료 지원, 같은 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 「모자보건법」 제9조, 제10조, 제10조의4, 제10조의5, 제14조, 제15조의17, 제15조의18에 따른 모성 및 영유아 건강 증진을 위한 사항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관련 상담·안내 세부 사항

- 위기임산부가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에게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원가정·양육·입양·보호출산 관련 정보와 함께 임신중절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
  - \* 인공임신중절 관련 법·제도(「모자보건법」 제14조 등), 의료적 절차 및 방법·부작용 등
- 위기임산부가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의료기관 안내 요청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모자보건 및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하여 전문적으로 상담을 수행하고 있는 러브플랜(인구보건복지협회 운영)을 안내

-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임신부에게 제공되는 각종 지원 사항
- 자녀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 중인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관련 지원 사항
- 양육 및 친권의 포기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규칙 제6조제1항**

■ 제6조(위기 임신·출산 등에 대한 상담) ① 법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호조치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상담·안내 사항 중 주요 지원 제도 목록〉

구분	근거법률	주요 사업	문의처
기초생활보장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주거급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계급여</li> <li>• 의료급여</li> <li>• 주거급여</li> <li>• 교육급여</li> <li>• 해산급여 등</li> </ul>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계비</li> <li>• 아동교육지원비</li> <li>• 아동양육비 지원</li> <li>• 자금 대여</li> <li>•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li> <li>• 고용지원 연계</li> <li>• 교육·가족부양·가사·법률구조 등 가족지원서비스</li> <li>•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li> <li>• 한부모가족시설 이용 등</li> </ul>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상담전화 1577-4206), 시·군·구 가족센터 (1577-9337)
건강보험 본인부담 지원	「국민건강보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부담상한제</li> <li>•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li> </ul>	시·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1577-1000)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 증진 지원	「모자보건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자보건수첩</li> <li>• 임산부·영유아·미숙아 건강관리</li> <li>• 다태아 임신부 지원</li> <li>•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등 정신건강 증진</li> <li>• 공공산후조리원 이용</li> <li>• 산후조리도우미 이용</li> <li>• 저소득층 분유·기저귀 지원</li> </ul>	시·군·구 보건소
고위험 분만	「모자보건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li> <li>•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li> </ul>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02-6362-3764)

구분	근거법률	주요 사업	문의처
양육비 이행 지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자녀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양육비이행관리원
아동 양육 지원	「아동수당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영유아보육법」 등	• 아동수당, 부모급여 • 첫만남 이용권 • 보육료 지원 및 어린이집 이용 등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등
장애아동 지원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발달장애인 지원법」 등	• 발달재활서비스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등	장애인개발원, 발달 장애인지원센터 등

## 2) 법 제8조에 따른 지원 사항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산전·산후 보호를 위하여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가 원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입소를 요청 가능

\* 임신 상태 또는 출산 직후의 임산부가 대상인 점을 고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1호 출산지원시설 입소를 우선하여 고려하여야 함. 다만, 대상자의 거주지역, 특성, 선호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 이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서식 제11호]에 따른 ‘복지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입소를 요청하고자 하는 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함
- 입소를 요청받은 시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기임산부의 보호시설 입소에 협조하여야 함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성평등가족부)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 한부모가족
  - 다만,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한부모 및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제외)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입소 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미혼자 포함)이며,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 해당하는 출산지원시설 입소 희망자
    -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상의 위기임산부
      -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 6조의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시설입소(이용) 신청서 작성·요청
    - 「인구감소지역법」 상의 ‘인구감소지역’에 설치·운영 중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 희망자

- 시·도는 관내 시설에 위기임산부가 입소가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필요 시 소관 시·군·구 또는 다른 시·도에 협조 요청 가능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위기임산부에게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연계 가능
-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은 지방이양 사업(‘22년~)이므로, 각 시·도는 위기임산부가 산후조리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

### 3) 기타 서비스 안내·연계·지원

- (각종 사회보장제도 안내) 위기임산부가 자녀인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국가·지자체에서 제공 중인 출산·양육 지원 등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충분한 상담과 안내를 제공하여야 하며, 가능한 사회보장 제도가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 국가·지자체에서 제공 중인 사회보장제도 전체 목록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발간)과 [임신·출산·양육 관련 급여·서비스 목록](p.58) 참고, 개별 지자체는 자체 지원하는 급여·서비스·제도 등에 대하여 [임신·출산·양육 관련 급여·서비스 목록] 등과 같이 정리하여 지역상담기관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변동 사항이 있을 시 지역상담기관에 공유
- (의료서비스 지원) 지역상담기관은 위기임산부 등의 신원 노출을 방지하고 원활한 가명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부인과 의료기관들과의 협약을 맺는 것을 권장 하며, 위기임산부 등이 진료를 받으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역상담기관 상담원이 의료기관에 동행하는 것을 권장함
  - 지역상담기관은 위기임산부 등의 가족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등 자격 문제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또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연계하여 시설 입소 및 의료급여 자격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
  - 응급 상황으로 인해 보호출산 신청인이 평소에 다니던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 기관에서 출산하는 경우 지역상담기관에서 동행하는 등 적극 대응하여 가명으로 출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 (지자체별 자체 사업) 각 시·도, 시·군·구에서는 필요 시 관내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자체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
- (긴급복지 지원) 위기임산부가 상담 과정에서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적극 활용
  - 현재 「긴급복지지원법」 및 지자체 조례에 규정된 위기상황\*이 위기임산부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권해석
    - \* (긴급복지지원법)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지자체 조례) (예시)임신·출산·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긴급복지지원제도 질의응답집(Q&A) 사례**

- Q. 「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따른 위기임산부도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요?
- A.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되어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등 보장시설에 입소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예시) 「긴급복지지원법」 상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또는 지자체 조례의 임신·출산·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에 해당
- Q. 미혼모 또는 청소년모인 위기임산부가 가출하여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원룸, 고시원 등에서 거주하는 경우, 가구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 A. 시·군·구청장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자와 생계, 주거를 달리한다고 확인한 경우 기존 가구가 아닌 새로운 가구로 인정됩니다.

- (민간 복지자원 연계)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아동권리보장원 등은 전국 단위 민간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시·도 및 시·군·구는 지역 내 민간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지역상담기관이 위기임산부에게 민간 복지자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협의회, 종교계, 금융권, 아동·위기임산부 관련 복지재단 등
  - \*\* 지방비 자체 예산 편성, 시·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시·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공헌 인정 기업 등
  - \*\*\*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한 복지 자원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지역상담기관에 공유하고 변동 사항 발생시에도 공유

- (협력 네트워크 운영) 지역상담기관은 모법인에서 운영하는 다른 시설·기관·사업 뿐 아니라 지역 내 위기임산부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개인·시설·단체 등과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하여야 함

\* (예시) ▲ 자원봉사, ▲ 위기임산부 산전 검진과 출산 등을 위한 산부인과 의료기관, ▲ 생부의 양육비 지원 등 각종 법률적 자문, ▲ 학업을 이어가고자 하는 위기임산부에 대한 교육 지원, ▲ 고용·주거 지원 등

## 임신·출산·양육 관련 급여·서비스 목록

### 1 위기임신 보호출산 지원법에 규정된 지원 사항 내용

#### □ 제7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27조제2항에 따른 급여

법적 근거	지원 내용	소관																								
제7조(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생계 급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내용: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li> <li>-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 (단위 : 원/월)</li> </ul> </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font-size: small;">구분</th> <th style="font-size: small;">1인</th> <th style="font-size: small;">2인</th> <th style="font-size: small;">3인</th> <th style="font-size: small;">4인</th> <th style="font-size: small;">5인</th> <th style="font-size: small;">6인</th> <th style="font-size: small;">7인</th> </tr> </thead> <tbody> <tr> <td style="font-size: small;">기준 중위소득</td> <td>2,564,238</td> <td>4,199,292</td> <td>5,359,036</td> <td>6,494,738</td> <td>7,556,719</td> <td>8,555,952</td> <td>9,515,150</td> </tr> <tr> <td style="font-size: small;">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2%)</td> <td>820,556</td> <td>1,343,773</td> <td>1,714,892</td> <td>2,078,316</td> <td>2,418,150</td> <td>2,737,905</td> <td>3,044,848</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959,158원씩 증가(8인가구: 10,474,348원)</li> <li>** 8인 이상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 1인 증가시마다 306,943원씩 증가(8인가구: 3,351,791원)</li> <li>-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li> <li>- 지원액: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li> </ul>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9,515,150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2%)	820,556	1,343,773	1,714,892	2,078,316	2,418,150	2,737,905	3,044,848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9,515,150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2%)	820,556	1,343,773	1,714,892	2,078,316	2,418,150	2,737,905	3,044,8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해산급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내용: 해산비 지급</li> <li>-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출산 예정 포함) 경우</li> <li>-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자활급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내용: 대상자의 역량에 따라 유형별 자활근로 사업단에 참여하여 직업 훈련 및 자립능력 배양</li> </ul> </li> </ul>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법적 근거	지원 내용	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18세 이상 64세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 근로능력 있는 생계급여 조건부수급자(의무참여), 이외 수급자 및 차상위자(희망참여)</li> <li>-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주거급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내용: 임차가구는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산정된 기준임대료('24년 기준 17.8~64.6만원)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매월 지급,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에 따라 일정 주기별 수선 지원</li> <li>-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24년 기준) 이하인 가구 * (1인) 107.0만원 (2인) 176.8 (3인) 226.3 (4인) 275.0만원</li> <li>-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복지로)</li> </ul> </li> </ul>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교육급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내용: 교육활동지원비(초 461천원/중 654천원/고 727천원), 무상교육 제외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li> <li>-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li> <li>- 신청방법: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www.bokjiro.go.kr, 복지로) 신청</li> </ul> </li> </ul>	교육부 학생맞춤통합 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의료급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내용: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신한 수급권자가 임신 기간 중 의료급여 기관에서 받는 진료에 드는 비용(출산 비용을 포함)에 대하여 추가 급여를 실시할 수 있음</li> <li>- 지원대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와 해당 수급권자의 2세 미만 자녀</li> <li>- 신청방법: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신청서 등의 서류를 주소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제출</li> </ul> </li> </ul>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한부모가족지원법」

법적 근거	지원 내용	소관
제12조 (복지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류: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li> <li>-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 고등학교 재학(고 3 재학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li> </ul>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법적 근거	지원 내용	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기준: '26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li> <li>-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부모가족</li> </ul> </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지원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아동양육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3만 원 지급</li> <li>*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 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포함</li> </ul>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추가 아동 양육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추가 지급</li> <li>•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추가 지급</li> </ul>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학용품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등학교, 중학생 및 고등학교 아동 1인당 연 10만원지급</li> </ul>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생활보조금</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10만원 지급</li> </ul> </td> </tr> </tbody> </table>	구분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3만 원 지급</li> <li>*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 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포함</li> </ul>	추가 아동 양육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추가 지급</li> <li>•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추가 지급</li> </ul>	학용품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등학교, 중학생 및 고등학교 아동 1인당 연 10만원지급</li> </ul>	생활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10만원 지급</li> </ul>	
구분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3만 원 지급</li> <li>*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 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포함</li> </ul>											
추가 아동 양육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추가 지급</li> <li>•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추가 지급</li> </ul>											
학용품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등학교, 중학생 및 고등학교 아동 1인당 연 10만원지급</li> </ul>											
생활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10만원 지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한부모</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지원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아동양육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 1인당 월 37만원 또는 40만원</li> <li>- (0~1세 영아) 40만원</li> <li>- (2세 이상) 37만원</li> <li>*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아동양육비로 23만원을 받고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차액으로 월 17만원 또는 14만원 지급</li> </ul>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검정고시 등 학습지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응시생 또는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청소년 한부모에게 가구별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li> <li>* 학원비, 교재구입비, 학용품비, 교통비, 교복구입비 지원</li> </ul>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자립지원 촉진수당</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업·직업훈련, 직업훈련, 취업활동 등 자립활동에 참여 시 월 10만원 지급</li> </ul> </td> </tr> </tbody> </table>	구분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 1인당 월 37만원 또는 40만원</li> <li>- (0~1세 영아) 40만원</li> <li>- (2세 이상) 37만원</li> <li>*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아동양육비로 23만원을 받고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차액으로 월 17만원 또는 14만원 지급</li> </ul>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응시생 또는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청소년 한부모에게 가구별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li> <li>* 학원비, 교재구입비, 학용품비, 교통비, 교복구입비 지원</li> </ul>	자립지원 촉진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업·직업훈련, 직업훈련, 취업활동 등 자립활동에 참여 시 월 10만원 지급</li> </ul>			
구분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 1인당 월 37만원 또는 40만원</li> <li>- (0~1세 영아) 40만원</li> <li>- (2세 이상) 37만원</li> <li>*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아동양육비로 23만원을 받고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차액으로 월 17만원 또는 14만원 지급</li> </ul>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응시생 또는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청소년 한부모에게 가구별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li> <li>* 학원비, 교재구입비, 학용품비, 교통비, 교복구입비 지원</li> </ul>											
자립지원 촉진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업·직업훈련, 직업훈련, 취업활동 등 자립활동에 참여 시 월 10만원 지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가능여부 : 아동양육비 지급 가능</li> <li>- 아동양육비에 추가적인 복지급여 가능한 경우: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및 자립촉진수당(청소년한부모 대상), 시설입소자 생활보조금(생계급여 지급시 지원불가),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교육급여 지급시 지원 불가)</li> <li>-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li> <li>* 상담 및 문의 : 한부모 상담전화(☎1577-4206)</li> </ul>											

법적 근거	지원 내용	소관
<p><b>제13조</b> (복지자금의 대여)</p>	<p>〈미소금융 취약계층자립자금(한부모가족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품조건: 최대 1,200만원 한도, 연 3.0%, 최대 6년 상환(거치 1년 포함)</li> <li>- 지원 요건: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중 1개 이상 해당되면서 한부모가족인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주 및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가구주</li> <li>- 필요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 근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대출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li> <li>- 신청방법: 전국 미소금융지점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li> <li>- 상담 및 문의: 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li> </ul>	<p>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p>
<p><b>제14조</b> (직업능력 개발훈련) 제14조의2 (고용지원 연계)</p>	<p>〈한부모가족복지시설 고용지원 연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훈련기관: 지자체 여성인력개발센터 등</li> <li>- 신청방법: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시 지역사회 취업교육 및 자격훈련 기관정보 제공 * 상담 및 문의: 한부모 상담전화(☎1577-4206)</li> </ul> <p>〈가족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훈련기관: 가족센터 사례관리시 폴리텍 대학,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교육훈련 연계</li> <li>- 신청방법: 가족센터 방문 신청 * 상담 및 문의: 가족센터((☎1577-9337, www.familynet.or.kr), 가족상담전화(☎1577-4206),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li> </ul>	<p>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p> <p>성평등가족부 가족정책과</p>
<p><b>제17조</b> (가족지원 서비스)</p>	<p>〈온가족보듬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부모-자녀상담, 가족관계개선 프로그램 등 지원</li> <li>② 생활도움지원: 부모 및 자녀의 건강상태 악화 및 긴급·위기 상황 발생 등으로 인한 긴급 일시돌봄, 활동지원, 정서지원 등 전반적인 생활도움 서비스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미혼모·부 대상 출산·양육지원 사업을 통해 출산 관련 의료비, 양육용품 구입비(최대 100만원) 지원</li> <li>③ 심리상담 및 전문상담기관 연계: 가정으로 지원인력 파견 또는 센터 상담사업 연계, 필요 시 전문상담기관 연계 지원</li> <li>④ 법률지원: 청소년(한)부모의 법률 조력을 위한 법률기관 연계, 법률상담, 소송대리 지원 등</li> </ol> </li> </ul>	<p>성평등가족부 가족정책과</p>

법적 근거	지원 내용	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 대상: 한부모 가족 등 가족기능·역량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취약가족 및 위기사건을 직면한 긴급·위기가족</li> <li>-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시·군·구 가족센터 방문 신청</li> <li>* 상담 및 문의: 가족센터(☎1577-9337, www.familynet.or.kr), 가족상담전화(☎1577-4206),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li> </ul> <p>〈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내용: 한부모가족의 법적분쟁시 무료법률구조(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법률사무 지원)를 통해 정당한 권리구제 받을 수 있도록 소송비용(실비) 및 변호사 보수 등 지원</li> <li>-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한부모</li> <li>-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신청</li> <li>* 상담 및 문의 :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li> </ul>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제17조의6 (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등 지원)	<p>〈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혼모 건강관리 지원범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 입소시 출산전·후 의료비 지원(인당 35만원 이내)</li> <li>- 서비스 신청 및 이용 방법: 소관 시·군·구청 및 한부모 상담전화 (☎1577-4206)</li> </ul> <p>〈온가족보듬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혼모 건강관리 지원범위: 출산비 및 아이의 입원·예방접종비 등 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병원비(사례관리 대상에 한함)</li> <li>- 서비스 신청 및 이용 방법: 시·군·구 가족센터 방문 신청</li> <li>* 상담 및 문의 : 가족센터(☎1577-9337, www.familynet.or.kr), 가족상담전화(☎1577-4206),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li> </ul>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제18조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주택 분양 및 임대에 관한 정보 취득 방법: 읍·면·동장이 공고한 임대주택의 공급 계획 등을 통해 한부모 가족은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함</li> </ul>	국토교통부						
제19조 (시설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유형별 지원 내용 및 이용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 미혼모·부</li> <li>※ 유형별 주요기능 및 입소기간</li> </ul> <table border="1" data-bbox="374 1631 1100 1780"> <thead> <tr> <th data-bbox="374 1631 495 1702">유형 분류</th> <th data-bbox="495 1631 979 1702">주요기능</th> <th data-bbox="979 1631 1100 1702">입소기간 (연장)</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74 1702 495 1780">출산지원</td> <td data-bbox="495 1702 979 1780">임신, 출산 전후의 한부모와 자녀(만 3세 미만) 대상으로 건강 관리 및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서비스 집중 지원</td> <td data-bbox="979 1702 1100 1780">1년 6개월 (6개월 이내)</td> </tr> </tbody> </table>	유형 분류	주요기능	입소기간 (연장)	출산지원	임신, 출산 전후의 한부모와 자녀(만 3세 미만) 대상으로 건강 관리 및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서비스 집중 지원	1년 6개월 (6개월 이내)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유형 분류	주요기능	입소기간 (연장)						
출산지원	임신, 출산 전후의 한부모와 자녀(만 3세 미만) 대상으로 건강 관리 및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서비스 집중 지원	1년 6개월 (6개월 이내)						

법적 근거	지원 내용			소관
	유형 분류	주요기능	입소기간 (연장)	
	양육지원	만 6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를 위한 생활시설로 자녀 양육 관련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지원	3년 (1년 이내)	
	생활지원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와 자녀의 교육·학업·자립을 주로 지원	5년 이내 (2년 이내)	
	일시지원	배우자 학대 등의 이유로 단기간 입소한 한부모에게 비밀보장과 특별지원을 제공	6개월 (1년 이내)	
	※ 시설 입소시 공통 지원사항: 주거, 상담치료, 아이돌봄서비스 제공(본인부담금 국비지원) - 입소 방법: 시설별 입소 상담 후 소관 시·군·구청 승인 * 상담 및 문의: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50조

법적근거	지원내용	소관
제44조 (요양급여 관련) [령]제19조	< 의료지원 > - 입원 본인부담률: 자연분만 0%, 제왕절개분만 5% * 일반환자 입원 본인부담률 20% - 임신부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종별로) 10~40% * 일반환자 외래 본인부담률 종별 30~60%	
제50조 [령]제23조	< 임신·출산진료비(청소년 추가 지원 p.72 참조) > - 지원대상: 임신 및 출산(유산 및 사산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로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 - 지원내용: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출생일부터 2년 이내의 영유아에 대한 진료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포함) - 지원금액: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태아 당 100만원) * 분만취약지에 거주 임신부의 경우 20만원 추가 지급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이용권(국민행복카드)에 지원 포인트를 생성하여 임신·출산 진료비 등을 결제하는 「금융기관 위탁형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모자보건법」

법적 근거	지원내용	소관
제9조 (모자보건 수첩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방법: 임신 또는 출생사실 확인 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에서 표준모자보건수첩 발급</li> <li>- 신청기관: 보건소, 의료기관, 온라인(정부24, 맘편한 임신)</li> </ul>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제10조 (임산부·영유아· 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 한 경우, 입원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li> <li>•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치료를 위한 의료비(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지원</li> <li>•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자관리: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외래 선별·확진 검사비(본인부담금), 확진아 특수조제식이 및 의료비 지원</li> <li>•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난청 외래 선별·확진 검사비(본인부담금), 난청 확진아 대상 보청기(개당 135만원 한도) 지원</li> </ul> </li> <li>- 가정방문 가능한 경우: 해당 없음</li> <li>-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관할 보건소 신청 및 e보건소, 아이마중 앱 등 온라인 신청</li> </ul>	
제10조의4 (다태아 임산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첫만남이용권 지원,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보험급여과) 등 각 사업과에서 운영 중</li> <li>→ 기타 지원제도의 다태아 지원제도 등 참고</li> </ul>	
제10조의5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 난임부부, 유산 및 사산 경험 부부, 임산부 및 배우자, 산모 및 배우자, 양육모 및 배우자등</li> <li>- 서비스 내용: 난임스트레스, 산전·산후 우울감, 양육 스트레스 상담 제공, 프로그램 운영</li> <li>- 이용방법: 1:1일상담으로 난임·우울증상담센터 누리집에서 온라인 예약</li> </ul>	
제15조의17 (지방자치단체 산후조리원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격: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이용자격 기준 설정</li> <li>-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신청 및 이용방법: 지자체별 공공산후조리원에 따라 홈페이지 접수 등 상이</li> </ul>	

법적 근거	지원내용	소관																																
<p><b>제15조의18</b> (산후조리 도우미의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내용: 출산가정에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을 위한 건강관리사를 파견</li> <li>- 지원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및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외지원)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산(보전금+지방비) 범위 내에서 광역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아래 출산가정(또는 산모)</li> </ul> </li> <li>- 서비스 신청: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정부 24에 온라인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li> <li>*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가능(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li> </ul> </li> <li>- 이용방법: 서비스 상품 선택 및 제공기관 선택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신청</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상담·조사</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이용자 선정</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통지</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상담</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비우처 생성</td> </tr> <tr> <td>본인·가구원</td> <td></td> <td>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 "자격확인" 및 "건강보험료 산정·부과액" 확인</td> <td></td> <td>이용자 자격 판정 및 선정 결과 전송</td> <td></td> <td>자격 결정여부 통지</td> <td></td> <td>상담 및 상품선택 (선택권 행사)</td> <td></td> <td>계약체결, 본인부담금 납부, 제공기관이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등록</td> </tr> <tr>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 height: 15px; margin: 5px 0;"></div>                     보건소 ⇄ 이용자                 </td>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 height: 15px; margin: 5px 0;"></div>                     제공기관 ⇄ 이용자                 </td> </tr> </table> </div>	신청	-	상담·조사	-	이용자 선정	-	통지	-	상담	-	비우처 생성	본인·가구원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 "자격확인" 및 "건강보험료 산정·부과액" 확인		이용자 자격 판정 및 선정 결과 전송		자격 결정여부 통지		상담 및 상품선택 (선택권 행사)		계약체결, 본인부담금 납부, 제공기관이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등록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 height: 15px; margin: 5px 0;"></div> 보건소 ⇄ 이용자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 height: 15px; margin: 5px 0;"></div> 제공기관 ⇄ 이용자					
신청	-	상담·조사	-	이용자 선정	-	통지	-	상담	-	비우처 생성																								
본인·가구원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 "자격확인" 및 "건강보험료 산정·부과액" 확인		이용자 자격 판정 및 선정 결과 전송		자격 결정여부 통지		상담 및 상품선택 (선택권 행사)		계약체결, 본인부담금 납부, 제공기관이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등록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 height: 15px; margin: 5px 0;"></div> 보건소 ⇄ 이용자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 height: 15px; margin: 5px 0;"></div> 제공기관 ⇄ 이용자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구분	지원내용	소관
<p><b>제10조, 제11조</b>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의 신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 및 지원내용: 양육비 상담, 협의, 소송, 추심 및 모니터링 지원 등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원스톱 종합 서비스 제공</li> <li>-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는 법률지원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이 없는 경우 이를 확보하기 위한 소송을 지원</li> <li>•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으로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증서로 판결문, 심판문, 조정조서, 양육비 부담조서 등이 이에 해당하며, 집행권원이 확보된 이후에만 채무자에 대한 법적인 조치가 가능</li> </ul> </li> <li>- 서비스 신청방법: 양육비 상담전화(☎1644-6621)</li> <li>* 양육비 상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a href="http://www.childsupport.or.kr">www.childsupport.or.kr</a></li> </ul>	<p>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p>
<p><b>제21조</b> (양육비 선지급 신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내용: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18세까지 지원 (단, 지원 금액은 집행권원상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li> <li>- 신청자격: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li> <li>- 서비스 이용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a href="http://www.childsupport.or.kr">www.childsupport.or.kr</a>)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 우편 접수</li> <li>* 상담 및 문의: 양육비 상담전화(☎1644-6621)</li> </ul>	

□ 제8조(위기임산부에 대한 산전·산후 보호 및 지원)

● 위기 임산부의 보호시설 입소

구분	지원내용	소관								
<p>시설입소</p>	<p>〈한부모가족복지시설〉                      p.62 시설 이용 지원 상담 참조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 한부모가족</li> <li>○ 다만,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한부모 및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제외)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입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미혼자 포함)이며,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 해당하는 출산지원시설 입소 희망자</li> <li>-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상의 위기임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시설입소(이용) 신청서 작성·요청</li> </ul> </li> <li>- 「인구감소지역법」 상의 '인구감소지역'에 설치·운영 중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 희망자</li> </ul> </li> </ul> </div>	<p>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p>								
	<p>〈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유형별 지원내용: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재활을 지원</li> <li>- 이용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우선 입소대상 :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li> </ol> </li> </ul> <table border="1" data-bbox="420 1457 1100 1645"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30%;">시설 종류</th> <th style="width: 20%;">대상</th> <th style="width: 50%;">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능 제한(X1) 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중증장애인거주시설</td> <td>성인/ 아동</td> <td>240점/190점</td> </tr> <tr> <td>장애유형별거주시설,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td> <td>성인/ 아동</td> <td>120점/110점</td> </tr> </tbody> </table> <p>※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점수와 관계없이 입소 가능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는 시설 입소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필수조건)으로 지자체 상황 혹은 지방 장애인복지위원회 등에서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가능</p>	시설 종류	대상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능 제한(X1) 점수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성인/ 아동	240점/190점	장애유형별거주시설,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성인/ 아동	120점/110점
시설 종류	대상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능 제한(X1) 점수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성인/ 아동	240점/190점								
장애유형별거주시설,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성인/ 아동	120점/110점								

구분	지원내용	소관									
	<p>2) 실비입소이용자 : 종합조사 결과를 충족하고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 담당부서에서 입소 결정</p> <p>3) 보장시설 여부에 따른 기초수급자 급여의 종류</p> <table border="1" data-bbox="427 506 1097 625"> <thead> <tr> <th>구분</th> <th>급여의 종류</th> <th>시설 이용</th> </tr> </thead> <tbody> <tr> <td>보장시설</td> <td>시설급여</td> <td>무료이용</td> </tr> <tr> <td>보장시설이 아닌 시설</td> <td>생계급여</td> <td>실비이용</td> </tr> </tbody> </table> <p>※ 보장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제외)</p> <p>※ 기초수급자가 생활하는 시설이더라도 동 시설의 운영주체가 개인이거나, 정부(지자체 포함)로부터 운영비와 인건비를 전액 지원받는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 받음(「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p> <p>- 입소방법:</p> <div style="text-align: center;">  <pre>             graph LR             A[시설입소(이용) 가능 여부 확인] --&gt; B[서비스 신청 및 접수]             B --&gt; C[종합조사 의뢰]             C --&gt; D[의뢰 접수 및 종합조사 실시]             D --&gt; E[종합조사 결과 전송]             E --&gt; F[결과안내]             A --- A1[읍면동 → 시군구]             B --- B1[읍면동]             C --- C1[시군구 → 공단]             D --- D1[국민연금공단]             E --- E1[공단 → 시군구]             F --- F1[시군구]             </pre> </div> <p>- 입소기간: 별도 제한 없음</p> <p>※ 다만,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은 1회 이용 기간 30일 이내(필요한 경우 연장은 가능하나, 6개월 이상 이용하고자 할 경우 시군구의 승인 필요)</p>	구분	급여의 종류	시설 이용	보장시설	시설급여	무료이용	보장시설이 아닌 시설	생계급여	실비이용	
구분	급여의 종류	시설 이용									
보장시설	시설급여	무료이용									
보장시설이 아닌 시설	생계급여	실비이용									
	<p><b>〈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b>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p> <p>- 시설유형별 지원내용 및 이용대상: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정신질환자 등에게 요양, 주거, 생활지도, 교육, 직업재활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으로의 복귀, 재활, 자립 및 사회 적응을 지원</p> <p>- 입소방법: 입소신청서, 보호의무자 동의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등 시설 입소에 필요한 서류를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함</p> <p>- 입소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신요양시설 : 입소기간 제한 없음</li> <li>정신재활시설 : 입소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1년 단위 3회까지 연장 가능</li> </ul>	<p>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정책과</p>									
<p>산후조리 도우미 이용</p>	<p>〈산후조리 관련〉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산후조리 지원 상담 참조(p.52)</p>										

## 2 기타 지원 제도

### ● 임신 지원 제도

구분	지원내용	소관
임산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내용: 임산부 대상 인플루엔자 4가 백신 1회 접종 지원</li> <li>- 지원대상: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임신 여부를 확인한 임산부</li> <li>- 지원기간: 2024.10.2.~2025.4.30.</li> <li>-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에서 접종</li> <li>* 접종기관 정보는 예방접종도우미(<a href="https://nip.kdca.go.kr">https://nip.kdca.go.kr</a>)에서 확인</li> </ul>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고속열차 임산부 할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내용: (KTX) 임산부 특실요금 면제 (에스알) 임산부 운임할인 30%</li> <li>- 지원대상: 임산부 및 동반 1인</li> <li>-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정부24 등에서 '임산부'로서 인증 받은 철도운영사 회원이 고속열차 이용시 할인</li> </ul>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태아검진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하고, 건강 진단 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됨</li> <li>*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 실시 기준: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li> <li>- 대상: 임신한 여성 근로자</li> </ul>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 정책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근로기준법 시행규칙」제12조의3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됨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 허용 가능)</li> <li>- 대상: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제12조의3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li> <li>- 신청방법: 단축 개시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li> </ul>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 정책과

구분	지원내용	소관
<p><b>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함</li> <li>- 대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li> <li>- 신청방법: 변경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예정 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에 임신 사실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li> </ul>	<p>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 정책과</p>
<p><b>에너지바우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내용: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냉·난방 비용을 일부 보조 * 대상(총 6종)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li> <li>-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세대원 특성*을 만족하는 가구 * 임신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영유아(7세 이하의 취학전 아동) 다자녀(19세 미만인 자녀 2명 이상) 한부모(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li> <li>-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혹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 : 2026.6월 경~12월말(보도 등을 통한 별도 공지)</li> </ul>	<p>기후환경에너지부 기후적응과</p>
<p><b>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내용: 임신 1회당 의료비 120만원 지원</li> <li>- 지원대상: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li> <li>-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신청 시 자동 연계, 전자 바우처 포털에서 신청 및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사용</li> </ul>	<p>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p>
<p><b>생애초기 건강관리 지원사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내용: 보건소 간호사, 사회복지사 전문인력이 출산가정(임산부, 만 2세 미만 영아)을 방문하여 건강상담, 영아 발달상담 및 양육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li> <li>- 지원대상: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아 가정</li> <li>-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보건소에 등록, 서비스 신청 후 영유아 건강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가정 방문</li> </ul>	<p>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p>
<p><b>의료급여 임신·출산 치료비 지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내용: 임신부와 2세 미만 자녀가 모든 의료급여기관에서 받는 진료·약제·치료재료 등 구입(비급여 포함) 시 사용 가능한 진료비를 태아당 100만원 지원</li> <li>-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사산, 자궁외 임신 포함)한 수급자와 해당 수급자의 2세 미만 영·유아</li> </ul>	<p>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p.59 보험급여과 지원 유사 사업)</p>

구분	지원내용	소관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① (신청 방법) 임신 사실 증명서 및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② (이용방법) 의료급여기관이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차감 요청하면 공단이 의료급여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주 단위 지급, 수급자 대상 바꾸처 발급 불요	
<b>아이마중 (임신·출산 통합서비스)</b>	- 서비스 내용: 모자보건수첩 제공, 임신부 신고, 엽산제·철분제 신청, 산전·산후 우울증 자가검진, 주차별 임신정보 및 일상생활안내, 의료비 지원정책안내 - 지원대상: 임신부 및 영유아 부모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모바일앱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b>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b>	- 서비스 내용: 고위험 임신부 입원치료비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병실입원료,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 단,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 - 지원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신부 * 조기 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 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 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지원단가: 1인당 300만원 한도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일 기준 임신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거나, e보건소-공공보건 포털( <a href="https://www.e-health.go.kr">https://www.e-health.go.kr</a> ), 아이마중 APP 등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b>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b>	- 서비스 내용: 임신기간 중 산모가 진료과목 상관없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일정 비율 부담 경감(상급종합병원 40%, 종합병원 30%, 병원 20%, 의원 10%) 대상 - 서비스 대상: 임신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b>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b>	- 서비스 내용: 1) 철분제(임신 16주부터 5개월분) 지원하여 철분결핍성 빈혈로 유발되는 조산, 유산, 산모 사망 예방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지자체)

구분	지원내용	소관
	2) 엽산제(임신 전·후 3개월까지) 지원하여 태아의 유산, 사산, 선천성 기형 등을 예방 * 보건소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다를 수 있음. - 지원대상: 보건소에 등록된 모든 임신부 - 지원단가: 1) 철분제: 1인당 최대 5개월분 2) 엽산제: 1인당 최대 3개월분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문의	
<b>영양플러스사업</b>	- 서비스 내용: 영양평가를 통해 영양위험요인이 발견된 대상자에게 영양교육·상담실시(월 1회 이상) 및 보충식품패키지(6종) 제공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임신부, 출산·수유부 및 영유아(5세 미만)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 가진 자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거주지역 내 관할 보건소 신청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b>임신·출산 진료비 (건강보험)</b>	p.63 동일 사업 - 사용기간: 이용권 발급일 ~ 분만예정일, 출산(유·사산)일부러 2년까지,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자동 소멸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국민행복카드 발급 가능 카드사(은행),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방문 및 공단·정부24 누리집, 공단·카드사(은행) 모바일 앱에서 신청 2) 산부인과 전문의가 임신·출산 사실을 온라인에 입력한 경우 전화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b>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b>	- 서비스 내용: 임신부 및 2세 미만 영유아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 지원대상: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임신헌인서' 상 '임신헌인일' 기준 19세까지, 소득·재산 기준 없음 * 국민건강보험 가입된 19세 이하 청소년산모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중복지급 가능 - 지원단가: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국민행복카드)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구분	지원내용	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www.socialservice.or.kr) 온라인 신청 → 임신확인서, 주민등록 등본을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로 우편 송부</li> </ul>																												
임산부 배려 배지 제작·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내용: 임산부 배려 배지(엠블럼 가방고리 등) 제작 및 배포, SNS 매체 및 영상 통한 임산부 배려 홍보 등</li> <li>- 지원대상: 보건소에 등록된 모든 임산부</li> <li>-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임신 확인 시 보건소에서 배부</li> </ul>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지자체)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내용: 심리상담, 정서적 지지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지원</li> <li>- 지원대상: 난임 환자 및 임산부</li> <li>-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상담센터 상담 예약 후 방문 또는 비대면 상담</li> </ul>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수탁기관</th> <th>연락처(누리집 주소)</th> </tr> </thead> <tbody> <tr> <td>중앙</td> <td>국립중앙의료원</td> <td>02-2276-2276 (www.nmc22762276.or.kr)</td> </tr> <tr> <td>인천</td> <td>가천대학교길병원</td> <td>032-460-3269 (www.id-incheon.co.kr)</td> </tr> <tr> <td>경기</td> <td>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td> <td>031-255-3374 (www.happyfamily3375.or.kr)</td> </tr> <tr> <td>대구</td> <td>경북대학교병원</td> <td>053-261-3375 (www.healthymom.or.kr)</td> </tr> <tr> <td>전남</td> <td>현대여성아동병원</td> <td>061-901-1234 (www.hwc1234.co.kr)</td> </tr> <tr> <td>경북</td> <td>안동의료원</td> <td>054-850-6367 (www.happymoa.kr)</td> </tr> <tr> <td>서울</td> <td>연세대학교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td> <td>강남센터 02-2019-4581 송파센터 02-6956-6248 (www.mindcare-for-family.kr)</td> </tr> <tr> <td>경기북부</td> <td>동국대학교일산병원</td> <td>031-961-8500 (happyfamily.dumc.or.kr)</td> </tr> </tbody> </table>		구분	수탁기관	연락처(누리집 주소)	중앙	국립중앙의료원	02-2276-2276 (www.nmc22762276.or.kr)	인천	가천대학교길병원	032-460-3269 (www.id-incheon.co.kr)	경기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	031-255-3374 (www.happyfamily3375.or.kr)	대구	경북대학교병원	053-261-3375 (www.healthymom.or.kr)	전남	현대여성아동병원	061-901-1234 (www.hwc1234.co.kr)	경북	안동의료원	054-850-6367 (www.happymoa.kr)	서울	연세대학교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강남센터 02-2019-4581 송파센터 02-6956-6248 (www.mindcare-for-family.kr)	경기북부	동국대학교일산병원	031-961-8500 (happyfamily.dumc.or.kr)
	구분		수탁기관	연락처(누리집 주소)																									
	중앙		국립중앙의료원	02-2276-2276 (www.nmc22762276.or.kr)																									
	인천		가천대학교길병원	032-460-3269 (www.id-incheon.co.kr)																									
	경기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	031-255-3374 (www.happyfamily3375.or.kr)																									
	대구		경북대학교병원	053-261-3375 (www.healthymom.or.kr)																									
	전남		현대여성아동병원	061-901-1234 (www.hwc1234.co.kr)																									
	경북		안동의료원	054-850-6367 (www.happymoa.kr)																									
	서울		연세대학교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강남센터 02-2019-4581 송파센터 02-6956-6248 (www.mindcare-for-family.kr)																									
경기북부	동국대학교일산병원	031-961-8500 (happyfamily.dumc.or.kr)																											
장애인 건강 주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내용: 장애인이 의사 1인을 주치의로 선택하여 만성질환 또는 전문장애관리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받는 제도</li> <li>- 이용대상: 등록장애인</li> <li>-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치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과정 이수 후 참여 신청</li> <li>• (장애인)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주치의 및 의료기관 정보를 확인하고 주치의 선택 후 의료기관 방문하여 서비스 이용 신청</li> </ul> </li> </ul>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구분	지원내용	소관
장애친화 산부인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내용: 여성장애인이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지정하여, 시설·장비·인력을 갖추고 편의·의사소통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부인과 지정·지원</li> <li>- 산부인과 목록: 서울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울산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예수병원, 구미차병원, 이대목동병원, 성애병원(10개소)</li> </ul>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 출산 지원 제도

구분	지원내용	소관
출산예정 미혼모 긴급주거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내용: 출산예정 미혼모(지자체 장 등 추천)에게 긴급주거지원</li> <li>- 지원대상: 지자체장 등이 추천한 출산예정 미혼모</li> <li>-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관할 지자체에 긴급주거지원 신청 후 선정된 사람에게 단기(6개월 내)로 긴급주거 지원 → 지자체와 LH가 협의하여 지원기간 연장 등 가능</li> </ul>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소득활동은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인 출산여성에게 150만원 (월 50만원씩 3개월)의 출산급여 지원</li> <li>-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 *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180일)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 및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li> <li>- 신청방법 :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고용지원센터 직접신청 또는 고용24 홈페이지 신청)</li> </ul>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 정책과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내용</li> <li>1) 휴가: 사용자가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 부여, 최초 60일 (다태아 75일)은 유급</li> <li>2) 급여 지원: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li> </ul>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 정책과

구분	지원내용			소관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458 374 583 447">구분</th> <th data-bbox="583 374 836 447">최초 60일 (다태아 75일)</th> <th data-bbox="836 374 1088 447">마지막 30일 (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58 447 583 615">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td> <td data-bbox="583 447 836 615"> <b>&lt;정부&gt;</b>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220만원) 지급  <b>&lt;사업주&gt;</b> 통상임금과 정부 지원 상한액(월 220만원)과의 차액지급                 </td> <td data-bbox="836 447 1088 615"> <b>&lt;정부&gt;</b>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220만원)지급                 </td> </tr> <tr> <td data-bbox="458 615 583 688">대규모 기업 소속 근로자</td> <td data-bbox="583 615 836 688"> <b>&lt;사업주&gt;</b> 통상임금 지급                 </td> <td data-bbox="836 615 1088 688"> <b>&lt;정부&gt;</b>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220만원) 지급                 </td> </tr> </tbody> </table> <p data-bbox="458 717 1088 983">                     - 대상:                      (휴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급여)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신청방법:                      (휴가) 사용자에게 신청                      (급여) 고용센터 또는 고용24홈페이지로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p>	구분	최초 60일 (다태아 75일)	마지막 30일 (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b>&lt;정부&gt;</b>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220만원) 지급 <b>&lt;사업주&gt;</b> 통상임금과 정부 지원 상한액(월 220만원)과의 차액지급	<b>&lt;정부&gt;</b>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220만원)지급	대규모 기업 소속 근로자	<b>&lt;사업주&gt;</b> 통상임금 지급	<b>&lt;정부&gt;</b>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220만원) 지급	
구분	최초 60일 (다태아 75일)	마지막 30일 (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b>&lt;정부&gt;</b>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220만원) 지급 <b>&lt;사업주&gt;</b> 통상임금과 정부 지원 상한액(월 220만원)과의 차액지급	<b>&lt;정부&gt;</b>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220만원)지급									
대규모 기업 소속 근로자	<b>&lt;사업주&gt;</b> 통상임금 지급	<b>&lt;정부&gt;</b>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220만원) 지급									
<p data-bbox="249 1359 423 1430"><b>유산·사산휴가 및 급여 지원</b></p>	<p data-bbox="458 1011 1088 1778">                         - 내용                          1) 휴가: 사용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청구 시 임신기간에 따라 10~90일의 유산·사산휴가 부여, 최초 60일은 유급                          ※ 임신기간별 휴가기간                          - 15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16주~2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22주~27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2) 급여 지원: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동일                          - 대상:                          (휴가) 유산·사산한 근로자                          (급여)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신청방법:                          (휴가) 휴가 청구 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                          (급여)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홈페이지로 유산·사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p>	<p data-bbox="1126 1338 1262 1451">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 정책과</p>									

구분	지원내용	소관
<p><b>기간제·파견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액 지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내용: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근로 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남은 휴가기간에 대해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li> <li>- 지원수준: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동일</li> <li>- 지원대상: 출산(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파견근로자(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필요)</li> <li>- 신청방법: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홈페이지로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 날 이후 1개월부터 해당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li> </ul>	<p>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 정책과</p>
<p><b>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등 지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내용: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노무제공자에게 출산전후(유산·사산)급여를 지급</li> <li>- 지원대상: 출산(유산·사산)일 이전에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 고용 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인 예술인·노무제공자</li> <li>- 지원수준: (예술인) 출산일 직전 1년(또는 18개월)간 월평균 보수의 100%(상한액 월 220만원, 하한액 월 60만원) (노무제공자) 출산일 직전 1년(또는 18개월)간 월평균보수의 100% (상한액 월 220만원, 하한액 월 80만원)</li> <li>- 지원기간: (출산) 출산 전과 후를 연속하여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필요 (유산·사산) 임신기간에 따라 10일~90일(근로자 유산·사산휴가 기간과 동일)</li> <li>- 신청방법: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홈페이지로 유산·사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li> </ul>	<p>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 정책과</p>
<p><b>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지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내용</li> <li>1) 휴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 고지 시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휴가기간은 유급,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 사용 가능</li> </ul>	<p>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 정책과</p>

구분	지원내용	소관
	<p>2) 급여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휴가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1,684,210원) 지급)</p> <p>* 통상임금과 정부 지원 상한액(1,684,210원)과의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p> <p>*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지급</p> <p>- 대상: (휴가)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p> <p>- 신청방법: (휴가) 사업주에게 고지 (급여)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홈페이지로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p>	
<p><b>의료급여 (요양비)</b></p>	<p>- 서비스 내용: 수급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 급여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 장소에서 출산 시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자에게 요양비로 지급</p> <p>- 지원 대상</p> <p>① (질병·부상·출산 요양비)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기관이 없어 질병·부상·출산(사산은 16주 이상)에 대해 요양받은 의료급여 수급자</p> <p>② (소모성 재료 구입비) 만성신부전증 환자(자동복막 투석 복막 관류액 등), 당뇨병 환자(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관리기기), 신경인성 방광 환자(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비)</p> <p>③ (기기 대여료) 산소치료 또는 인공호흡기 필요 환자(산소발생기 또는 인공호흡기 대여료 등), 기침 유발기 또는 양압기 필요 환자(기침 유발기 또는 양압기 대여료)</p> <p>- 서비스 신청 및 이용 방법: 요양비 지급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p>	<p>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p>
<p><b>해산비용지원</b></p>	<p>〈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해산급여)〉</p> <p>- 서비스 내용: 해산비 지급</p> <p>- 지원대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출산 예정 포함) 경우</p>	<p>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p>

구분	지원내용	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단가: 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인당 70만원 지급 (쌍둥이 출산시 140만원)</li> <li>-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li> </ul> <p><b>&lt; 긴급복지지원제도(해산비) &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내용: 해산비 지원</li> <li>- 지원대상: 위기상황에 놓인 긴급지원 주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 시 해산비 지원</li> <li>*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li> </ul> </li> <li>- 지원단가: 해산비 1인당 70만원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li> <li>-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지원요청 또는 신고</li> </ul>	
<p><b>요양비(출산비) 지원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가 요양기관(병·의원, 조산원)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출산비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출산 제외, 입양자녀 제외</li> </ul> </li> <li>- 서비스 내용: 출산비 지급</li> <li>- 지원단가: 자녀수 상관없이 출산 시마다 25만원 지원(요양비지급 청구서 접수일이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li> <li>-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강보험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li> <li>2) 의료급여수급자: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통해 신청</li> </ol> </li> </ul>	<p>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p>
<p><b>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내용: 출산진료비 지원</li> <li>-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중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또는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사산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첫만남이용권과 지원목적을 달리하여 중복 지급 가능</li> </ul> </li> <li>- 지원단가: 출산(유산·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li> <li>-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정부24 신청</li> </ul>	<p>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p>

● 양육 지원 제도

구분	지원내용	
<p><b>늘봄학교</b> ※ '24~'26년 늘봄학교 단계적 완성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내용: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단일 체제로,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 성장·발달을 위해 종합 교육프로그램 제공</li> <li>- 지원대상: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 ※ ('24) 초 1 → ('25) 초 1~2 → ('26) 모든 초등학교</li> <li>- 서비스 신청 및 문의처: 재학 중인 초등학교</li> </ul>	<p>교육부 늘봄학교 정책과</p>
<p><b>초등돌봄교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내용: 학생의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단체활동 프로그램 및 숙제·독서·휴식 등 개인활동, 급·간식 지원</li> <li>- 지원대상: 돌봄이 꼭 필요한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다자녀·다문화가정 등의 초등학생(학교 여건에 따라 대상자 선정)</li> <li>- 서비스 신청 및 문의처: 재학 중인 초등학교</li> </ul>	<p>교육부 늘봄학교 정책과</p>
<p><b>유아학비 지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내용: (유아학비) 유아학비 및 방과후 과정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공립유치원: 유아학비 10만원, 방과후과정비 5만원</li> <li>•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28만원, 방과후과정비 7만원</li> </ul>                             (저소득층 유아학비) 월 최대 20만원 지원, 추가 학부모 부담금(교육과정비+방과후과정비+특성화활동비)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li> <li>- 지원대상: (유아학비) 유치원이용 3세~5세 유아, (저소득층 유아학비) 유아학비 지원 자격 있고, 사립유치원 이용 법정저소득층 유아</li> <li>-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 복지로 신청</li> </ul>	<p>교육부 영유아재정과</p>
<p><b>다자녀가정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내용: 승용차(신차) 구입 시 최대 300만원의 개별소비세 면제 * 친환경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도 추가 중복 적용 가능 * '23년 1월 1일 이후 판매 분부터 적용</li> <li>- 지원대상: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li> <li>- 지원단가: 최대 300만원의 개별소비세 면제</li> <li>- 신청방법: 관련서류 제출 시 자동차 가격에서 면제</li> </ul>	<p>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 세제과</p>

구분	지원내용	
<p><b>자녀세액공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내용: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입양자 및 위탁아동으로서 8세 이상 사람에 대해 자녀수에 따라 해당 금액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li> <li>- 지원대상: 만 8세 이상 자녀를 둔 세대주</li> <li>- 지원단가: 첫째 연 25만원, 둘째 연 30만원, 셋째부터 인당 연 40만원</li> <li>- 신청방법: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해당되는 자녀 세액공제항목 기입하여 제출</li> </ul>	<p>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p>
<p><b>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내용: 국가예방접종 지원 백신 18종에 대해 무료 접종</li> <li>- 지원대상: 12세 이하(2011. 1. 1. 이후 출생자) 영유아 및 어린이</li> <li>- 지원기간: 2024.1.1.~2024.12.31.</li> <li>-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에서 접종 * 접종기관 정보는 예방접종도우미(<a href="https://nip.kdca.go.kr">https://nip.kdca.go.kr</a>)에서 확인</li> </ul>	<p>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p>
<p><b>다자녀 가정 공공요금 감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내용: 다자녀 가정 국립 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li> <li>- 지원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li> <li>- 지원내용: 입장료 면제 및 객실사용료(비수기 주중 30% 할인, 성수기 및 주말 10%) 및 야영장(비수기 주중 20%, 성수기 및 주말 10%) 감면</li> <li>-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숲나들e 홈페이지 예약 시 다자녀 가족 인증절차를 거쳐 감면 혹은 시설이용 시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후 감면</li> </ul>	<p>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p>
<p><b>다자녀 가정 입장료 감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내용: 국립수목원 가족 관람료 면제 (어른 1,000원, 청소년 700원, 어린이 500원)</li> <li>- 지원대상: 막내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족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다자녀(다둥이) 카드를 소지한 가구</li> <li>-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으로 입장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방문 전 사전 예약(국립수목원 인터넷 예약시스템, 전화, 네이버 앱, 국민은행 앱, 국민카드 앱) 후, 다자녀가족 입장료 면제 시 신분증(증명서 등) 제시, 1일 예약가능한 차량범위(오전 오후 각 300대) 내에서 입장예정일 1개월 전부터 당일 입장마감 시간 1시간 전까지 예약 가능</li> </ul>	<p>국립수목원 전시교육연구과</p>

구분	지원내용	
<p><b>통합문화이용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내용: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 시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지원,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 관련 가맹점(온/오프라인)에서 이용 가능</li> <li>-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세 이상(2018. 12. 31. 이전 출생자)</li> <li>- 지원단가: 1인당 연간 13만원</li> <li>-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카드 재충전 신청(신분증 지참),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웹/모바일)에서 신규발급 또는 카드 재충전 신청,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 ARS 재충전 신청</li> </ul>	<p>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p>
<p><b>스포츠강좌이용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내용: 스포츠강좌(태권도, 수영, 축구 등) 수강료 지원 이용권 제공</li> <li>-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5~18세 유·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 19~64세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과 중복이용 불가)</li> </ul> </li> <li>- 지원단가: 1인당 매월 10만원 이내</li> <li>- 신청방법: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시·군·구청을 방문해 서면 신청→대상자 선정→전용카드 발급→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온라인 결제 후 강좌 수강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수강가능한 시설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svoucher.kspo.or.kr)-시설 및 강좌조회'에서 확인 가능</li> <li>*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dvoucher.kspo.or.kr)에서 확인 가능</li> </ul> </li> </ul>	<p>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p>
<p><b>다자녀 가정 공공요금 감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내용: 다자녀가정 문화시설 이용요금 할인</li> <li>- 지원대상: 다자녀 가정</li> <li>- 서비스 내용: 국립극장, 국립국악원, 국립현대미술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전시 또는 자체공연 할인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극장: 다동이카드 소지자 20% (1개당 1매, 다동이카드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현장확인)</li> <li>* 임산부 동일 할인 적용</li> <li>* 국립국악원: 다동이카드 소지자 20%(구성원 모두)</li> <li>* 임산부 동일 할인 적용</li> <li>* 국립현대미술관: 다동이카드 소지자 20%</li> </ul> </li> <li>- 신청방법: 다동이카드 제시 후 할인</li> </ul>	<p>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시작예술 디자인과</p>

구분	지원내용																
<p><b>자녀장려금 지급</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내용: 자녀양육비 지원</li> <li>- 지원대상: 2023년 연간 근로·사업(전문직 제외)·종교인 소득 있는 거주자 중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li> </ul>				<p>국세청 장려세제과</p>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462 566 601 641">가구구분</th> <th data-bbox="601 566 765 641">가구요건</th> <th data-bbox="765 566 928 641">소득요건 (부부합산)</th> <th data-bbox="928 566 1091 641">재산요건 (가구원합산)</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62 641 601 688">단독가구</td> <td colspan="3" data-bbox="601 641 1091 688">자녀장려금 대상 아님</td> </tr> <tr> <td data-bbox="462 688 601 735">홀벌이가구</td> <td data-bbox="601 688 765 735">18세 미만</td> <td data-bbox="765 688 928 735">7천만원 미만</td> <td data-bbox="928 688 1091 735">2.4억 원 미만</td> </tr> <tr> <td data-bbox="462 735 601 784">맞벌이가구</td> <td data-bbox="601 735 765 784">자녀 있음</td> <td data-bbox="765 735 928 784"></td> <td data-bbox="928 735 1091 784"></td> </tr> </tbody> </table>	가구구분	가구요건	소득요건 (부부합산)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단독가구	자녀장려금 대상 아님			홀벌이가구	18세 미만	7천만원 미만	2.4억 원 미만	맞벌이가구	자녀 있음	
가구구분	가구요건	소득요건 (부부합산)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단독가구	자녀장려금 대상 아님																
홀벌이가구	18세 미만	7천만원 미만	2.4억 원 미만														
맞벌이가구	자녀 있음																
<p><b>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내용: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li> <li>*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250cc 이하 이륜자동차</li> <li>※ 취득세 200만원 이하는 면제, 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율 적용</li> <li>※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는 취득세 140만원 이하는 면제, 140만원 초과 시 140만원 경감</li> <li>-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li> <li>-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시·군·구청 세무(재무)과에 문의 후 신청</li> </ul>				<p>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 제도과</p>												
<p><b>출산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내용: 출산 가구가 출생 자녀와 실거주 목적으로 12억 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득세 500만원 한도 면제(1가구 1주택 限)</li> <li>* 출산일 이후 5년 이내 또는 출산일 전 1년 이내(24.1.1. 이후) 취득하는 경우</li> <li>- 지원대상: '24.1.1.부터 '25.12.31.까지 자녀를 출산한 자, 배우자(미혼모·미혼부 포함)</li> <li>-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시·군·구청 세무(재무)과에 문의 후 신청</li> </ul>				<p>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 제도과</p>												

구분	지원내용	
다자녀 가정 주거 안정 지원	<b>공공분양 (선택형, 일반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내용: 다자녀가구에게 내집 마련 기회 제공</li> <li>- 지원대상: 2자녀 이상 자녀(태아포함)를 둔 자</li> <li>-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공공주택사업자별(LH, SH 등)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 신청 후 계약 체결</li> </ul> <p style="text-align: right;">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p>
	<b>국민 임대주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내용: 다자녀가구에게 인근 시세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30년까지 거주가능한 임대주택 지원</li> <li>- 지원대상: 2자녀 이상 자녀(태아 포함)를 둔 자</li> <li>-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공공주택사업자별(LH, SH 등)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 신청 후 계약 체결</li> </ul> <p style="text-align: right;">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p>
	<b>통합 공공임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내용: 다자녀가구에게 인근 시세 35~9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30년까지 거주가능한 임대주택 지원</li> <li>- 지원대상: 2자녀 이상 자녀(태아 포함)를 둔 자</li> <li>-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공공주택사업자별(LH, SH 등)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 신청 후 계약 체결</li> </ul> <p style="text-align: right;">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p>
	<b>장기 전세주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내용: 다자녀가구에게 인근 시세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 지원</li> <li>- 지원대상: 2자녀 이상 자녀(태아 포함)를 둔 자</li> <li>-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공공주택사업자별(LH, SH 등)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 신청 후 계약 체결</li> </ul> <p style="text-align: right;">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p>
	<b>기존주택 매입임대 주택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내용: 다가구주택·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등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 저렴하게 임대, 가구 특성상 지원 내용 상이, 시세 30~4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li> <li>- 지원대상: (다자녀 매입임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2명 이상 미성년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li> <li>* 소득/자산요건 있음(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li> <li>-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li> </ul> <p style="text-align: right;">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p>

구분	지원내용					
주택구입 자금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내용: 내집마련 디딤돌, 주거안정 구입자금, 오피스텔 구입 자금대출 등 지원 시 2자녀 이상 가구에는 대출요건 완화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디딤돌의 경우 연소득(6천만원→7천만원), 담보주택 평가액(5억원→6억원), 대출한도(2.5억원→4억원), 금리(0.5~0.7%p) 우대</li> </ul> </li> <li>- 지원대상: 2자녀 이상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재산요건 있음.</li> </ul> </li> <li>-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KEB하나·신한·NH농협) 방문 신청, 기금e든든(enhuf.molit.go.kr)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li> </ul>					
전세자금 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내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등 지원 시 2자녀 이상 가구에는 대출요건 완화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버팀목의 경우 연소득(5천만원→6천만원), 임차보증금(3억원→4억원), 대출한도(1.2억원→3억원), 금리(0.5~0.7%p) 우대</li> </ul> </li> <li>- 지원대상: 2자녀 이상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자산요건 있음.</li> </ul> </li> <li>-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KEB하나·신한·NH농협) 방문 신청, 기금e든든(enhuf.molit.go.kr)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li> </ul>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내용: 전국 대상주택(85㎡ 이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입주대상자 선정→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성년 3자녀 이상 가구 및 가구원수 5인 이상인 경우 85㎡ 초과 가능</li> </ul> </li> </ul> <table border="1" data-bbox="458 1371 1090 1549"> <thead> <tr> <th data-bbox="458 1371 565 1412">구분</th> <th data-bbox="565 1371 1090 1412">지원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58 1412 565 1473">다자녀 전세 임대</td> <td data-bbox="565 1412 1090 15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 최대 1억 5,500만원, 광역시 최대 1억 2,000만원, 그 외 지역 최대 1억 500만원 지원</li> <li>- 임대보증금: 전세금의 2%(LH, 지방도시공사 98% 지원)</li> <li>- 미성년 2자녀를 초과한 자녀수에 따라 0.2억원씩 대출한도 상향</li> </ul> </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2명 이상 직계비속 양육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자산요건 있음(1순위: 신생아 가구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가부 고시 한부모가족, 2순위: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총 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li> </ul> </li> <li>-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li> </ul>		구분	지원 내용	다자녀 전세 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 최대 1억 5,500만원, 광역시 최대 1억 2,000만원, 그 외 지역 최대 1억 500만원 지원</li> <li>- 임대보증금: 전세금의 2%(LH, 지방도시공사 98% 지원)</li> <li>- 미성년 2자녀를 초과한 자녀수에 따라 0.2억원씩 대출한도 상향</li> </ul>
구분	지원 내용					
다자녀 전세 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 최대 1억 5,500만원, 광역시 최대 1억 2,000만원, 그 외 지역 최대 1억 500만원 지원</li> <li>- 임대보증금: 전세금의 2%(LH, 지방도시공사 98% 지원)</li> <li>- 미성년 2자녀를 초과한 자녀수에 따라 0.2억원씩 대출한도 상향</li> </ul>					

구분	지원내용	
<p>다자녀 가정 공공 요금 감면</p>	<p><b>철도운임 할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내용: 다자녀가구에 대한 운임 할인</li> <li>1) KT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른 운임의 30~50% 할인: KTX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좌석을 등록된 가족 중 최소 3명 이상(어른 1명 포함) 이용하는 경우</li> <li>• 회원당 1일 2회, 1개월 10회까지 구매 가능</li> <li>• 연합인증 이외에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 없음, 최저운임 이하로는 할인불가, 특실요금 할인하지 않음</li> </ul> </li> <li>2) S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른 운임의 30~50% 할인: SRT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좌석을 등록된 가족 중 최소 3명 이상(어른 1명 포함) 이용하는 경우</li> <li>• 회원당 1일 2회, 1개월 10회까지 구매 가능</li> <li>• 열차 출발 20분 전까지 SR 홈페이지 및 SRT 앱에서 할인승차권 구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TX, SRT 모두 임신부 할인 제도 운영 중</li> </ul> </li> </ul> </li> <li>- 지원대상: 코레일멤버십/SR회원 중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둔 회원</li> <li>-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KTX: 코레일 홈페이지에 가족구성원 등록 후 가까운 역 창구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시, 등록내용 확인 후 이용가능</li> <li>2) SRT: SR 홈페이지에서 다자녀가족 등록, 열차승차시 신분증 제시</li> </ol> </li> </ul>
	<p><b>공항 주차장 요금할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내용: 공항주차요금 50% 감면, 현재 김포, 김해, 제주, 대구, 광주, 여수, 울산, 군산, 원주, 청주, 사천, 인천 (총 12개 공항)</li> <li>- 지원대상: 2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 나이가 15세 이하 다자녀가구</li> <li>-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국공항공사: 다자녀가구 차량 사전등록사이트 (<a href="https://park.airport.co.kr/humandiscount/intro.do">https://park.airport.co.kr/humandiscount/intro.do</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후감면 신청은 출차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신청 가능</li> </ul> </li> <li>2) 인천공항: 인천공항 정기관관리시스템 홈페이지(<a href="http://parking.airport.kr">parking.airport.kr</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자녀 자동감면 시스템 등록 기준 2년간 자동감면으로 빠른 주차 가능</li> </ul> </li> <li>3) 그 외 공항: 한국공항공사 주차 홈페이지(<a href="http://park.airport.co.kr">park.airport.co.kr</a>)</li> </ol> </li> </ul>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구분	지원내용	
<p><b>공공분양</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내용: 청년·신혼부부에게 내집 마련 기회 제공</li> <li>- 지원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청년<sup>나눔형·선택형</sup>)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청년</li> <li>2) (신혼부부<sup>나눔형·선택형·일반형</sup>)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둔 사람),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li> </ol> </li> <li>-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공공주택사업자별(LH, SH 등)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 신청 후 계약 체결</li> </ul>	
<p><b>영구임대 공급</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내용: 신혼부부에게 인근 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으로 거주가능한 임대주택 지원</li> <li>- 지원대상: (신혼부부)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둔 한부모가족</li> <li>-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시·도지사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입주자 선정</li> </ul>	
<p><b>국민임대 공급</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내용: 신혼부부에게 인근 시세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 지원</li> <li>- 지원대상: (신혼부부)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둔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둔 한부모 가족</li> <li>-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공공주택사업자별(LH, SH 등)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 신청 후 계약 체결</li> </ul>	
<p><b>행복주택 공급</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내용: 청년·신혼부부에게 인근 시세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1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 지원</li> <li>- 지원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청년) 19세~39세 미혼 청년,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총 5년 이내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인 사람 중 구직급여수급 자격 있는 사람 또는 예술인</li> <li>2) (신혼부부)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둔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둔 한부모가족</li> </ol> </li> <li>-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공공주택사업자별(LH, SH 등)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 신청 후 계약 체결</li> </ul>	

구분	지원내용							
<p><b>통합공공임대 공급</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내용: 청년·신혼부부에게 인근 시세 35~9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3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 지원</li> <li>- 지원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청년) 혼인 중이 아닌 18세~39세, 아동복지 시설 퇴소(예정)자, 청소년쉼터 퇴소(예정)자</li> <li>2) (신혼부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둔 사람, 6세 이하 자녀 둔 한부모 가족</li> </ol> </li> <li>-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공공주택사업자별(LH, SH 등)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 신청 후 계약 체결</li> </ul>							
<p><b>장기전세 공급</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내용: 신혼부부에게 인근 시세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 지원</li> <li>- 지원대상: (신혼부부)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둔 사람),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li> <li>-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공공주택사업자별(LH, SH 등)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 신청 후 계약 체결</li> </ul>							
<p><b>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내용: 다가구주택·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등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가구 특성상 지원내용 상이</li> </ul> <table border="1" data-bbox="459 1214 1094 1438"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 width: 15%;">청년 매입임대</td> <td>시세 50% 이하 수준, 최장 10년간 임대(혼인시 최장 20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신혼·신생아 매입임대 I</td> <td>시세 40% 이하 수준, 최장 20년간 임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신혼·신생아 매입임대 II</td> <td>시세 80% 이하, 최장 10년간 임대(유자녀 시 최장 14년)</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청년 매입임대) 무주택자인 청년(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li> <li>2)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I,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II)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및 신생아 가구,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유자녀가구, 혼인가구</li> </ol> <p style="margin-left: 20px;">* 각 가구특성별로 소득/자산요건 있음</p> </li> </ul>		청년 매입임대	시세 50% 이하 수준, 최장 10년간 임대(혼인시 최장 20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I	시세 40% 이하 수준, 최장 20년간 임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II	시세 80% 이하, 최장 10년간 임대(유자녀 시 최장 14년)
청년 매입임대	시세 50% 이하 수준, 최장 10년간 임대(혼인시 최장 20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I	시세 40% 이하 수준, 최장 20년간 임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II	시세 80% 이하, 최장 10년간 임대(유자녀 시 최장 14년)							

구분	지원내용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지방 도시공사 홈페이지 통해 신청							
<b>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b>	- 서비스 내용: 전국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 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희망주택을 입주대상자 선정하면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채임대, 가구 특성상 지원내용 상이 * 미성년 3자녀 이상 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85㎡ 초과 가능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청년 전세임대</td> <td style="padding: 5px;">                             - 수도권 최대 1억 2,000만원, 광역시 최대 9,500만원, 그 외 지역 최대 8,500만원 지원                              - 임대보증금: 100만원(1순위), 200만원(2, 3순위)                              - 월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신혼·신생아 전세임대 I</td> <td style="padding: 5px;">                             - 수도권 최대 1억 4,500만원, 광역시 최대 1억 1,000만원, 그 외 지역 최대 9,500만원 지원                              - 임대보증금: 전세금의 5%(LH, 지방도시공사 95% 지원)                              - 월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신혼·신생아 전세임대 II</td> <td style="padding: 5px;">                             - 수도권 최대 2억 4,000만원, 광역시 1억 6,000만원, 그 외 지역 1억 3,000만원                              - 임대보증금: 전세금의 20%                              - 월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td> </tr> </table>			청년 전세임대	- 수도권 최대 1억 2,000만원, 광역시 최대 9,500만원, 그 외 지역 최대 8,500만원 지원 - 임대보증금: 100만원(1순위), 200만원(2, 3순위) - 월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I	- 수도권 최대 1억 4,500만원, 광역시 최대 1억 1,000만원, 그 외 지역 최대 9,500만원 지원 - 임대보증금: 전세금의 5%(LH, 지방도시공사 95% 지원) - 월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II	- 수도권 최대 2억 4,000만원, 광역시 1억 6,000만원, 그 외 지역 1억 3,000만원 - 임대보증금: 전세금의 20% - 월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청년 전세임대	- 수도권 최대 1억 2,000만원, 광역시 최대 9,500만원, 그 외 지역 최대 8,500만원 지원 - 임대보증금: 100만원(1순위), 200만원(2, 3순위) - 월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I	- 수도권 최대 1억 4,500만원, 광역시 최대 1억 1,000만원, 그 외 지역 최대 9,500만원 지원 - 임대보증금: 전세금의 5%(LH, 지방도시공사 95% 지원) - 월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II	- 수도권 최대 2억 4,000만원, 광역시 1억 6,000만원, 그 외 지역 1억 3,000만원 - 임대보증금: 전세금의 20% - 월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 지원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청년 전세임대) 무주택자인 청년(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li> <li>2)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I,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II)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및 신생아 가구,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혼인가구                          * 각 가구특성별로 소득/자산요건 있음.</li> </ol>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구분	지원내용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내용: 해당조건 청년에게 주택 임차료를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li> <li>- 지원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li> <li>2)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li> <li>3)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li> </ol> </li> <li>- 사업기간: '22년~'24년 한시</li> <li>- 지원단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 원) 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생애 1회 한정)</li> <li>- 신청기간: '22. 8.~'23. 8.(1년간)-(지급기간) '22. 11. ~'24. 1.</li> <li>- 복지포(www.bokjiro.go.kr)에서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혹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신청 원칙,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li> </ul>	국도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주택구입 자금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내용: 내집마련 디딤돌 등 지원 시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에는 대출요건 완화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혼전용 디딤돌의 경우 연소득(6천만원→8천5백만원), 담보주택 평가액(5억원→6억원), 대출한도(2.5억원→4억원) 우대</li> <li>* 신생아특례 디딤돌의 경우 연소득(6천만원→1억3천만원), 담보주택 평가액(5억원→9억원), 대출한도(2.5억원→5억원) 우대 및 특례금리 적용</li> </ul> </li> <li>- 지원대상: 신혼(혼인 7년 이내 3월내 결혼예정) 무주택세대 및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1주택 대환)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재산요건 있음.</li> </ul> </li> <li>-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택도시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KEB하나·신한·NH농협) 방문 신청</li> <li>2) 기금e든든(enhuf.molit.go.kr)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li> </ol> </li> </ul>	국도교통부 주택기금과
전세자금 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내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등 지원 시 신혼부부, 출산, 청년 가구에는 대출요건 완화 적용</li> </ul>	국도교통부 주택기금과

구분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혼전용 버팀목의 경우 연소득(5천만원→7천5백만원), 임차보증금(3억원→4억원), 대출한도(1.2억원→3억원) 우대</li> <li>• 신생아특례 버팀목의 경우 연소득(5천만원→1억3천만원), 임차보증금(3억원→5억원), 대출한도(1.2억원→3억원) 우대 및 특례금리 적용</li> <li>• 청년전용 버팀목의 경우 대출한도(1.2억원→3억원) 우대</li> </ul> <p>- 지원대상: 신혼(혼인 7년 이내 3월내 결혼예정) 무주택세대,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1주택 대환)세대, 만 19~34세 이하 무주택세대</p> <p>-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KEB하나·신한·NH농협) 방문 신청</li> <li>2) 기금e든든(enhuf.molit.go.kr)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li> </ol>		
<p style="text-align: center;"><b>공공주택 특별(우선) 공급</b></p>	<p>- 서비스 내용: 출산 및 양육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공공주택 특별(우선) 공급</p> <p>- 지원대상: 만 6세 이하 자녀(임신 포함)를 둔 사람</p> <p>-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공공주택사업자별(LH, SH 등)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 신청</p>		<p>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p>
<p style="text-align: center;"><b>고속·일반열차 어린이, 유아 할인</b></p>	<p>- 서비스 내용: (어린이 : 6~13세 미만) 50% 할인 (유아 : 6세 미만) 무임</p> <p>-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열차 이용 시 연령 확인</p>		<p>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p>
<p style="text-align: center;"><b>출산가구 전기요금 감액</b></p>	<p>- 서비스 내용: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출생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분까지)</p> <p>- 지원대상: 주택용 전기요금의 30% 감액(월 16,000원 한도)</p> <p>-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한전ON(온라인, 모바일), 지사방문, 전화(우편 및 팩스 서류접수), 고객센터(123), 정부24</p> <p>*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자녀 출산 시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출산가구 전기료 감면 신청 가능</p>		<p>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시장과</p>
<p style="text-align: center;"><b>3자녀 이상 가구 전기요금 감액</b></p>	<p>- 서비스 내용: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p> <p>*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또는 '손(孫)' 3인으로 표시된 가구,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도 같은 가구로 인정</p>		<p>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시장과</p>

구분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주택용 전기요금의 30% 감액(월 16,000원 한도)</li> <li>-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한전ON(온라인, 모바일), 지사방문, 전화(우편 및 팩스 서류접수), 고객센터(123), 정부24</li> <li>*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셋째 자녀 출산 시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다자녀가구 전기료 감면 신청 가능</li> </ul>							
<p><b>에너지복지요금 (지역난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내용: 다자녀 가구에 지역난방 에너지복지요금(정액요금) 지원</li> <li>* 자격보유 및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연 1회 일괄 지급(월 4천원, 연 최대 48천원)</li> <li>- 지원대상: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li> <li>*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또는 '손(孫)' 3인으로 표시된 가구</li> <li>-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온라인(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li> <li>*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셋째 자녀 출산 시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다자녀가구 지역난방비 감면 신청 가능</li> </ul>	<p>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p>						
<p><b>3자녀 이상 가구 도시가스요금 할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내용: 도시가스요금 할인</li> <li>- 지원대상: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li> <li>*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또는 '손(孫)' 3인으로 표시된 가구,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으로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가능</li> <li>-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거주지 관할 일반도시가스회사 방문, 홈페이지, 콜센터 및 주민센터(고지서 지참) 신청</li> <li>*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셋째 자녀 출산 시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다자녀가구 도시가스 요금경감 신청 가능</li> </ul>	<p>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p>						
<p><b>아이돌봄 서비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내용: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의 소득에 따라 비용을 차등 지원</li> <li>* 종일제 돌봄 : 3개월~36개월 이하 아동에게 이유식,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li> <li>* 시간제 돌봄 :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 놀이활동, 식사·간식 제공, 등·하원(교) 동행 등 돌봄 서비스 지원</li> </ul> <table border="1" data-bbox="459 1631 1090 1753"> <thead> <tr> <th data-bbox="459 1631 616 1671">서비스 종류</th> <th data-bbox="616 1631 1090 1671">돌봄서비스 범위</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59 1671 616 1712">영아종일제</td> <td data-bbox="616 1671 1090 1712">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td> </tr> <tr> <td data-bbox="459 1712 616 1753">질병감염아동지원</td> <td data-bbox="616 1712 1090 1753">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돌봄 서비스 제공</td> </tr> </tbody> </table>		서비스 종류	돌봄서비스 범위	영아종일제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질병감염아동지원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돌봄 서비스 제공
서비스 종류	돌봄서비스 범위							
영아종일제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질병감염아동지원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돌봄 서비스 제공							

구분	지원내용										
	서비스 종류		돌봄서비스 범위								
	시간제	기본형	학교, 보육시설 및 등·하원(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종합형	시간제서비스 일반형 돌봄서비스+아동과 관련된 가사 활동 추가 지원								
	기관연계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p>- 서비스내용 및 대상: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조손 가정에는 정부지원을 5% 추가 지원</li> <li>* 중위소득 250% 이하 청소년(한)부모 0~1세 이하 가정에는 정부 지원을 90% 지원</li> <li>* (정부지원 특례) '가형~라형'의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장애부모의 자녀, 장애 아동, 한부모, 청소년부모, 조손가정에는 연 1,080시간까지 정부지원</li> <li>* 정기서비스 신청시 대기 우선순위 가점(5점) 부여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아이돌봄지원법」제13조의2 제3호(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li> </ul> <p>&lt;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시간제 서비스 기준)&gt;                      ※ 적용대상 :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p>											
유형	기준 중위 소득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시간당 12,790원)					종합형(시간당 16,620원)				
		A형 (2019.1.1. 이후 출생)		B형 (2018.12.31. 이전 출생)			A형 (2019.1.1. 이후 출생)		B형 (2018.12.31. 이전 출생)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가형	75% 이하 (90%)	11,512원 (10%)	1,278원 (10%)	10,872원 (85%)	1,918원 (15%)	11,512원	5,108원	10,872원	5,748원
		나형	120% 이하 (60%)	7,674원 (60%)	5,116원 (40%)	6,396원 (50%)	6,394원 (50%)	7,674원	8,946원	6,396원	10,224원
다형	150% 이하 (30%)	3,838원 (30%)	8,952원 (70%)	3,198원 (25%)	9,592원 (75%)	3,838원	12,782원	3,198원	13,422원		
라형	250% 이하 (15%)	1,920원 (15%)	10,870원 (85%)	1,280원 (10%)	11,510원 (90%)	1,920원	14,700원	1,280원	15,340원		
마형	250% 초과	-	12,790원 (100%)	-	12,790원 (100%)	-	16,620원	-	16,620원		

구분	지원내용	
	<p>* 한부모가정에는 조손 가정도 포함</p> <p>*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요금: (영아종일제) 12,790원, [(시간제)기본형 12,790원, 종합형 16,620원], (질병감염아동) 15,340원, (기관연계) 19,530원</p> <p>-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정부 지원 가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신청 [정부 미지원 가정(본인부담)] 아이돌봄 누리집(idolbom.go.kr) 회원가입 후 신청 / 가족센터 등 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1577-2514)</p>	
<p>가족센터 (구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p>	<p>- 서비스 내용: 가족관계(부모역할 지원, 부부역할지원 등 교육, 상담, 문화프로그램), 가족돌봄(가족상담, 사례관리, 교육문화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긴급위기지원 등 온가족보듬사업), 가족생활(맞벌이가정 일가정양립지원, 1인가구 지원 등),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가족봉사단, 공동육아나눔터 등)</p> <p>- 지원대상: 해당서비스 신청한 대한민국 국민</p> <p>-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인터넷) 가족센터 누리집 www.familynet.or.kr → 참여마당→ 프로그램 신청 (전화) 가족센터 전화 1577-9337, 가족상담전화 1577-4206</p>	
<p>공동육아나눔터 운영</p>	<p>- 서비스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간 제공) 자녀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li> <li>• (프로그램 운영) 부모 등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li> <li>• (자녀돌봄 나눔)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하는 돌봄품앗이 구성·운영</li> <li>• (놀이활동 지원)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개발 및 교구 등 지원</li> </ul> <p>- 지원대상: 자녀와 부모 등 보호자 누구나</p> <p>-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인터넷) 가족센터 누리집 www.familynet.or.kr → 돌봄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전화) 1577-9337 및 지역 소재 가족센터</p>	

성평등가족부  
가족정책과

성평등가족부  
가족친화  
서비스과

구분	지원내용															
<p><b>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b></p>	<p>- 서비스 내용: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 제공</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체험활동과정</td> <td>예술체험, 과학체험, 직업개발, 봉사활동, 리더십개발 등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제공</td> </tr> <tr> <td>기초학습과정</td> <td>보충학습지원(숙제, 독서지도 등) 및 주요 교과목 학습 지원</td> </tr> <tr> <td>특별지원과정</td> <td>청소년캠프, 부모교육, 발표회 등 특별프로그램 지원</td> </tr> <tr> <td>생활지원</td> <td>급식, 상담, 건강관리, 생활일정 관리(메일링서비스) 등</td> </tr> </tbody> </table>	구분	내용	체험활동과정	예술체험, 과학체험, 직업개발, 봉사활동, 리더십개발 등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제공	기초학습과정	보충학습지원(숙제, 독서지도 등) 및 주요 교과목 학습 지원	특별지원과정	청소년캠프, 부모교육, 발표회 등 특별프로그램 지원	생활지원	급식, 상담, 건강관리, 생활일정 관리(메일링서비스) 등	<p>- 지원대상: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 * (우선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가정·2자녀 가정·맞벌이 가정 등</p> <p>-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1)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역 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 방문, 유무선 전화로 면담 후 참여 신청 2) 온라인: 정부24(www.gov.kr) - 온종일 돌봄 원스톱서비스 검색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접속하여 신청</p>				
구분	내용															
체험활동과정	예술체험, 과학체험, 직업개발, 봉사활동, 리더십개발 등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제공															
기초학습과정	보충학습지원(숙제, 독서지도 등) 및 주요 교과목 학습 지원															
특별지원과정	청소년캠프, 부모교육, 발표회 등 특별프로그램 지원															
생활지원	급식, 상담, 건강관리, 생활일정 관리(메일링서비스) 등															
<p><b>여성 경제활동지원</b></p>	<p>- 서비스 내용: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통해 직업상담, 직업훈련, 인턴십, 취업알선 및 경력단절 예방 등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내용</th> <th>사업수행</th> </tr> </thead> <tbody> <tr> <td>집단상담 프로그램</td> <td>경력단절여성 및 결혼이민여성 대상 집단 상담프로그램 운영</td> <td rowspan="5">159개 새일센터 (여가부·고용부 공동 지정 및 운영 지원)</td> </tr> <tr> <td>직업교육훈련</td> <td>직업교육훈련 운영 및 참여수당 지급 * 월 10만원, 최대 4회</td> </tr> <tr> <td>인턴십</td> <td>인턴십 지원 및 지원금 지급 * 1인당 460만원(기업 400, 인턴 60)</td> </tr> <tr> <td>취·창업 지원</td> <td>취업상담, 취업연계 및 멘토링 등 사후관리</td> </tr> <tr> <td>경력단절 예방지원</td> <td>취업여성 직장적응 교육, 노무상담 및 고충 상담, 직장문화 개선 컨설팅 지원 등</td> </tr> </tbody> </table>	구분	내용	사업수행	집단상담 프로그램	경력단절여성 및 결혼이민여성 대상 집단 상담프로그램 운영	159개 새일센터 (여가부·고용부 공동 지정 및 운영 지원)	직업교육훈련	직업교육훈련 운영 및 참여수당 지급 * 월 10만원, 최대 4회	인턴십	인턴십 지원 및 지원금 지급 * 1인당 460만원(기업 400, 인턴 60)	취·창업 지원	취업상담, 취업연계 및 멘토링 등 사후관리	경력단절 예방지원	취업여성 직장적응 교육, 노무상담 및 고충 상담, 직장문화 개선 컨설팅 지원 등	<p>- 지원대상: 임신·출산, 돌봄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 없는 구직여성 및 재직여성 등</p> <p>-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구직여성, 재직여성, 기업) 가까운 새일센터 문의 * 대표전화 1544-1199, 온라인 saeil.mogef.go.kr</p>
구분	내용	사업수행														
집단상담 프로그램	경력단절여성 및 결혼이민여성 대상 집단 상담프로그램 운영	159개 새일센터 (여가부·고용부 공동 지정 및 운영 지원)														
직업교육훈련	직업교육훈련 운영 및 참여수당 지급 * 월 10만원, 최대 4회															
인턴십	인턴십 지원 및 지원금 지급 * 1인당 460만원(기업 400, 인턴 60)															
취·창업 지원	취업상담, 취업연계 및 멘토링 등 사후관리															
경력단절 예방지원	취업여성 직장적응 교육, 노무상담 및 고충 상담, 직장문화 개선 컨설팅 지원 등															

구분	지원내용	
<p><b>청소년한부모 학습지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내용: 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교통비, 교복구입비 등 지원 * 가구별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li> <li>-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로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응시생또는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자</li> <li>-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상담 및 문의 : 한부모 상담전화(☎1577-4206)/복지로 누리집 (bokjiro.go.kr)</li> </ul>	
<p><b>청소년한부모의 자립지원</b></p>	<p><b>&lt; 청소년한부모 대상 자립촉진 수당 &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내용: 자립촉진수당 * 청소년 한부모 가구당 월 10만원 지급</li> <li>-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구이면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내 학업, 직업훈련, 취업활동 등을 통해 자립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가구</li> <li>-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상담 및 문의 : 한부모 상담전화(☎1577-4206 / 복지로 누리집 (bokjiro.go.kr)</li> </ul> <p><b>&lt; 시설 등 주거지원 &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내용: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LH 매입임대주거지원 우선입소(미혼모)</li> <li>-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 미혼모</li> <li>- 서비스 신청 및 방법: 소관 시·군·구청 및 한부모 상담전화 (☎1577-4206)</li> </ul>	
<p><b>난임치료휴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휴가 : 난임치료휴가 청구시 연간 6일(최초2일 유급) 이내의 휴가 부여 * ('25.2.23.부터 제도 확대) 난임치료휴가 연간 6일(최초 1일 유급) 이내의 휴가 부여</li> <li>2) 급여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난임치료휴가 최초 2일분 지원(통상임금100%, 2일분 상한액 168,410원)</li> </ol> </li> <li>- 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휴가 : 난임치료 중(예정포함) 근로자</li> <li>2) 급여 :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li> </ol> </li> </ul>	

구분	지원내용					
	- 신청방법 : 1) 휴가 : 사업주에게 휴가 신청 2) 급여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고용센터 직접 신청 혹은 고용 24 홈페이지 신청)					
육아휴직 및 급여제도	- 내용 1) 휴직: 자녀 양육을 위해 신청 시 1년간* 휴직 부여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한부모, 중증 장애 아동의 부모의 경우 6개월 기간 연장('25.2.23. 시행) 2) 급여 지원: 휴직 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 <1~3개월> 월 상한 250만원(통상임금 100%), <4~6개월> 월 상한 200만원(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 월 상한 160만원(통상임금 80%) ※ 육아휴직 급여 특례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24.1월 시행) <1~6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450만원*) * 월 상한 (1개월) 250, (2개월) 250, (3개월) 300, (4개월) 350, (5개월) 400, (6개월) 45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100%(상한 160만원) - 대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휴직은 근로자 청구 필요) - 신청방법: (휴직)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휴직 신청, (급여) 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고용지원센터 직접신청 또는 고용24 홈페이지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급여제도	- 내용 1) 근로시간 단축: 만12세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신청시 1년간 부여(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시 최대 2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35시간 이내일 것 2) 급여 지원: 단축 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table border="1" data-bbox="465 1684 1090 1759"> <tr> <td>주당 10시간 단축분</td> <td>나머지 단축분</td> </tr> <tr> <td>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td> <td>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td> </tr> </table>		주당 10시간 단축분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
주당 10시간 단축분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					

구분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 (단축근로는 근로자 청구 필요)</li> <li>- 신청방법: (단축근로)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단축근로 신청, (급여) 단축 시작 후 1개월 이후부터 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고용지원센터 직접신청 또는 고용24 홈페이지 신청)</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육아(수유)시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사용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 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함</li> <li>- 대상: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li> <li>- 신청방법: 사용자에게 청구</li> </ul>	<p style="text-align: center;">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 정책과</p>
<p style="text-align: center;"><b>가족돌봄휴가 및 휴직제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내용</li> <li>1)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히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가 신청시 최대 10일(무급)</li> <li>2) 가족돌봄휴직: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연간 90일(1회 사용시 최소 30일 이상 사용, 무급)</li> <li>-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사업주에게 신청(휴직은 30일 전에 신청)</li> </ul>	<p style="text-align: center;">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 정책과</p>
<p style="text-align: center;"><b>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li> <li>1)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를 대상으로 시설비, 교재교구비, 임차료 지원(시설비 최대 20억원, 교재교구비 최대 7천만원, 임차료 최대 3억)</li> <li>2)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보육아동의 교육 및 보육 활동, 행사 등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관리운영비 및 사업운영비를 보육 현원에 따라 분기별 지원(월200~520만원)</li> <li>3)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월평균 근로시간에 따라 인건비 지원(대규모 월 최대 6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최대 138만원)</li> <li>-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li> <li>- 신청방법: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 신청</li> </ul>	<p style="text-align: center;">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 정책과</p>

구분	지원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b>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원</li> <li>2) 대체인력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업무 공백에 대해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사용한 사업주에게 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li> <li>3) 업무분담지원금: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원</li> </ol> </li> <li>- 지원대상: 중소기업 사업주</li> <li>-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육아지원제도 허용기간 중 3개월 단위로 신청(고용지원센터 직접신청 또는 고용24 홈페이지 신청)</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대체인력채용알선〉 육아휴직 등에 따른 업무공백을 적시에 충원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채용지원 종합서비스 제공(무료)</li> <li>- 대상: 육아지원제도 허용에 따른 대체인력 구인 기업 및 기간제 등 대체인력 일자리 구직자</li> <li>- 신청방법: 전국 또는 권역별 बैं크 상담전화 또는 인재채움뱅크 홈페이지를 활용하거나, ‘인재채움전용관’을 통해 신청</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24년 권역별 인재채움뱅크 운영기관〉</b></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커리어넷(1577-0221,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73, 2층), 제니엘(031-778-8818,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65, 3층), 지에스씨넷(044-864-1490, 세종시 한누리대로 219, 4층)</li> <li>• 광주, 전라권: 국제커리어(062-223-0114, 광주시 북구 호동로 6-6, 1층)</li> <li>• 부산, 경상권: 스카우트,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051-503-8944, 부산광역시 동래구 총렬대로126번길 5)</li> </ul> <p>* 인재채움뱅크통합홈페이지(<a href="https://matchingbank.career.co.kr">https://matchingbank.career.co.kr</a>)</p> </div> <p style="text-align: center;"><b>〈'24년 인재채움 전용관〉</b></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잡코리아(<a href="http://www.jobkorea.co.kr/theme/matchingbank">www.jobkorea.co.kr/theme/matchingbank</a>)</li> <li>• 사람인(<a href="http://www.saramin.co.kr/zf_user/jobs/theme/matchingbank">www.saramin.co.kr/zf_user/jobs/theme/matchingbank</a>)</li> </ul> <p>☎ (홈페이지 상단 항목) 채용정보 ▶ (전문)채용관 ▶ 인재채움 전용관(구인·구직신청)</p> </div>	

구분	지원내용	
<p><b>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근로자가 일·생활 균형을 위해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허용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용하여야 함</li> <li>- 단축 사유: 가족돌봄, 본인건강, 학업, 은퇴준비</li> <li>- 신청방법: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 30일 이전에 신청</li> </ul> <p style="text-align: right;">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 정책과</p>	
<p><b>위라벨일자리 장려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지원</li> <li>- 대상: 중소·중견 기업 사업주</li> <li>- 지원수준: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최대 1년) 지원</li> <li>- 신청방법: 근로시간 단축 후 12개월 이내 신청 (고용지원센터 직접신청 또는 고용24 홈페이지 신청)</li> </ul> <p style="text-align: right;">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 정책과</p>	
<p><b>유연근무 장려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소속근로자에게 유연근무(재택, 원격, 선택근무)를 허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월 최대 30만원, 1년) 지원</li> <li>* 육아기 근로자는 시차출퇴근(월 20만원, 1년) 지원 및 선택·재택·원격 근무 활용시 상향 지원(2배 지원)</li> <li>-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업주</li> <li>- 신청방법: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계획서 제출</li> </ul> <p style="text-align: right;">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 정책과</p>	
<p><b>일·생활 균형 시스템 지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시간 단위 연차 또는 모성보호·일가정양립 제도 도입·개선을 위해 취득 또는 사용하는 프로그램, 시설, 장비 등 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80%, 1,000만원 한도 지원</li> <li>*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출퇴근 등 관리시스템 사용료는 1년 180만원 한도로 전액 지원</li> <li>- 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li> <li>- 신청방법: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계획서 제출</li> </ul> <p style="text-align: right;">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 정책과</p>	
<p><b>발달재활서비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내용: 성장기 장애아동의 의사소통, 운동, 감각 등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언어재활, 놀이재활 등 발달재활서비스 지원</li> <li>-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18세 미만/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아동*</li> </ul> <p style="text-align: right;">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p>	

구분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 조기개입을 위하여 장애등록되지는 않았지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가 예견되는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전문가가 작성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하여 서비스 신청 가능</li> <li>-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포 사이트에서 신청 및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사용</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내용: 저소득층 가정에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li> <li>- 지원대상: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및 다자녀(2인 이상) 가구</li> <li>* 다자녀 및 장애인 가구 대상 소득기준완화(중위소득 80→100% 이하, '26년 7월~)</li> <li>-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보건소 또는 온라인 복지포, 정부24에서 신청 및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사용</li> </ul>	<p style="text-align: center;">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p>
<p style="text-align: center;"><b>첫만남이용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내용: 200만원 이상의 바우처(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li> <li>- 지원대상: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li> <li>- 서비스 신청: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또는 복지포, 정부24에 온라인 신청</li> <li>- 이용방법: 국민행복카드에 지급된 첫만남이용권으로 사용</li> <li>* (제외업종) 유흥업소(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위생업종(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레저업종(비디오방, 노래방 등), 기타(성인용품, 상품권 등),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세금 및 공과금 납부 등</li> </ul>	<p style="text-align: center;">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p>
<p style="text-align: center;"><b>(부모)보육료 지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내용: 어린이집 이용료 지원</li> <li>-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 0~5세 아동(등록 장애아 12세 이하)</li> <li>- 지원단가</li> <li>0세: 584,000원</li> <li>1세: 515,000원</li> <li>2세: 426,000원</li> <li>3~5세: 280,000원</li> </ul>	<p style="text-align: center;">교육부 영유아재정과</p>

구분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가 돌봄 필요 영유아 연장보육 이용 시 시간당 연장보육료 지원 (영아반 2,000원, 유아반 1,000원, 0세반·장애아 3,000원)</li> <li>*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종일반(기본보육 63만4천원/월, 방과후 31만7천원/월)</li> <li>-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 복지로 신청</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가정 양육수당지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내용: 양육수당(양육수당/장애아동양육수당/농어촌양육수당) 지급</li> <li>-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li> <li>- 지원단가: 월 10만원 지원 * 장애아동과 농어촌아동 기준 상이</li> <li>-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 복지로/정부24 신청</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아동수당</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내용: 8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간 아동수당 지급</li> <li>- 지원대상: 8세 미만(0~95개월)의 아동</li> <li>- 지원단가: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원</li> <li>-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가능,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가능,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복지로/정부24 신청</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부모급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내용: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보장 및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현금 지급 * 부모급여는 기존 영아수당을 확대 도입하는 것임</li> <li>- 지원대상: 0~1세 아동(2022년생부터)</li> <li>- 지원단가: 0~1세 아동 대상 가정양육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원하고, 어린이집 이용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아 부모급여와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현금 지원 * 현금, 보육료, 아이돌봄서비스 중 한가지 서비스만 수급할 수 있으며, 동시 지원 불가(서비스 간 변경 가능)</li> </ul>	

구분	지원내용												
	① 가정양육시 0세 월 100만원, 1세 50만원 현금 지급 ② 0세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보육료 바우처 지원금과의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0세 46만원, 1세 2.5만원) ③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받은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금으로 지급하며 이용자가 선택하여 신청 - 신청시기: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부모급여(현금) 신청 시 출생월 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가능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 복지리/정부24 신청												
<p style="text-align: center;"><b>시간제보육</b></p>	- 서비스 내용: 가정양육 부모가 단시간·일시적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지원 (월 60시간) -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등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혹은 양육수당 수급 중인 아동(6~36개월 미만 영아) - 지원단가: 시간제보육료 시간당 5,000원 중 3,000원 정부 지원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임신육아종합포털(PC/모바일) 또는 전화(1661-9361) 신청 * 전화 신청은 독립반만 가능				교육부 영유아정책 총괄과								
<p style="text-align: center;"><b>그 밖의 연장형보육료</b></p>	- 서비스 내용: 기본·보육시간(07:30~19:30)을 전후하여 보육 서비스 이용 가능 <table border="1" data-bbox="461 1299 1091 1420"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25%;">야간연장</th> <th style="width: 25%;">야간 12시간</th> <th style="width: 25%;">24시간</th> <th style="width: 25%;">휴일</th> </tr> </thead> <tbody> <tr> <td>19:30 ~ 24:00 * 7:30 이전 가능</td> <td>19:30 ~ 익일 7:30</td> <td>7:30 ~ 익일 7:30</td> <td>공휴일</td> </tr> </tbody> </table> - 지원대상: 보육료를 지원받는 0~5세 아동 (야간연장보육료는 유아학비 대상 아동도 지원 가능) - 지원단가 1) 야간연장보육: 일반아동 시간당 4,000원, 장애아동 시간당 5,000원 2) 야간 12시간보육 및 24시간 보육료는 0~5세 보육료단가표 참조 3)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정부지원 일보육료 * 150% 지원				야간연장	야간 12시간	24시간	휴일	19:30 ~ 24:00 * 7:30 이전 가능	19:30 ~ 익일 7:30	7:30 ~ 익일 7:30	공휴일	교육부 교육보육과정지 원과
야간연장	야간 12시간	24시간	휴일										
19:30 ~ 24:00 * 7:30 이전 가능	19:30 ~ 익일 7:30	7:30 ~ 익일 7:30	공휴일										

구분	지원내용	
	* 일보육료: 정부지원단가×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는 일보육료×100%지원 - 신청방법: 어린이집 문의 후 신청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 서비스 내용 1) 성장·발달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돌연사증후군, 청각·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관련 영유아 건강검진 8회 및 구강검진 4회 건강검진 지원 2)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6세 미만(생후 14일~71개월) 영유아 - 지원단가 1) (건강검진비) 전액 지원 2) (발달정밀검사비)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최대 40만원,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최대 20만원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영유아 가정에 영유아건강검진 안내문 발송, 발달정밀 검진기관 방문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li> <li>• (확진검사)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li> </ul> - 서비스 내용: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비·확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별검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 재실시한 경우 1회에 한해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li> <li>• (확진검사) 확진 판정된 경우 7만원 한도 지원</li> </ul>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거나, ▲e보건소-공공보건포털( <a href="https://www.e-health.go.kr">https://www.e-health.go.kr</a> ), 아이마중 APP 등 온라인 신청

구분		지원내용	
	환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내용: 질환별·연령별 세부지원 기준에 따라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 의료비 지원</li> <li>- 지원대상: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19세 미만 환아</li> <li>- 지원단가: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연 25만원 한도)</li> <li>-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신청일 기준 환아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거나, e보건소-공공보건포털(<a href="https://www.e-health.go.kr">https://www.e-health.go.kr</a>), 아이마중 APP 등 온라인 신청</li> </ul>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내용: 난청 선별검사비·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li> <li>-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별검사)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li> <li>• (확진검사)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 받은 영아</li> </ul> </li> <li>- 지원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별검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li> <li>*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 판정 등에 따라 추가청력 검진 위해 청각선별검사 재 실시한 경우 1회 한해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li> <li>• (확진검사) 7만원 한도 지원</li> </ul> </li> <li>-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거나(주소지 관계 없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도 신청서 접수 가능), ▲e보건소-공공보건포털(<a href="https://www.e-health.go.kr">https://www.e-health.go.kr</a>), 아이마중 APP 등 온라인 신청</li> </ul>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환아관리 (보청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내용: 보청기 1개 또는 2개</li> <li>- 지원대상: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측성 난청) 청력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 40~59dB, 청각장애 등급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li> <li>•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li> </ul> </li> <li>- 지원단가: 개당 135만원 한도</li> </ul>	

구분	지원내용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신청일 기준 흰아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거나, e보건소-공공보건포털( <a href="https://www.e-health.go.kr">https://www.e-health.go.kr</a> ), 아이마중 APP 등 온라인 신청	
<b>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b>	- 서비스 내용: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숙아)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li> <li>•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 입원·수술한 경우</li> </ul>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 입원·수술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지원한도: ▲미숙아 체중별 최대 1,000만원, ▲선천성 이상아 최대 500만원,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미숙아 출생체중별 지원한도(3~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지원한도(5백만원)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아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거나, ▲e보건소-공공보건포털 ( <a href="https://www.e-health.go.kr">https://www.e-health.go.kr</a> ), 아이마중 APP 등 온라인 신청	
<b>2세 미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b>	- 서비스 내용: 입원진료 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 식대, 선별급여 등은 제외 - 지원대상: 2세 미만 영유아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별도 신청 없이 지원	
<b>아동 입원진료비 지원</b>	- 지원대상: 15세 이하 아동 - 서비스 내용: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5% 적용 ※ 일반 성인의 경우 입원진료시 본인부담 20%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별도 신청 없이 지원	
<b>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률 경감</b>	- 서비스 내용: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자에게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 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본인부담률 적용(약국 동일 적용)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구분	지원내용									
	- 지원대상: 임신기간 37주 미만 조산아 또는 출생 당시 몸무게 2,500g 이하의 저체중출생아 *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경감적용가능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신청서류 작성하여 인근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접수									
<p style="text-align: center;"><b>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b></p>	- 서비스 내용: 신청일 기준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 최대 24개월 동안 영아별 지원 - 지원대상 1) (기저귀) 가구 내 영아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세 미만 영아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li> <li>• 2세 미만 영아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장애인 가구</li> </ul> * 다자녀 및 장애인 가구 대상 소득기준완화(중위소득 80→100% 이하, '26년 7월~) 2)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 해당 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 조손) 및 영아 입양가정 아동</li> <li>• 산모의 사망, 질병으로 모유수유 불가능한 경우 등</li> <li>• 단, 영양플러스사업·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불가</li> </ul> - 지원단가: 기저귀(월 9만원) 및 조제분유(월 11만원) 구매비용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급 <table border="1" data-bbox="461 1355 1090 1514"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60%;">지원내용</th> <th>금액</th> </tr> </thead> <tbody> <tr> <td>기저귀 지원</td> <td>월 9만원</td> </tr> <tr> <td>기저귀+조제분유 지원</td> <td>월 20만원</td> </tr> <tr> <td>조제분유 추가 지원</td> <td>월 11만원</td> </tr> </tbody> </table>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영아 주소지 관할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신청		지원내용	금액	기저귀 지원	월 9만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월 20만원	조제분유 추가 지원	월 11만원
지원내용	금액									
기저귀 지원	월 9만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월 20만원									
조제분유 추가 지원	월 11만원									
<p style="text-align: center;"><b>생애초기 건강관리 지원</b></p>	- 서비스 내용: 보건소 간호사, 사회복지사 전문인력이 출산가정(임산부, 만 2세 미만 영아)을 방문하여 건강상담, 영아 발달상담 및 양육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구분	지원내용	
	- 지원대상: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및 만2세 미만 영아 가정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보건소에 등록, 서비스 신청 후 영유아 건강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가정 방문	
어린이 불소 도포	- 서비스 내용: 치아우식증(충치) 예방 위한 불소제품 도포, 구강보건 교육 제공 - 지원대상: 만 3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저소득층 아동 등 우선대상자 고려)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보건소에서 사업대상자에게 안내문 배부→사전 신청 * 보건소별 사업시행여부 상이하므로 사전 확인 필요	
임산부 영유아 구강보건 교육	- 서비스 내용: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 제공, 구강용품 제공, 임산부 스케일링 등 - 지원대상: 모자보건법 제9조에 따라 모자보건수첩을 발급받은 임산부 및 영유아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관할 보건소 문의 * 보건소별 사업시행여부 상이하므로 사전 확인 필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서비스 내용: 1) 우선 설치지역: 저소득 주민 밀집 주거지역, 농어촌지역 등 취약 지역 및 산업단지 지역 2) 의무 설치지역: 지자체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3) 다양한 확충 방식 지원 등을 통해 효율적인 확충 추진(매입, 장기임차 방식 등 기존 시설 전환 적극 활용 등) * 국공립 신축 33개소, 매입 10개소, 공동주택 리모델링 435개소, 장기임차 60개소, 장애아전문 신축 2개소, 기자재비 540개소 지원 계획 - 지원대상: 영유아 가정	
육아종합지원 센터운영	- 서비스 내용: 부모교육 및 상담, 놀이체험실 운영, 놀이프로그램 제공,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양육관련 정보 제공 등 지원 - 지원대상: 영유아 가정(영유아 및 부모 등)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인근 육아종합지원센터 방문 이용(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전국센터 현황 확인 가능)	

구분	지원내용													
<p><b>다함께돌봄사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내용: 돌봄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서비스: 기본적인 돌봄에 관련된 활동(출결관리, 아동의 보호, 급·간식 제공 등)</li> <li>• 공동프로그램: 놀이와 휴식, 신체활동 및 숙제지도 등</li> <li>• 특별활동프로그램: 아동별 흥미·적성을 고려, 아동의 창의성 신장을 위한 음악, 미술, 과학 및 체험 등</li> </ul> </li> <li>* 다함께돌봄센터 1,226개소 설치운영('24.12월말 기준)</li> <li>- 지원대상: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 혹은 초등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수준 무관, 지자체(센터별) 지역여건 따라 입소 우선 대상자 선정 가능</li> <li>* 지역적 특성 및 센터 정원을 고려하여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아동의 형제, 자매로 그 형제, 자매가 미취학아동인 경우에는 이용대상에 포함 가능</li> </ul> </li> <li>- 지원단가: 서비스 이용료(프로그램 활동비 등) 본인 부담 가능 (급·간식비 별도 수납 가능)</li> <li>-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이용 희망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전화, 온라인* 등으로 신청 후 센터방문상담 진행</li> <li>* 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li> </ul>													
<p><b>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중증 장애아동 돌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내용: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간 1,080시간의 서비스 제공</li> <li>•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는 본인 부담 없음, 120% 초과시 본인 부담(40%)하에 서비스 이용 가능, 연간 1,080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li> </ul> </li> <li>-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 중증(심한 장애) 장애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수준 무관, 지자체(제공기관별) 문의 필요</li> </ul> </li> <li>- 지원단가: 시간당 12,180원</li> <li>-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18개 시·도별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사업시행기관으로 문의 및 신청</li> </ul> <table border="1" data-bbox="459 1596 1090 1774"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25%;">지역</th> <th style="width: 45%;">기관·단체명</th> <th style="width: 30%;">연락처</th> </tr> </thead> <tbody> <tr> <td>서울</td> <td>(사)서울시장장애인부모회</td> <td>02-356-4889</td> </tr> <tr> <td>부산</td> <td>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td> <td>051-790-6125</td> </tr> <tr> <td>대구</td> <td>(사)대구광역시장애인부모회</td> <td>053-621-2600</td> </tr> </tbody> </table>		지역	기관·단체명	연락처	서울	(사)서울시장장애인부모회	02-356-4889	부산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051-790-6125	대구	(사)대구광역시장애인부모회	053-621-2600
지역	기관·단체명	연락처												
서울	(사)서울시장장애인부모회	02-356-4889												
부산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051-790-6125												
대구	(사)대구광역시장애인부모회	053-621-2600												

구분	지원내용						
	지역	기관·단체명			연락처		
	인천	(사)인천광역시장애인부모회			032-818-2096		
	광주	광주광역시동구장애인복지관			062-229-9701		
	대전	(사)대전광역시장애인부모회			042-488-9457		
	울산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052-242-1780		
	세종	사회복지법인 세종중앙			044-866-0180		
	경기	(사)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지회			031-239-6340		
	강원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033-255-2491		
	충북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충북지회			043-237-8304		
	충남	(사)충청남도장애인부모회			041-338-1762		
	전북	(사)장애인인권연대			063-901-1131		
	전남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061-755-4523		
		(사)목포YWCA(신규)			061-244-1366		
	경북	(사)가경사회서비스지원센터			054-701-0420		
	경남	(사)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070-7725-3967		
	제주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			064-725-1372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 서비스 내용: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8.1.1. 이후 출생·입양한 둘째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둘째 자녀 12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18개월을 추가(최대 50개월)</li> <li>• '26.1.1. 이후 부터는 출생·입양한 첫째·둘째 자녀에 대해 각각 12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18개월을 추가(한도없음)</li> </ul> <출생 자녀수에 따른 크레딧 인정기간>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개월)</p>						
	구 분	1자녀	2자녀	3자녀	4자녀	5자녀	6자녀
	'08. 1. 1 이후	-	12	30 (+18)	48 (+18)	50 (+2)	50 (-), 상한 50개월
'26. 1. 1 이후	12	24 (+12)	42 (+18)	60 (+18)	78 (+18)	96 (+18), 상한 없음	
- 지원대상: 2008년 이후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국민연금공단에서 자녀 수 등을 확인하여 가입기간 인정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2026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안내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26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안내

## IV. 보호출산 및 출산 후 아동보호

1. 위기임부의 보호출산 신청 **상담기관**
2. 위기산부의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 **상담기관**
3. 비식별화 등 지원 **상담기관** **지자체** **의료기관** **건보공단** **심평원**
4. 보호출산 또는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의 철회  
**상담기관** **지자체** **심평원**

## IV | 보호출산 및 출산 후 아동보호



### 1 위기임부의 보호출산 신청 상담기관

#### 1 보호출산 개요

##### 1) 보호출산 요건

- 위기임부가 대한민국 국적이면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음
  - ※ 생부의 국적은 무관하므로 생부가 외국인이라도 위기임부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이면 신청 가능
- 위기임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담을 모두 받아야 함
- 원칙적으로 위기임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하지 못하며 위기임부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함
  - 다만, 위기임부가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만 14세 미만), 피성년후견인, 기타 의사결정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신청하거나 신청을 철회할 수 있음
  - 만 14세 미만, 피성년후견인 등에 해당하는 위기임부가 스스로의 의사결정으로 보호출산을 신청한 경우 보호자가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할 수 없음

##### 2) 보호출산에 따른 법률적 효력

- 의료기관은 보호출산 신청인에 대하여 산전 검진 및 출산을 받는 경우 「의료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3항에 따라 비식별화가 이루어진 정보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함

-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보호출산을 통하여 아동이 출생한 경우 출생정보를 보호출산 신청인의 진료기록부 또는 조산기록부에 기재할 때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대신 비식별화된 가명과 관리번호를 기재
-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출생통보 절차 대신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출생통보 절차\*를 적용
  - \* (가족관계등록법) 의료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시·읍·면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의료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중앙상담지원기관 → 지역상담기관 → 시·읍·면
- 시·읍·면의 장은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출생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민법」 제781조 제4항에 따라 아동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록
- 보호출산 신청인은 보호출산 아동을 보호출산한 날부터 7일 이상 그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갖고, 이 기간이 지난 후부터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 또는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아동의 인도를 요청 가능
- 보호출산 아동이 인도된 때부터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정지됨
  - \* 친권행사의 정지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V.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 보호 → 1. 아동 인도 및 보호조치 → 2. 아동 인도 → 2) 아동 인도에 따른 법적 효과” 참조
- 보호출산 아동을 인도받은 시·군·구청장은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아동을 인도받은 시·군·구청장이 아동의 미성년후견인이 됨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신청인에 대하여 출생증서를 작성하여 밀봉하고 보호출산 아동의 출생기록 사실을 시·읍·면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출생증서가 담긴 봉투 겉면에 아동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기재하여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
- 아동권리보장원은 이관받은 출생증서를 영구보존하고, 보호출산 아동이 자신의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한 경우 신청인 또는 생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보관하고 있는 출생증서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함

## ② 보호출산 상담

### 1) 보호출산 신청을 위한 사전 상담

※ 위기임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받아야하는 상담의 내용은 “Ⅲ. 위기임산부 상담·지원 → 4. 위기임산부 대상 제도 안내 및 서비스 연계 →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위기임산부 대상 상담·안내 사항” 참조(p.52)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상담에도 불구하고 보호출산 및 그 자녀인 아동 보호를 희망하는 위기임산부에게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담을 제공하여야 함. 이를 통해 위기임부가 보호출산과 관련된 사항들을 정확하게 인지한 상황에서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보호출산의 절차와 법적 효력
- 자녀의 생모와 생부를 알 권리의 의미와 그것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및 그 밖의 자녀의 권리
- 자에 대한 인지 및 양육 등 생부의 권리
-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숙려기간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보호 절차
- 친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기간 및 절차
- 법 제17조에 따른 출생증서 공개 청구 요건 및 절차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규칙 제6조제2항

■ 제6조(위기 임신·출산 등에 대한 상담) ② 법 제7조제3항제8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출생증서 작성 및 법 제16조에 따른 출생증서의 이관 및 영구보존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법 제17조에 따른 출생증서 공개 청구 요건·절차 등

- 지역상담기관의 장 또는 상담원은 위기임부가 초기 상담 시점부터 바로 보호출산에 대한 안내·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도 위기임신 상담(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상담 등)을 진행하여야 보호출산에 대한 안내와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위기임신 상담을 우선 실시
  - 원가정 양육 상담 후에도 본인이 직접 아동을 양육할 의사가 없는 경우 보호출산 상담에 앞서 입양 상담을 진행하고 입양 절차를 안내하며 보호출산은 최후의 수단으로 상담
- 위기임산부의 상담 요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음

## 2) 보호출산 상담 관련 고려 사항

- 보호출산 상담은 대면상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대면상담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상담이나 온라인상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음
- 지역상담기관의 장 또는 상담원은 보호출산 신청 사실, 신청인의 신원과 보호출산 상담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당사자 동의 없이 당사자가 아닌 사람(당사자의 부모 등)에게 공개하지 않아야 함(모든 상담의 내용은 비공개)

### 법 제23조

- 제23조(비밀유지의 의무) 중앙상담지원기관, 지역상담기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권리보장원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보호출산 상담 전에 가능하면 생부와 함께 원가정 양육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위기임부에게 안내하여야 함
  - 상담 과정에서 생부의 양육 의사를 우선 확인하되, 여러 위험 상황 등으로 인하여 생부의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기임부에게 생부가 자녀를 인지하고 양육할 수 있음 등을 설명

- 생부가 양육 의사가 있음에도 위기임부가 보호출산을 결정한 경우에는 생부에게 「민법」,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절차 등 관련 사항을 안내

**「민법」 제855조의2**

- 제855조의2(인지의 허가 청구) ① 생부(生父)는 제844조제3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생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844조제1항 및 제3항의 추정 미치지 아니한다.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①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다만,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부가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함에 있어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모가 공적 서류·증명서·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 상담 과정에서 생부에게 출생증서 작성과 공개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고 가급적이면 생부에게 출생증서 작성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함
- \* 출생증서 작성 시 생부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하여 생부의 동의 없이도 위기 임부에 대한 상담만으로 처리 가능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 신청 여부를 고민하는 경우 일정 시점이 지나면 보호출산 신청의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함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위기임산부에 대한 보호출산 상담 시에도 위기임신 상담과 동일하게 상담 내용을 기록하여야 함(상담 과정에서 수기로 기록한 경우 위기임신등 지원정보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입력)
- 위기임부가 보호출산 상담을 받던 도중 다른 지역상담기관에서 보호출산 상담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경우 다른 지역상담기관으로 사례 이관을 요청할 수 있음
  - 이 경우 원래 위기임부에 대해 상담 중이던 지역상담기관은 위기임부의 동의를 받아 다른 지역상담기관으로 사례 이관을 지원할 수 있음

### 3) 보호출산 신청 절차

#### 1) 위기임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보호출산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호출산 신청서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를 갖추어 지역상담기관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함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보호출산을 신청하려는 사람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보호출산을 신청하려는 사람의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함
    - \*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청소년증, ▲ 여권, ▲ 국가보훈등록증, ▲ 장애인등록증, ▲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기록·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모바일 앱 형태의 신분증명서도 가능)
  - 신분 확인 등을 위해 보호출산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지역상담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인력의 안내 하에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함. 다만, 교정시설 입소자 등 지역상담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상담인력이 보호출산을 신청하려는 사람을 찾아가서 보호출산 상담을 진행하고 보호출산 신청을 받을 수 있음
    - \* 보호출산 신청은 본인이 직접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따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므로 반드시 대면으로 신청을 받아야 함.(예시 : 해외출국자의 경우 입국하여 상담인력과 대면으로 면담하는 방법으로 신청 가능)

● 신청서 내 작성 항목

- 신청인 항목에 위기임부 본인의 주민등록 상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 상 현 주소(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실거주지도 별도 작성하며 동일한 경우 주소만 적어도 무방함)를 반드시 적도록 함
- 신청인에게 연락이 가능한 거주지의 유선 전화번호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적도록 함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에 대한 항목은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함
- 보호출산 신청을 하기 전 받아야 하는 상담을 모두 받았는지 신청서에 체크하여야 하며, 하나의 항목이라도 상담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신청 연, 월, 일과 신청인의 이름을 적고 신청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함

- 지역상담기관은 필요시 보호출산 신청인이 서명하고 날인한 신청서를 스캔하여 전자기록물 또는 이미지 형태의 사본으로 보관할 수 있음. 또한, 보호출산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와 전자기록물 형태의 신청서 사본을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 보호출산을 신청하려는 지역상담기관과 위기임신·보호출산 상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은 지역상담기관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서식 제15호]에 따라 보호출산 상담을 받은 지역상담기관에서 발급한 ‘상담사실 기술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위기임부가 서로 다른 지역상담기관에서 보호출산을 신청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상담기관은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하기 전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 번호로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에서 보호출산 신청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2) 보호자가 위기임부를 대신하여 신청하는 경우

- (보호출산 대리 신청 요건) 위기임부는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기임부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호자가 위기임부를 대리하여 보호출산 신청 가능

- (의사 결정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 피성년후견인, ▲ 만 14세 미만인 미성년자, ▲ 그 밖에 시·도지사가 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 심신쇠약 등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아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조력인의 도움을 받아 위기임신 상담과 보호출산 상담을 받고 보호출산에 대한 사항을 이해하여 스스로의 의사로 보호출산 신청을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리인에 의한 보호출산 신청을 허용하지 않음

- (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 시·도지사는 위기임부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으로 인정하는지를 심의하기 위하여 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음

**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 (위원)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 지역상담기관의 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시·도의 위기임산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각 1명 이상 위원으로 포함돼야 함
  - 그 밖에 인간심리, 사회복지 또는 교육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도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음
- (위원장) 참석한 위원 중에 호선으로 결정
- (다른 위원회와의 통합 운영) 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이미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운영 방식) 대면 방식으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서면으로 개최 가능

**판례의 “의사결정능력”**

- (대법원 2001다10113)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

- 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의 업무 절차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만 14세 미만이나 피성년후견인이 아닌 위기임부에 대해 보호자가 보호출산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의사능력 심의를 요청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지역상담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함. 이 경우 위원회는 그 간 위기임부와 상담을 진행한 상담 직원이 반드시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또한, 위원회 개최 사실을 위기임부와 보호자에게 미리 알리고 참석 여부를 확인하여 가능한 한 참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것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회신 하여야 함
  - \* 심의 결과 의사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보호자의 보호출산 대리 신청을 수리하지 않아야 함

● 보호자의 요건

- 위기임부의 보호자인 「민법」에 따른 친권자(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등) 또는 후견인
- 친권자와 후견인이 없는 경우 : 「민법」에 따른 부양의무자로 사실상 해당 임신부를 보호하는 사람

**「민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

-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 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 1. 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 (직계혈족) 자기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친족) 배우자, 혈족 및 인척  
(혈족)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조카 등),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삼촌, 고모, 이모 등)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사촌 등)  
(인척)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 친권자, 후견인, 「민법」에 따른 부양의무자로 사실상 해당 위기임부를 보호하는 사람이 모두 없는 경우(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 : 사실상 해당 위기임부를 보호·양육하는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아동양육시설), 제2호(아동일시 보호시설) 또는 제4호(공동생활가정)에 따른 시설의 장의 시설장 또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가정위탁보호자 중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

● 보호자가 위기임부를 대신하여 할 수 있는 행위

- ※ 위기산부의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에도 동일하게 적용
-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보호출산 신청

-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 및 출산을 받기 위한 통지
-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 밖에서 출생한 사실의 통보
-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아동의 인도 또는 인도 요청
-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호출산 신청의 철회
-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출생증서 작성(보호자가 아닌 위기임부 본인에 대한 정보를 기록)
-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출생증서 공개의 동의
-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비용지원 신청
- 보호자의 대리 행위에 따른 법적 효과
  - 보호자가 보호출산 신청 등을 대리하는 경우 그 신청 등은 위기임부 본인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
- 대리 신청 시 신청서 작성 유의 사항
  - ※ 비용지원 신청의 경우 3. 비식별화 등 지원 → ② 보호출산 신청인에 대한 비용 지원 → 3) 비용 지원 절차 → ● 보호자 신청시 유의사항 참고(p.142)
  - 신청인 항목에 위기임부의 주민등록 상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 상 현 주소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실거주지도 별도 작성하며 동일한 경우 주소만 적어도 무방함)를 반드시 적어야 함
  - 대리인 항목에 대리인의 주민등록 상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 상 현 주소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실거주지도 별도 작성하며 동일한 경우 주소만 적어도 무방함),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중 하나 이상, 신청인과 관계, 대리신청 사유를 모두 반드시 적어야 함
    - 대리신청 사유에는 위기임부가 ▲ 14세 미만인 경우, ▲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 기타 위기임부가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 중 하나를 적음

- 대리신청 사유에 따라 위기임부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만 14세 미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밖에 시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야 함
- 위기임부 대신 대리인이 신청서에 서명과 날인 함
- 대리인이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야 함

#### 4 출생증서 작성

##### 1) 작성 시점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위기임부가 보호출산 신청을 할 때 출생증서를 같이 작성
  - 원칙적으로 보호출산 아동의 성본창설 이전, 아동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다른 모든 정보를 작성하고 출생증서를 사전 인쇄하여 위기임산부(신청인)에게 서명을 받아야 하며,
  - 성본창설 및 주민등록 이후 아동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출생증서 봉투 겉면에 작성, 서명된 출생증서를 넣은 후 밀봉함
  - 따라서, 가급적 산모가 출산하기 전에 출생증서 속지 서식을 작성하여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2) 작성 방법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보호출산 신청인과 아동의 생부에 대한 인적정보, 건강상태, 아동의 성명, 상담 내용 등이 포함된 출생증서를 작성하고, 작성한 출생증서를 봉투에 넣어 밀봉
    - 다만, 소재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또는 신청인을 통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재 생략 가능
- \* 이 경우 생부에 대한 정보는 보호출산 신청인이 아는 범위에서 작성하고, 보호출산 신청인을 통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생략 가능

**영 제6조**

- 제6조(출생증서의 생략 정보)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소재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생부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2. 생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3. 생부가 확인을 거절하는 경우
  4. 그 밖에 생부에 의해 위기임산부와 그 태아 및 아동의 안전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출생증서가 들어있는 봉투의 겉면에 출생증서가 들어있다는 사실, 보호출산 신청인의 가명, 출생증서를 작성한 지역상담기관의 명칭 및 주소를 기재한 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할 때까지 보관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출생증서를 작성하거나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한 경우 [서식 제16호]에 따른 ‘출생증서 관리 대장’에 출생증서 보관·이관 사실과 보관·이관 장소 등을 기록하여야 함
- 지역상담기관은 출생증서의 내용을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출생증서의 사본을 관리하여야 하며,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출생증서 속지, 출생증서 봉투 등을 인쇄할 수 있음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출생증서 작성 시 보호출산 신청인 또는 생부에게 추후 아동이 출생증서 공개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적정보 공개에 대한 동의 요청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함

**3) 작성 내용**

- (출생증서 속지) [서식 제17호]에 따른 ‘출생증서(속지)’ 서식에 따라 작성
  - 신청인 및 생부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내국인에 한정한다)
    - \* 생부가 외국인이라서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본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여권사본 등으로 대체 가능

- 신청인 및 생부의 유전적 질환 및 그 밖의 건강상태
  - \* 본인이 알고 있는 한에서 가능한 객관적인 병력과 주관적인 건강상태를 서술하도록 하되, 병원의 건강진단서 등을 요하는 수준까지 작성할 필요는 없음
- 신청인이 아동의 성명을 지어준 경우 그 성명
  - \* 해당 성명은 아동의 출생정보 통보 시 함께 통보하고 시·읍·면은 이를 존중하여 출생 기록함  
신청인이 성명을 지어주지 않은 경우에도 지역상담기관에서 아동의 성명을 지어 시·읍·면에 통보
- 신청인이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의 사회적·경제적·심리적 상황 등 상담 내용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규칙 제14조

- 제14조(출생증서 작성 사항)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모 및 생부의 주소, 연락처 및 국적
  2. 생모 및 생부의 거주지역(시·군·구의 명칭을 말한다)
  3. 보호출산 또는 법 제14조에 따른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 시 생모 또는 생부의 나이 및 신청일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출생증서 봉투) [서식 제18호]에 따른 ‘출생증서 봉투’ 서식에 따라 작성
  - 출생증서가 들어있다는 사실
  - 비식별화된 보호출산 신청인의 가명과 전산관리번호
  - 출생증서를 작성한 지역상담기관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
  - 출생증서를 작성한 지역상담기관 상담원의 이름

#### 4) 기타 사항

- 보호출산 신청인 또는 생부가 신청인·생부 또는 아동과 관련된 물품을 추후 아동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음
  - 지역상담기관은 보호출산 신청인이 아동에게 남긴 물품을 1차적으로 보관, 추후 출생증서와 함께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해야함

## - 기록물 보관시 주의사항

- ① (편지, 디지털 이미지가 아닌 필름, 동영상 등) 시스템에 첨부문서로 등록하고 저장매체(USB, CD 등)에 보관하여 출생증서 봉투에 동봉
- ② (아동소유물품) 생모와 생부가 남긴 물품은 지자체로 아동과 함께 인도하는 것이 원칙, 중도 분실 등 우려로 추후 아동에게 출생증서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이관봉투에 동봉 가능
  - \* 다만, 출생증서 규격 범위에 벗어나는 부피가 큰 물품(ex. 이불, 애착인형 등)의 경우 사진 촬영 후 사진 형태로 출생증서와 함께 보관
- ③ (편지, 사진) 원본 보관이 원칙, 지자체로 기인도한 경우 사본을 출생증서에 동봉하고 원본이 지자체로 인도되었다는 사실을 [서식 제19호]아동소유물품 인도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
  - \* 편지·사진은 훼손, 분실 등 우려로 원본을 출생증서에 보관, 사본을 지자체로 인도하고 물품의 경우 아동이 직접 보관하고 지닐 수 있도록 지자체로 인도
  - \*\* 육아일기(산모수첩)의 경우 지자체(아동 보호자)로 원본을 인도하는 것이 원칙

## 2 위기산부의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 상담기관

### ① 위기산부의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

#### 1) 출산 후 아동보호 요건

- 보호출산을 신청하지 아니한 위기임부가 아동을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마치지 아니하고 아동의 생모에 대한 비식별화, 법 제11조에 따른 조치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아동의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출산일로부터 1개월 내에 지역상담기관에 출산 후 아동보호를 신청 가능

\* 출산일로부터 1개월을 계산할 때 출산일을 산입하지 않음  
(예시 : 출산일이 2024년 5월 23일인 경우 2024년 6월 23일까지 산후 아동 보호 신청 가능)

- 출산 후 아동보호를 신청하고자하는 위기산부는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함
  - ※ 생부의 국적은 무관하므로 생부가 외국인이라도 위기임부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이면 신청 가능
- 출산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출산 후 아동보호를 신청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위기산부가 반드시 출생신고를 하고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

\* 출산일로부터 1개월을 계산할 때 출산일을 산입하지 않음  
(예시 : 출산일이 2024년 5월 23일인 경우 2024년 6월 23일까지 산후 아동 보호 신청 가능)

#### 행정기본법 제6조

■ 제6조(행정예 관한 기간의 계산) ① **행정예 관한 기간의 계산예**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등예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②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예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준예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한다.
2.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기간은 그 날로 만료한다.

※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보호출산과 동일하게 대한민국 국민인 위기산부 본인이 스스로의 의사결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보호출산 대리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출산과 동일하게 보호자가 출산 후 아동보호를 대리 신청할 수 있음

## 2) 출산 후 아동보호의 보호출산 절차 준용

- 출산 후 아동보호의 ▲ 신청, ▲ 아동의 출생기록 및 보호, ▲ 출생증서의 영구보존 및 공개, ▲ 신청의 철회 등에 대해서는 보호출산 관련 절차를 준용

### 법 제14조제3항

- 제14조(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아동의 출생기록 및 보호, 출생증서의 영구보존 및 공개, 신청의 철회 등에 대하여는 제9조,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기임부”는 “위기산부”로, “보호출산”은 “출산 후 아동보호”로, “아동을 보호출산한 날”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날”로, “제9조의 신청인”은 “제14조의 신청인”으로, “제9조제3항에 따라”는 “제14조제1항에 따라”로,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으로, “제9조에 따른 신청”은 “제14조에 따른 신청”으로 본다.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출산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이 도래하지 않은 위기산부가 출산 후 아동보호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전에 법 제7조에 따른 상담을 먼저 받을 것을 권유하여야 함(충분한 상담 없이 출산 후 아동보호를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고 위기산부의 원가정 양육을 최대한 지원)

\* 다만, 출산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이 임박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상담을 먼저 받을 수 없는 위기임산부에 대해서는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을 먼저 받고, 그 이후에 법 제7조에 따른 상담을 하여야 함

- 출산 후 1개월이 지난 위기산부가 출산 후 아동보호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상담기관은 위기산부에게 출산 후 아동보호를 신청할 수는 없다는 점을 알리고 원가정 양육 상담, 입양 상담을 우선 실시하여야 함. 또한 위기산부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고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함

\* 위기산부가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경우 1개월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의료기관에 기록된 출생정보가 시·읍·면으로 통보되기 때문에, 출생신고의 최고(催告)를 받거나 과태료를 물을 수 있으며, 시·읍·면에서 직권으로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음

## ②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 절차

### 1) 신청서 작성

- 출산 후 아동보호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서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 아동의 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지역상담기관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함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출산 후 아동보호를 신청하려는 사람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출산 후 아동보호를 신청하려는 사람의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함
  - \*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청소년증, ▲ 여권, ▲ 국가보훈등록증, ▲ 장애인등록증, ▲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기록·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모바일 앱 형태의 신분증명서도 가능)
- 신분 확인 등을 위해 출산 후 아동보호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지역상담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인력의 안내 하에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함. 다만, 교정시설 입소자 등 지역상담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상담인력이 출산 후 아동보호를 신청하려는 사람을 찾아가서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을 받을 수 있음
  - \*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은 본인이 직접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따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므로 반드시 대면으로 신청을 받아야 함
- 위기산부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 출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 ▲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상황일지, ▲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
  - \*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는 경우)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 시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이 발급된 즉시 해당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출산 후 아동보호를 신청할 수 있음

- 지역상담기관은 출산일로부터 1개월이 지났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출생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발급 의료기관에 확인하여야 함

※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 출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관련 세부 내용은 “V.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 보호 → 2.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출생통보 → 2-2.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아동이 출생한 경우 출생통보의 절차” 참조(p.184)

- 신청서 내 작성 항목 및 보호자의 대리신청 등 기타절차는 IV. 보호출산 및 출산 후 아동보호 → 1. 위기임부의 보호출산 신청 → 3. 보호출산 신청절차(p.117)를 준용

## 2)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에 따른 후속 조치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출산 후 아동보호를 신청한 위기산부에게 위기임신 상담과 보호출산 상담을 제공하고 출생증서를 작성하여야 함

- 출산 후 아동보호에 따라 아동을 인도하기 전에 상담을 제공해야 함. 다만, 위기임산부의 사정을 고려하여 지역상담기관이 인정한 경우 위기임산부와 아동을 함께 일시보호하면서 상담할 수 있음

※ 출산 후 아동보호를 신청한 위기산부가 받아야되는 상담 내용은 아래 내용을 준용

- “Ⅲ. 위기임산부 상담·지원 → 3. 위기임신 상담의 방법 및 절차”(p.44)

- “Ⅳ. 보호출산 및 출산 후 아동보호 → 1. 위기임부의 보호출산 신청 → 1-2. 보호출산 상담 → 1) 보호출산 신청을 위한 사전 상담”을 준용(p.114)

※ 출산 후 아동보호를 신청한 위기산부에 대한 출생증서 작성은 “Ⅳ. 보호출산 및 출산 후 아동보호 → 1. 위기임부의 보호출산 신청 → 1-4. 출생증서 작성”을 준용(p.122)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위기산부가 출산 후 아동보호를 신청하면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출생사실의 통보내역 등의 삭제 등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과 위기산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위기산부의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 출산 후 아동보호를 신청한 위기산부에 대한 출생통보 내역의 삭제 통보는 V.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 보호 → 2.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출생통보 → 2-3.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에 따른 출생통보의 절차” 참조(p.187)

3

비식별화 등 지원

상담기관

지자체

의료기관

건보공단

심평원

1 보호출산 신청인의 비식별화

1) 비식별화의 방법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부 또는 출산 후 아동보호를 신청한 위기산부에 대하여 비식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야 함
- 비식별화를 위해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련 정보를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개요

- (목적) 사회보장급여법 일부 개정(제7조의2 신설, '24.7.3.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로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기 위함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자신의 본래의 신원을 숨기고 진료를 받고자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사용 가능
- (부여 대상)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① 출생 미신고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사람
  - ② 일정한 거소가 없는 무연고자로서 주민등록번호 부여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
  -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의 입소자로서 범죄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 ④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부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비식별화를 신청한 위기산부
- (운영 원칙)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는 주민등록 불명자나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가 사회보장 급여 및 관련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임시로 부여하는 것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기 위해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전산관리번호 발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시·군·구의 전산관리번호 발급 담당자가 요청받은 내용을 승인한 경우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전산관리번호가 자동으로 발급되고 지역상담기관에게 전산관리번호가 통지됨

\* 이 경우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시·군·구 담당자에게 노출되지 않음

- 비식별화를 위해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 다만, 생부에 관한 정보로서 직접 또는 보호출산 신청인을 통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은 입력하지 않을 수 있음

1. 보호출산 신청인의 전산관리번호(「사회보장급여법」 제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보장기관의 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전산관리번호를 말한다)
2. 보호출산 신청인 및 생부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내국인만 해당한다)
3. 아동의 성별, 수, 출생 연월일시
4. 보호출산 신청인이 아동의 성명을 지어준 경우에는 그 성명
5. 보호자가 보호출산을 대리 신청한 경우에는 그 보호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6. 그 밖에 보호출산 신청인의 지원 및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비식별화 시점에서 생부, 아동 관련 정보를 수집하지 않은 경우 추후 시스템에 보완하여 입력하는 것도 가능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시·군·구청장으로부터 통지받은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와 전산관리번호와 연계된 가명을 보호출산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보호출산 신청인의 비식별화를 위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부여는 “Ⅶ. 기타업무 → 2. 위기임산부 대상 전산관리번호 부여 → 2.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부여”를 참조(p.210)

## 2) 임신부확인서의 발급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비식별화된 정보로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하려는 위기임산부에게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전산관리번호가 기재된 임신부확인서를 발급해야 함

**규칙 제8조**

- 제8조(산전 검진 및 출산 방법) ①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비식별화된 정보로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하려는 위기임부에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을 위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전산관리번호가 기재된 임신부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임신부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으며, 유효기간은 출산 후 6개월로 한다.

- 임신부확인서에는 위기임산부에게 부여된 전산관리번호, 전산관리번호와 연계된 가명, 생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함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위기임산부의 안전 등을 위해 위기임산부가 사용 중인 약물, 기타 대상자에 대한 사항(주요 병력, 사용 약물 등) 등을 위기임산부에게 확인하여 임신부확인서에 기재하여야 함
  - \* 위기임산부가 사용 중인 약물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기재가 불가능한 경우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역상담기관은 시·군·구로부터 위기임산부에 대해 전산관리번호가 발급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직후 임신부확인서를 작성하여 위기임산부에게 제공하여야 함
- (임산부확인서의 활용) 위기임산부는 지역상담기관에서 발급한 임신부확인서를 의료기관에 제시함으로써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할 수 있음

**시행규칙 제8조**

- 제8조(산전 검진 및 출산 방법) ③ 위기임부는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임신부확인서를 의료기관에 제시하여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할 수 있다.

- 위기임산부가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자격에 따라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을 제출하는 대신 임신부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음
  - \* 다만, 대부분의 국민이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본인확인을 진행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낙인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위기임산부의 가명과 전산관리번호에 기반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 하고, 의료기관이 해당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시행규칙 제7조, 관련 고시**

-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건강보험증) ③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로 요양기관이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 법 제12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란 다음 각 호의 증명서 또는 서류(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전자적 방식의 증명서 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 경우 그 증명서 또는 서류에 유효기간이 적혀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3.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첨부되어 있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
-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신분증명서 이외의 본인 여부 확인방법 등) 요양기관이 규칙 제7조제3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기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확인서

**의료급여법 제8조, 시행규칙 제14조**

- 의료급여법 제8조(의료급여증) ③ 수급권자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로 의료급여기관이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4조(의료급여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 법 제8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란 다음 각 호의 증명서 또는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그 증명서 또는 서류에 유효기간이 적혀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3.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및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신부 확인서

※ 의료기관의 본인 확인 업무 담당자는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의 임신부에 대해서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며(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 예외 대상에 해당), 의료급여기관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달리 의료급여 자격 보유자에 대한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할 의무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야 함

### 3) 산전 검진 및 출산

- (의료기관 선택) 보호출산 신청인의 경우 의료기관 중 산전 검진 및 출산을 원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지역상담기관에서 통지받은 비식별화된 정보로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할 수 있음
- (위기임산부의 자격 확인)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자격조회시스템'을 활용하여 위기임산부의 요양급여(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유 중인 위기임산부의 자격\*을 의료기관에게 회신
    - \* 건강보험, 의료급여, 무자격자, 건강보험 자격정지자, 건강보험 급여제한자 등
  - 의료기관은 회신받은 자격을 바탕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액수를 산정하고 위기임산부에게 해당 금액을 수납받아야 함
  - 의료기관은 회신받은 자격을 바탕으로 위기임산부 등에 대한 진료 등 의료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본인부담율을 산정하여야 함
- (의료서비스 제공) 의사 등 의료인은 다른 환자와 동일하게 위기임산부 등에 대해서 진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
  - 의사 등 의료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위기임산부에 대해 비식별화된 정보 또는 전산관리번호로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여야 함

**진료기록부 작성 관련 규정**

- 법 제10조(보호출산의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에 대하여 제9조제3항에 따라 비식별화가 이루어진 정보로 진료 기록부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①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및 간호기록부에 기록해야 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료기록부
    - 가.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다만, 진료를 받은 사람이 가명 또는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성명 대신 가명을 기록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대신 전산관리번호를 기록할 수 있다.

-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진료기록부 이외에도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 출생증명서, 사산·사태증명서, 처방전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계산서·영수증 등 각종 서류를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임산부에 대해 작성·발급하는 경우 가명(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비식별화된 가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전산관리번호를 기재할 수 있음
  - \* (법적 근거)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및 가명 기반 의료기관의 업무 처리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 위기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과 전산관리번호로 진료받아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를 위하여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서식 제14호]에 따른 '동일인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음
  - \* 보호출산 신청인 등 전산관리번호를 발급받은 사람의 실제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위기임산부의 실명, 주민등록번호, 가명,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가 적혀있고 지역상담기관의 날인한 서류
- 위기임산부가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임신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기관에게 신분증, 임신부확인서, 동일인확인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의료기관은 해당 서류를 모두 확인한 이후 임신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음
  - \* 의료기관 종사자는 서류의 진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행정기관 등에 대한 보고 등

-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은 해당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임신부가 사망하거나 사산(死産)하였을 때 또는 신생아가 사망하였을 때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임신부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임산부인 경우 성명 대신 가명을 적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모자보건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 모자보건법 제8조(임산부의 신고 등) ③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은 해당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임신부가 사망하거나 사산(死産)하였을 때 또는 신생아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임산부 및 신생아 등의 사망보고) ①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이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임산부의 사망·사산 또는 신생아의 사망에 관하여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中

주(註): 임신부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임산부의 성명 대신 가명을 기재할 수 있고 생년월일,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가 출생하면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임신부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임산부인 경우 성명 대신 가명을 적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그 밖에 의료기관에서 처리하는 각종 업무에 대해서도 위기임산부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전산관리번호로, 성명 대신 가명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 위기임산부의 지원

-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임신부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가까운 지역상담기관으로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

-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위기임산부가 연속적인 진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실명 진료기록과 가명 진료기록 간 연계를 요청하였을 때 위기임산부의 동의를 받아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로 진료받은 이력에 가명과 전산관리번호로 진료받은 이력을 추가하거나, 가명과 전산관리번호로 진료받은 이력에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로 진료받은 이력을 추가할 수 있음

\*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 등은 위기임산부의 신분증, 임신부확인서, 동일인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함. 단, 전산관리번호 부여 전 임신부가 실명으로 검진받은 의료기록은 가명 처리(변경)되지 않음

\*\* 다만, 새롭게 추가한 진료기록은 진료기록부의 추가 기재에 불과하므로, 본래 기록되었던 진료기록부에 기록된 사항이 다른 진료기록부에 추가로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진료기록부의 내용을 임의로 삭제해서는 아니됨

-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보호출산 신청인이 사망하거나 의식불명에 빠지는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지역상담기관으로 연락 가능

• 만약 보호출산 신청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증명서 발급, 임신부 사망 보고는 실명으로 처리하여야 함, 의료기관은 산모의 실명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역상담기관에서 경찰관서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의료기관의 업무를 지원할 필요

- 위기임산부가 가명과 전산관리번호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경우 실제 신원(실명과 주민등록번호)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은 가상의 신원(가명과 전산관리번호)으로 처리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야 함

\* (예시) ▲ 의료비 세액공제, ▲ 실손보험 간편 청구 등

#### 4) 진료비 심사·청구 및 급여비용 지급

- 의료기관 등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면 요양급여 심사청구서에 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려면 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에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 의료기관 등이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임산부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또는 의료급여비용명세서를 작성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의료급여를 받은 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대신 가명과 전산관리번호를 기재할 수 있음

- 위기임산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또는 의료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 심사의 내용을 통보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기임산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또는 의료급여비용을 의료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함

## 5) 비식별화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 < 임신 관련 사회보장급여 >

- 보호출산 신청인 또는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인은 임신 사실을 수급 요건으로 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로 신청하여야 하며, 비식별화된 정보(가명과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로 사회보장급여를 수급할 수 없음
- 임신 관련 사회보장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임신부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혀있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확인서 필요
  - ※ 의료기관에서 가명과 전산관리번호로 진료받아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 Ⅳ. 보호출산 및 출산 후 아동 보호 → 3. 비식별화 등 지원 → 3) 산전 검진 및 출산 → ● 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라 신분증, 임신부확인서와 함께 동일인확인서를 의료기관에 제시함으로써 발급받을 수 있음(p.134)
- 신청인은 보장기관의 장에게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급여의 신청서와 임신확인서(실명과 주민등록번호 기재)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
  - \* 모자보건 사업(보건소),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국민건강보험공단) 등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신청인에 대한 보호출산 상담 과정에서 실명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경우 임신 사실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여야 함
-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임신출산바우처를 신청한 경우 사회보장급여 수급 안내를 위해 임신 사실이 행정안전부 등 다른 행정·공공기관에게 제공되므로 해당 사실에 유의할 것

-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상담기관에서 보호출산 또는 출산 후 아동보호를 신청한 신청인을 대상으로 신청인이 실명을 노출하지 않고도 임신 관련 물품(모자보건수첩, 엽산·철분제, 유축기 등 각종 기기 대여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산하 보건소와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산하 보건소와 지역상담기관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출산·양육 관련 사회보장급여〉

- 보호출산 신청인 또는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인은 아동을 출산하더라도 아동의 양육을 수급 요건으로 하는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없음
  - 신청인이 시·군·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하면 친권이 정지되므로 아동을 인도한 즉시 양육 관련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권을 행사할 수 없음
    - ※ 이론적으로는 출생신고 없이 아동 인도전까지는 사회보장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나, 아동이 출생미신고인 상태로 수급할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는 거의 없고 출산 후 1개월 이내에 출산 후 아동보호를 신청해야 되는 점 고려
  - 혹시라도 아동 인도 시점에서 양육 관련 사회보장급여를 수급 중이라면, 아동 인도에 따른 친권 정지가 행복이음 등 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으므로 지급받은 사회보장급여가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아동 인도 전 신청인에게 양육 관련 사회보장급여 수급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혹시라도 수급 중인 경우 수급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도록 안내하여야 함
- 다만, 보호출산 산모가 보호출산 또는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을 철회한 경우 아동을 재인도받는 시점에서 친권이 회복되므로, 친권 회복 이후 아동의 출생신고를 한 이후에는 양육 관련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음

## ② 보호출산 신청인에 대한 비용 지원

### 1) 비용 지원의 원칙

- 보호출산 신청인의 경우 신원 노출 우려 때문에 각종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 산모와 유사한 수준의 비용을 지역상담기관에서 지원
  -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부와 출산 후 아동보호를 신청한 위기산부를 대상으로 비용을 지원
  - (신청 가능 시점) 보호출산 신청 접수 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출산 신청인이 지역상담기관에서 통지받은 비식별화된 정보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 및 출산할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 산전 검진 및 출산에 관한 비용
    - 출산 후 숙려기간 동안 필요한 비용
    - 그 밖에 보호출산 신청인이 산전 검진 및 출산을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용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신속한 비용 지원을 위해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을 활용할 수 있음. 이 경우 중앙상담지원기관은 비용 지급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지역상담기관은 비용 신청 접수 및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
  - 그 밖에 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함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등은 보호출산 신청인이 산전 검진 및 출산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비 매칭 없이 지방비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하여 보호출산 신청인을 지원할 수 있음

### 2) 비용 지원의 종류

- 의료비 지원
  - (목적) 보호출산 신청인이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본인부담금) 부담을 경감

## - (지원 금액) 1회당 100만원

\*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태아의 수에 비례하여 추가 지원(예시 : 쌍둥이는 200만원, 세쌍둥이는 300만원 지원)

## - (지급 가능 시점) 보호출산 신청인이 보호출산을 신청하여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지급 가능

※ 비식별화된 정보로 산전 검진 및 출산할 때 본인부담금 외에 필요한 급여비용은 보호출산 신청인의 의료 관련 자격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제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료 급여 제도)가 부담함

## ● 숙려기간 비용 지원

## - (목적) 보호출산 신청인이 출산 이후 숙려기간(7일 이상) 동안 아동과 함께 생활하면서 유대감을 쌓고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지원

## - (지원 금액) 1회당 최대 140만원(일 20만원, 최대 7일 지급)

\*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도 140만원만 지원(의료비와 달리 태아 수에 비례하여 지급하지 않음)

## - (지급 가능 시점) 아동을 출산한 즉시 지급 가능

## 3) 비용 지원 절차

## ● 비용 지원 신청서 작성

## - 보호출산 신청인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산전 검진 및 출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보호출산의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 이 경우 보호출산 신청인은 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보호출산 비용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역상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비용 지원을 신청한 보호출산 신청인에게 비용 지원 중복 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중복 신청 시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함.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보호출산 신청인에게 중복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두로 확인한 이후 신청을 접수하여야 함

\* 의료비, 숙려기간 비용의 경우 임신 1회당 1번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다태아의 경우 의료비는 태아 수에 비례하여 지급)

-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에 비용 지원 신청 관련 사항을 입력하고,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보호출산 신청인에게 비용이 중복으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이미 보호출산 신청인에게 비용이 지급된 경우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야 함

● 보호자 신청시 유의사항

-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대리 신청이 가능함
- 보호자가 보호출산 비용 신청 등을 대리하는 경우 그 신청 등은 위기임산부 본인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서 작성시 위기임부 항목에는 ▲ 위기임산부의 주민등록상 성명, ▲ 가명, ▲ 전산관리번호를 작성하며 보호자 항목에는 ▲ 대리인의 주민등록상 성명, ▲ 신청인과의 관계를 작성함
- 대리신청 사유에 따라 위기임산부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만 14세 미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해야함
- \* ▲ 위기임산부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 만14세 미만, ▲ 그 밖에 보호자 심사신청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위기임산부가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이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해야 함

● 비용 지급의 방법

- ※ 아래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호출산 신청인에게 지원하는 의료비와 숙려기간 비용의 지급을 위한 절차이며,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보호출산 신청인에 대해 비용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하지 않음(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하기를 원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중앙상담지원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절차를 적용할 수 있음)
- 현금으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명목 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오·남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원 노출을 방지하면서 사용처 업종 제한이 가능한 무기명 선불카드\*를 활용하여 비용 지급
- \* 미리 충전된 금액 범위(최대 50만원)에서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전자상품권(무기명으로 사용하는 경우 일반 카드와 달리 신원이 노출되지 않는 장점)

**무기명 선불카드 관련 세부 사항**

- (업무협약) 무기명 선불카드 발행·관리를 위해 복지부-보장원-신한카드 간 3자 협약 진행(24.6월)

**〈기관별 역할〉**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중앙상담지원기관)	신한카드
- 보호출산 산모 지원 예산 확보·교부 - 사업 총괄관리	- 상담기관별 카드 배부·관리 - 예산 집행 - 카드 관련 민원처리	- 카드 제작·발행 * 비용 부담 포함 - 카드사용내역 정산

- (업종제한) 의료비는 의료기관·약국으로 사용처 제한(임신출산바우처와 동일), 숙려기간 비용은 유흥 등만 제한(클린카드\* 수준)  
 \* 유흥, 위생, 레저, 사행, 기타업종 외 허용
- (선불카드 유효기간) 의료비 : 카드 발급 후 1년/숙려기간 비용 : 카드 발급 후 6개월

● 무기명 선불카드 발급 절차

**〈무기명 선불카드 발급 등 비용 지원 절차〉**



① 보조금 교부(복지부→중앙상담지원기관)

- 중앙상담지원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 회계연도 초에 해당 연도에 대한 비용 지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매년 초 중앙상담지원기관에서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사업 수행 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받은 비용 지급 계획서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계획을 승인하고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음

② 비용 예치(중앙상담지원기관→신한카드)

- 중앙상담지원기관 명의 신한카드 통장에 비용 지급 예산 전체(4.8억원)를 입금함  
 \* 의료비 카드는 2장(50+50), 숙려기간 카드는 3장(50+50+40) 발급

- ③ 빈 카드에 대한 금액 충전 요청(지역상담기관 → 중앙상담지원기관)
  - 중앙상담지원기관의 장은 금액이 충전되지 않은 빈 카드를 신한카드에게 받아서 지역상담기관에 미리 나눠주어야 함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비용 지급 시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앙상담지원기관의 장에게 금액이 충전되어 있지 않은 빈 카드에 대한 금액 충전을 요청하여야 함
  - \* (시스템 입력 정보) 비용 지원 신청인 인적 정보, 충전 대상 카드 정보
- ④ 빈 카드에 대한 금액 충전을 위한 정보 기재(중앙상담지원기관)
  - 중앙상담지원기관의 장은 지역상담기관의 금액 충전 요청이 있는 경우 신한카드의 시스템에 무기명 선불카드 금액 충전을 위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함
- ⑤ 카드 금액 충전(신한카드)
  - 신한카드는 중앙상담지원기관의 정보 입력에 따라 무기명 선불카드에 금액 충전
  - 무기명 선불카드에 금액을 충전할 때마다 중앙상담지원기관 명의 신한카드 통장의 잔액에서 충전금액(50만원 또는 40만원)만큼 차감\*
  - \* 의료비 카드는 2장(50+50), 숙려기간 카드는 3장(50+50+40) 발급
- ⑥ 보호출산 신청인에게 카드 지급(지역상담기관)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비용 지원을 신청한 보호출산 신청인에게 금액이 충전된 무기명 선불카드를 지급
  - ※ 보호출산 신청인에게 지원되는 비용(선불카드)은 신청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 (보호자에게 지급하지 않음)
  - 다만 신청인이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담당직원이 동행하는 등 지역상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지역상담기관 담당직원이 무기명 선불카드를 대신하여 보관하고 신청인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음
- ⑦ 보조금 정산(복지부, 중앙상담지원기관, 신한카드)
  - 신한카드는 유효기간이 지난 무기명 선불카드의 잔액을 중앙상담지원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함

- 중앙상담지원기관은 교부받은 보조금 중에서 ▲ 보호출산 신청인 미지급액, ▲ 신한카드 반납액에 대하여 불용처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함
  - \* 보조금의 사업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구분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금 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무기명 선불카드에 남아있는 금액을 이월처리할 수 있음

- 무기명 선불카드의 경우 신한카드사 홈페이지에 선불카드를 등록하지 않으면 분실 시 재발급이 어려우므로 위기임산부 또는 지역상담기관은 발급된 카드를 분실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 4) 비용 지원의 환수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출산 신청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법 제20조, 영 제9조에 따라 지원된 비용을 환수할 수 있음

##### 법 제20조 및 영 제9조

- 법 제20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의 신청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된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 영 제9조(비용 환수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용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원받은 자에게 환수 사유, 환수 금액, 납부 기한 및 수납 기관 등을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 기한은 납입 고지를 한 날부터 3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납 기관은 환수 비용을 납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비용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보호출산 신청인에 대한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함
- 의료비 환수 관련 고려사항
  - 의료비를 지원받은 보호출산 신청인이 사산·사태한 경우에는 비용을 환수하지 않음

4

보호출산 또는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의 철회

상담기관

지자체

심평원

1) 철회 요건 및 절차

1) 보호출산 신청인의 철회

- (철회 요건) 보호출산 신청인은 언제든지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할 수 있음
  - 다만, 해당 아동의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호출산 아동의 입양 허가 전까지만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할 수 있음
    - \* 입양 허가가 완료된 경우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할 수 없음
  - 출산 후 아동보호를 신청한 위기산부 또한 보호출산 신청인과 동일하게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할 수 있음
- (철회 절차) 보호출산 신청의 철회는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함
  - 보호출산을 철회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보호출산 등 신청 철회서를 작성하여 지역상담기관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함
    - \* 지역상담기관은 상담 과정에서 보호출산 신청인이 철회 여부를 고민하는 경우 ‘입양 허가 이후’에는 보호출산 신청의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함
  - 지역상담기관은 철회서를 받은 경우 관련 정보를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2) 입양 취소 판결의 확정에 따른 철회

- (철회 요건) 보호출산 아동이 입양된 경우에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입양 취소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
  - \* 보호출산 신청인 또는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보호출산 또는 출산 후 아동보호가 신청되어 입양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 입양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가정 법원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입양 취소 판결이 생부의 입양 취소 청구에 따라 확정된 경우\*에는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음

\* 생부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보호출산 또는 출산 후 아동보호가 신청되어 입양 취소를 청구하고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내입양특별법 제28조**

■ 제28조(입양의 취소) ① 양자의 친생의 부 또는 모는 모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게 되어 자신의 동의 없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철회 절차) 보호출산 신청인 등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입양 취소 판결이 확정되어 보호출산 신청이 철회된 경우에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입양의 취소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문을 보호출산 또는 출산 후 아동보호의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지역상담기관은 입양취소 확정판결문을 받은 경우 관련 정보를 위기임신등지원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2) 철회에 따른 후속조치**

**1) 지자체에 철회 사실 공유**

- 보호출산 또는 출산 후 아동보호의 철회 신청을 받거나 입양취소판결문을 제출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지역상담기관 소재 시·군·구의 담당 공무원에게 철회 사실을 알려야 하며, 해당 아동을 다시 인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하여야 함
- 이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철회를 신청한 자의 연락처와 아동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아동에 대한 성·본 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이 완료된 경우만 해당) 등을 같이 전달하여 아동 재인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2) 보호출산 아동의 현황 파악

- \* 아동이 아직 시·군·구로 인도되지 않은 경우 해당 사항 없음
-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는 지역상담기관으로부터 철회 사실을 통보 받은 즉시 보호출산 아동이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여야 함
  - \* 아동의 소재지, 아동의 보호자(위탁가정, 아동복지시설, 입양기관 등), 보호자의 연락처 등
- 보호출산 아동이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입양으로 보호조치되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는 아동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보호출산 철회 사실을 통보하고 진행 중인 입양 절차를 중지하도록 요청하여야 함
  - 아동 주소지 관할 시·군·구는 해당 아동에 대해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 신청이 접수된 경우,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 절차 중지를 요청하여야 함
- 이미 가정법원을 통해 입양 허가가 완료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는 즉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입양 절차 완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보호출산 철회를 신청한 산모에게 입양허가가 이미 완료되어 보호출산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함

## 3) 아동의 재인도

- 보호출산 신청인 등이 보호출산 또는 출산 후 아동보호의 신청을 철회한 경우 법 제12조의 아동 인도 의사도 철회한 것으로 간주
- 아동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의 담당 공무원은 지체 없이 해당 아동에 대한 사례 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보호조치를 취소하여야 하고, 관련 정보를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 아동의 재인도에 따라 보호조치를 취소하기 위한 사례결정위원회는 서면 방식으로 개최 가능

- 보호출산 신청인 등은 제12조에 따라 아동을 인도받았던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아동을 다시 인도받은 때부터 다시 친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는 보호출산 아동의 소재지와 보호자가 파악 되면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한 자에게 연락하여 아동 재인도를 위한 장소와 일시를 정하고, 보호출산 아동을 현재의 보호자로부터 인도받아 다시 보호출산 철회를 신청한 자에게 재인도하여야 함
  - 아동 재인도 시 지역상담기관 담당자가 산모와 동행하고, 출생신고 누락 방지를 위해 인도 후 출생신고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지원
- 보호출산 신청인 등은 아동을 재인도받은 이후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를 하여야 함
  - \*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는 등록기준지 소재 시·읍·면이 아닌 인근 시·읍·면에서도 가능
  - 다만, 이미 법 제11조에 따른 성·본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이 이루어져 아동에 대한 출생기록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법」 제53조를 준용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함

**출생신고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의미**

- 출생신고 : 출생신고된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동과의 관계가 기록됨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 법 제11조에 따른 성·본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에 의해 만들어진 보호출산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
- \*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삭제하는 것에 준하는 조치라고 생각하면 됨
- ※ 만약 출생신고 이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아동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이중으로 작성되므로, 가족관계등록관에서 직권 말소

- 보호출산 신청인 등이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모의 성명과 출생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함

- \* 출생증명서를 신청인의 가명과 전산관리번호로 발급받은 경우 [서식 제14호]에 따른 '동일인 확인서',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임산부확인서'와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출생정보가 기록되어 지역상담기관으로 통보된 '보호출산 출생정보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아동에 대해 이미 성분창설이 이루어져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경우 시·읍·면의 장은 출생신고서 양식(「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양식 제1호) 중 “기타사항란”에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하여 출생신고를 한다는 뜻을 기재하게 하여야 함
- 이 경우 시·읍·면의 장이 아동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서 여백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날인한 후 해당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함(이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함)
  - \* 아동의 성분창설에 따라 작성된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과 출생신고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되는 경우
- 시·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보호출산 신청 등을 철회한 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철회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생신고의 최고를 하여야 하며, 최고를 할 수 없거나 하여도 출생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정정 및 직권기록 수행
  - \* 보호출산 산모 주소지 소재 시·읍·면

**가족관계등록법 제121조, 122조**

- 제121조(과태료) 시·읍·면의 장이 제38조 또는 제108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의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122조(과태료)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4) 출생사실 통보 내역의 정정

\* 아동에 대한 입양 절차가 완료되어 보호출산 철회가 불가능한 경우 수행하지 않음

- 보호출산 철회 신청을 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지역상담기관 소재 시·읍·면에 ①보호출산 신청 철회 사실, ②해당 위기임산부(보호출산 신청인)의 인적사항, ③법 제11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에 따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하여야 함
  - 다만 지역상담기관이 지역상담기관 소재 시·읍·면으로 법 제11조에 따라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출생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시·읍·면에 대해서는 철회 사실을 통보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역상담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시·읍·면에게 통보할 때 공문으로 하여야 하며, 공문에는 보호출산을 철회한 자의 실제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과 비식별화된 정보(가명, 전산관리번호 등)를 기재
- 지역상담기관으로부터 철회 사실의 통보를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의료기관으로 통보받은 보호출산 신청 등을 철회한 자의 비식별화된 정보 등 출생정보를 삭제하여야 함
  - 아직 의료기관으로부터 비식별화된 정보 등이 포함된 출생정보를 통보받지 못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받는 즉시 해당 출생정보를 삭제하여야 하며, 중앙상담지원기관으로 해당 출생정보를 통보하지 않음
- 지역상담기관으로부터 철회 사실의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역상담기관으로 통보받은 보호출산 신청 등을 철회한 자의 비식별화된 정보 등 출생정보가 포함된 출생사실을 삭제하여야 함

## 5) 출생증서의 폐기

- 보호출산 신청인 등이 신청을 철회하였을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해당 아동에 대한 출생증서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함
  -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미 출생증서를 아동권리보장원에 이관한 경우에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이 이관받아 보존 중인 출생증서를 지체없이 폐기할 것을 요청하여야 함
-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철회 사실을 통지 받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이관받아 보존 중이던 해당 신청인 등이 작성한 출생증서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함
- 아동권리보장원과 지역상담기관은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에 출생증서와 관련된 정보들이 입력되어 있는 경우 해당 정보들을 삭제하여야 함

### 보호출산 철회 시점에 따른 후속조치 필요 사항(요약)

#### ① 아동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경우

- 지역상담기관은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에 보호출산 신청인이 철회하였다는 사실을 입력
  - 이에 따라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에서 신청인에 대한 상태 값이 위기임산부로 변경됨

#### ② 숙려기간 도중 보호출산을 철회한 경우

- 지역상담기관은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에 보호출산 신청인이 철회하였다는 사실을 입력
- 지역상담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읍·면에 보호출산 철회 사실을 통보
  - \* 시·읍·면으로 출생정보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시·읍·면에 대해서는 철회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도 무방함
- 보호출산을 철회한 산모는 아동에 대해 인근 시·읍·면에서 출생신고
  - ※ 출생증명서를 신청인의 가명과 전산관리번호로 발급받은 경우 [서식 제14호]에 따른 '동일인 확인서',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임산부 확인서'와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출생정보가 기록되어 지역상담기관으로 통보된 '보호출산 등 출생정보 통보서' 지참·제출

#### ③ 보호출산 아동이 이미 시·군·구에 인도된 경우

- 지역상담기관은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에 보호출산 신청인이 철회하였다는 사실을 입력
- 지역상담기관은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보호출산 철회 신청 사실을 통보
  - \* 보호출산을 철회한 산모의 정보도 같이 전달(아동에 대해 성·본 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이 완료된 이후에는 아동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도 같이 전달)

- 지역상담기관 소재 시·군·구는 아동의 보호자로부터 아동을 인도받아 보호출산을 철회한 산모에게 아동을 재인도
- 지역상담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읍·면에 보호출산 철회 사실을 통보
  - \* 시·읍·면으로 출생정보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시·읍·면에 대해서는 철회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도 무방함
- 보호출산을 철회한 산모는 아동에 대해 인근 시·읍·면에서 출생신고
  - \* 아동에 대해 성·본 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이 완료된 이후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도 진행

#### ④ 보호출산 아동이 이미 입양으로 보호조치된 경우

- 지역상담기관은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에 보호출산 신청인이 철회하였다는 사실을 입력
- 지역상담기관은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보호출산 철회 신청 사실을 통보
  - \* 보호출산을 철회한 산모의 정보도 같이 전달(아동에 대해 성·본 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이 완료된 이후에는 아동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도 같이 전달)
- 지역상담기관 소재 시·군·구는 아동을 보호 중인 아동 주소지 시·군·구에게 입양 절차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고, 아동 주소지 시·군·구는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 신청이 접수된 경우 입양 허가 절차 중지 요청
- 지역상담기관 소재 시·군·구는 아동 주소지 시·군·구로부터 아동을 인도받아 보호출산을 철회한 산모에게 아동을 재인도
- 지역상담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읍·면에 보호출산 철회 사실을 통보
  - \* 시·읍·면으로 출생정보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시·읍·면에 대해서는 철회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도 무방함
- 보호출산을 철회한 산모는 아동에 대해 인근 시·읍·면에서 출생신고
  - \* 아동에 대해 성·본 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이 완료된 이후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도 진행

#### ⑤ 보호출산 아동의 입양 절차가 완료된 경우

##### <일반적인 경우 : 보호출산 철회 불가능>

- 지역상담기관은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에 보호출산 신청인이 철회하였다는 사실을 입력
- 지역상담기관은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보호출산 철회 신청 사실을 통보
  - \* 보호출산을 철회한 산모의 정보도 같이 전달(아동에 대해 성·본 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이 완료된 이후에는 아동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도 같이 전달)
-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는 아동을 보호 중인 아동 주소지 시·군·구에게 입양 허가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보호출산 철회를 신청한 산모에게 보호출산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통보
- 지역상담기관은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에 보호출산 신청인이 철회하였다는 사실을 다시 삭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입양 허가가 취소된 경우 : 보호출산 철회 가능〉

- 지역상담기관은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에 보호출산 신청인이 철회하였다는 사실을 입력
- 지역상담기관은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보호출산 철회 신청 사실을 통보
  - \* 보호출산을 철회한 산모의 정보도 같이 전달(아동에 대해 성·본 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이 완료된 이후에는 아동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도 같이 전달)
-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는 아동의 보호자로부터 아동을 인도받아 보호출산을 철회한 산모에게 아동을 재인도
- 지역상담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읍·면에 보호출산 철회 사실을 통보
  - \* 시·읍·면으로 출생정보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시·읍·면에 대해서는 철회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도 무방함
- 보호출산을 철회한 산모는 아동에 대해 인근 시·읍·면에서 출생신고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 6) 철회한 자에 대한 사후 상담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보호출산을 철회한 자와 아동의 복지 향상과 안전 보장을 위해 아동이 재인도된 후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사후 상담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사례관리 연계(가족센터, 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 등) 또는 복지 자원 연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 (사후 상담 사항) 생활 안정화 여부, 아동 출생신고 여부, 아동 양육·보호 상황, 아동 관련 의사결정 상황, 각종 서비스 욕구
    - \* 확인·점검 시 [서식 제9호]에 따른 '위기임산부 사후 상담 결과서' 작성
  - (사후 상담 방법) 대면으로 사후 상담하는 것을 권장하나 유선으로 사후 상담도 가능
  - (사후 상담 횟수 및 기간) 월 1회 이상 사후 상담을 실시하며, 출산 후 6개월까지 실시(필요 시 연장 가능하며, 연장 횟수의 제한은 없음)



2026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안내

# V.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 보호

1. 아동 인도 및 보호조치 [상담기관](#) [지자체](#)
2.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출생통보  
[상담기관](#) [지자체](#) [심평원](#) [보장원](#)

# V |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 보호



## 〈 아동 보호 절차도 〉

절차(프로세스)	업무 내용(해야할 일)	업무 주체
① 보호출산 아동 발생 (신청인 출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인의 출산 사실을 즉시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아동보호 담당자에게 공유</li> </ul>	지역상담기관→지역상담기관 소재지 사군구 아동보호 담당자
↓ <b>숙려기간 진행(7일 이상) 도과 이후, 보호출산 최종 결정</b>		
② 아동의 지자체 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인이 직접 아동을 지자체(아동보호팀)에 인도</li> </ul>	신청인→지역상담기관 소재지 사군구 아동보호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을 인도해 줄 것을 지역상담기관장에 요청</li> </ul>	신청인(→지역상담기관)→지역상담기관 소재지 사군구 아동보호 담당자
*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사군구청장이 아동의 최초 미성년후견인으로 자동 지정		
③ 아동 일시(긴급)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리 확보해 둔 일시보호 인프라로 아동 보호</li> </ul>	일시보호 인프라 소재지 사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검진, 아동 전산관리번호 부여 신청, 사회보장급여 신청</li> </ul>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사군구 아동보호 담당자→의료급여 등 급여 담당자
① 보호출산 아동 출생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료기관은 보호출산 아동의 출생정보를 출산 후 14일 이내에 심사평가원으로 통보</li> <li>심사평가원은 중앙상담지원기관으로, 중앙상담지원기관은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역상담기관은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사업면으로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 통보</li> </ul>	의료기관→심사평가원→중앙상담지원기관→지역상담기관→지역상담기관 소재지 사업면(가족관계등록관서)
	↓	
② 출생등록, 성본창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태어난 아동을 출생등록하고, 성과 본을 창설</li> </ul>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사업면(가족관계등록관서)
* 성본창설(가정법원 허가) 완료 시까지 약 1-3개월 소요		
④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개월 이내 개최, 최대 3개월 안에 개최하여 최종 보호 조치 결정 (가정형 보호 우선 검토)</li> </ul>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사군구에서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석범위: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아동보호 담당자 외에도 지역상담기관장, 일시보호 소재지 담당자도 가급적 참석할 수 있도록 함</li> </ul>	
⑤ 최종 보호조치, (필요시) 사례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한 최종 보호조치</li> <li>필요시, 사례 이관* 및 후견인 변경 선임**</li> </ul>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사군구 아동보호 담당자 → 최종보호 사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 입양대상아동 결정 등 최종 보호조치 결과, 아동의 보호 사군구가 달라지는 경우</li> <li>** 「사실미성년후견법」,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후견인 변경</li> </ul>	
↓		
③ 성본창설 완료,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원의 성본창설 허가 결정 결과를 공유</li> </ul>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사업면(가족관계등록관서)→지역상담기관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사군구 아동보호 담당자→아동의 현재 보호자
↓		
④ 아동의 주민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본창설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의 주민등록</li> </ul>	아동의 현재 보호자

\* 성본창설 완료 후, 아동의 주민등록 당시의 보호자(시설관리인, 위탁부모 등)이 주민등록 실시

※ ①-⑤ 절차와 ①-④ 절차는 병행하여 진행

## 1 아동 인도 및 보호조치 상담기관 지자체

### ① 숙려기간

#### 1) 숙려기간의 원칙

- 보호출산 신청인은 아동을 보호출산한 경우 지역상담기관에게 즉시 알려야 하며, 지역상담기관은 관할 시·군·구 아동보호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함
  - \* 아동보호팀 공무원, 아동보호전담요원 등(이하 같음)
  - \*\*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출생일시, 성별, 희망 보호조치 등
- 지역상담기관은 [서식 제26호]에 따른 '보호출산 아동 출생 사실 안내 공문(예시)'에 따라 아동의 출생 사실을 기재한 공문을 시·군·구의 담당 부서로 송부하여야 함(문서24, 우편 등 활용 가능)
- 시·군·구 아동보호 담당자는 지역상담기관으로부터 보호출산 아동의 출산 사실을 전달받으면 숙려기간이 종료되어 아동이 인도될 경우를 대비하여 일시보호 장소·인력 등 아동 보호 인프라 확보 등을 지체 없이 준비하여야 함
- 보호출산 신청인은 아동을 보호출산한 날로부터 7일 이상 그 아동을 직접 양육 하면서 보호출산 결정을 위한 숙려기간을 가져야 함

#### 숙려기간의 계산 방법

-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일로 기간을 만료함
- (예시) 2024.6.11.(화)에 출산한 경우 최소 2024.6.18.(화)까지 숙려기간을 가져야 함  
2024.6.30.(일)에 출산한 경우 최소 2024.7.7.(일)까지 숙려기간을 가져야 함

- 보호출산 신청인이 태어난 아동과 숙려기간을 더 많이 보내고자 하는 경우 지역 상담기관의 담당자는 해당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필요한 지원(주거, 신생아용품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
  - \* 만약, 신청인이 1개월 이상 숙려기간을 갖고자 하는 경우 보호출산을 철회하고 출생신고 할 것을 권유하여야 함

- 지역상담기관에서는 숙려기간 동안 보호출산 신청인이 출산한 의료기관 또는 신청인이 머무르는 기관(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과의 연락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아동의 안전과 보호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숙려기간 조기 종료 등 긴급 상황 발생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함
- 다만, 출산 후 입원(자연분만, 제왕절개 등)으로 인해 아동이 신생아실에서 머무르는 경우 해당 기간은 숙려기간에서 제외하고 산정함
  - \* (예시) 2024.7.15.(월)에 출산하여 7.19(금)까지 산부인과에서 입원했고, 그동안 태어난 아동이 신생아실에서 머물러서 생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었다면, 최소 7.26(금)까지 숙려기간을 가져야함
- 출산 후 아동보호를 신청한 경우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상 숙려기간을 갖도록 하되, 아동을 직접 양육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은 숙려기간에서 제외하고 산정함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7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숙려기간을 종료할 수 있음. 다만,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숙려기간 조기 종료 가능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위기임산부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급적이면 숙려기간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숙려기간 조기 종료 가능 사유(규칙 제11조제3항) 및 대응 절차**

- 위기임부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있는 등 아동에 대한 긴급한 인도 및 보호가 즉시 필요하다고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 (지역상담기관의 대응) 긴급상황 발생 사실을 시·군·구 아동보호 담당자에게 공유하고 동시에 시·군·구 아동보호 담당자에게 아동의 인도와 보호를 요청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숙려기간 조기 종료가 발생한 경우 즉시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 아동보호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즉시 공유하여 아동이 시·군·구에 지체 없이 인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② 아동 인도

### 1) 아동 인도의 절차

- 보호출산 신청인은 숙려기간을 가진 이후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하거나 그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하여줄 것을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 이 경우 보호출산 신청인은 지역상담기관 담당자에게 인도 의사를 알려야 함
  - 지역상담기관 담당자는 인도 의사를 알게 된 즉시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의 아동보호 담당 공무원에게 인도 의사를 알려야 함\*
    - \* 비밀 유지를 위해 친생부모에 관한 정보는 제공불가 다만,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를 위해 사례결정위원회에서 구두로 친생부모의 신원정보가 아닌 정보(ex. 연령대, 흡연·음주여부, 건강정보 등)를 제공할 수 있음.
    - \*\* 구두로 제공된 정보더라도 입양절차 진행 시 구비서류 상 친생부모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 지역상담기관 담당자는 신청인, 아동보호 담당 공무원과 논의하여 아동 인도를 위한 일시와 장소\*를 정하고 신청인과 함께 동행하여 아동보호 담당 공무원에게 아동을 인도하여야 함
    - \* (예시) 신청인의 거주지, 지역상담기관 상담실, 아동 긴급 보호 장소, 제3의 외부 장소 등
- 만약 시·군·구청장(아동보호 담당 공무원)이 보호출산 신청인으로부터 직접 아동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함
- 시·군·구의 아동 보호 담당자는 아동을 인도할 때 [서식 제27호]에 따른 ‘보호출산 아동 인도 확인서’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서식 제28호]에 따른 ‘보호출산 아동 인도 확인 및 후견 개시 보고’ 관련 내부공문을 실시하여야 함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에 아동 인도의 사실을 입력하여야 함
  -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입력하지 않은 경우 아동을 인도받은 시·군·구의 아동 보호 담당자가 해당 사실을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 아동 인도 후,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은 아동 인도 후의 후속 상황(일시보호시설명 등)을 지역상담기관과 공유하여야 함
  - 지역상담기관은 아동 인도 후에도 보호 출산 신청인과의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보호출산 신청인은 철회를 숙고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는 아동 인도 후 아동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지역상담기관으로 공유하여야 함
    - \* ▲ 일시보호시설명 및 소재지, ▲ 사례결정위원회 정보(개최일, 결과), ▲ 사례결정위원회 결과에 따른 아동 보호조치 진행 상황, ▲ 이 외 아동 신변상의 변동이 있는 경우 등

## 2) 아동 인도에 따른 법적 효과

- 아동이 시·군·구청장에게 인도된 때부터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정지됨
  - \* 보호출산 신청인, 신청인의 직계존속(신청인이 혼인을 하지 않은 미성년자인 경우) 등

### 「위기임신보호출산법」, 「민법」 내 친권자 관련 규정

- 법 제12조(아동의 보호조치) ① 제9조의 신청인은 아동을 보호출산한 날부터 7일 이상 그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갖고 이 기간이 지난 후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하거나 그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하여줄 것을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이 인도된 때부터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정지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
- 민법 제909조(친권자)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  
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
- 민법 제910조(자의 친권의 대행) 친권자는 그 친권에 따르는 자에 갈음하여 그 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

- 「민법」 제942조에 따른 친권의 일시 정지는 가정법원의 선고를 요하고 일시정지 기간도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한정이 되어 있으나,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이 「민법」의 특별법이므로 「민법」에서 정한 요건과 기간과 상관없이 신청인이 아동을 인도한 때부터 친권자의 친권 행사는 정지
- 미성년자인 신청인의 친권이 정지되는 경우, 신청인의 친권자(신청인의 부모 등)가 신청인에 갈음하여 그 아동에 대해 행사하는 친권도 같이 정지됨

## 「민법」 내 친권의 효력 및 정지 관련 규정

## 〈친권의 효력〉

- 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 제914조(거소지정권) 자는 친권자의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
- 제916조(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
- 제920조(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한다. 그러나 그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923조(재산관리의 계산) 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는 그 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그 자의 재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은 그 자의 양육, 재산관리의 비용과 상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상으로 자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삼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재산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 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①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때에는 자녀의 상태, 양육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③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제925조의3(부모의 권리와 의무) 제924조와 제924조의2, 제925조에 따라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또는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이 선고된 경우에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변경되지 아니한다.

Chapter

V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 보호

## 3 후견인 선임

## 1)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후견인 선임의 원칙

- 보호출산 아동을 인도받은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은 보호출산 아동의 미성년후견인이 됨

**법 제12조**

- 법 제12조(아동의 보호조치) ③ 제1항에 따라 아동을 인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동을 인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의 미성년후견인이 된다.**

- 시·군·구청장은 미성년후견인으로서 「민법」에 규정된 미성년후견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민법」 내 후견인의 직무 관련 주요 규정**

- 제927조의2(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과 친권자의 지정 등) ①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가 된 부 또는 모, 양부모(친양자의 양부모를 제외한다) 쌍방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909조의2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호의3·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새로 정하여진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는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한정된다.
  1. 제924조에 따른 친권상실의 선고가 있는 경우
  - 1의2. 제924조에 따른 친권 일시 정지의 선고가 있는 경우
  - 1의3. 제924조의2에 따른 친권 일부 제한의 선고가 있는 경우
  2. 제925조에 따른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가 있는 경우
  3. 제927조제1항에 따라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
  4.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945조(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의무) 미성년후견인은 제913조 및 제914조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948조(미성년자의 친권의 대행) ①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를 갈음하여 미성년자의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
    - ② 제1항의 친권행사에는 미성년후견인의 임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949조(재산관리권과 대리권) ①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 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한다.
    - ② 제920조 단서의 규정은 전항의 법률행위에 준용한다.
- 제950조(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 ①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동의를 할 때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영업에 관한 행위
  2. 금전을 빌리는 행위
  3.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4.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소송행위
  6.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후견인이 수행하는 업무 예시**

- 보호출산 아동의 입양대상아동 보호조치 결정을 위한 입양 동의
- 아동의 수술, 입퇴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 관련 사항 및 의료기관 서류 발급
- 기본증명서 등 각종 서류 발급
- 여권 발급 신청
- 각종 사회보장급여(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신청 등

- 시·군·구청장 개인이 아닌 행정기관이 후견인이 되는 것이므로 기관 내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후견인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 시·군·구청장이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므로 법 제12조에 따른 친권자의 친권행사 정지는 모든 친권자의 친권이 정지되는 것을 의미함

**「민법」 제928조**

-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 시·군·구청장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후견인이 새롭게 선임·지정되거나, ▲ 보호출산이 철회되어 친권자가 친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거나, ▲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미성년후견인의 직무를 수행해야 함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후견인 선임 관련 규정**

- 시설미성년후견법 제3조(후견인)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그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이 된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후견인을 지정한다.
- ③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에 대하여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국내입양특별법 제14조(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 등)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호되는 아동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아동이 시설 등에 위탁된 때부터 해당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등이 후견인이 된다. 다만, 해당 아동에 대하여 법원이 이미 후견인을 두었거나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시·군·구청장의 후견인 개시 신고 절차

- 시·군·구청장은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후견인 개시 신고를 위해 [서식 제29호]에 따른 '미성년후견 개시 신고서'(「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16호)를 작성하여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후견인 개시신고 시 미성년후견 개시신고서 작성 방법

- 미성년자 :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정보를 작성 가능한 범위에서 작성
- 후견인 : 성명 대신 기관명(00시장, 00군수, 00구청장)을 작성하고, 기관의 주소를 작성  
\* 주민등록번호 등 기관과 무관한 내용은 작성하지 않음
- 후견감독인 : 미기재
- 신고인 : 성명 대신 직명(00시장, 00군수, 00구청장 또는 보호시설의 장)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실시(자격)란은  미성년후견인에 '○' 표시)
- 개시일자 및 원인 : 보호출산 아동을 인도 받은 일자를 기재하고, '보호출산 아동의 인도'라는 문구(또는 유사한 내용이 포함된 문구)를 작성
- 취임일자 및 원인 : 보호출산 아동 인도일자를 작성하고, '3법정'을 선택
- 심판일자 : 미기재
- 기타사항 : 「위기임신보호출산법」(약칭)에 따른 보호출산 아동의 후견인의 개시 신고라는 문구를 기재
- 제출인 : 미성년후견인이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미성년후견 개시신고서를 미성년후견인이 아닌 자\*가 제출한 경우 그 제출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 (예시) 시·군·구 아동보호 담당자

- 이 경우 '미성년후견 개시 신고서'에는 보호출산 아동 인도 과정에서 작성된 '보호출산 아동 인도 확인서'(서식 제26호)의 사본과 '보호출산 아동 인도 확인 및 후견 개시 보고'(서식 제27호)와 관련하여 실시한 내부공문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후견인 개시 신고를 접수한 시·읍·면의 장은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에 후견인 개시 신고 사실을 기록하여야 함

- 가족관계 등록실무 자료집(기재편) 제14의2절 미성년 후견 5-1란, 주3-1에 따라 직명만 기록하고,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음

**보호출산 아동이 입양대상 아동으로 결정되는 경우**

- 후견인이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시·군·구청장으로 신고되어 있는 보호출산 아동이 입양대상 아동으로 결정되는 경우, 후견인이 아동 주소지 시·군·구청장으로 변경되므로 '미성년후견 경질 신고서'를 작성하여 아동 주소지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이 경우 입양대상아동 인도 과정에서 작성된 '입양대상아동 인도 확인서', '입양대상아동 위탁보호 및 후견 개시보고의 사본, 아동의 주민등록초본(전입신고 후)을 첨부하여야 함
  - 단, 해당 아동에 대해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한 시점까지 아동에 대한 성분창설 및 주민등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는 성분창설 및 주민등록 후 아동의 입양 절차 관련 서류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및 재발급하여 사례이관시까지 후견인 역할 수행해야함
- ※ 자세한 내용 및 관련 서식은 2025년 입양실무매뉴얼 69p~ 참고

**4 보호조치**

※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입양 등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2025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 지침(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2025 입양실무 매뉴얼(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서울시 유기아동 보호조치 도움서(서울특별시)” 등의 지침을 준용함

**1) 보호조치 및 후견인 선임의 원칙**

-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아동을 인도 받으면 지체 없이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호조치**

1.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2. 「민법」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3.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4.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5.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6.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 ※ 그 밖에 법령에는 규정되어있지 않으나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복지법 외 타법\*상 시설 입소로 결정할 수 있음  
\* 장애인복지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성폭력방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은 아동 보호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인프라에 과부하가 발생하여 관내 일시 보호 인프라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관내 다른 시·군·구의 일시 보호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음
-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는 보호출산 아동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도의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시·군·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함
  - \* 특히, 협조를 요청받은 시·군·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 주민인 위기임산부가 출산한 보호출산 신생아도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시·군·구청장이 인도받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출산 신생아의 보호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
-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은 보호출산 아동을 인도받기 전이라도 아동을 인도받을 것을 전제로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보호조치를 미리 결정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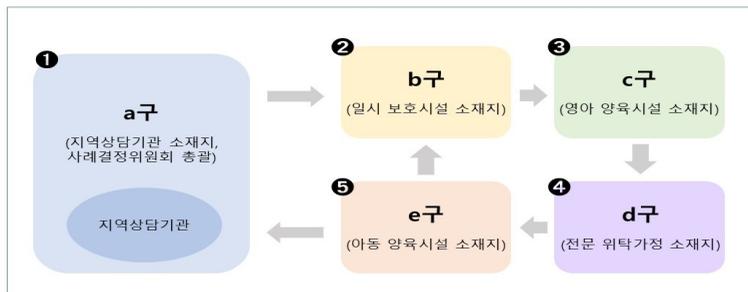
**아동 보호체계 관련 시·도 내 협조체계 예시**

- A광역시에서는 지역상담기관 소재지인 a구를 포함하여 관할 시·군·구의 보호 인프라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할 시·군·구와 협의하여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일시 보호를 수행할 순번\*을 정함

- \* (1번 순번) a구 :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2번 순번) b구 : 일시 보호시설 소재지  
 (3번 순번) c구 : 영아 양육시설 소재지  
 (4번 순번) d구 : 전문 위탁가정 소재지  
 (5번 순번) e구 : 아동 양육시설 소재지

- a구에서 보호출산 아동이 발생한 경우 사전에 정한 순번(a구 → b구 → c구 → d구 → e구→a구)대로 일시 보호 수행

**A시**



- 시·도지사는 긴급한 상황 등 필요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시·군·구가 아닌 관내 다른 시·군·구의 협조를 구할 수 있으며, 관내에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 다른 시·도 또는 다른 시·도 관할 시·군·구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 특히 보호출산 아동의 특성에 의해 아동복지법 외 타법 시설(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위해 시·도 내 담당 부서와 함께 협조 체계를 준비할 필요
- 아동을 보호조치하는 시·군·구의 담당자는 보호조치와 관련된 사항을 행복이음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 2) 보호출산 아동(신생아) 긴급 보호 인프라 구축

- 보호출산 아동을 일시 보호하는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보호출산 아동이 신생아라는 점을 감안하여 보호출산 아동이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장소와 돌봄 인력을 사전에 확보하여야 함
  - 지역 사정을 고려하여 지역상담기관, 산후조리원, 긴급 가정형 영아보호(전문가정 위탁), 영아 전담 일시보호시설(또는 양육시설) 등 다양한 방식의 신생아 돌봄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음
-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는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의 신생아 긴급 보호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과부하가 발생한 경우 아동이 즉시 보호될 수 없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내 신생아 돌봄 인프라를 파악하고, 산하 시·군·구 간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보호비 지원
  - (목적) 지역상담기관 소재 시·군·구가 지역 내 돌봄 인프라를 고려하여 보호출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생아 긴급보호비 지원
  - (지원내용) 보호출산 신생아의 후견인이 된 시·군·구(지역상담기관 소재)가 보호조치 결정 전까지 보호출산 신생아(약 300명)을 보호하여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아동 1인당 월 100만원 지원(주별 25만원)
  - (지원대상) 긴급보호인프라\*

- \* 일시보호시설, 영아양육시설, 전문위탁가정, 아동양육시설 등뿐 아니라 아동의 특성에 의해 아동복지법 외 타법시설(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시설도 포함
- \*\* 긴급보호비는 아동이 최종보호되기 전까지 돌봄을 위한 비용으로, 생계급여와 중복되지 않음
- \*\*\* 가정위탁으로 일시보호하는 경우,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신생아 긴급보호비를 지원받으며, 일시보호 기간동안 전문아동보호비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음
- (지급주체) 지역상담기관 소재 시·군·구가 지급
  - \* 다만 긴급보호 인프라를 직영으로 운영하는 경우 지역상담기관 소재 시·도에서 지급 가능
- (지급기간) 일시보호 종료시까지(3개월이 상한이나, 일시보호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지자체의 사정에 맞게 연장가능)
  - \* 일시보호기간 연장 시에 진행되는 사례결정위원회에서 긴급보호비 지원 연장여부도 함께 고려
- (지급금액) 일시보호주수 × 주 25만원을 계산하여 지급
  - 일시보호주수는 아동이 인도된 날(아동인도일)부터 보호조치 결정이 된 날(보호조치결정일)까지로 하며, 아동인도일과 보호조치결정일 모두 포함
    - \* 각 주에 3일(보호결정일, 종료일 포함) 이상 보호 시 1주로 반영
  - 아동인도일이 속한 달에는 아동인도일이 속한 주부터 당월 20일이 속한 주의 전주까지 일시보호주수 산정
  - 지속보호 중인 달에는 전월의 20일이 속한 주부터 당월 20일이 속한 주의 전주까지 일시보호주수 산정
  - 다만, 7일 이내 아동인도 및 보호조치결정이 모두 이루어진 경우 일시보호일수와 무관하게 1주치 25만원 지급

#### 보호주수 산정 사례

- 보호기간이 '25.1.7.(화)~2.6(목)인 경우
  - (1월 지급분) 보호결정일이 속한 주인 1월 2주는 보호결정일을 포함한 보호일수가 3일(일~화) 이므로 보호주수에 반영, 따라서 1월 2주부터 20일이 속한 주(1월 4주)의 전주인 1월 3주까지 보호주수 계산(총 2주)
    - ☞ 2주 × 25만원 = 50만원(1.20.지급)
  - (2월 지급분) 보호종료일이 속한 2월 1주는 보호종료일을 포함한 보호일수가 5일(일~목)이므로 보호주수에 반영 따라서 전월의 20일이 속한 1월 4주부터 2월 1주까지 보호주수 계산(총 3주)
    - ☞ 3주 × 25만원 = 75만원 = (2.20.지급)

- (지급방법) 매월 20일까지 일시보호시설 인프라 계좌로 지급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단, 최초 일시보호 시작 시 보호기간이 예상되는 경우 선지급 가능하되, 보호 기간 단축 시 기 지급한 긴급보호비는 반납 함
- (사용용도) 일시보호중인 아동의 돌봄에 필요한 비용

#### 사용용도 예시

- (의료비) 아동건강검진비용, 치료비 등 지원
- (상해보험가입) 보호출산 신생아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 (아동용품구입비) 기저귀, 의류, 유모차, 조제분유지원 등 보호출산 신생아 양육에 필요한 물품 구매
- (돌봄인력) 아이돌봄도우미 등

### 3)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의 절차

-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은 아동을 긴급보호한 즉시 아동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가급적이면 인도 후 2주 이내(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대 3개월 이내)에 아동에 대한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보호조치를 결정하여야 함
  -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지역상담기관의 장 또는 지역상담기관의 담당자를 참여시켜 의견을 들어야 함
-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의 절차는 다음과 같음
  - ① (긴급보호)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는 즉시 미리 확보한 신생아 돌봄 인프라를 활용하여 아동을 긴급 보호하여야 함
  - ② (건강검진)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는 아동을 긴급보호 중인 기관 또는 시설과 협력하여 아동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함
  - ③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는 아동의 성분창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생계·의료 급여,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 절차**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 시 1인 1번호 원칙에 근거하여 보호출산 아동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 급여별로 전산관리번호를 발급하지 않고, 의료급여 담당자를 통해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이후 해당 번호로 다른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여야 함
  - ① 시·군·구 아동보호 담당자는 아동의 후견인으로써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자에게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의료급여 신청
    - \* 가정위탁 등 시설 보호가 아닌 경우
    - \*\* 일시보호시설 등 시설 보호인 경우
    - \*\*\* 일시보호시설 등 시설에서 긴급보호하는 경우 시설급여로 책정하고, 이외의 경우(산후조리원, 가정위탁 등)에는 일반 의료급여로 책정
    - \*\*\*\* 보호출산아동에 대해 일반 의료급여(전산관리번호 4번)으로 책정할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서 1종 수급권자(근로무능력자)에 준하여 의료급여를 신청하며, 시스템(행복이음)상 급여 자격 취득을 위한 급여유형으로는 "국민기초(1종)(코드번호:11)"로 신청 가능
  - ②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자는 보호출산 아동에 대해 전산관리번호(4번\* 또는 5번\*\*)를 부여하고 부여된 전산관리번호로 의료급여를 직권신청\*\*\* 이후 의료급여 수급 사실과 부여된 전산관리번호를 시·군·구 아동보호 담당자에게 통보
    - \* 가정위탁 등 시설 보호가 아닌 경우
    - \*\* 일시보호시설 등 시설 보호인 경우
    - \*\*\* 일시보호시설 등 시설에서 긴급보호하는 경우 시설급여로 책정하고, 이외의 경우(산후조리원, 가정위탁 등)에는 일반 의료급여로 책정
    - \*\*\*\* 보호출산아동에 대해 일반 의료급여(전산관리번호 4번)으로 책정할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서 1종 수급권자(근로무능력자)에 준하여 의료급여를 신청하며, 시스템(행복이음)상 급여 자격 취득을 위한 급여유형으로는 "국민기초(1종)(코드번호:11)"로 신청 가능
  - ③ 시·군·구 아동보호 담당자는 통보받은 전산관리번호로 시·군·구 생계급여 담당자에게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생계급여 신청
    - \* 보호출산 아동은 주민등록번호 부여 전까지 본인 명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점 고려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의 '계좌관리 → 나. 급여계좌의 예외' 부분 준용)
  - ④ 시·군·구 생계급여 담당자는 생계급여 책정 과정에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제3자 중 이해관계자(실제 수급자를 보호하거나 지원하는 자)의 계좌로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생계급여 수급 사실을 시·군·구 아동보호 담당자에게 통보
    - 일시보호시설 등 시설에서 긴급보호하는 경우 시설 생계급여로 책정하고, 이외의 경우(산후조리원, 가정위탁 등)에는 일반 생계급여로 책정
  - ⑤ 보호조치 결정 전까지는 아동수당·부모급여 지급이 유보되지만, 아동수당·부모급여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소급 지급되므로 시·군·구 아동보호 담당자는 우선 신청 필요
    - ※ 그 밖에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통합 운영 안내' 지침(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참조

-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가 아닌 다른 시·군·구에서 아동을 긴급 보호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소재지(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산후조리원 등) 관할 시·군·구에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하여야 함

- \* 각 사업별 지침에 따라 전입신고 여부와 상관 없이 아동이 실제 거주 중인 시·군·구에서 지급
- \*\* 아동수당·부모급여의 경우 보호조치 결정 전까지 지급을 유보하고, 보호조치 결정된 아동의 보호자에게 보호조치 결정까지의 미지급분을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

\*\*\* 다만, 아동이 입양으로 보호조치 결정되어 입양가정 매칭까지 일시위탁 보호를 받고 있다면 입양 전 아동을 보호하는 보호자(위탁가정)에게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지급 가능하고 시설 보호를 받을 경우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아동에게 지급 가능

- 이 경우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는 아동의 보호조치를 위해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발급하여야 하며, 아동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는 아동의 의료급여 책정을 위해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별도로 발급\*하여야 함

\* 추후 아동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는 아동의 생계급여 등 다른 사회보장급여 책정 시 의료급여 책정 과정에서 발급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활용하여야 함

- 아동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의 의료급여 담당자 등은 아동의 의료급여 책정을 위해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발급한 경우, 해당 전산관리번호를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의 아동보호 담당자는 아동의 보호조치 시 직접 발급한 전산관리번호와 통보 받은 전산관리번호를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함께 관리하여야 함

④ (보호조치 결정)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는 아동에 대한 보호계획 수립 후 사례결정위원회(「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거쳐 보호조치 결정

- 가정형 보호 우선 원칙에 따라 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양과 가정위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보호출산 신청인 또는 생부가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물품을 제공한 경우, 시·군·구는 지역상담기관이 아동의 보호자에게 물품을 전달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함
- 아동의 적절한 보호를 위해, 아동을 일시보호 중인 시·군·구(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가 아닌 경우)의 아동보호 담당자 및 지역상담기관장도 해당 사례결정위원회에 가급적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

※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은 보호출산 아동을 인도받기 전이라도 아동을 인도받을 것을 전제로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보호조치를 미리 결정할 수 있음

⑤ (성본창설 등의 완료)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읍·면은 아동에 대한 성본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이 완료된 경우 지체 없이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 성본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관련 상세 절차는 “Ⅴ.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 보호 → 2.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출생통보 → 2-4. 성본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참조(p.191)

⑥ (주민등록) 아동을 현재 보호하고 있는 시설 관리자, 위탁부모 등 아동이 속한 세대(시설)의 세대주(관리자)는 아동에 대한 주민등록신고(주민등록번호 부여) 하여야 함

\* 보호 결정 통지서(또는 입양대상아동 결정 확인서), 성본창설 허가서 등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주민등록신고

\*\* 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육시설에 거주하는 주민은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함.

⑥-1. (전입신고) 다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이후 아동이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아동을 보호하게 될 자(시설 관리자 등)는 아동에 대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 이때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법정대리인(후견인)의 확인을 받고, 법정대리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함.

- 후견인이 시·군·구청장인 경우,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시·군·구 아동담당 부서는 후견인 확인 사항 통보(지침 서식 제30호) 공문을 신겨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발송하는 것으로 후견인의 확인 및 신분증명서 제시 같음(이때 보호출산 아동 인도 확인서(서식 제27호)의 사본과 ‘보호출산 아동 인도 확인 및 후견 개시 보고(서식 제28호)’사본 첨부)

※ 행정안전부 주민과와 협의 완료, 그 외 주민등록(전입신고)에 필요한 내용은 ‘2024 주민등록 사무편람’ 내용 참고

\* 아동이 입양대상아동으로 결정되어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시·군·구가 아닌 다른 시·군·구에서 아동을 보호중인 경우,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는 성본창설 및 주민등록 후 아동보호 시·군·구로 사례이관하고, 아동보호 시·군·구 아동 담당 부서는 후견인 확인사항 통보 공문(‘입양대상아동 인도 확인서’ 사본, ‘입양대상아동 인도 확인 및 후견 개시 보고’ 사본 첨부)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발송

### 주민등록 관련 규정

- 주민등록법 제11조(신고의무자) ① 제10조에 따른 신고는 세대주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으면 그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1. 세대를 관리하는 자
  2. 본인
- 주민등록법제12조(합숙하는 곳에서의 신고의무자) ① 기숙사,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노숙인요양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등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주민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숙소의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가 신고할 수 없으면 본인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20. 6. 9.>

-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본인의 신고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6. 9.>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8조(본인의 신고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본인이 신고를 할 때에는 세대주나 세대 또는 합숙사를 관리하는 사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대주나 세대 또는 합숙사를 관리하는 사람의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면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서 갈음한다.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세대 모두 이동 여부를 기준으로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 12. 31., 2016. 12. 30.>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입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과 전(前) 거주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3. 11. 21.>

1. 전입자[전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의 확인을 받을 것. 다만, 그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 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2. 전입자[전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할 것. 다만, 전입자가 신고인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면 신분증명서 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만약 성본창설 및 주민등록이 완료된 아동에 대해 아직 사례결정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 긴급 보호 중인 경우 아동 소재지 관할 시·군·구는 해당 아동의 전산관리 번호에 책정된 사회보장급여를 중지\*하고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새롭게 책정\*\*하여야 함

\* 퇴소 처리(일시보호시설 등 시설 보호인 경우) 또는 급여 중지 신청(가정위탁 등 시설 보호가 아닌 경우)

\*\* 입소 처리(일시보호시설 등 시설 보호인 경우) 또는 신규 급여 신청(가정위탁 등 시설 보호가 아닌 경우)

**(일시)보호조치 유형별 신고의무자**

- (위탁가정) 위탁부모가 세대주(동거인)로서 주민등록(전입신고) 의무 수행
-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 시설 관리인 등이 주민등록(전입신고) 의무 수행

- ⑦ (주민등록번호의 통보) 아동이 주민등록 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는 주민등록신고에 따라 아동에게 부여된 주민등록번호를 지체 없이 아동을 현재 보호하고 있는 자 및 해당 보호아동의 관할 시·군·구 아동보호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아동보호 담당자는 통보받은 후 지체 없이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 아동보호 담당자 및 시·읍·면의 장에게 아동에 대한 주민등록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 시·읍·면의 장은 법 제11조제6항 또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아동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송부
  - 아동의 주민등록번호를 통보받은 해당 아동의 관할 시·군·구 아동보호 담당자는 보호출산 아동이 부여받은 전산관리번호를 중지 처리하여야 하며, 아동의 전산관리번호와 주민등록번호가 연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보호출산 아동이 전산관리번호로 수급 중이던 각종 사회보장급여를 주민등록번호로 수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이 경우 아동을 보호하게 된 시·군·구청장은 아동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고, 제3자의 통장으로 수급했던 사회보장급여를 아동 명의의 통장으로 이전하여야 함
  - 아동 소재지 관할 시·군·구 아동보호 담당자는 아동 소재지 관할 시·군·구의 의료급여 담당자 등 전산관리번호 발급 담당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발급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 \* 전산관리번호 발급 담당자는 시·군·구 내 생계급여,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다른 사회보장급여 책정 담당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발급 사실을 전파하여야 함

성분창설, 주민등록(전입신고) 주체별 역할	
구분	업무 주체
① 성분창설 및 가족관계 기록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시·읍·면(가족관계등록관서)
② 성분창설 완료, 통보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시·읍·면(가족관계등록관서) → 지역상담기관 →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시·군·구 아동보호 담당 → 현재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자
③ 주민등록	현재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자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④ 주민등록 사실 통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현재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자 및 아동보호 관할 시·군·구 담당 → 지역상담기관 소재 시·군·구 아동보호 담당 및 지역상담기관 소재 시·읍·면의 장 → 지역상담기관
⑤ 전입신고	아동이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아동을 보호하게 될 자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⑥ 전입신고 사실 통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아동 보호하게 된 자 및 아동 관할 시·군·구 아동보호 담당자

- ⑧ (보호조치에 따른 아동 인도 및 아동보호 사례 이관) 보호조치 결정에 따라 아동복지 시설 또는 위탁가정으로 아동을 인도하고, 해당 기관·시설·가정이 소재한 시·군·구로 아동보호서비스 사례 이관
  - 만약 해당 아동에 대해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한 시점까지 아동에 대한 성분창설 및 주민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아동에 대한 주민등록이 완료되기 전까지 사례 이관을 연기하고 아동의 긴급 보호를 연장할 수 있음
  - 다른 시·군·구로 사례를 이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여전히 보호출산 아동의 후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다만, 최종 보호조치가 결정된 이후에는 보호 유형에 따라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또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후견인을 적절하게 지정하고 변경할 수 있음

**보호조치 유형별 후견인**

- (위탁가정)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시·군·구청장이 계속 후견인으로서 역할 수행
  - \* 필요한 경우 “2025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의 가정위탁아동 미성년후견인 선임 안내서 참조
- (아동복지시설)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시·군·구청장이 계속 후견인으로서 역할 수행
  - 다만,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견인이 변경된 경우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시·군·구청장은 후견인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음
- (입양대상아동) 아동 주소지 시·군·구청장이 후견인으로서 역할 수행
  - 다만, 해당 아동에 대하여 법원이 후견인을 두었거나,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 “2025 입양실무 매뉴얼”의 Ⅲ.입양의 절차 - 4-3. 입양대상아동 결정 후 아동 보호시 후견인 참조

-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는 사례 이관 시점에서 보호출산 아동의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에 생계급여, 의료급여,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사회보장급여가 책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급여를 중지 처리하여야 함
  - \* 만약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가 아닌 다른 시·군·구에서 발급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는 별도의 전산관리번호)에 사회보장급여가 책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시·군·구에 사회보장급여 중지 처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 ※ 사례 이관 이후에는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에 따라 업무 처리
  - ※ 추후 다른 시·군·구로 사례가 이관되기 전에 입양 허가 완료, 보호출산 철회 등 보호조치 종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는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보호조치를 종결하고, 아동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사례 이관

#### 4) 보호출산 아동 면접 교섭 지원

- 보호출산 아동의 입양 허가 전까지 보호출산 신청 철회가 가능하므로, 보호출산 신청인 등 면접교섭 대상자가 면접교섭을 희망하는 경우 아동에 대한 정보제공 및 면접교섭 지원 가능
- 보호출산 신청인 등 면접교섭 대상자가 면접교섭을 희망하는 경우, 지역상담기관에서는 대상자의 상황 및 원가정 복귀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군·구에 면접교섭 지원 요청
  - 지역상담기관과 시·군·구 간 협의를 통해 양 기관 담당자가 동행한 상황에서 면접교섭 진행
    - ※ 면접교섭 이행 시 위기임산부의 신원 등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하며, 사례회의 등 지역상담기관을 통해 필요한 최소 정보를 확인하도록 함

#### 5)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입양 절차 진행 시 고려사항

-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보호출산 아동의 후견인으로 자동 지정 되는 점을 고려하여, 입양 의뢰 시 후견인 관련 서류는 입양동의·승낙서만 제출하고 친생부모 관련 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 상담기록지, 상담확인서는 생략 가능하며, 입양 동의·승낙서(국내입양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는 동의자를 지자체장으로 명시(주민등록번호, 연락처는 미기재)하고 직인 날인하여야 함
  - '25.7월 입양체계 개편 이후 입양대상아동은 지자체에서 위탁가정, 아동복지시설\* 등으로 보호하면서 입양 절차가 진행되므로, 아동의 후견인은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아동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됨
    - \* 아동복지시설(예)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 다만, 해당 아동에 대해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한 시점까지 아동에 대한 성분창설 및 주민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는 성분창설 및 주민등록 후 아동의 입양 절차 관련 서류(입양동의·승낙서, 입양대상아동 결정 확인서, 아동카드 등)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및 재발급하여 사례이관시까지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입양 동의·승낙서 작성 방법

**입양 동의·승낙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양자가 될 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b>필수작성</b>					
동의자 (승낙자)	성명	지자체장 직함으로 기재 가능 (ex. 종료구청장)	주민등록번호	미기재 가능	필수작성
	주소	지자체 주소	연락처	아동보호전담요원 연락처	아동과의 관계 후견인
동의자 (승낙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아동과의 관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은 위 아동의 입양에 동의·승낙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승낙자)    지자체장 직인 (서명 또는 인)  
 동의자(승낙자)    (서명 또는 인)

Chapter

V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 보호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입양 의뢰 시 구비서류 목록〉

연번	구분	필수 여부	서류명	비고	
1	아동 발급서류	○	아동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아동 기본증명서(상세)		
3			아동 주민등록등·초본		
4			유/무에 따라 구비	아동 전입신고서(전 세대주 서명/도장 必)	
5	아동 의료관련 서류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결과지	- 검사와 관련한 영상 CD가 있는 경우 제출 - 청력검사의 경우, 아기수첩에 결과지 부착된 경우 있음	
6			영유아 국가 건강검진 결과지		
7			예방접종확인관련 서류		
8			청력검사 결과지		
9			혈액 검사 결과지 (B형간염, 에이즈, 매독 포함)		
10			유/무에 따라 구비		출생증명서(원본 또는 사본)
11					입·퇴원 요약지 및 입·퇴원 확인서
12					아프가 점수(1분/5분)
13					출생 후 황달, 경기, 발열 유무
14					뇌/심장/복부 등 초음파 결과지(실시한 경우)
15					특이사항이 있을 시 추가 검사결과, 소견서 (황달, 혈액검사 등)
16	아기수첩				
18	후견인 작성서류	○	(원본)입양동의·승낙서	- (13세 이상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승낙 - (13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아동을 대신하여 승낙	
19			후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본증명서 등 서류 있는 경우 생략)		
20	시·군·구 작성서류	○	아동카드(사진첨부)		
21			(원본)입양대상아동 결정 확인서		
22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록	입양대상아동 별도 분리하여 작성	
23			육구조사표		
24			아동 상황 점검표		
25			개별보호·관리계획서		
26			일시 보호 의뢰서	※ 일시보호 시에만 작성	
27			입양대상아동 인도 확인서	※ 원가정 보호 시 불필요	
28			입양대상아동 입소 확인서	※ 가정위탁, 시설보호 시에만 작성 (일시보호 시 포함)	
29			입양아동 소유물품 리스트(소유물품)		
30	입양대상아동 양육상황 점검 보고서(분기별)	시스템 입력, 결연 심의 전 현행화			

※ '원본' 표시한 서류는 입양 조치 결정 후 1주일 내 시스템 업로드 후 원본 서류는 입양정책위원회 사무국(아동권리 보장원)으로 등기우편 송부하여야 함

## 6)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예방접종 기록 관리 절차

- 태어난 직후의 접종 기록(B형간염 1차, BCG 등)은 일반적인 아동과 같이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서 임시신생아번호로 접종기록 관리
  - \* 임시신생아번호(7자리)는 생년월일과 성별(3,4)로 구성
-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보호자의 정보는 일반 아동과 달리 산모의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구분코드 8번)와 지역상담기관의 연락처·주소를 입력(관계 값은 '관리번호' 입력)
-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의 경우, 지역상담기관은 즉시 관할 보건소로 예방접종관리시스템 내 생모의 신원정보로 등록된 보호자 정보에 대한 수정 요청(관할 보건소는 질병관리청으로 수정요청)
- 출생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접종하는 B형간염 2차 등을 접종하여야 하나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성분창설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로 접종기록을 관리하여야 함
  - 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있는 시설\*에서는 관할 보건소와 협의하여 임시신생아번호와 아동의 전산관리번호\*\*가 서로 연계되도록 처리하여야 함
    - \* 위탁가정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경우 가정위탁센터에서 관할 보건소와 협의하고, 그 밖의 경우 아동을 인도받은 시·군·구의 아동보호 담당자가 관할 보건소와 협의하여야 함
    - \*\* 아동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의료급여 책정을 위해 발급한 전산관리번호
  - 보건소의 담당자는 예방접종관리시스템의 임시신생아번호를 아동의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로 변경하고, 예방접종관리시스템의 아동 보호자 정보를 아동의 후견인 또는 보호자\*로 변경하여야 함
    - \* 시설장 또는 시·군·구의 아동보호 담당자 등
    - \*\* 임시신생아번호 발급 시 입력했던 기존 보호자 정보는 관할 보건소에서 삭제 처리
- 추후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전입신고가 완료되어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된 경우, 임시신생아번호 또는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로 접종받은 이력이 주민등록번호로 이관될 수 있도록 예방접종관리시스템 내 인적정보를 정정

- 성분창설 후 아동의 후견인(아동을 현재 보호하고 있는 자)은 아동에 대한 주민등록(전입신고)을 완료한 이후 관할 보건소에 주민등록 사실을 알려야 하며,
  - \* 아동의 전산관리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을 보건소에 제공
- 해당 보건소의 담당자는 아동의 전산관리번호 인적의 접종력이 주민등록번호로 이관 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에 공문을 송부하여야 함
  - \* 질병관리청은 보건소로부터 받은 공문을 근거로 예방접종관리시스템 내 인적정보 변경 조치를 수행
  - \*\* 보건소에서 전산관리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직접 전환 가능하도록 조치 후 관련 내용 공문으로 안내 예정

## 2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출생통보 상담기관 지자체 심평원 보장원

### 1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출생한 경우 출생통보의 절차

#### 1) 출생사실의 기재

-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보호출산을 통하여 아동이 출생한 경우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출생정보를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보호출산 신청인의 진료기록부 또는 조산기록부(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를 포함한다)에 기재하여야 함
  - 아동이 태어난 이후 사망하더라도 출생정보를 진료기록부 또는 조산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함
- 아동의 출생정보는 다음과 같음
  - 아동의 생모에 관한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비식별화된 가명
  - 아동의 생모에 관한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비식별화된 관리번호
  - 아동의 성별, 수(數) 및 출생 연월일시
  - 그 밖에 의료기관의 주소 등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대법원규칙 제2조

- 제2조(출생사실의 통보) 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14조제4항제3호의 “그 밖에 의료기관의 주소 등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출생 순서
  2. 아동이 실제 출생한 의료기관의 명칭

## 2)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통보(→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기 전에 아동이 사망한 경우에도 해당 아동에 대한 출생정보를 제출하여야 함
- 의료기관의 장이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출생사실의 통보 및 관리를 목적으로 구축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전산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1. 출생통보에 관한 전산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보안
    2. 출생정보의 관리 및 보호
    3. 출생통보 내역의 현지확인
  - 그 밖에 전산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과 절차 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름

##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출생정보 통보(→중앙상담지원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은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출생정보를 제출받은 경우 중앙상담지원기관의 장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함
  - 이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출생사실을 통보할 수 있음

### 영 제5조

- 제5조(전자적인 방법의 출생사실 통보)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 후단 및 제4항 후단에 따른 전자적인 방법의 출생사실 통보를 위하여 표준화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해야 한다.

#### 4) 중앙상담지원기관의 출생정보 통보(→지역상담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출생사실을 통보받은 중앙상담지원기관의 장은 보호출산 신청인의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해당 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함
- 중앙상담지원기관의 담당자는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출생사실을 통보할 수 있음

#### 5) 지역상담기관의 출생정보 통보(→시·읍·면)

- 중앙상담지원기관으로부터 출생사실을 통보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해당 출생정보와 보호출산 신청인이 지어준 아동의 성명을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함
  - \* 지역상담기관이 읍 또는 면 지역에 위치한 경우 시청·군수·구청장이 아닌 읍장 또는 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로 출생통보 관련 서류 송부, 이하 같음)
  - 지역상담기관의 담당자는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중앙상담지원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 보호출산 신청인이 아동의 성명을 지어주지 않은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아동의 성명을 지어주고 그 내용을 포함한 출생사실을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아동의 출생정보와 성명을 포함한 출생사실을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려는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보호출산 등 출생정보 통보서를 갖추어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시·읍·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공문의 형식으로 통보\*)
  - \* 시·읍·면(지자체) 내 가족관계등록 담당 부서로 통보하며, 이때 아동보호 담당 부서에 사실 공유
  - 이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출생사실을 통보할 수 있음
- 보호출산 신청 후 아동이 사망한 경우에도 출생사실을 통보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역상담기관의 소재지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②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아동이 출생한 경우 출생통보의 절차

-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보호출산 신청인은 출산사실과 출생정보를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이 경우 보호출산 신청인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함
1.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증빙자료 및 지역상담기관의 조력 방법

- (증빙자료) 「가족관계등록규칙」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의사나 조산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작성한 출생사실 증명서면
  - \* 출생신고서에 첨부할 출생증명서 등에 관한 처리지침(대법원예규 제501호)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
-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으로서 모의 진료기록 사본이나 자의 진료기록 사본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등 모의 임신사실 및 자의 출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지역상담기관의 조력 방법)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보호출산 신청인에 대한 출산사실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보호출산 산모가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게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을 요청\*
  - \* 보호출산 산모로부터 사본 발급에 대한 대리권을 위임받아야 함

2.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증빙자료 및 지역상담기관의 조력 방법

- (증빙자료) 「가족관계등록규칙」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①통일부장관이 발행한 북한이탈주민 신원 사실관계 확인서, ②외국 관공서 등에서 발행한출생신고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지역상담기관의 조력 방법) 보호출산 신청인이 통일부장관 또는 외국 관공서에게 증빙자료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

3.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상황일지

**증빙자료 및 지역상담기관의 조력 방법**

- (지역상담기관의 조력 방법) 모의 출산에 관여한 119구조대를 편성한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 대해 구조·구급활동상황일지 발급 요청
  - \* 보호출산 산모가 직접 해당 서류를 발급받거나,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보호출산 산모로부터 일지 발급에 대한 대리권을 위임받아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서면이 없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

**증빙자료 및 지역상담기관의 조력 방법**

- (지역상담기관의 조력 방법) 보호출산 산모가 유전자검사결과 등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의 출생확인(「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의2제1항)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보호출산 신청인으로부터 출산사실과 출생정보를 통보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즉시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해당 출산사실과 출생정보를 통보하여야 함
  - 또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출산사실과 출생정보를 위기임신등지원정보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 보호출산 신청인이 아동의 성명을 지어주지 않은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아동의 성명을 지어주고 그 내용을 포함한 출생사실을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아동의 출생정보와 성명을 포함한 출생사실을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려는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보호출산 등 출생정보 통보서를 갖추어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시·읍·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공문의 형식으로 통보)
  - 이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출생사실을 통보할 수 있음

- 보호출산 신청 후 아동이 사망한 경우에도 출산사실과 출생정보를 통보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역상담기관의 소재지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출산사실 증빙자료로써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이 제출된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통보함과 동시에 「가족관계등록규칙」 제87조의2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보호출산 또는 출산 후 아동보호의 신청사실의 통지와 함께 직권기록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하여야 함
- \* 가정법원이 출생사실을 확인한 경우 「가족관계등록규칙」 제87조의2제4항에 따라 출생사실 확인 내역이 보호출산 신청인의 등록기준지 관할 시·읍·면으로 통지되므로 해당 출생사실 확인 내역을 삭제하고자 하는 취지

#### 가족관계등록규칙 제87조의2 등

- 제87조의2(확인사건의 처리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사건의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1.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
  - ④ 제1항제1호의 확인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87조제6항을 준용한다.
  - ⑥ 제1항의 확인절차에 관하여는 제87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7조(허가사건의 처리절차) ③ 제1항 각 호의 허가신청서에는 사건본인의 성명·출생연월일·등록기준지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고, 그 통지서에 재판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 통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1. 신청인 및 사건본인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소
    2. 통지의 원인 및 그 원인일자
    3. 통지 연월일
    4. 법원사무관등의 관직과 성명 및 소속법원의 표시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인 관련 출생정보(법 제14조제4항 각 호)**

1. 아동의 생모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비식별화된 가명
  - 나.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비식별화된 관리번호
2. 아동의 성별, 수, 출생 연월일시 및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아동의 성명
3. 그 밖에 의료기관의 주소 등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4. 법 제14조제1항의 신청을 한 위기산부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면
  - 가.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나.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다.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구조·구급활동 상황일지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서면이 없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인이 출산한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신청인의 아동에 대한 출생사실을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인이 아동의 성명을 지어주지 않은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아동의 성명을 지어주고 그 내용을 포함한 출생사실을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아동의 출생정보와 성명을 포함한 출생사실을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려는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보호출산 등 출생정보 통보서를 갖추어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시·읍·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공문의 형식으로 통보)
- 이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출생사실을 통보할 수 있음

-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 후 아동이 사망한 경우에도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출생사실을 지역상담기관의 소재지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2)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출생통보 내역 삭제

-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의3에 따라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인의 출생정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되거나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이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된 경우,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해당 시·읍·면의 장에게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사실의 통지와 함께 신청인에 관하여 제출·통보된 것을 삭제하고 같은 법 제44조의4제3항에 따른 직권 출생 기록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하여야 함

\*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위기산부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위기산부의 주소지 관할 시·읍·면이 아닌 보호출산 아동의 출생지(위기산부가 출산한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을 말함

###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출생정보

- 제44조의3(출생사실의 통보) 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출생정보”라 한다)**을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출생자 모의 진료기록부 또는 조산기록부(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출생자의 모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성명

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모가 외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의 의료급여 자격관리를 위한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출생자의 성별, 수(數) 및 출생 연월일시

3. 그 밖에 의료기관의 주소 등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가족관계등록규칙」 제38조의4제1항으로 ▲출생자의 순서, ▲출생자가 실제 출생한 의료기관의 명칭을 추가로 규정

-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인의 출생정보를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경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당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청사실의 통지와 함께 [서식 제22호]에 따른 ‘출생정보 삭제 요청서’를 공문으로 송부하여야 함
- 출생정보 삭제 통보를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아직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출생정보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당 출생정보를 제출 받는 즉시 해당 출생정보를 삭제하여야 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출생정보를 제출받았지만 아직 시·읍·면으로 해당 출생정보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시·읍·면으로 해당 출생정보를 통보해서는 아니됨
- 출생정보 삭제 통보를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이 통보된 시·읍·면의 장에게 직권 출생 기록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하여야 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받은 시·읍·면의 장은 해당 출생사실에 대해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의4에 따른 출생신고의 확인·최고 및 직권 출생 기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의4

- 제44조의4(출생신고의 확인·최고 및 직권 출생 기록) ①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시·읍·면의 장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이 지나도록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 ③ 시·읍·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해당 출생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제2항의 최고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제2항에 따라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는 경우

#### 4 성본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보호출산 신청인 또는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인에 대한 출생사실을 통보받은 시·읍·면의 장은 「민법」 제781조제4항에 따라 아동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함

##### 민법 제781조제4항

-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 출생사실을 통보받은 시·읍·면의 장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보호출산 등 출생정보 통보서를 성·본의 창설허가를 받을 때까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지 않고 보관하며, 통보서 등본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대법원예규 [별지 제1호 서식]의 성·본 창설 허가 신청에 의한 성·본의 창설허가재판 청구(수수료 면제)를 하여야 함
- 시·읍·면의 장이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본의 창설허가 재판서 등본의 송부를 받았을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에 접수하고 보관 중인 통보서에 첨부하여 접수장에 접수함과 동시에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함
  - \* 일반적으로 성본 창설 허가 재판은 신청 후 1~3개월 가량 소요되는 점 고려
- 시·읍·면의 장은 보호출산 또는 출산 후 아동보호의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출생기록 사실과 아동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통보하여야 함
  - 이 경우 보호출산 신청인,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인 또는 해당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지어준 아동의 성명이 있는 경우 그 성명을 존중하여야 함
  - 시·읍·면의 장은 아동의 성명이 포함된 대법원예규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생기록 통보서를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함
  - 출생기록 통보서를 송부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의 아동보호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림으로써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주민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시·읍·면의 장은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관할 시·군·구 아동보호 담당자로부터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은 이후 대법원예규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생기록 통보서에 아동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기재하여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추가로 송부하여야 함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아동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위기임신등지원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 5 출생증서 이관 및 영구보존

### 1) 출생증서 추가 기재

- 보호출산 아동의 출생기록 사실을 시·읍·면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아동에 대한 출생증서가 담긴 봉투 겉면에 아동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기재하여야 함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보안 설정이 가능한 금고를 구비하여 추가 기재가 완료된 출생증서를 금고 안에 관리하여야 함
  -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출생증서를 이관하기 전, 출생증서 보안사고(유출 등) 방지를 위해 기록물 관리자(정/부)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 2) 출생증서의 이관 및 영구보존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출생증서 추가 기재 후 지체 없이 출생증서를 아동권리보장원에 이관하여야 함
    - 아동권리보장원은 연 1회 지역상담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출생증서를 일괄 이관함
      - (이관 절차) 이관계획 수립(보장원) → 기록물 목록 회신(지역상담기관) → 기록물 검토(보장원) → 기록물 최종 밀봉(보장원, 지역상담기관\*) 이관(보장원, 지역상담기관) → 결과 통보(보장원)
- \* 기록물 누락여부 점검 후 출생증서 봉투에 보안 스티커 부착하여 최종 밀봉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기록물 목록 회신(문서24 활용) ▲이관 시, 기록물 점검(밀봉여부, 기재항목 누락여부 등) 등 이관 작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아동권리보장원은 이관받은 출생증서를 영구보존하여야 함
  - 아동권리보장원은 출생증서를 영구보존하기 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야 함
  - 다만, 보호출산 또는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이 철회되어 통지를 받은 경우 출생증서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함
    - \* 출생증서 파쇄, 전자기록물의 삭제 등

2026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안내

MINISTRY OF HEALTH & WELF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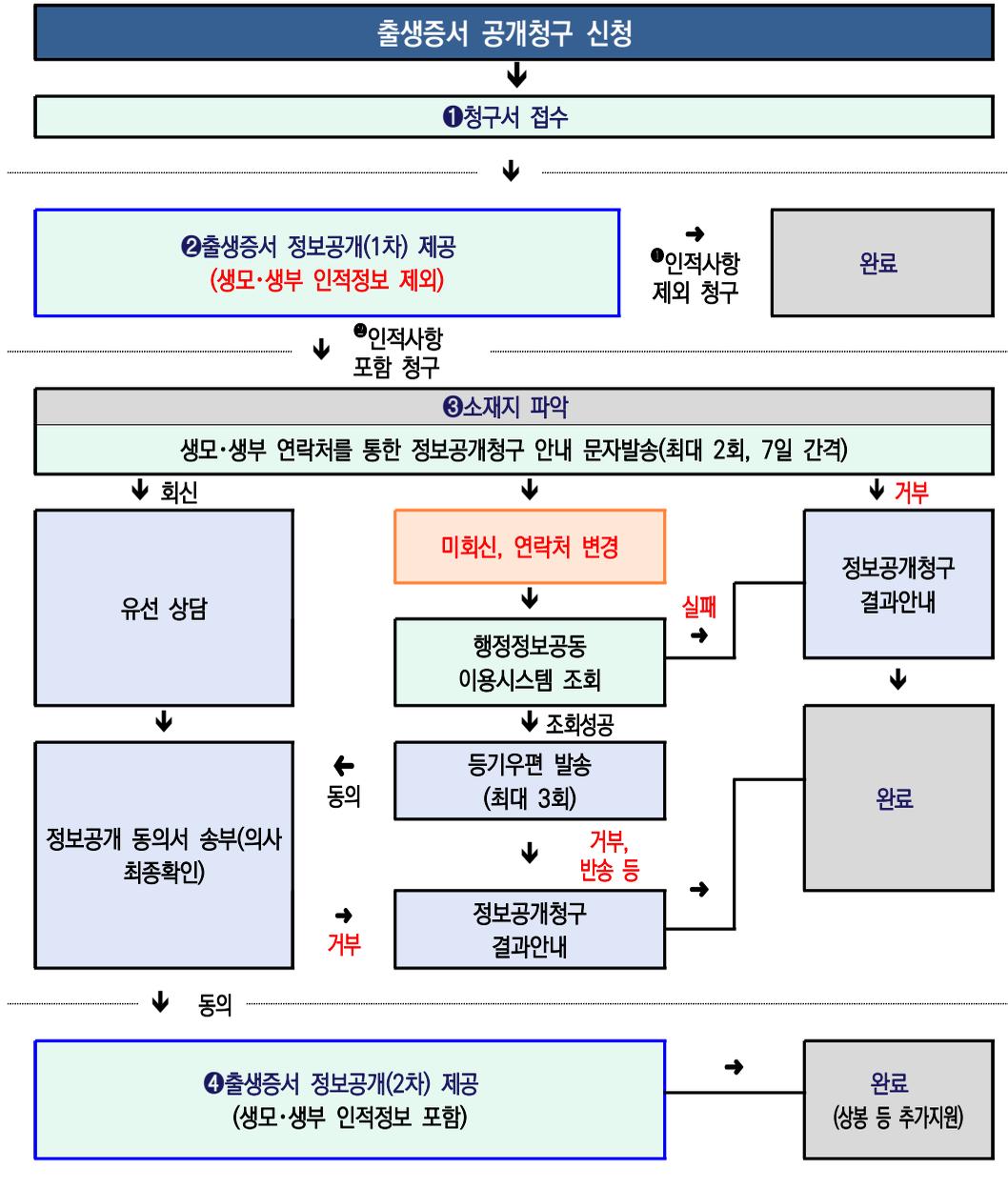
2026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안내

## VI. 출생증서 공개 청구

# VI 출생증서 공개 청구 보장원



〈 출생증서 공개청구 절차 흐름도 〉



## ① 출생증서 공개 청구 개요

- (개념) 보호출산을 통하여 태어난 사람이 출생증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를 청구하면, 출생증서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
- (목적) 출생기록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청구인의 **알 권리 보장** 및 **정체성 확립**
- 출생증서 공개 청구의 원칙
  - 아동권리보장원은 출생증서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청구인이 신뢰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임하고** 법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함
  - 아동권리보장원은 출생증서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권익을 보호** 하면서 **생모·생부의 정보보호도** 고려하여야 함
  - 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는 정보공개를 제공함에 있어 **그 노력에 대한 비용 등 어떠한 대가도 요구할 수 없음**

## ② 출생증서 공개 청구 시 공개되는 정보

- 청구인의 출생배경 정보
  - \* 생모 또는 생부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개
  - 보호출산 신청 생모 또는 생부의 나이
  - 보호출산 신청 당시의 생모 또는 생부의 거주 지역명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구의 명칭)
  - 보호출산 신청일 및 지역상담기관 주소
  - 생모 또는 생부가 보호출산 아동의 성명을 지어준 경우 그 성명
  - 출생일시 및 출생장소, 분만형태
  - 출생 시 신장 및 몸무게

- 아동의 주민등록번호, 아동사진
- 아동 건강상태, 질병, 장애 등
- 친생부모가 보호출산을 선택한 사유
- 신청인이 보호출산 또는 출산 후 아동 보호를 선택하기까지의 사회적·경제적·심리적 상황 등 상담 내용(인적정보 제외)
- 보호출산 신청인의 성장내용, 특이사항 및 생부와의 관계 등(인적정보 제외)
- 생모 또는 생부의 인적정보
  - \* 생모 또는 생부가 동의한 경우에만 공개
  - 보호출산 신청인 및 생부의 성명, 성분, 국적, 결혼상태
  - 보호출산 신청인 및 생부의 주민등록번호
  - 보호출산 신청인 및 생부의 주소(등록기준지, 거주지) 및 연락처
  - 보호출산 신청인 및 생부의 혈액형, 최종학력, 직업(신청당시)
  - 보호출산 신청인 및 생부의 건강상태 및 질병, 장애, 유전적 질환 유무, 심리정서 상황 등
  - 보호출산 신청인의 임신 및 출산 관련 정보

### ③ 출생증서 공개 청구 절차

#### 1) 공개 청구의 요청

- 보호출산을 통하여 태어난 사람(출산 후 아동보호의 신청에 따라 출생증서가 작성된 경우도 포함)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자신의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보호출산을 통하여 태어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출생증서 공개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음

-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출생증서 공개 청구서\*에 첨부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우편,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아동권리보장원은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해외 입양인 등)이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영문으로 번역된 출생증서 공개 청구서 서식을 준비하여야 함

\*\* 중앙상담지원기관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사이트 내 출생증서 공개 청구 관련 메뉴 운영 예정(별도 안내 예정)

**출생증서 공개 청구서의 첨부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등 청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 제17조제3항 및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미성년자인 청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서식 제23호]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정보 공개 청구 동의서 1부 및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 대리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출생증서 공개 청구서 작성 시 생모 또는 생부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출생증서 공개를 요청하는지 표시하여야 하며, 출생증서 공개 방법과 수령 방법을 표시하여야 함

\* (공개 방법) ▲ 원본 열람, ▲ 사본(종이 출력물 형식) 제공, ▲ 전자매체(전자파일 형식) 제공, ▲ 전자우편(전자파일 형식) 송부 중 한 가지

\* (수령 방법) ▲ 직접 방문, ▲ 등기우편, ▲ 팩스, ▲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 중 한 가지

- (구두로 신청하는 경우) 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를 대면하여 직접 말해야 함\*. 이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의 담당자는 청구인이 말한 내용을 기록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함

\*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해외 입양인 등)이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통역인을 통해 말할 수 있음

• 청구인은 필요한 경우 ▲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 법정대리인의 정보 공개 청구 동의서를 서면, 우편,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함

- 아동권리보장원의 담당자는 청구인이 제출한 출생증서 공개 청구서에 모든 항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출생증서 공개 청구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음
- 다만, 적지 않는 항목이 많을수록 정보 공개의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하며, 연락처와 주소를 모두 기재하지 않을 경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주의하여야 함
  - \* 청구인이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 한글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와 실거주지는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안내
- 출생증서의 공개 청구 신청을 접수한 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는 출생증서 정보 공개 청구서를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 홈페이지 또는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청구 신청 내역이 확인되면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에 청구 현황, 청구 내용, 등록 정보 등을 입력하고, 공개 청구서 및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함
  - 또한,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서식 제24호]에 따른 ‘출생증서 공개 청구 신청서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함(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보관 가능)
-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사람이 입양되어 입양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보호출산 출생증서 공개도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함

## 2) 출생증서 공개의 동의

- 출생증서 공개 청구를 받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보호출산 또는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인 및 생부의 동의를 받아 보관하고 있는 출생증서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함
  - 공개 청구 신청을 접수한 이후 위기임신지원시스템의 등록된 출생증서 정보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함
    - \* 밀봉된 출생증서 봉투 개봉의 경우, 정보공개 청구인이 아동권리보장원에 방문하여 원본 문서를 열람하는 경우, 청구인이 직접 밀봉스티커를 개봉
    - \*\* 단, 친생부모가 인적사항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청구인 스티커 개봉 후 담당자는 해당 정보가 열람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이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신청인 또는 생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인 또는 생부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신청인 또는 생부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출생증서를 공개하여야 함
  -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신청인 또는 생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생증서 작성 시점에 신청인 또는 생부가 남긴 연락처를 기반으로 연락할 수 있음
  -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신청인 또는 생부에게 연락할 수 없는 경우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생증서에 적힌 개인 연락처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하고, 정보시스템의 연락처·주소 등으로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출입국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관장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청인 또는 생부의 소재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는 신청인 또는 생부에게 연락하는데 성공한 경우 신청인 또는 생부에게 출생증서 공개 청구가 들어와 출생증서가 공개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출생증서 중 인적사항을 공개하는데 동의하는지 확인하여야 함
  - 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는 출생증서 공개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등 신청인 또는 생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으로부터 출생증서 중 인적사항 공개 동의를 확인 요청을 받은 신청인 또는 생부는 그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증서 중 인적사항의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출생증서 공개 동의서를 등기 우편으로 송부하고 서면으로 회신받아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해당 기한까지(14일 이내) 신청인 또는 생부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봄
- 신청인 또는 생부는 인적사항의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할 수 있음
  - (서면으로 동의 여부를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출생증서 공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출생증서 공개 동의서는 서면, 우편,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함

- (구두로 동의 여부를 통보하는 경우) 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를 대면하여 말해야 함. 이 경우 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는 신청인 또는 생부가 말한 내용을 기록하여 신청인 또는 생부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함
- 다만, 신청인 또는 생부가 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를 대면하여 동의 여부를 말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등을 통해 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는 녹취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
  - \* 이 경우 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는 출생증서 공개 동의 여부를 녹취하겠다는 사실을 신청인 또는 생부에게 알려야 하며, 녹취한 경우 녹취한 음성 파일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함
- 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는 신청인 또는 생부의 동의 여부를 각각 위기임신등지원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 3) 출생증서의 예외적 공개 사유

-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신청인 또는 생부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출산을 통하여 태어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생부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출생증서를 공개할 수 있음
  - \* 두 가지 사유에 모두 해당하여야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출생증서를 공개할 수 있음
-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이 관계 기관에 신청인 또는 생부의 소재지 등을 확인 요청하였을 때 사망 또는 생사·소재지 불명으로 응답받은 경우, 관계기관에서 통지한 주소지로 송부한 등기우편이 수신되지 않은 경우
-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 보호출산을 통하여 태어난 사람의 진단·치료 등 생명과 건강의 중대한 이익\*을 위하여 출생증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 (예시) 유전적 질환의 진단·치료, 장기 이식 등
-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출생증서의 공개 청구 신청을 접수할 때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 관계 기관을 통해 신청인 또는 생부의 사망 또는 생사·소재지 불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신청인 또는 생부가 사망 또는 생사·소재지 불명이 아니거나 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는 출생증서 공개 청구의 신청인에게 동의 여부를 확인한 이후 신청인 또는 생부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 신청인 또는 생부가 사망 또는 생사·소재지 불명인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출생증서 공개 청구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서류를 검토하여 출생증서 공개 여부를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4 출생증서의 공개 절차

##### 1) 출생증서 공개의 방법

-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출생증서를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함
  1. 문서 열람 또는 사본 제공
  2. 전자문서 형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열람, 출력물 제공 또는 복제한 문서를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송부
- 전자문서 형태로 보유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한 사람이 전자문서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해야 함
- 신청인 또는 생부가 인적사항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정보를 가리거나 삭제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신청인 또는 생부 중 1인만 인적사항 공개에 동의한 경우 동의한 자의 인적사항만 공개하여야 함

### 출생증서 공개의 방법(요약)

- (원본문서 열람) 정보공개 청구인이 아동권리보장원에 방문하여 원본 문서를 열람하는 방법으로 공개
  - \* 신청인 또는 생부가 인적사항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정보가 열람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사본의 제공) 아동권리보장원이 출생증서를 복사하여 사본을 만들고, 출생증서 사본을 정보공개 청구인이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 우편을 보내는 방법으로 공개
- (전자파일 형태(전자매체)로 제공) 아동권리보장원이 출생증서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사본을 만들고, 출생증서 사본(전자파일 형식)이 담긴 전자매체(USB 등)를 정보공개 청구인이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 우편 또는 택배를 보내는 방법으로 공개
- (전자파일 형태(전자우편)로 제공) 아동권리보장원이 출생증서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사본을 만들고, 출생증서 사본(전자파일 형식)을 정보공개 청구인이 지정한 전자 우편 주소로 보내는 방법으로 공개

## 2) 출생증서 공개 청구 결과의 통보

-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정보공개 청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식 제25호]에 따른 ‘출생증서 공개 청구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함
  - 다만, 출생증서 공개청구 접수 후 출생증서 정보 공개에 대한 생모 또는 생부의 동의 절차를 진행 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어 15일 이내에 생모 또는 생부의 동의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1차적으로 정보공개 동의 절차 진행상황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하고 이후 30일 범위 내에서 생모 또는 생부의 출생증서 정보공개 동의에 관한 파악 절차를 수행하고 매회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주어야 함
- 생모·생부에게 전송한 등기(우편)·전보가 반송되는 등 생모·생부로부터 출생증서 정보공개 동의 여부에 대한 회신이 없는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1회 편지 발송 후 10일 이내에 생모·생부에게서 회신이 없을 경우 약 10일 간격을 주기로 이후 2회(총 3회) 정보공개 동의 여부에 대하여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함
  - 3회에 걸쳐 정보공개 동의 여부에 대하여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3회 요청 후 10일이 지나도 생모·생부로부터 회신이 없는 경우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 종결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 이후 생모·생부로부터 출생증서 정보공개와 관련 회신(연락)을 받은 경우 청구인에게 안내할 예정임을 알려주어야 함



2026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안내

## VII. 기타 업무

1.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사보원]
2. 위기임산부 대상 전산관리번호 부여 [상담기관] [지자체]
3. 위기임산부 대상 실태조사
4. 경비의 보조
5. 비밀 유지의 의무 [의료기관] [상담기관] [보장원]

# VII | 기타 업무



## 1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사보원

### 1)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및 해당 정보의 관리, 출생 정보의 통보 및 보호출산 관련 기록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관리를 위하여 위기 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과 다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할 수 있음

#### 1. 「사회보장급여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보건복지부장관(위탁기관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시스템을 통해 위기임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제14조의2**

- 제14조의2(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등) ② 법 제24조의2제2항제8호에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사회보장급여 제공,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관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5.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위기임산부 상담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출생증서 작성에 관한 업무

2.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시스템 중 본인부담금의 산정 및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등과 관련된 정보시스템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중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및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등과 관련된 정보시스템

-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과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과 연계·활용하는 각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은 개인식별정보 암호화, 접근제어, 보안관제 등 사이버 공격 대응 등 시스템 관련 정보 보호 및 보안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각 시스템의 운영기관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삭제·파쇄하여야 함
    - \* 각 시스템의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하되, 정보항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스템 운영 기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2) 주민등록번호 및 건강에 관한 정보의 처리

- 보건복지부장관,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과 같음
  1.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기 임신·출산 등에 대한 상담에 관한 사무
  3. 법 제8조에 따른 위기임산부에 대한 산전·산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무
  4.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출산 신청에 관한 사무
  5. 법 제9조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비식별화 및 비식별화된 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무
  6. 법 제11조 및 제14조제4항에 따른 출생사실의 통보에 관한 사무
  7. 법 제13조제4호에 따른 신청 철회에 관한 사무
  8. 법 제1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에 관한 사무
  9. 법 제15조에 따른 출생증서 작성에 관한 사무
  10. 법 제16조에 따른 출생증서의 이관 및 영구보존에 관한 사무
  1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이용에 관한 사무
  1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무

### 3) 지역상담기관의 기록 보유 기간

- 지역상담기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면서 작성한 기록을 최소 5년간 보유하여야 함
  - 다만, ▲ 보호출산 또는 출산 후 아동 보호의 신청·철회, ▲ 전산관리번호 발급, ▲ 출생정보 통보 내역, ▲ 아동 인도, ▲ 출생증서 등 보호출산 및 아동 보호에 관련된 기록은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음

## 2 위기임산부 대상 전산관리번호 부여 상담기관 지자체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통합 운영 안내”(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지침에 따름

### ①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개요

#### 1) 부여 목적 및 부여 대상

-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가 누락되지 아니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임시로 부여할 수 있음

####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의2

- 제7조의2(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부여 등) ① 보장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가 누락되지 아니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관리번호를 임시로 부여할 수 있다.
  1. 출생 미신고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사람
  2. 일정한 거소가 없는 무연고자로서 주민등록번호 부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의 입소자로서 범죄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4.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부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비식별화를 신청한 위기산부

- 개인정보의 보호가 필요하여 신원을 노출시키지 않고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임시로 부여할 수 있음

\* (예시) 미혼모시설 등 입소자 \*\* 위기임산부, 보호출산 신청인,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인

-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임산부 등의 경우에는 출산 전이거나 출산 후 6개월까지는 의료기관에서 전산관리번호로 진료받을 수 있음

\* 출산 후 6개월을 계산할 때 초일을 산입하지 않음(예시 : 출산일이 '24.5.30인 경우 '24.11.30까지 의료기관에서 전산관리번호로 진료받을 수 있음)

- 보호출산 신청인 또는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인에 대해서는 지역상당기관의 장이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를 신청하면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위기임신등정보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한 것으로 간주하며, 부여받은 전산관리번호와 연계된 가명은 법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른 비식별화된 정보로 간주함

## 2)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운영

- (운영 원칙)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는 주민등록 불명자나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가 사회보장 급여 및 관련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임시로 부여하는 것으로서,

- ① (개인정보 보호) 전산관리번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정보가 아님
- ② (발급의 최소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발급하여야 함
- ③ (기간의 제한성)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정해 제한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 ④ (복지 제공의 보편성)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전산관리번호를 이용한 급여 지급 및 복지 서비스 제공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됨
- ⑤ (관리의 철저) 복수의 전산관리번호, 또는 전산관리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이중수급 등 방지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를 하여야 함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로 제공 가능한 사회보장급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급여
  -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
  -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
  - 「아동수당법」 제4조제1항·제5항에 따른 아동수당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
  - 「유아교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유아교육 비용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첫만남이용권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비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산전 검진 및 출산 비용 지원
  - 그 밖에 보장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보장급여

## 2)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부여

※ 아래 절차는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위기임산부 등이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는 경우에 대해 특별히 적용되는 사항으로 일반적인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 절차와 다름에 유의

### 1)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구성 체계

- (번호 구성)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13자리로 구성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1조의3

- 제1조의3(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부여 방법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번호(이하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라 한다)는 출생연도, 성별 등을 식별할 수 있는 문자 또는 숫자로 구성된 13자리의 분류체계로 부여한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의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생성(보장기관 담당자가 임의로 생성할 수 없음)
- 세 번째 자리 숫자를 구분코드로 사용하여 발급대상자 유형에 따라 전산관리번호를 구분할 수 있도록 구성

〈 전산관리번호 구분코드에 따른 발급대상자 〉

구 분	발급대상자
[자료구분 3] ○ 행려환자 (주민등록 미확인자만 해당)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로서 경찰관서로부터 무연고자임을 확인 받아 행려환자가 발생한 시·군·구청인 보장기관이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인정한 자
[자료구분 4] ○ 보장시설 입소자 아닌 자로서 주민등록 번호 불명자	○ 출생 미신고아동, 무호적자, 북한이탈주민 등
[자료구분 5]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주민등록번호 불명자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주민등록번호가 있어도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자 * 퇴소 후에도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경우 유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개인의 사생활 비밀 유지가 필요한 시설에 수용된 자가 본인이 요청할 경우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미혼모시설 등) ○ 보장시설에서 퇴소하더라도, 범죄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급여(보육료, 아동수당 등 아동급여) 수급자에 한해 인정
[자료구분 8] ○ 위기임산부 (보호출산 신청인 포함)	○ 「 <u>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u> 」 제7조에 따라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부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비식별화를 신청한 위기산부

- 위기임산부(보호출산 신청인 포함)에 대해서는 대상자의 출생연도, 유형구분, 보장기관 정보, 성별, 전산관리번호 부여년도 정보 등 포함

**위기임산부 등 대상으로 발급하는 전산관리번호 세부 구성**

-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⑪⑫⑬
  - ①-② : 출생연도 마지막 2자리
  - ③ : 자료구분(숫자 '8'로 고정)
  - ④-⑥ : 지역상담기관 소재 보장기관기호(해당 시·군·구 부호)

- ⑦ : 성별구분
  - \* (내국인) 남 : 1, 3 / 여 : 2, 4, (외국인) 남 : 5, 7 / 여 : 6, 8
  - \*\* (예시) 1900년대 출생(남: 1, 5/ 여: 2, 6)
- ⑧-⑨ : 관리번호 부여년도
- ⑩-⑬ : 일련번호
  - \* 보장기관별로 일련번호를 달리 부여

〈예시〉

'24.8.3일 대전시 동구(3640000) 소재 지역상담기관에서 상담 후 대전시 동구 내에서 10번째로 전산관리번호를 받기로 결정한 자(1998.3.30일생, 여자)의 경우 전산관리번호는?  
⇒ 988364-2240010

- (유효기간)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유효기간은 이를 부여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설정
  - 필요시 유효기간 2개월 전부터 유효기간을 연장(설정된 유효기간으로부터 1년 이내)할 수 있음
  - 기본적으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유효기간 연장 횟수 제한은 없으나(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필요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계속하여 연장 가능), 위기임산부는 출산 후 6개월이 지나면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필요 사유가 소멸되므로 1회에 한하여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날까지만 유효기간을 연장 가능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1조의3

- 제1조의3(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부여 방법 등) ②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유효기간은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한 날부터 1년 이내로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 단위로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다.

## 2)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유효기간 연장 절차

-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위기임산부 등에 대한 전산관리번호 부여 절차
  - (부여 신청) 법 제6조에 따른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에 전산관리번호 발급에 필요한 값(항목)들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청
    - \* 성명, 성별 등 인적정보, 전산관리번호 유형, 가명 등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보호출산 또는 출산 후 아동보호를 신청하지 않는 위기임산부가 전산관리번호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서식 제12호]에 따른 '전산관리번호 부여 신청 동의서'를 받아야 함

**지역상담기관이 시스템에 입력하는 정보 항목**

- 신청인 정보
  - 지역상담기관의 장의 성명, 지역상담기관의 이름, 주소,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부여 대상자 정보
  -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가명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 신청 사유
    - \* ① 제7조에 따라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
    - ② 제9조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부
    - ③ 제14조에 따라 비식별화를 신청한 위기산부
  - 출산예정일(위기산부의 경우 출산일)
    -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위기임산부 등으로부터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를 제출받아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확인

- (부여) 시·군·구의 아동보호 업무 담당자(전산관리번호 부여 담당자\*)는 행복이음을 통해 전산관리번호 신청 정보를 확인\*\*하고,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할 수 있음

- \* 전산관리번호 부여 담당자는 시·군·구 내 아동보호 업무 담당자를 우선으로 지정하되, 시·군·구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변경 가능함(다만, 전산관리번호 부여 업무는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함)
- \*\* 지역상담기관에서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에 입력한 신청 정보가 행복이음 시스템으로 연계되어 표출됨

- 시·군·구의 위기임산부 관련 전산관리번호 부여 담당자가 위기임산부의 신원(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인지할 수 없도록 신원 관련 정보는 마스킹 처리

- \* 위기임산부 등에 대해서 전산관리번호를 지급하는 목적은 신원을 숨기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임을 고려하여 시·군·구 공무원이 해당 신원을 인지할 수 없도록 처리

- (부여 사실 통지) 시·군·구 담당자는 지역상담기관에게 전산관리번호 부여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지역상담기관의 담당자는 위기임산부 등에게 부여받은 전산관리번호를 통지하여야 함

- \* 행복이음에서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면 구체적인 전산관리번호를 포함한 부여 사실이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으로 전송되는 점 고려

- 전산관리번호 부여 신청 또는 부여 전 확인·안내 필요 사항
  - 보호출산 또는 출산 후 아동보호를 신청하지 않은 위기임산부에 대해서는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를 최소화\*할 필요. 특히, 위기임산부가 원가정 양육을 결정한 경우 전산관리번호 부여를 지양하여야 함
    - \* (전산관리번호 발급 대상 위기임산부 예시) ▲ 보호출산 선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 가정 내 갈등 상황 등
  - 보호출산을 신청하지 않은 위기임산부가 자녀를 출산하였지만 출산 후 아동보호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지 않음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 신청을 하려는 지역상담기관 담당자는 대상자가 이미 사용 중인 전산관리번호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여 중복 부여를 방지하여야 함
    -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는 위기임산부 등의 경우 동일한 임신 건에 대해서는 1개의 전산관리번호(8번)만 부여하는 것이 원칙
    - 2회 이상 임신 시 각각의 임신 건에 대해서 전산관리번호(8번)을 구분하여 부여
      - \* 만약, 먼저 발급받은 전산관리번호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롭게 임신하여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고자 하는 경우 기존 전산관리번호의 사용을 종료하고 새롭게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 보호출산 신청인 또는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인이 이미 보장시설 입소자로서 전산관리번호(5번)를 부여받은 경우에 한하여 전산관리번호(8번)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음
      - \* 보호출산 또는 출산 후 아동보호를 신청하지 않은 위기임산부가 보장시설에 입소하여 전산관리번호(5번)를 부여받은 경우 전산관리번호(8번)를 부여하지 않음
      - \*\* 이 경우 의료기관 이용은 전산관리번호(8번)를 사용하고 사회보장급여 수급은 전산관리번호(5번)를 사용(전산관리번호(5번)을 이용하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따른 출생통보 절차가 아닌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출생통보 절차가 적용될 수 있음에 유의)
  - 이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상담 과정에서 위기임산부가 전산관리번호(5번)를 부여받았는지 확인하고 해당 정보를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 \* 시설입소자 전산관리번호(5번)에 의료급여가 적용되어 있는 경우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 입력 시 '기보유 전산관리번호' 등록 필수
    - \*\* 전산관리번호(5번) 발급 여부를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전산관리번호(8번)로 진료받을 때 의료급여 자격이 아닌 건강보험 자격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함

● 전산관리번호 유효기간 연장

- 전산관리번호는 별도의 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발급일로부터 1년 경과 시 자동 소멸됨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위기임산부 등이 부여받은 전산관리번호의 유효기간이 출산 예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시·군·구에 전산관리번호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 \* 다만, 유효기간 연장은 출산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로 한정(지역상담기관에서 전산관리번호 유효기간 연장 요청 시 해당 정보를 같이 입력하여야 함)
- 시·군·구의 담당자는 지역상담기관에서 제출한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정보를 행복이음을 통해 확인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③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관리

-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는 경우, 전산관리번호 발급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
- 전산관리번호로 사회보장급여를 지급받지 않으며, 시·군·구 공무원이 위기임산부 등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점 고려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1조의3**

- 제1조의3(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부여 방법 등) ③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한 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가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전산관리번호 발급에 따른 사후관리 사항**

- 전산관리번호로 급여를 지급하기 전 해당 전산관리번호의 유효기간이 지났는지 확인
- 주민등록번호 부여·확인, 보장시설 퇴소 등으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사용자격이 종료된 경우, 해당 전산관리번호로 부여된 급여 자격을 중지하고 주민등록번호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보장시설 입소자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
- 주민등록번호, 타 지역 전출, 보장시설 퇴소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사업담당자에게 사실 신고 의무 → 사업 담당자는 신고내용에 따라 전산관리번호로 부여된 급여 자격 중지 등 처리

- 과오지급된 급여 내역이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
- 전산관리번호로 급여를 지급하는 보장기관은 전산관리번호 사용의 적정성\*, 급여 지급 적정성\*\* 등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점검 실시
  - \*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고 있는지, 해당 보장시설에 거주하고 있는지, 출생신고를 완료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았는지 등
  - \*\* 전산관리번호와 주민등록번호로 급여가 이중 지급되지 않는지, 보육료와 부모급여·양육수당 등이 이중 지급되지 않는지 등
- 급여별로 미사용 전산관리번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미사용 전산관리번호에 대해서는 급여 자격 중지, 급여 중복 지급 시 환수 처리

- 예외적으로 사망에 대한 신고, 전산관리번호 중지 요청의 경우에 한해 사후관리 적용
  - (사망 신고)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임산부 등이 사망한 경우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군·구의 담당자에게 사망 사실을 통보하고 전산관리번호 유효기간 중지를 요청하여야 함
  - (중지 요청)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위기임산부 등이 부여받은 전산관리번호의 유효기간과 출산(예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까지 남은 기간을 비교하여, 유효기간이 더 긴 경우 출산(예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지나면 위기임신등 지원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군·구의 담당자에게 전산관리번호 유효기간 중지를 요청하여야 함
  - (사산·사태 시) 위기임산부 등이 사산 또는 사태한 경우 전산관리번호의 유효기간은 사산(사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까지로 정함,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사산(사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군·구의 담당자에게 전산관리번호 유효기간 중지를 요청하여야 함
  - ☞ 시·군·구의 담당자는 전산관리번호 유효기간 중지 요청을 받은 경우 전산관리번호의 유효기간을 종료하여 위기임산부가 더 이상 전산관리번호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음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서식 제13호]에 따른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함

### 3 위기임산부 대상 실태조사

-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임산부 지원 및 그 자녀의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위기임산부와 그 자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
  - (대상) 지역상담기관에서 상담 받은 위기임산부(청소년 위기임산부 포함) 및 그 자녀
  - (수행기관) 위기임산부 및 아동에 관한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단체·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
  - (내용) ①위기임산부 및 자녀의 사회·경제적 상황, ②위기임산부의 상담기관 이용 및 상담 현황, ③보호출산 현황, ④아동의 원가정양육 또는 보호조치 현황 등
  - (방법) ①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②시스템 입력 자료(인적사항 제외) 조사 등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관련 시설·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함

### 4 경비의 보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1.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의 운영비
  2. 출생증서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수행경비
  3. 국민건강보험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수행경비

## 5 비밀 유지의 의무 의료기관 상담기관 보장원

- 중앙상담지원기관, 지역상담기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권리보장원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는 법 제23조를 위반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
    -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음



2026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안내

## VIII. 서 식

### 🔍 서식 목록

1. 시행규칙에 따른 서식
2. 대법원예규에 따른 서식
3. 기타 서식

# VIII | 서 식



## 서식 목록

### 1 시행규칙에 따른 서식

서식명	페이지
[별지 제1호서식] 보호출산 신청서	222
[별지 제2호서식] 임신부확인서	223
[별지 제2호의2서식] 보호출산 비용지원신청서	224
[별지 제3호서식] 보호출산 등 출생정보 통보서	225
[별지 제4호서식] 보호출산 등 신청 철회서	226
[별지 제5호서식]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서	227
[별지 제6호서식] 출생증서 공개 청구서	228
[별지 제7호서식] 출생증서 공개 동의서	230

### 2 대법원예규에 따른 서식

서식명	페이지
[별지 제1호서식] 성·본 창설 허가 신청	231
[별지 제2호서식] 출생기록 통보서	232

### 3 기타 서식

서식명	페이지
[제1호 서식] 지역상담기관 지정 신청서	233
[제2호 서식] 지역상담기관 사업계획서 표준 양식	234
[제3호 서식] 지역상담기관 지정서	242
[제4호 서식] 지역상담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243
[제5호 서식] 지역상담기관 변경사항 신고서	244
[제6호 서식] 지역상담기관 휴업·폐업 신고서	245
[제7호 서식] 지역상담기관 자료 이관·자체보관 신청서	246
[제8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표준양식)	250
[제9호 서식] 위기임산부 사후 상담 결과서	252
[제10호 서식] 지역상담기관 사례 이관 동의서	253
[제11호 서식] 복지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요청서	254
[제12호 서식] 전산관리번호 부여 신청 동의서	255
[제13호 서식]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장	256
[제14호 서식] 동일인확인서	257
[제15호 서식] 상담사실 기술서	258
[제16호 서식] 출생증서 관리 대장	259
[제17호 서식] 출생증서(속지)	260
[제18호 서식] 출생증서 봉투	264
[제19호 서식] 아동 소유물품 리스트	265
[제20호 서식] 보호출산 신청 사실 등 통보서	266
[제21호 서식] 출생정보 삭제 요청서	267
[제22호 서식] 법정대리인의 정보공개 청구 동의서	268
[제23호 서식] 출생증서 공개 청구 신청서 관리 대장	269
[제24호 서식] 출생증서 공개 청구 결과 통보서	270
[제25호 서식] 보호출산 아동 출생 사실 안내 공문(예시)	271
[제26호 서식] 보호출산 아동 인도 확인서	272
[제27호 서식] 보호출산 아동 인도 확인 및 후견 개시 보고	273
[제28호 서식] 미성년 후견 개시 신고서	274
[제29호 서식] 보호출산 아동 전입신고 관련 후견인 확인 통보	275

# 1 시행규칙에 따른 서식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보호출산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현주소(실거주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보호자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성명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현주소(실거주지)		
	보호자가 신청하는 사유		신청인과의 관계
상담 이수 확인	[ ] 자녀인 아동을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및 지원 사항 [ ] 자녀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 중인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관련 지원 사항 [ ] 양육 및 친권의 포기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호조치 [ ] 보호출산의 절차와 법적 효력 [ ] 자녀의 생모와 생부를 알 권리의 의미와 그것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및 그 밖의 자녀의 권리 [ ] 자에 대한 인지 및 양육 등 생부의 권리 [ ]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숙려기간 [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보호 절차 [ ] 친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기간 및 절차 [ ] 법 제17조에 따른 출생증서 공개 청구 요건 및 절차 [ ] 법 제15조에 따른 출생증서 작성 및 법 제16조에 따른 출생증서의 이관 및 영구보존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input type="checkbox"/> '√' 표시한 내용에 대해 모두 상담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호출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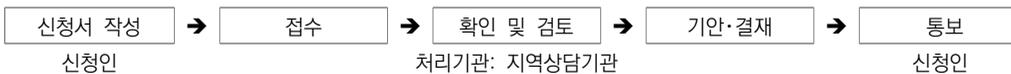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역상담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위기임부가 신청하는 경우: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담을 받았다는 상담사실 기술서(신청서를 제출하는 지역상담기관이 아닌 지역상담기관에서 상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하는 지역상담기관에서 상담을 전부 받은 경우 서식의 '상담이수확인'을 기관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2.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제1호의 서류 및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기임부가 영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해당 위기임부의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 처리절차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임산부확인서

### 대상자

성명: (지역상담기관에서 발급 받은 가명)

전산관리번호:

생년월일:

### 위기임신 상담 지역상담기관

기관명:

전화번호: (응급 상황 시 연락 가능한 번호)

주소:

비고	대상자 사용 약물
	그 밖에 대상자에 대한 사항
	출산 연월일: (출산 후 의료기관에서 작성 후 날인) 유효기간: 출산 후 6개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을 위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이 증서를 제시한 임산부는 비식별화된 정보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역상담기관의 장 직인

### 유의사항

- 본 확인서를 지참한 대상자의 응급수술 등으로 연락이 필요한 경우 보호출산 상담·신청 지역상담기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위 사람은 위 비교란에 기재된 유효기간에 한정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호에 따라 이 임산부확인서를 제시함으로써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은 임산부확인서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 사람은 위 비교란에 기재된 유효기간에 받은 진료 등에 대하여 해당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 확인서를 요양기관에 제시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계산서·영수증,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검안서·증명서,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처방전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등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 보호출산 비용 지원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위기임부	성명	
	가명	전산관리번호
보호자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성명	
	위기임부와와의 관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산전 검진 및 출산에 관한 비용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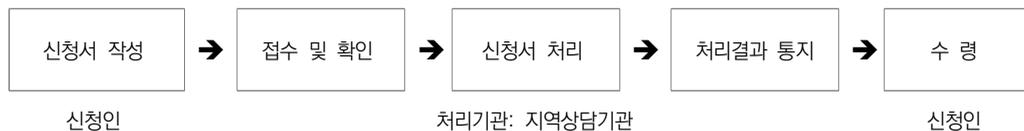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역상담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p>※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기임부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li> <li>2. 해당 위기임부의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li> </ol>
------	--

#### 처리절차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보호출산 등 출생정보 통보서

유형	<input type="checkbox"/>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여 출생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생하여 출생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출산 후 아동 보호를 신청하여 출생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출생자	[ ] 단태아	출생연월일시분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시분	성명	성별
	[ ] 다태아	출생연월일시분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시분	성명	성별
출생자 생모	가명	전산관리번호	생년월일	
보호자 (보호자가 신청한 경우)	성명	출생자 생모와의 관계		
지역상담기관	상담기관명	상담기관 주소		
출생장소	의료기관명			
	의료기관 주소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보호출산 등으로 태어난 아동의 출생정보와 출생사실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지역상담기관의 장 직인



시·읍·면장 귀하

### 유의사항

신청인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 지역상담기관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5항 또는 제14조제4항제4호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면을 확인한 후 통보해야 합니다.

1. 분만에 직접 관여한 사람이 생모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 증명 서면
2.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 증명 서면
3. 생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상황일지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서 등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서면이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보호출산 등 신청 철회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보호자가 신청한 경우 보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주소			
철회하려는 아동	성명	성명	성명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호출산 등 신청을 철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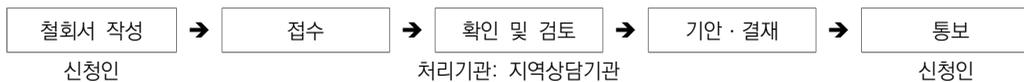
년 월 일

보호출산 등 신청 철회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지역상담기관의 장 귀하

### 처리절차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현주소(실거주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보호자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성명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현주소(실거주지)		
	보호자의 신청사유		신청인과관계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 사유			
아동	원하는 성명	생년월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 따라 본인은 출산 후 아동 보호를 신청합니다.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인은 신청 후 같은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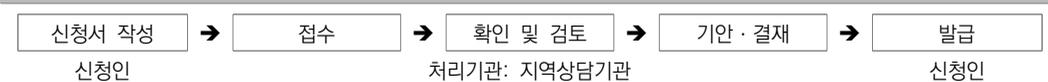
년      월      일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지역상담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위기산부가 영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li> <li>나. 해당 위기산부의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li> </ul> </li> <li>2.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li> <li>3.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분만에 직접 참여한 사람이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li> <li>나.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li> <li>다. 생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상황일지</li> <li>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서류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서 등본</li> </ul> </li> </ol>	수수료 없음
------	--	--------

#### 처리절차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출생증서 공개 청구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청구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청구인	성명	한글	전화번호
	영문	연락처	팩스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여권번호)		전자우편
주소(거주지)			
청구 내용	인적사항을 포함한 출생증서	[ ] 생모의 인적사항(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등)	
	출생증서	[ ] 생부의 인적사항(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등)	
	[ ] 인적사항을 제외한 출생증서		
공개 방법	[ ] 열람 [ ] 사본·출력물 제공 [ ] 저장매체 제공(전자파일) [ ] 전자우편 송부(전자파일)		
수령 방법	[ ] 직접 방문 [ ] 우편 [ ] 전자우편 [ ] 팩스 전송 [ ] 정보통신망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생증서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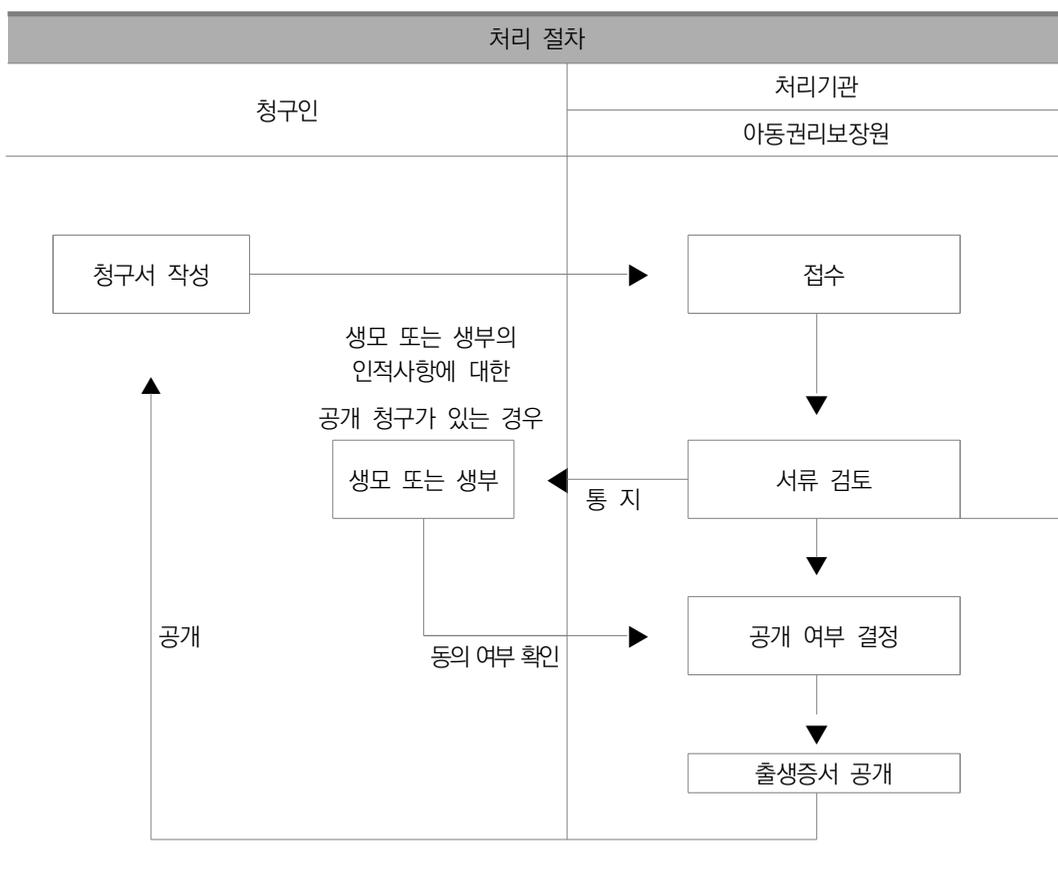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 아동권리보장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수수료 없음
------	---	--------

#### 유의사항

외국인의 경우에는 위 내용에 따른 영문 서식을 원본으로 하고, 이 청구서를 번역본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출생증서 공개 동의서

동의자 (생모 또는 생부)	성명	생년월일
	주소	청구인과의 관계
출생증서 공개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적사항을 포함한 출생증서 전부를 공개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아동권리보장원장 귀하

## 2 대법원예규에 따른 서식

[별지 제1호서식]

### 성·본 창설 허가 신청

사건본인 성 명: ○ ○ ○      성별: ( 남, 여 )  
 출생연월일: ○ 년 ○ 월 ○ 일생  
 주 소:

#### 신 청 취 지

사건본인 ○○○의 성을 「○」로 본을 「○○」로 창설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 신 청 원 인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6항 또는 제14조제5항 및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 제4조에 따라 아동의 성·본 창설 허가를 신청합니다.

#### 첨 부 서 류

1. 보호출산 출생정보 통보서 1통. 끝.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시(구)·읍·면장 ○ ○ ○

직인

○ ○ ○ ○ 법원 귀중

[별지 제2호서식]

### 출생기록 통보서

아 동	성 명		본		성 별	
	출생연월일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모(母)	비식별화된 성명(가명)				전산관리번호	
지역상담기관	명 칭					
	주 소					

위와 같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6항 또는 제1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었음을 (재)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시(구)·읍·면장   ○○○

직인

○○ 지역상담기관장   귀하

**※ 유 의 사 항 ※**

1. 위 통보서에 아동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통보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아동을 보호하는 기관 등에 아동에 대한 주민등록신고를 하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2. 아동의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면 이를 기재하여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다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 3 기타 서식

[서식 제1호] 지역상담기관 지정 신청서

## 지역상담기관 지정 신청서

신청인	성명(대표자)	법인명(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 기관	법인의 명칭	기관의 종류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설치 연월일
	주소	
	직원 수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2에 따라 지역상담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인의 정관 1부</li> <li>2. 지역상담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산 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1부</li> <li>3.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신고증 사본(한부모가족복지시설인 경우만 제출합니다)</li> <li>4. 임신, 출산, 양육 및 아동 보호 관련 상담 및 지원 등 업무 수행 실적 증빙 자료 1부</li> <li>5.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부</li> <li>6.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지역상담기관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 관련 증빙 서류 1부(다만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아직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계획서 1부)</li> </ol>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li> <li>2. 건물등기사항증명서</li> <li>3. 토지등기사항증명서</li> <li>4. 건축물대장</li> </ol>



## □ 사업추진계획

## 1. 사업명 :

## 2. 사업목적

○

○

-

성과목표	성과지표
*본 보조사업을 통하여 어떠한 성과를 이룰 수 있는지 계량화(수치)된 목표로 제시	*투입지표나 과정지표보다는 산출지표나 결과지표 제시

## 3. 사업추진 기간 : 지정일 ~2024.12.31.

## 4. 사업 추진계획

○ 현황 및 실태

-

※ 사업 추진의 계기가 된 구체적인 상황과 실태를 구체적인 데이터 등을 통해 제시

○ 문제점 및 원인분석

-

※ 현황 및 실태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원인을 진단하여 제시

○ 사업추진 방향

-

※ 문제점을 개선 또는 해결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 방향 제시

○ 세부 추진 계획

세부사업명	세부추진내용	추진일정
긴급출동·전화상담 등 위기 임산부 상시 대응체계 구축	• • •	• ~ • ~
위기임산부 원가정 양육 상담 및 정보 제공·서비스 연계	• • •	• ~ • ~
보호출산 상담 및 신청·철회 등 제도 운영		
보호출산 아동 보호 등 사후관리		

- 
- 
- 
- ▷
- ▷

- ※ 세부 추진 계획 안에 ‘서비스 연계기관’에 대해 필수 기재
- ※ 기 기재된 항목은 기본으로 계획 작성하여 추진

### 5. 사업비 구성

○ 총사업비 : 000천원(보조금 000, 자부담 000), 자부담률 \_\_\_\_\_ %  
 (단위 : 천 원)

구 분	합 계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총 계					
보조금					
자부금					

○ 지출 항목별 세부 산출내역(예시)  
 (단위 : 천 원)

세부 사업명	예산항목	세부항목	금 액	산 출 기 초
<b>총 계</b>				
<b>지방보조금(소계)</b>				
<b>A사업</b> <b>[보조금]</b> (사업수행 계획의 세부 사업명과 연계)	<b>인건비</b>	상담인력 운영 (인건비)		•
		강사료		•
		회의참석비		•
		단순인건비		•
	<b>홍보비</b>	홍보비		•
		인쇄비		•
	<b>사업                      진행비</b>	국내여비		•
		식비		•

세부 사업명	예산항목	세부항목	금 액	산 출 기 초
		간담회비 (다과비)		• •
		물품구입비		• •
		임차비		• •
		기타		• •
	활동비	사무용품비		• • •
<b>자부담(소계)</b>				
<b>A사업</b> <b>[자부담금]</b>  (사업수행 계획의 세부 사업명과 연계)	인건비	강사료		• •
		회의참석비		• •
		단순인건비		• •
	홍보비	홍보비		• •
		인쇄비		• •
	사업 진행비	식비		• •
		간담회비 (다과비)		• •
		물품구입비		• •
		기타		•
	활동비	특근매식비		• •
		사무용품비		• •
		재료비		• •

※ 예산항목(보조비목)과 세부항목(보조세목)은 사업 특성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가능

**〈작성요령\_예시〉**

- ① **예산항목** :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로 구분하고 그 안에서 다시 강사료, 회의참석비, 인쇄비, 식비, 사무용품비 등 세부항목으로 구분
- ②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 ③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 단가(원)×수량(명, 부, 회 등)=○○○천원
- ④ **유의사항**
  - 사업진행 목적이 아닌 법인 또는 단체의 직원의 급여,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단체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 불가
  - 예비비, 잡비 등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편성 불가(지출항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 자부담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6. 신청 단체 일반현황**

○ 시설 일반현황

<b>시설명</b>		<b>대표자명</b>	
<b>주 소</b>		<b>설립연도</b>	
<b>전화/팩스</b>		<b>법인명 (운영주체)</b>	
<b>사업담당자</b>	(성명)	(전화)	(이메일)

○ 수행기관 인력 현황: 총   명

성명	직위	담 당 업 무	재직기간	비고
			년 월	

- 수행단체의 기관 운영 지원계획
  - 수행단체의 유사 사업 경험·인력 등 전문성
  - 수행단체의 기타 업무 인력 지원 가능성
  - 위기임산부 동료 상담·지원,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일시 주거지원/보호 등 단체 특성에 따른 추가 자원
  - 위기임산부 편의 시설, 안전 설비 등 설비
  - 접근성(위치, 교통 등) 등

7. 신청단체 자산현황

(단위 : 천 원)

연 도	총 자 산	총 부 채	비 고

8. 기대효과

- 사회적 기여도(사회문제해결 등)
  - 
  -

※ 사업 추진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 등 공익적 기여도, 파급효과 등을 기술

- 단체 역량 발전에 대한 기여도
  - 
  -

※ 사업 수행으로 단체 자체의 역량 강화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등을 기술

## 9. 사업 추진실적

### ○ 총괄표

사업명	연도	사업비	사업내용 및 추진실적	사업지원 기관명

※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여성가족부 등 외부기관에서 지원받거나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실적을 모두 기재

### ○ 사업 주요사항

- 특이사항, 성과 등 서술하되, 지역상담기관 운영 사업 수행에 대한 연관성 및 특성, 성과 등 위주로 서술

[서식 제3호] 지역상담기관 지정서

##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지정서 0000시

1. 지정기간 :
2. 기 관 명 :
3. 기 관 장 :
4. 소 재 지 :
5. 사업자등록번호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직인

[서식 제4호] 지역상담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 지역상담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신청인	성명(대표자)	법인명(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경 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자
	[ ]상담기관 소재지			
	[ ]상담기관의 장			
	[ ]법인대표자			
변경 사유				

위와 같이 지역상담기관의 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지역상담기관 지정서 사본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서식 제5호] 지역상담기관 변경사항 신고서

## 지역상담기관 변경사항 신고서

신고인	성명(대표자)	법인명(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항	시설 (공간의 축소 및 확대 등)		
	사업자등록번호		
	보조금 지급 계좌		
	그 밖의 사항		

변경사유

위와 같이 지역상담기관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

[서식 제6호] 지역상담기관 휴업·폐업 신고서

## 지역상담기관 [   ] 폐업 신고서 [   ] 휴업

① 신고인 (대표자)	성명(대표자)	법인명(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② 지역상담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③ 폐업일·휴업기간 (예정일·예정기간)	폐업일	년    월    일
	휴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④ 폐업·휴업 사유		
⑤ 연락처 (폐업·휴업 후)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위와 같이 지역상담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폐업·휴업을 결의한 이사회 의 회의록 사본 1부</li> <li>2. 상담 중인 위기임산부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li> <li>3. 지역상담기관 지정서(폐업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li> <li>4. 지역상담기관 자료 이관/자체보관 신청서</li> </ol>
------	--

[서식 제7호] 지역상담기관 자료 이관·자체보관 신청서

## 지역상담기관 제공 자료 [    ]이관 [    ]자체보관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 신청인	성명(대표자)	법인명(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② 지역상담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폐업일	휴업기간

③ 자체보관 계획

보관기간		
보관장소		
보관책임자	성명	전화번호

④ 지역상담기관 제공자료 목록 및 수량

단위 :

구분	이관-(    )건, 망실 및 훼손-(    )건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1. 위기임신, 출산·양육, 보호출산 관련 상담 기록					
2. 보호출산 산모 비용 지원 이력					
3. 출생증서 기록물					
4. 연도별 보조금·후원금 지출 명세서					
5. 기타(지역상담기관 운영계획서 등)					
6. 1~5번까지의 서류 중 전자문서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그 전자문서					

⑤ 지역상담기관 자료의 인계·인수

구분	인계자	인수자	비고
성명			
전화번호			

위와 같이 지역상담기관 보유 자료의 [    ] 이관 [    ] 자체보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뒤쪽)

첨부 서류	1. 지역상담기관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 1부(부표 1) 2. 지역상담기관 제공자료 망실 및 훼손 목록표 1부(부표 2) 3. 자체보관계획서 1부(자료를 직접 보관하려는 경우로만 한정합니다)
-------	---

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이관자료 중 일부 훼손 또는 일부 망실로 인하여 자료의 정상적인 인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청서 이외에 별도의 확인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폐업기관의 이관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자료의 이관을 신청하는 경우, 실제로 이관되는 자료의 수량이 “④ 지역상담기관 제공자료 목록 및 수량”에 기재된 사항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서식 제8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표준 양식)

### 위기임산부 심층상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을 안내 드리오니 자세히 읽은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일반개인정보)(필수)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 상담 대상자 정보(성명, 성별, 나이, 연락처, 주소, 학력, 자격, 가족관계 및 혼인관계 정보, 소득·재산소계, 주거·경제상황), 상담내용 및 결과 - 가구구성 정보(가족의 성명, 성별, 나이, 주소, 직업, 연락처, 상담 대상자와의 관계)	위기임신 상담 서비스 제공	위기임신 상담 종결 후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위기임신 상담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내역(고유식별정보)(필수) \* 상담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정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대상자)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가족 구성원)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위기임신 상담 서비스 제공	위기임신 상담 종결 후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위기임신 상담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하는 항목	제공목적	제공받는 자	보유기간
- 상담 대상자 정보(성명, 성별, 나이, 연락처, 주소, 학력, 자격, 가족관계 및 혼인관계 정보, 소득·재산소계, 주거·경제상황), 상담내용 및 결과 - 가구구성 정보(가족의 성명, 성별, 나이, 주소, 직업, 연락처, 상담 대상자와의 관계) - 대상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정보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위기임신등지원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보건복지부장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위기임신 상담 종결 후 5년

※ 위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위기임신 상담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기타 고지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라 다음 항목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근거
위기임신 상담 서비스 제공	주민등록번호, 건강에 관한 정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2항, 시행령 제8조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항목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공받는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제공근거
보건복지부장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위기임신등지원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주민등록번호, 건강에 관한 정보	위기임신 상담 종결 후 5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2항, 시행령 제8조제2항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 아동,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민법 제5·10·13조))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지역상담기관의 장 귀하

[서식 제9호] 위기임산부 사후상담 결과서

## 위기임산부 사후상담 결과서

사후관리일    년    월    일    ( )차

대상자	이름					생년월일(연령)	. . ( )세	
	연락처							
	주소							
	특이사항							
보호자 (또는 후견인)	성명(성별)					생년월일(연령)	. . ( )세	
	대상자와의 관계							
	주소							
가족 관계	성명	성별	연령	관계	직업(학교)	비고		
사후 상담 내용	아동 출생신고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아동 양육·보호 상황							
	아동 관련 의사결정 상황							
	사회적지지 자원 (가족, 친척, 동료 등)							
	서비스 욕구							
	기타(건강·의료 등)							
종합의견(총평)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span>년    월    일</span> <span>지역상담기관 담당자    성명 :    (인)</span> </div>								

[서식 제10호] 지역상담기관 사례 이관 동의서

## 지역상담기관 사례이관 동의서

신청 기관	기관명	
	주소	
	담당자	
	연락처	
이관 대상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관 사유		
이관 기관	기관명	
	주소	
	담당자	
	연락처	

본인은 20 년 월 일부터 상기와 같은 00기관으로 사례 이관 및 상담내용 전달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 의 자 :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일 자 : 20 년 월 일

담 당 자 : (서명 또는 인)

[서식 제11호] 복지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요청서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1.1>

##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장애인복지시설 2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시설입소(이용) 대상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시설 입소 (이용) 대상자	01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희망입소 (이용)시설
		주소	희망입소 기간	
	02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희망입소 (이용)시설
		주소	희망입소 기간	
입 소 (이용) 사 유	노인복지시설	① 양로시설                      ② 노인공동생활가정                      ③ 노인요양시설 ④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⑤ 기타(                                      )		
	아동복지시설	① 아동양육시설                  ② 아동일시보호시설                  ③ 아동보호치료시설 ④ 자립지원시설                  ⑤ 아동전용시설                      ⑥ 아동상담소 ⑦ 공동생활가정                  ⑧ 기타(                                      )		
	장애인 복지시설	① 지체장애인거주시설          ② 시각장애인 거주시설 ③ 청각·언어장애인거주시설    ④ 지적장애인거주시설 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⑥ 장애영유아거주시설 ⑦ 장애인공동생활가정          ⑧ 장애인단기거주시설 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⑩ 기타(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① 모자가족 복지시설 ([    ] 기본생활지원형 [    ] 공동생활지원형 [    ] 자립생활지원형) ② 부자가족 복지시설 ([    ] 기본생활지원형 [    ] 공동생활지원형 [    ] 자립생활지원형) ③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    ] 기본생활지원형 [    ] 공동생활지원형) ④ 일시지원 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① 성매매피해지원시설    ② 기 타(                                      )		
	노숙인 복지시설	① 노숙인재활시설              ② 노숙인요양시설              ③ 기 타(                                      )		
	기 타			
통지방법	[    ] 전자우편(E-mail)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 서면    [    ] 기타(                                      )			

위와 같이 시설입소(이용)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_\_\_\_\_ (서명 또는 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건강진단서 1부(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고자하는 경우에 한함) 2. 기타, 관련 증빙자료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제12호] 전산관리번호 부여 신청 동의서

## 전산관리번호 부여 신청 동의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출산예정일
	사용하고자 하는 가명	성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보장기관의 장에게 전산관리번호의 부여를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역상담기관의 장 귀하



[서식 제14호] 동일인확인서

## 동일인확인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명	
전산관리번호	
주소	
연락처	
용도	<input type="checkbox"/> 보호출산 신청 철회에 따른 아동의 출생신고 <input type="checkbox"/> 의료기관 제증명서류 발급 <input type="checkbox"/> 기타(용도 : _____ )
비 고	
발급번호	연도 - 지역상담기관 코드- 신청발급 부수- 대상자 접수번호 (예 : 제2025-000-000-0000호)

성명 ○○○과 가명 □□□이 위와 같이 동일인임을 확인합니다. 동일인확인서를 제출받은 기관은 동일인확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연락처(○○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 000-0000-0000)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지역상담기관의 장 ○○○

직인





[서식 제17호] 출생증서(속지)

# 출생증서

- 출생증서는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자녀의 생모와 생부를 '알 권리'의 의미와 그것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이며,
-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자녀가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한 경우, 신청인 또는 생부의 정보공개 동의 여부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

## 출생증서 공개 청구 시 공개되는 정보

- 신청인(생모) 또는 생부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개되는 정보
  - 청구인의 출생배경 정보
  - 신청인이 보호출산 또는 출산 후 아동 보호를 선택하기까지의 사회적·경제적·심리적 상황 등 상담 내용(인적정보 제외)
  - 보호출산 신청인의 성장내용, 특이사항 및 생부와의 관계 등(인적정보 제외)
- 신청인(생모) 또는 생부가 동의한 경우에만 공개
  - 생모 또는 생부의 인적정보
  - 생모 및 생부의 건강상태 및 질병, 장애, 유전적 질환 유무, 심리정서 상황 등
  - 보호출산 신청인의 임신 및 출산 관련 정보

신청인 본인은 이하 출생증서 작성 사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출생증서

지역상담기관명			보호출산		
지역상담기관 주소			신청일자		
아동 출생정보	성명			아동사진	
	주민등록번호				
	출생일시				
	출생장소				
	출산 병원명				
	분만형태				
	출생시 신장				
	출생시 몸무게				
기타 참고사항					
아동 건강상태	장애	유형	정도		
		질병	특이사항		
생모 정보	구분		생모		
	인적사항	성명			
		성분			
		국적			
		보호출산 당시 나이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거주지역			
		연락처			
	신체특성	결혼상태			
		혈액형			
	교육 및 직업	최종학력			
		직업(신청당시)			
	병력 및 건강상태	전반적인 건강상태			
		영양상태			
		장애유무			
		장애정도			
		유전적 질환			
		질병유무			
		질병종류			
심리정서 상황					
임신 및 출산 관련	출산구분				
	임신 중 음주 및 흡연, 약복용				
	임신기간 중 질환	병명			
		발병시기			
치료여부					
기타	성격, 취미, 적성 등				
	희망 아동보호조치 유형				

	구분		생부
	구분	구분	
생부 정보	인적사항	성명	
		성분	
		국적	
		보호출산 당시 나이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거주지역	
		연락처	
		결혼상태	
	신체특성	혈액형	
	교육 및 직업	최종학력	
		직업(신청당시)	
	병력 및 건강상태	전반적인 건강상태	
		영양상태	
		장애유무	
		장애정도	
		유전적 질환	
		질병유무	
		질병종류	
기타	성격, 취미, 적성 등		
생모 개인력 (성장내용)			
특이사항			
생모와 생부의 관계			





[서식 제19호] 아동 소유물품 리스트

<b>아동 소유물품 인도 리스트</b>			
성명			
<i>아동의 소유물품은 보호출산 아동에게는 매우 소중한 것일 수 있으므로 잘 정리하여 인도하기 바람</i>			
구분	세부내용	원본 여부	비고
□ 사진	생모의 사진(3매)	<input type="checkbox"/> 원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본	
	아동사진(2매)	<input type="checkbox"/> 원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본	
□ 육아일기 (임신 및 태교일기)	산모수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본 <input type="checkbox"/> 사본	
	육아일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본 <input type="checkbox"/> 사본	
		<input type="checkbox"/> 원본 <input type="checkbox"/> 사본	
□ 의류, 이불	배냇 저고리(1벌)	<input type="checkbox"/> 원본 <input type="checkbox"/> 사본	
	아기 이불(1개)	<input type="checkbox"/> 원본 <input type="checkbox"/> 사본	
		<input type="checkbox"/> 원본 <input type="checkbox"/> 사본	
□ 장난감, 인형	아기 애착인형(1개)	<input type="checkbox"/> 원본 <input type="checkbox"/> 사본	
		<input type="checkbox"/> 원본 <input type="checkbox"/> 사본	
		<input type="checkbox"/> 원본 <input type="checkbox"/> 사본	
□ 편지	생모의 서신(2장)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본 <input type="checkbox"/> 사본	
		<input type="checkbox"/> 원본 <input type="checkbox"/> 사본	
		<input type="checkbox"/> 원본 <input type="checkbox"/> 사본	
□ 기타		<input type="checkbox"/> 원본 <input type="checkbox"/> 사본	
		<input type="checkbox"/> 원본 <input type="checkbox"/> 사본	
		<input type="checkbox"/> 원본 <input type="checkbox"/> 사본	
		<input type="checkbox"/> 원본 <input type="checkbox"/> 사본	
특이사항: 육아일기, 산모수첩 원본은 아동보호 담당자(아동 보호자)에게 인도하였음(예시)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인)	

[서식 제20호] 보호출산 신청 사실 등 통보서

## 보호출산 신청 사실 등 통보서

보호출산 신청인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호출산 아동	성명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주소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제5조에 따라 보호출산 신청인의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보호출산의 신청 사실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7조의2제4항에 따른 통지와 관련하여 아동의 출생사실이 직권기록 되지 않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지역상담기관의 **장 직인**



시·읍·면장 귀하

### 첨부서류

1. 출생사실 확인 대상자(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가정법원의 출생사실 확인서 등본



[서식 제22호] 법정대리인의 정보공개 청구 동의서

## 출생증서 정보 공개 청구 동의서

청구인	성명	한글	연락처	전화번호
		영문		팩스번호
			전자우편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여권번호)			
주소(거주지)				
법정 대리인	성명	한글	연락처	전화번호
		영문		팩스번호
			전자우편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여권번호)			
주소(거주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출생증서 정보 공개의 청구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의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아동권리보장원장** 귀하



[서식 제24호] 출생증서 공개 청구 결과 통보서

<b>출생증서 공개청구 결과 통보서</b>			
발급기관	아동권리보장원	공개청구 접수일	
신청인	성 명		
	생 년 월 일		
<b>친생모 인적사항(보호출산 당시)</b>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거부 <input type="checkbox"/> 확인불가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b>친생부 인적사항(보호출산 당시)</b>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거부 <input type="checkbox"/> 확인불가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정보공개 동의 여부 확인 절차		친생모	친생부
	확인 방법	<input type="checkbox"/> 유선 <input type="checkbox"/> 등기 <input type="checkbox"/> 전보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input type="checkbox"/> 유선 <input type="checkbox"/> 등기 <input type="checkbox"/> 전보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b>친생부모 정보공개 동의를 위한 우편물 발송정보</b>		
	1회	우편물 발신일자: <input type="checkbox"/> 수신 <input type="checkbox"/> 폐문부재 <input type="checkbox"/> 수취거부 <input type="checkbox"/> 주소불분명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우편물 발신일자: <input type="checkbox"/> 수신 <input type="checkbox"/> 폐문부재 <input type="checkbox"/> 수취거부 <input type="checkbox"/> 주소불분명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2회	우편물 발신일자: <input type="checkbox"/> 수신 <input type="checkbox"/> 폐문부재 <input type="checkbox"/> 수취거부 <input type="checkbox"/> 주소불분명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우편물 발신일자: <input type="checkbox"/> 수신 <input type="checkbox"/> 폐문부재 <input type="checkbox"/> 수취거부 <input type="checkbox"/> 주소불분명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3회	우편물 발신일자: <input type="checkbox"/> 수신 <input type="checkbox"/> 폐문부재 <input type="checkbox"/> 수취거부 <input type="checkbox"/> 주소불분명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우편물 발신일자: <input type="checkbox"/> 수신 <input type="checkbox"/> 폐문부재 <input type="checkbox"/> 수취거부 <input type="checkbox"/> 주소불분명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기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요청한 출생증서 공개청구에 대한 진행 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b>아동권리보장원장</b>			

[서식 제25호] 보호출산 아동 출생 사실 안내 공문(예시)



## 문 서 2 4

수신자  
(경유) OO 시군구 아동보호팀

제목 [OO 지역상담기관] 보호출산 아동 출생 사실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출산을 통하여 아동이 출생하였으므로, 해당 사실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연번	보호출산 신청 정보			보호출산 아동 정보			지역상담기관 담당자 정보	
	가명	전산관리번호	신청일자	출생일시	성별	산모의 희망 보호조치 유형	담당자명	전화번호
1								
2								

※ 향후 추진일정은 지역상담기관 및 시·군·구 간 별도 협의

끝.

OO 지역 상담 기관 장 (직인)

수신자 OO 시·군·구청장(OO과)

[서식 제26호] 보호출산 아동 인도 확인서

<b>보호출산 아동 인도 확인서</b>				
보호출산 아동	성명		성별	남·여
	생년월일	년    월	일생(	세,    월)
위기임산부 (가명정보)	성명 (전산관리번호)			
인도일자	00년 00월 00일			
참관인	지역상담기관	담당자 : (지역상담기관명)(성명)		(서명)
	000시·군·구	담당자 :        (소속)(성명)		(서명)
<p>「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OO 지역상담기관으로부터 아동을 인도받았으며, 동조 제3항에 따라 인도일자로부터 OO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의 후견인이 됨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년        월        일</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margin-top: 20px;"> <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2em;">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span> <div style="border: 2px solid orange; padding: 10px 20px; font-weight: bold; color: orange; font-size: 1.2em;">직인</div> </div>				

[서식 제27호] 보호출산 아동 인도 확인 및 후견 개시 보고

## 보호출산 아동 인도 확인 및 후견 개시 보고

### 행정기관명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보호출산 아동 인도 확인 및 후견 개시 보고**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호출산 아동을 인도받은 바, 해당 아동의 미성년후견을 개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보호출산 아동 인도 정보				
성명	생년월일	지역상담기관	인도일자	인도인 (소속, 성명)

붙임 : 보호출산 아동 인도 확인서 1부. 끝.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제28호] 미성년후견 개시 신고서

**미성년<sup>1</sup>후견<sup>2</sup>후견감독  
개시 신고서**  
(      년      월      일 )

※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① 미성 년자	성 명	한글	(성 / 영)	한자	(성 / 영)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출 생 연 월 일	
	주 소							
② 후견인 (임무 대행자)	성 명	한글	(성 / 영)	한자	(성 / 영)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출 생 연 월 일	
	주 소							
③ 후견 감독인	성 명	한글	(성 / 영)	한자	(성 / 영)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출 생 연 월 일	
	주 소							
④ 신고인	성 명	(성 / 영)			④ 또는 서명	전 화		
	자 격	①미성년후견인 ②미성년후견인임무대행자 ③미성년후견감독인					이 메 일	
⑤개시일자 및 원인		년      월      일						
⑥취임일자 및 원인		년      월      일      ①지정 ②선정 ③법정						
⑦심 판 일 자		년      월      일      법원명						
⑧기 타 사 항								
⑨제출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작 성 방 법**

※ 등록기준지: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②③란: 미성년후견감독인 없이 미성년후견인(미성년후견인임무대행자)만 있는 경우, 후견감독인란은 비워 두고 나머지의 경우 순서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⑤란: 개시일자 및 원인은 2013. 7. 17. 친권자 사망(친권상실, 친권자 행방불명 등)으로 기재합니다.  
 ⑥란: 지정후견인·후견감독인의 취임연월일은 후견개시원인(친권자 사망)이 발생한 날을 기재합니다.  
     : 선정후견인·후견감독인, 후견인임무대행자의 취임연월일은 선임심판일을 기재합니다.  
 ⑦란: 심판일자란은 선정후견인·후견감독인, 후견인임무대행자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⑧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⑨란: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1. 유언서 그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 1부(유언에 의하여 후견인·후견감독인을 지정한 경우)
2.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법원이 재판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 경우)  
 재판서 등본 1부(법원이 재판에 의하여 미성년후견감독인, 미성년후견인 임무대행자를 선임한 경우)
- ※ 아래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 생략합니다.
3.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4.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서식 제29호] 보호출산 아동 전입신고 관련 후견인 확인 통보

## 행정기관명

수신 〇〇 읍면동 주민센터장  
(경유)

제목 보호출산 아동 전입신고 관련 후견인 확인 통보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보호조치된 미성년 아동의 전입신고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후견인 확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보호출산 아동 성명	성 별	생 년 월 일	확 인 내 용		후 견 인	비 고
			전 거주지	현 거주지 (이사하는 곳)		
					예) 〇〇시장	

※ 위 통보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법정대리인 확인사항을 같음함

- 붙임 1. 보호출산 아동 인도 확인서 사본 1부.  
2. 보호출산 아동 인도 확인 및 후견 개시 보고 사본 1부. 끝.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붙임 1 「위기임신보호출산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기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실태조사 등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상담기관의 지정·운영 제7조 위기 임신·출산 등에 대한 상담 제8조 위기임신부에 대한 산전·산후 보호 및 지원	제2조 지역상담기관의 범위		제2조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제3조 중앙상담지원기관의 업무 등 제4조 지역상담기관의 업무 제5조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의 시설기준 등 제6조 위기 임신·출산 등에 대한 상담	
2장 상담	제9조 보호출산 신청 제10조 보호출산의 지원	제3조 보호자의 보호출산 신청 제4조 위기임부 정보에 대한 비식별화		제7조 보호출산의 신청 방법과 절차 제8조 산전 검진 및 출산 방법 제9조 산전 검진 및 출산 비용 지원	
	제11조 출생사실의 통보 등 제12조 아동의 보호조치 제13조 신청 철회와 아동의 보호 등 제14조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	제5조 전자적인 방법의 출생사실 통보		제10조 출생사실의 통보 제11조 아동의 보호조치 제12조 신청 철회의 방법과 절차 제13조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의 방법과 절차	
3장 출산	제15조 출생증서 작성 제16조 출생증서의 이관 및 영구보존 제17조 출생증서의 공개 청구 등	제6조 출생증서의 생략 정보 제7조 출생증서의 공개		제14조 출생증서 작성 사항 제15조 출생증서 공개 청구 제16조 출생증서 공개에 대한 동의	
	4장 아동 보호				
5장 출생 증서					

시행규칙	시행령	법률
	<p>제8조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9조 비용 환수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0조 행정처분 기준                      제11조 권한의 위임</p>	<p>제18조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19조 경비의 보조                      제20조 비용의 환수                      제21조 임무의 위탁 및 비용의 예탁                      제22조 지정취소                      제23조 비밀유지의 의무                      제24조 권한의 위임                      제25조 벌칙                      제26조 양벌규정</p> <p><b>6장 보칙</b></p>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b>제1장 총칙</b></p> <p><b>제1조(목적)</b> 이 법은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신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기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0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 여성(이하 “위기임부”라 한다)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이하 “위기산부”라 한다)으로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li> <li>2. “상담기관”이란 위기임산부에게 출산 및 양육과 자녀인 아동 보호를 위</li> </ol>	<p><b>제1조(목적)</b> 이 영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1조(목적)</b> 이 규칙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규칙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위기임신보호출산법
		<p>한 각종 지원에 관한 정보 및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및 지원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p> <p>3. “비식별화”란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신청을 한 위기임신부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관리번호 부여 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가명처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p> <p>4. “보호출산”이란 위기임부가 제7조에 따른 상담을 모두 마치고 제9조에 따른 신청을 한 후 비식별화를 하고 출산하는 것을 말한다.</p> <p>5. “출생증서”란 보호출산으로 태어나거나 제14조에 따라 보호된 아동의 출생 당시의 정보 및 생모·생부의 정보로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록을 말한다.</p> <p>6. “보호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민법」에 따른 친권자 및 후견인 나. 가문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 「민</p>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규칙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위기임신보호출산법
		<p>법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임신부를 보호하는 사람이다. 가목 및 나목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 사실상 해당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시설의 장 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가정위탁보호자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가목에 따른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p> <p><b>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b>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접 자녀인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우선으로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p>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규칙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위기임신보호출산법
<p><b>제2조(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b> ①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상담기관(이하 “지역상담기관”이라 한다)에서 상담을 받은 위기임산부(법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청소년 위기임산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자녀인 아동으로 한다.</p> <p>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관한 사항</li> <li>2. 위기임산부의 상담 이용 현황과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앙상담지원기관(이하 “중앙상담지원기관”이라 한다) 및 지역상담기관의 운영</li> </ol>		<p>기임산부와 자녀인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b>제4조(실태조사 등)</b>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임산부 지원 및 그 자녀의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위기임산부와 그 자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위기임산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함께 실시할 수 있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관련 시설·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규칙
<p>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에 관한 사항</p> <p>3. 위기임산부의 보호출산 이용 현황과 그 자녀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p> <p>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임산부 지원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③ 실태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위기임산부,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p> <p>2. 법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또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계·활용되는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정보에 대한 자료조사. 다만,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 보호자, 생부 등의 인적사항은 자료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p> <p>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효율적인</p>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규칙
<p><b>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b> 보호출산 및 제14조에 따른 출산 후 아동 보호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p> <p><b>제2장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 등</b></p> <p><b>제6조(상담기관의 지정·운영)</b>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임산부 지원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상담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p> <p>1. 위기임산부의 출산·양육 지원 및 그 아동의 보호를 위한 상담 절차·내용의 개발·보급</p>		<p>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p> <p>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에 관한 전문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p>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규칙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위기임신보호출산법
<p><b>제3조(중상담지원기관의 업무) 법 제6조</b> 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기임산부 상담 전문가의 교육 및 양성에 관한 업무</li> <li>2.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에 대한 통계 구축에 관한 업무</li> <li>3. 위기임산부 출산·양육 지원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를 위한 외국의 정책 조사 및 사례 분석에 관한 업무</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상담기관 (이하 “지역상담기관”이라 한다) 및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종사자에 대한 위기임산부 출산·양육 지원 및 그 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에 관한 교육</li> <li>3.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관리·운영</li> <li>4. 위기임산부 온라인·모바일 상담</li> <li>5. 지역상담기관 관리·업무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li> <li>6. 그 밖에 위기임산부 지원과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li> </ol>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규칙
<p>② 보건복지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의료원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을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b>제2조(지역상담기관의 범위)</b>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임신, 출산, 양육 및 아동 보호 관련 상담 및 지원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li> <li>2.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li> <li>3. 그 밖에 위기임신부를 대상으로 임신, 출산, 양육 및 아동 보호 관련 상담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li> </ol>	<p>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임신부 지원과 그 자녀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p>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규칙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③ 지역상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기임신부의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상담·정보 제공 및 필요한 서비스 연계 2. 아동 보호에 관한 상담·정보 제공 및 보호조치 연계 3. 보호출산에 관한 상담·정보 제공 및 지원 4.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입력과 기록관리 5. 위기임산부 상담 전화 운영 6. 그 밖에 위기임산부의 출산·양육 지원 및 그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4조(지역상담기관의 업무) 법 제6조제3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산전 검진 및 출산에 관한 비용 지원 등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이용 지원에 관한 업무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규칙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의 시설 기준, 종사자 자격기준, 온라인·모바일 상담, 상담전화 운영,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2. 법 제12조제1항의 숙려기간 중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에 관한 업무</p> <p>3. 법 제13조에 따른 보호출산 신청 절차에 관한 업무</p> <p>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임산부의 출산·양육 지원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p> <p><b>제5조(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의 시설기준 등) ①</b> 중앙상담지원기관의 시설기준, 종사자 자격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과 같고, 지역상담기관의 시설기준, 종사자 자격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지역의 출생아 수 및 아동 유기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p>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규칙
<p><b>제7조(위기 임신·출산 등에 대한 상담)</b> ① 출산·양육 및 아동 보호에 관한 상담</p>		<p>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중앙상담지원기관 또는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p> <p>④ 중앙상담지원기관의 장은 운영계획 및 실적, 예산·결산 및 조직운영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⑤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상담계획 및 실적, 예산·결산 및 조직운영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시·도지사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p>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규칙
<p>및 지원이 필요한 위기임신부는 언제든지 지역상담기관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 지역상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에게 자녀인 아동 등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충분한 상담과 안내를 제공하여야 하며 가능한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p> <p>1. 자녀인 아동을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사회보장급여 및 지원 사항</p> <p>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및 제27조제2항에 따른 급여</p> <p>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제13조에 따른 복지 자금의 대여, 제1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제14조의2에 따른 고용지원 연계,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제17조의6에 따른 건강관리 등 지원, 제18조에 따른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및</p>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규칙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위기임신보호출산법
		<p>제19조에 따른 시설 이용</p> <p>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의료 지원, 같은 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p> <p>라. 「모자보건법」 제9조, 제10조, 제10조의4, 제10조의5, 제14조, 제15조의17, 제15조의18에 따른 모성 및 영유아 건강 증진을 위한 사항</p> <p>마.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임신 부에게 제공되는 각종 지원 사항</p> <p>2. 자녀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 중인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관련 지원 사항</p> <p>3. 양육 및 친권의 포기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p> <p>4. 그 밖에 <u>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u></p>
		<p><b>제6조(위기 임신·출산 등에 대한 상담) ①</b>                      법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p>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규칙
<p>③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상담에도 불구하고 보호출산 및 그 자녀인 아동 보호를 희망하는 위기임산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담을 제공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호출산의 절차와 법적 효력</li> <li>2. 자녀의 생모와 생부를 알 권리의 의미와 그것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및 그 밖의 자녀의 권리</li> <li>3. 자에 대한 인지 및 양육 등 생부의 권리</li> <li>4. 제12조제1항에 따른 숙려기간</li> <li>5.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보호 절차</li> <li>6. 친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기간 및 절차</li> <li>7. 제17조에 따른 출생증서 공개 청구 요건 및 절차</li> </ol>		<p>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호조치</li> <li>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규칙
<p>8.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담의 방법 ·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② 법 제7조제3항제8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p>1. 법 제15조에 따른 출생증서 작성 및 법 제16조에 따른 출생증서의 이관 및 영구보존에 관한 사항</p> <p>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③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담은 대면상담으로 하되, 대면상담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상담 및 온라인상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상담의 내용은 비공개로 한다.</p> <p>④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담 요정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은 법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상담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p> <p>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p>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규칙
<p><b>제8조(위기임신부에 대한 산전·산후 보호 및 지원)</b> ①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산전·산후 보호를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신부가 원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라 한다)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입소를 요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기임신부의 보호시설 입소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③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위기임신부에게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p>		<p>따른 상담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p>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규칙
<p>는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을 연계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3장 보호출산</b></p> <p><b>제9조(보호출산 신청)</b> ①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담을 받은 위기임부로서 보호출산을 원하는 사람은 그 상담을 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u>신청 방법과 절차</u>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보건복지부령</u>으로 정한다.</p>		<p><b>제7조(보호출산의 신청 방법과 절차)</b> 별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호출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기임부가 신청하는 경우: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담을 받았다는 상담사실 기술서(신청서를 제출하는 지역상담기관이 아닌 지역상담기관에서 상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li> <li>2.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제1호의 서류 및 다음 각 목의 서류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기임부(이하 “위기임부”라 한다)가 영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li> </ol>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규칙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u>위기임부가</u>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의 신청은 위기임부의 신청으로 보며 보호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지, 제11조제5항에 따른 통보, 제12조제1항에 따른 아동의 인도 또는 인도 요청,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청 철회, 제15조제1항에 따른 출생증서 작성(이 경우 임신부 본인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다) 및 제17조 제2항의 동의를 할 수 있다.</p>	<p><b>제3조(보호자의 보호출산 신청) ①</b> 법 제9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기임부(이하 “위기임부”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호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피성년후견인</li> <li>2. 14세 미만인 사람</li> <li>3. 그 밖에 시·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이하 “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li> </ol> <p>② 시·도지사는 위기임부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하기 위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해당 위기임부의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p>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규칙
<p>③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부(이하 본 장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비식별화가 이루어질 수 있</p>	<p>③ 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상담기관(이하 “지역상담기관”이라 한다)의 장</li> <li>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li> <li>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li> <li>4.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위기임산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li> <li>5. 그 밖에 인간심리, 사회복지 또는 교육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li> </ol> <p><b>제4조(위기임부 정보에 대한 비식별화)</b>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법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라 법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p>	
<p>③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부(이하 본 장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비식별화가 이루어질 수 있</p>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규칙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위기임신보호출산법
	<p>다. 다만, 생부에 관한 정보로서 제6조 각 호의 사유로 직접 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을 통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은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청인의 전산관리번호(「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을 위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보장기관의 장으로부터 부여 받은 전산관리번호를 말한다)</li> <li>2. 신청인 및 생부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내국인만 해당한다)</li> <li>3. 아동의 성별, 수, 출생 연월일시</li> <li>4. 신청인이 아동의 성명을 지어준 경우에는 그 성명</li> <li>5.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보호자가 보호출산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보호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li> <li>6. 그 밖에 신청인의 지원 및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도록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정보를 입력한다. 이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비식별화된 정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규칙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위기임신보호출산법
<p><b>제8조(산전 검진 및 출산 방법) ①</b> 지역상 담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비식별화된 정보로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하려는 위기임부에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을 위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전산관리번호가 기재된 임신부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임신부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으며, 유효기간은 출산 후 6개월로 한다.</p> <p>③ 위기임부는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임신부확인서를 의료기관에 제시하여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할 수 있다.</p>		<p>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3항에 따른 비식별화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p><b>제10조(보호출산의 지원) ①</b> 신청인은 의료기관 중 산전 검진 및 출산을 원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지역상담기관에서 통지받은 비식별화된 정보로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할 수 있다.</p>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규칙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위기임신보호출산법
<p>제9조(산전 검진 및 출산 비용 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산전 검진 및 출산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보호출산 비용 지원 신청서를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기임부가 영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li> <li>2. 해당 위기임부의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li> <li>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li> </ol>	<p>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도 불구하고 신청인에 대하여 제9조제3항에 따라 비식별화가 이루어진 정보로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p> <p>③ 국기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산전 검진 및 출산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④ 제3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도 불구하고 신청인에 대하여 제9조제3항에 따라 비식별화가 이루어진 정보로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p> <p>③ 국기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산전 검진 및 출산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④ 제3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b>제4장 아동보호</b></p> <p><b>제11조(출생사실의 통보 등) ①</b>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보호출산을 통하여 아동이 출생한 경우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출생정보”라 한다)을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제9조의 신청인의 진료기록부 또는 조산기록부(전자적 형태로 바뀐 문서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에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아동의 생모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li> <li>가. 제9조제3항에 따라 비식별화된 가명</li> <li>나. 제9조제3항에 따라 비식별화된 관리번호</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아동의 성별, 수(數) 및 출생 연월일시</li> </ol>		<p>에 산전 검진 및 출산 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다.</p>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규칙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위기임신보호출산법
	<p><b>제5조(전자적인 방법의 출생사실 통보) 보</b>                      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 후단 및 제4항 후단에 따른 전자적인 방법의 출생사실 통보를 위하여 표준화된 업무 처리 절차를 정해야 한다.</p>	<p>3. 그 밖에 의료기관의 주소 등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u>대별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u></p> <p>②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출생사실의 통보 및 관리를 목적으로 구 축하여 심사평가원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심사평가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출생정보를 제출받은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상담지원기관(이하 “중앙상담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평가원은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출생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p> <p>④ 제3항에 따라 출생사실을 통보받은</p>
	<p><b>제10조(출생사실의 통보) 지역상담기관의</b></p>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규칙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위기임신보호출산법
<p>장은 법 제11조제4항· 제5항 또는 법 제14조제4항 후단에 따라 아동의 출생 정보와 출생사실을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호출산 등 출생 정보 통보서를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출생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p>		<p>중앙상담지원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해당 출생 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이를 통보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해당 출생정보와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아동의 성명을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은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및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출생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p> <p>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제9조의 신청인은 출산사실과 출생정보를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이를 통보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즉시 지역상담기관 소</p>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규칙
<p>제지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상담기관은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및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센터를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출생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분만에 직접 참여한 자가 모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li> <li>2.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li> <li>3.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상황일지</li> <li>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서면이 없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li> </ol>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규칙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위기임신보호출산법
		<p>⑥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민법」 제781조 제4항에 따라 아동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출생기록 사실과 아동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읍·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성명을 존중하여야 한다.</p> <p>⑦ 그 밖에 제2항의 전산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 및 절차,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의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제3항, 제4항 및 제18조에 따른 전산정보시스템 및 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12조(아동의 보호조치)</b> ① 제9조의 신</p>
		<p><b>제11조(아동의 보호조치)</b> ① 위기임신부</p>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규칙
<p>청인은 아동을 보호출산한 날부터 7일 이상 그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갖고 이 기간이 지난 후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하거나 그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하여줄 것을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이 인도된 때부터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정지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9조의 신청인으로부터 직접 아동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아동을 인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적절한 보호조치를</p>		<p>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숙려기간이 지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한 경우에는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p> <p>② 위기임신부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숙려기간이 지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해줄 것을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요청한 경우 해당 지역상담기관의 담당자는 관할 시·군·구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알린 후 위기임신부와 함께 아동을 인도해야 한다.</p> <p>③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위기임신부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있는 등 아동에 대한 긴급한 인도 및 보호가 즉시 필요하다고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p> <p>④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p>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규칙
<p>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동을 인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의 미성년 후견인이 된다.</p> <p><b>제13조(신청 철회와 아동의 보호 등)</b> ① 제9조의 신청인은 제9조에 따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아동의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입양특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까지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제9조의 신청인이 제9조에 따른 신청을 철회한 경우 제12조의 아동 인도 의사도 철회한 것으로 보며, 제12조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아동을 다시 인도받은 때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p> <p>② 「입양특례법」 제16조에 따른 입양 취소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철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다만, 생부의 입양 취소 청구에 따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아동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p> <p><b>제12조(신청 철회의 방법과 절차)</b> ① 위기임산부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호출산 등 신청 철회서를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p> <p>② 위기임산부는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보호출산 신청이 철회된 경우에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입양의 취소에 관한 범원의 확정판결문을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lt;개정 2025. 5. 14.&gt;</p> <p>③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호출산 신청 철회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읍·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p>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규칙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위기임신보호출산법
<p>1. 보호출산 신청 철회 사실</p> <p>2. 해당 위기임산부의 인적사항</p> <p>3. 법 제11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사항</p> <p>④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보호출산 신청 철회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이관받아 보존 중인 출생증서를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체 없이 폐기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p> <p>[시행일: 2025. 7. 19.] 제12조</p>		<p>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철회한 신청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아동에 대한 출생기록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53조를 준용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하였을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해당 아동에 대한 출생증서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미 출생증서를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에 이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이하 “보장원장”이라 한다)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에 따른 철회는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하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p>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규칙
<p><u>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p> <p><b>제14조(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b> ① 제9조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위기임부가 아동을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마치지 아니하고 아동의 생모에 대한 비식별화, 제11조에 따른 조치 또는 제12조에 따른 아동의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u>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산일부터 1개월 내에 지역상담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u></p>		<p><b>제13조(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의 방법과 절차)</b> ①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기산부(이하 “위기산부”라 한다)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역상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위기산부가 영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li> <li>나. 해당 위기산부의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li> </ul> </li> <li>2.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li> <li>3.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li> </ol>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규칙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담을 제공하</p>		<p>가. 분만에 직접 관여한 사람이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p> <p>나.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p> <p>다.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상황 일지</p> <p>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서류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서 등본</p>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위기산부에게 법 제7조에 따른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p>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규칙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위기임신보호출산법
		<p>고 제15조에 따른 출생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신청, 아동의 출생기록 및 보호, 출생증서의 영구보존 및 공개, 신청의 철회 등에 대하여는 제9조,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기임부”는 “위기산부”로, “보호출산”은 “출산 후 아동 보호”로, “아동을 보호출산한 날”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날”로, “제9조의 신청인”은 “제14조의 신청인”으로, “제9조제3항에 따라”는 “제14조제1항에 따라”로,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으로, “제9조에 따른 신청”은 “제14조에 따른 신청”으로 본다.</p> <p>④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에 따라 제1항의 신청을 한 위기산부의 출생정보가 심사평가원에 제출되거나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p>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규칙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위기임신보호출산법
		<p>실이 위기산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위기산부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을 말한다)에게 통보된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심사평가원 또는 해당 시·읍·면의 장에게 제1항 신청사실의 통지와 함께 해당 위기산부에 관하여 제출·통보된 것을 삭제하고 같은 법 제44조의4제3항에 따른 직권 출생 기록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지역상담기관의 소재지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및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출생사실을 통보할 수 있으며 위기산부가 출산한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에 필요한 정보를 요</p>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규칙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위기임신보호출산법
		<p>청할 수 있다.</p> <p>1. 아동의 생모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p> <p>가. 제1항에 따라 비식별화된 가명</p> <p>나. 제3항에 따라 비식별화된 관리번호</p> <p>2. 아동의 성별, 수, 출생 연월일시 및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아동의 성명</p> <p>3. 그 밖에 의료기관의 주소 등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p> <p>4. 제1항의 신청을 한 위기산부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면</p> <p>가.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p> <p>나.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p>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규칙
<p>다.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 22조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상황 일지</p> <p>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서면이 없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 1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p> <p>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민법」 제781조제4항에 따라 아동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출생기록 사실과 아동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읍·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성명을 존중하여야 한다.</p> <p>⑥ 그 밖에 제4항에 따른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의 통보 절차 등에 관</p>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규칙
<p>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b>제5장 출생증서의 작성·관리 및 공개</b></p> <p><b>제15조(출생증서 작성)</b> ①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신청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생증서를 작성한다. 다만, 생부에 관한 정보로서 소재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또는 신청인을 통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재 생략할 수 있다.</p> <p>1. 신청인 및 생부의 성명·본·등록기</p>	<p><b>제6조(출생증서의 생략 정보)</b>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소재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p> <p>1. 생부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p> <p>2. 생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p> <p>3. 생부가 확인을 거절하는 경우</p> <p>4. 그 밖에 생부에 의해 위기임신부와 그 태아 및 아동의 안전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p>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규칙
<p>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내국인에 한 정한다)</p> <p>2. 신청인 및 생부의 유전적 질환 및 그 밖의 건강상태</p> <p>3. 신청인이 아동의 성명을 지어준 경우에는 그 성명</p> <p>4. 신청인이 보호출산 또는 제14조에 따른 아동 보호를 선택하기까지의 사회적·경제적·심리적 상황 등 상담 내용</p> <p>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②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출생증서를 봉투에 넣어 밀봉하고, 봉투 겉면에 출생증서가 들어있다는 사실, 비식별화된 신청인의 가명, 출생증서를 작성한 지역상담기관의 명칭 및 주소를 기재한 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할 때까지 이를 보관한다.</p> <p><b>제16조(출생증서의 이관 및 영구보존) ①</b> 제11조제6항에 따라 아동의 출생기록</p>	<p>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p>	<p><b>제14조(출생증서 작성 사항) 별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모 및 생부의 주소, 연락처 및 국적</li> <li>2. 생모 및 생부의 거주지역(시·군·구의 명칭을 말한다)</li> <li>3. 보호출산 또는 별 제14조에 따른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 시 생모 또는 생부의 나이 및 신청일</li> <li>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규칙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위기임신보호출산법
<p><b>제15조(출생증서 공개 청구)</b> ① 법 제17조 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문서로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구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6호서식의 출생증서 공개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li> <li>2. 법 제17조제3항 및 영 제7조제4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li> </ol>	<p><b>제7조(출생증서의 공개)</b>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p>	<p>사실을 통보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출생증서가 담긴 봉투 겉면에 아동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기재한 뒤 이를 지체 없이 아동권리보장원에 이관하여야 한다.</p> <p>② 아동권리보장원은 제1항에 따라 이 관받은 출생증서를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4항 단서에 따른 철회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p>
<p><b>제17조(출생증서의 공개 청구 등)</b> ① 보호출산을 통하여 태어난 사람(제14조의 신청에 따라 출생증서가 작성된 경우도 포함한다)은 보장원장에게 자신의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이하 이 조에서 “증서공개청구”라 한다) 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b>제17조(출생증서의 공개)</b> ① 보호출산을 통하여 태어난 사람(제14조의 신청에 따라 출생증서가 작성된 경우도 포함한다)은 보장원장에게 자신의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이하 이 조에서 “증서공개청구”라 한다) 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b>제17조(출생증서의 공개 청구 등)</b> ① 보호출산을 통하여 태어난 사람(제14조의 신청에 따라 출생증서가 작성된 경우도 포함한다)은 보장원장에게 자신의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이하 이 조에서 “증서공개청구”라 한다) 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규칙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위기임신보호출산법
<p>이를 증명하는 서류</p> <p>3.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로 한정한다)</p> <p>② 제1항의 출생증서 공개 청구서는 서면, 우편,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p> <p>③ 청구인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구두로 출생증서의 공개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를 대면하여 말해야 한다. 이 경우 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는 청구인이 말한 내용을 기록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하며, 청구인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제2항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p>		<p>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보장원장은 제9조 또는 제14조의 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 및 생부의 동의를 받아 보관하고 있는 출생증서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p>
<p><b>제16조(출생증서 공개에 대한 동의)</b> ① 법 제9조 또는 법 제14조의 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 또는 생부는 법 제17조제2항 후단 및 영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출생증서 중 인적</p>	<p>② 법 제1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으로부터 확인 요청을 받은 신청인 또는 생부는 그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증서 중 인적사항의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p>	<p>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보장원장은 제9조 또는 제14조의 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 및 생부의 동의를 받아 보관하고 있는 출생증서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p>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규칙
<p>보장원장은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 또는 생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u> 다만, 신청인 또는 생부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신청인 또는 생부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 또는 생부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출생증서를 공개하여야 한다.</p>	<p>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한까지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p> <p>③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신청인 또는 생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출입국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관장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청인 또는 생부의 소재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p>	<p>사항의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출생증서 공개 동의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출생증서 공개 동의서는 서면, 우편,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p> <p>③ 신청인 또는 생부는 제1항에 따라 구두로 동의 여부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를 대면하여 말해야 한다. 이 경우 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는 신청인 또는 생부가 말한 내용을 기록하여 신청인 또는 생부와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한다.</p> <p>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또는 생부가 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를 대면하여 동의 여부를 말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등을 통해 말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는 녹취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p>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규칙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위기임신보호출산법
	<p>④ 법 제17조제3항에서 “보호출산을 통하여 태어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보호출산을 통하여 태어난 사람의 진단·치료 등 생명과 건강의 증대한 이익을 위하여 출생증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p> <p>⑤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법 제1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생증서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개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 형태로 보유하지 않는 정보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한 사람이 전자문서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문서 열람 또는 사본 제공</li> <li>2. 전자문서 형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열람, 출력물 제공 또는 복제한 문서를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하거나 전자</li> </ol>	<p>③ 보장원장은 제2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하고 신청인 또는 생부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출산을 통하여 태어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생부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출생증서를 공개할 수 있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증서공개청구의 신청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b>제6장 보칙</b></p> <p><b>제18조(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b>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및 해당 정보의 관리, 출생정보의 통보 및 보호출산 관련 기록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p>	<p>우편으로 송부</p> <p><b>제8조(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b>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별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과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시스템의 연계 및 연계된 정보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li> <li>2.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li> <li>3.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li> </ol>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규칙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중앙상담지원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③ 보건복지부장관,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이용,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출산 신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p>	<p>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시스템 중 본인부담금의 산정 및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등과 관련된 정보시스템</p> <p>4.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중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및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등과 관련된 정보시스템</p> <p>② 보건복지부장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이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제조사에 관한 사무</li> <li>2.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기임신·출산 등에 대한 상담에 관</li> </ol>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규칙
	<p>한 사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법 제8조에 따른 위기임산부에 대한 산전·산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무</li> <li>4.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출산 신청에 관한 사무</li> <li>5. 법 제9조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비식별화 및 비식별화된 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무</li> <li>6. 법 제11조 및 제14조제4항에 따른 출생사실의 통보에 관한 사무</li> <li>7.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신청 철회에 관한 사무</li> <li>8. 법 제1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에 관한 사무</li> <li>9. 법 제15조에 따른 출생증서 작성에 관한 사무</li> <li>10. 법 제16조에 따른 출생증서의 이관 및 영구보존에 관한 사무</li> <li>1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위기임신 등 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이용에 관한 사무</li> <li>1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용의 환</li> </ol>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규칙
<p><b>제19조(경비의 보조)</b>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의 운영비</li> <li>2. 제16조제2항에 따라 출생증서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아동관리보장원의 업무수행경비</li> <li>3. 제21조에 따른 위탁업무를 처리하는 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의 업무수행경비</li> </ol> <p><b>제20조(비용의 환수)</b>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의 신청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된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2조제1항에</p>	<p>수에 관한 사무</p>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규칙
<p>따라 중앙상담지원기관 또는 지역상담 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9 조제1호에 따른 운영비를 환수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환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9조(비용 환수의 방법 및 절차 등) ①</b> 보건복지부장관은 별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용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원받은 자에게 환수 사유, 환수 금액, 납부 기한 및 수납 기관 등을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 기한은 납입 고지를 한 날부터 3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수납 기관은 환수 비용을 납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비용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장관이 정한다.</p>	<p><b>제21조(업무의 위탁 및 비용의 예탁)</b> 보건복지부장관은 비용의 심사·조정, 지원 대상 여부의 확인 및 비용 지급업무</p>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규칙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위기임신보호출산법
		<p>등 제10조제3항에 따른 제9조의 신청인의 산전 검진 및 출산 비용의 지원 업무를 심사평가원 및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정비용을 위탁 기관에 <u>예탁하여야 한다.</u></p> <p><b>제22조(지정취소) ①</b>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상담지원기관 또는 지역상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li> <li>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li> <li>3.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li> </ol> <p>② 중앙상담지원기관 또는 지역상담기</p>

제10조(행정처분 기준) 법 제22조제1항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규칙
<p>관의 지정취소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23조(비밀유지의 의무)</b> 중앙상담지원기관, 지역상담기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권리보장원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b>제24조(권한의 위임)</b>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b>제25조(벌칙)</b> 제23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p>	<p>에 따른 중앙상담지원기관 또는 지역상담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와 같다.</p> <p><b>제11조(권한의 위임)</b>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역상담기관에 대한 운영비 환수</li> <li>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역상담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li> </ol>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규칙
<p>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b>제26조(양벌규정)</b>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를 위반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b>부 칙</b></p> <p>이 영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p>	<p><b>부 칙</b></p> <p>이 규칙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p>

**붙임 2 「위기임신보호출산법」 및 대법원규칙·대법원예규**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
<p style="text-align: center;"><b>제1장 총칙</b></p> <p><b>제1조(목적)</b> 이 법은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신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1조(목적)</b> 이 규칙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따른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의 통보, 전산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과 절차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1조(목적)</b> 이 규칙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3조, 제14조,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제3조, 제6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4장 아동보호</b></p> <p><b>제11조(출생사실의 통보 등)</b> ①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보호출산을 통하여 아동이 출생한 경우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p>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
<p>각 호의 사항(이하 “출생정보”라 한다)을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제9조의 신청인의 진료기록부 또는 조산기록부(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하여야 한다.</p> <p>1. 아동의 생모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p> <p>가. 제9조제3항에 따라 비식별화된 가명</p> <p>나. 제9조제3항에 따라 비식별화된 관리번호</p> <p>2. 아동의 성별, 수(數) 및 출생 연월일시</p> <p>3. 그 밖에 의료기관의 주소 등 출생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u>대법원규칙</u>으로 정하는 사항</p>	<p><b>제2조(출생사실의 통보)</b> 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14조제4항제3호의 “그 밖에 의료기관의 주소 등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아동의 출생 순서</li> <li>2. 아동이 실제 출생한 의료기관의 명칭</li> <li>②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li> </ol>	<p>②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p>

<p><b>위기임신보호출산법</b></p> <p>이내에 출생정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출생사실의 통보 및 관리를 목적으로 구축하여 심사평가원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p>	<p><b>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b></p> <p>따라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제출하기 전에 아동이 사망한 경우에도 해당 아동에 대한 출생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신청 후 아동이 사망한 경우에도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역상담기관의 소재지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b>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b></p>
	<p><b>제3조(전산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과 절차)</b>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전산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심사평가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 밖에 전산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p> <p>1. 출생통보에 관한 전산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보안</p>	<p><b>제2조(전산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 등)</b> 공고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전산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과 절차 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p>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
<p>③ 심사평가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출생정보를 제출받은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상담지원기관(이하 “중앙상담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평가원은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출생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p> <p>④ 제3항에 따라 출생사실을 통보받은 중앙상담지원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이를 통보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해당 출생정보와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아동의 성명을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체 없</p>	<p>2. 출생정보의 관리 및 보호</p> <p>3. 출생통보 내역의 현지확인</p>	<p><b>제3조(보호출산 출생정보 통보)</b> ①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4항, 제5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통보 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시(구)·읍·</p>

<p><b>위기임신보호출산법</b></p>	<p><b>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b></p>	<p><b>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b></p>
<p>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상당 지원기관 및 지역상당기관은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및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출생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p> <p>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제9조의 신청인은 출산사실과 출생정보를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당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이를 통보받은 지역상당기관의 장은 즉시 지역상당기관 소재지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상당기관은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및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출생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면을</p>		<p>면의 장은 해당 통보서를 성·본의 창설허가를 받을 때까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지 않고 보관한다.</p> <p><b>제3조(보호출산 출생정보 통보)</b> ①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4항, 제5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통보받은 지역상당기관의 장은 지역상당기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시(구)·읍·면의 장은 해당 통보서를 성·본의 창설허가를 받을 때까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지 않고 보관한다.</p>

<p>위기임신보호출산법</p>	<p>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p>	<p>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p>
<p>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li> <li>2.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li> <li>3.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상황일지</li> <li>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서면이 없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li> </ol>	<p><b>제5조(의료기관 밖에서 출산 후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 법 제11조제5항제4호 및 제14조제4항제4호라목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이 제출된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통보함과 동시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7조의2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의 시·</b></p>	

위기임신보호출산법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
<p><b>위기임신보호출산법</b></p>	<p><b>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b></p> <p>읍·면의 장에게 법 제9조 및 제14조의 신청사실의 통지와 함께 직권기록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p>
<p><b>위기임신보호출산법</b></p>	<p>⑥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민법」 제781조 제4항에 따라 아동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출생기록 사실과 아동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읍·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성명을 존중하여야 한다.</p>
<p><b>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b></p>	<p><b>제4조(아동에 대한 성·본의 창설)</b> ① 시(구)·읍·면의 장은 통보서 등본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성·본의 창설허가제판 청구(수수료 면제)를 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아동의 성명이 있는 경우 그 성명을 존중하되, 성·본 창설허가를 받아야 한다.</p> <p><b>제5조(아동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b> ①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본의 창설허가 재판서 등본의 송부를 받았을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에 접수하고 보관 중인 통보서에 첨부하여 접수장에 접수함과 동시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p>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
<p>⑦ 그 밖에 제2항의 전산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 및 절차,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의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제3항, 제4항 및 제18조에 따른 전산정보시스템 및 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12조(아동의 보호조치)</b> ① 제9조의 신청인은 아동을 보호출산한 날부터 7일 이상 그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갖고 이 기간이 지난 후부터</p>		<p>② 시(구)·읍·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생기록 통보서를 제3조제1항에 따라 통보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추가로 송부하여야 한다.</p>

위기임신보호출산법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위기임신보호출산법
		<p>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하거나 그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하여줄 것을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이 인도된 때부터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정지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9조의 신청인으로부터 직접 아동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아동을 인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동을 인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의 미</p>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
<p>성년후견인이 된다.</p> <p><b>제13조(신청 철회와 아동의 보호 등) ①</b> 제9조의 신청인은 제9조에 따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아동의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입양특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까지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제9조의 신청인이 제9조에 따른 신청을 철회한 경우 제12조의 아동 인도 의사도 철회한 것으로 보며, 제12조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아동을 다시 인도받은 때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p> <p>② 「입양특례법」 제16조에 따른 입양 취소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철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다만, 생부의 입양 취소 청구에 따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위기임신보호출산법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
<p>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철회한 신청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아동에 대한 출생기록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53조를 준용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p>		<p><b>제6조(보호출산 신청 철회 후 가족관계등록 절차)</b> ① 법 13조제3항에 따라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한 신청인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에 따른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모의 성명과 출생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라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경우에는 시(구)·읍·면의 장은 출생신고서 양식(「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별지양식 제1호) 중 “기타사항란”에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하여 출생신고를 한다는 뜻을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시(구)·읍·면의 장이 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과 출생신고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인정되</p>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
<p>④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 하였을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해당 아동에 대한 출생증서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미 출생증서를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에 이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이하 “보장원장”이라 한다)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에 따른 철회는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하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서 여백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날인한 후 해당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p> <p>③ 제2항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p>

위기임신보호출산법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p><b>위기임신보호출산법</b></p> <p>제14조(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 ① 제9조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위기임부가 아동을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마치지 아니하고 아동의 생모에 대한 비식별화, 제11조에 따른 조치 또는 제12조에 따른 아동의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산일부터 1개월 내에 지역상담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p>	<p><b>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b></p> <p>제4조(의료기관에서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위기산부의 출생정보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심사평가원에 제출한 경우 그 신청을 접수한 지원에 심사평가원의 통지와 함께 해당 위기관부에 관한 출생정보를 삭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심사평가원은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이 통보된 시·읍·면의 장에게 직권 출생 기록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p>	<p><b>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b></p> <p>제7조(이중등록부가 작성된 경우 처리방법)</p> <p>① 규칙 제4조제2항 또는 제5조에 따른 통보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 시(구)·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고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동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할 때, 아동과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폐쇄한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중 말소사유를 제외</p>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지 역상담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담을 제공하 고 제15조에 따른 출생증서를 작성하 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신청, 아동의 출생기 록 및 보호, 출생증서의 영구보존 및 공 개, 신청의 철회 등에 대하여는 제9조,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 및 제 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기임부” 는 “위기산부”로, “보호출산”은 “출산 후 아동 보호”로, “아동을 보호출산한 날”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날”로, “제9조의 신청인”은 “제14조의 신청인”으로, “제9조제3항에 따라”는</p>		<p>한 기록사항을 직권으로 이기하여 부모 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롭게 작성하여 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폐쇄된 가족관계등록 부의 기록사항의 열람과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은 금지한다.</p>

위기임신보호출산법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위기임신보호출산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p>“제14조제1항에 따라”로,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으로, “제9조에 따른 신청”은 “제14조에 따른 신청”으로 본다.</p> <p>④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에 따라 제1항의 신청을 한 위기산부의 출생정보가 심사평가원에 제출되거나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이 위기산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위기산부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을 말한다)에게 통보된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심사평가원 또는 해당 시·읍·면의 장에게 제1항 신청사실의 통지와 함께 해당 위기산부에 관하여 제출·통보된 것을 삭제하고 같은 법 제44조의4제3항에 따른 직권 출생 기록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p>	<p>제3조(보호출산 출생정보 통보) ①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4항, 제5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통보 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시(구)·읍·면의 장은 해당 통보서를 성·본의 장설허가를 받을 때까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지 않고 보관한다.</p>	<p>제3조(보호출산 출생정보 통보) ①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4항, 제5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통보 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시(구)·읍·면의 장은 해당 통보서를 성·본의 장설허가를 받을 때까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지 않고 보관한다.</p>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
<p>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지역상담기관의 소재지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및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출생사실을 통보할 수 있으며 위기산부가 출산한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p> <p>1. 아동의 생모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항에 따라 비식별화된 가명 나. 제3항에 따라 비식별화된 관리번호</p> <p>2. 아동의 성별, 수, 출생 연월일시 및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아동의 성명</p> <p>3. 그 밖에 의료기관의 주소 등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법원 규칙으</p>	<p><b>제2조(출생사실의 통보) ①</b> 법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14조제4항제3호의 “그</p>	

<p>위기임신보호출산법</p>	<p>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p>	<p>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p>
<p>로 정하는 사항</p>	<p>밖에 의료기관의 주소 등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아동의 출생 순서</li> <li>2. 아동이 실제 출생한 의료기관의 명칭</li> <li>③ 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신청 후 아동이 사망한 경우에도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역상담기관의 소재지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li> </ol>	
<p>4. 제1항의 신청을 한 위기산부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분만에 직접 참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li> <li>나.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li> </ol>		

위기임신보호출산법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	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위기임신보호출산법
<p><b>제7조(이중등록부가 작성된 경우 처리방법)</b> ① 규칙 제4조제2항 또는 제5조에 따른 통보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 시(구)·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의 특정 등록사항을 말소하고 부모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아동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한 후 아동과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폐쇄한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중 말소사유를 제외한 기록사항을 직권으로 이기하여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롭게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의 열람과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은 금지한다.</p>	<p><b>제5조(의료기관 밖에서 출산 후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 법 제11조제5항제4호 및 제14조제4항제4호라목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이 제출된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통보함과 동시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7조의2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법 제9조 및 제14조의 신청사실의 통지와 함께 직권기록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b></p>	<p>다.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상황일지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서면이 없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p>

<p>위기임신보호출산법</p>	<p>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p>	<p>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p>
<p>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민법」 제781조제4항에 따라 아동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출생기록 사실과 아동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읍·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성명을 존중하여야 한다.</p>		<p><b>제4조(아동에 대한 성·본의 창설)</b> ① 시(구)·읍·면의 장은 통보서 등본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성·본의 창설허가제판 청구(수수로 면제)를 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아동의 성명이 있는 경우 그 성명을 존중하되, 성·본 창설허가를 받아야 한다.</p> <p><b>제5조(아동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b></p> <p>①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본의 창설허가 재판서 등본의 송부를 받았을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문서진명부에 접수하고 보관 중인 통보서에 첨부하여 접수장에 접수함과 동시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p> <p>② 시(구)·읍·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생기록 통보서를 제3조제1항에 따라 통보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p>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
<p>⑥ 그 밖에 제4항에 따른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의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b>제6조(일반사항)</b> ①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p> <p>② 그 밖에 시·읍·면의 장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p>	<p>아동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추가로 송부하여야 한다.</p>

<p><b>위기임신보호출산법</b> 부 칙</p> <p>이 법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p>	<p><b>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b> 부 칙</p> <p>이 규칙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p>	<p><b>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b> 부 칙</p> <p>이 예규는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p>
--	--	--

## 붙임 3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및 가명 기반 의료기관의 업무 처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가입자(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세대주를 말한다)의 성명 및 건강보험증 번호
  - 나.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 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의 성명 또는 가명, 전산관리번호 및 건강보험증 번호

**제2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면의 주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환자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 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가입자 또는 세대주의 성명 대신 환자의 성명 또는 가명을 기재할 수 있고,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대신 가명 및 전산관리번호를 기재할 수 있으며, 환자의 주소와 전화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5호서식 앞면의 주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환자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 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가입자 또는 세대

주의 성명 대신 환자의 성명 또는 가명을 기재할 수 있고,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대신 가명 및 전산관리번호를 기재할 수 있으며, 환자의 주소와 전화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의 주(註)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주(註): 1. 진료항목 중 선택항목은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으며, 야간(공휴일)진료 시 진료비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2. 환자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환자의 성명 대신 가명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7호서식의 주(註)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주(註): 1. 진료항목 중 선택항목은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으며, 야간(공휴일)진료 시 진료비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2. 환자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환자의 성명 대신 가명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8호서식의 주(註)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주(註): 1. 진료항목 중 선택항목은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으며, 야간(공휴일)진료 시 진료비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2. 환자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환자의 성명 대신 가명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9호서식의 주(註)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주(註): 1. 진료항목 중 선택항목은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으며, 야간(공휴일)진료 시 진료비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2. 환자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환자의 성명 대신 가명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0호서식의 항목별 설명란 및 일반사항 안내란 아래에 주(註)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주(註): 환자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환자의 성명 대신 가명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1호서식의 항목별 설명란 및 일반사항 안내란 아래에 주(註)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주(註): 환자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환자의 성명 대신 가명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주(註)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註): 1. 이 계산서·영수증은 요양기관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이 외래 진료를 한 경우만 수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간이계산서입니다.  
2. 환자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환자의 성명 대신 가명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주(註)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환자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환자의 성명 대신 가명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제3조(「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의 개정)**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임신주수·체중 및 사망·사산원인란 아래에 주(註)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註): 임신부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임신부의 성명 대신 가명을 기재할 수 있고 생년월일,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8호서식 중 “끝.”을 “주(註): 임신부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임신부의 성명 대신 가명을 기재할 수 있고 생년월일 및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의 분만 시 발견된 선천성이상아 소견란 아래에 주(註)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註): 출생아 모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출생아 모의 성명 대신 가명을 기재할 수 있고 생년월일,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8호의3서식 앞쪽의 선천성이상 소견란 아래에 주(註)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註): 임신부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임신부의 성명 대신 가명을 기재할 수 있고 생년월일, 배우자(보호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보조생식술 여부, 임신횟수 및 임신력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8호의4서식 중 “끝.”을 “주(註): 출생아 모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출생아 모의 성명 대신 가명을 기재할 수 있고 생년월일과 주소(전화)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한다.

**제4조(「약사법 시행규칙」의 개정)**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제4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환자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이하 “가명”이라 한다) 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번호(이하 “전산관리번호”라 한다)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환자의 가명 또는 전산관리번호를 말한다.

**제5조(「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의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신부확인서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세대주 성명

나. 의료급여를 받은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보장기관 기호

2.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 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의료급여를 받은 자의 성명 또는 가명, 전산관리번호 및 보장기관 번호

별지 제3호서식 앞쪽의 유의사항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급권자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 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세대주성명 대신 수급권자의 성명 또는 가명을 기재할 수 있고, 세대주의 생년월일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수급권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대신 가명 및 전산관리번호를 기재할 수 있고, 수급권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의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유의사항**

1. 환자상태 및 진료의견란에는 현재 증상, 경과기록(수술 및 처치 등), 검사실시내용 및 질병치료 후의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적고, 여백이 부족하면 뒤쪽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수급권자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 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세대주성명 대신 수급권자의 성명 또는 가명을 기재할 수 있고, 세대주의 생년월일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수급권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대신 가명 및 전산관리번호를 기재할 수 있고, 수급권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6조(「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환자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이하 “가명”이라 한다) 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번호(이하 “전산관리번호”라 한다)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성명 대신 가명을 적거나 주민등록번호 대신 전산관리번호를 적을 수 있고, 주소를 적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환자가 가명 또는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성명 대신 가명을 적거나 주민등록번호 대신 및 전산관리번호를 적을 수 있다.

제14조제1항제1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진료를 받은 사람이 가명 또는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성명 대신 가명을 기록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대신 전산관리번호를 기록할 수 있고, 주소 및 연락처를 기록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제1항제2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조산을 받은 사람이 가명 또는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성명 대신 가명을 기록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대신 전산관리번호를 기록할 수 있고, 주소 및 연락처를 기록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제1항제3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간호를 받는 사람이 가명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성명 대신 가명을 기록할 수 있다.

제39조의11제5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촬영 요청자가 가명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성명 대신 가명을 적을 수 있고, 연락처를 적지 않을 수 있다.

제47조제2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환자가 가명 또는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성명 대신 가명을 알리거나 주민등록번호 대신 및 전산관리번호를 알릴 수 있고, 주소 및 전화번호를 알리지 않을 수 있다.

별지 제7호서식의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유의사항

1. 출생신고는 1개월 이내에 주소지의 구청·시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하며, 지연 신고 및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산모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산모의 성명 대신 가명을 기재할 수 있고, 부의 성명·연령·직업 및 모의 연령·직업·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8호서식의 인공임신증절을 위한 이유란 아래에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사산아의 모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모의 성명 대신 가명을 기재할 수 있고, 부의 성명·연령·직업 및 모의 연령·직업·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유의사항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요청인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요청인의 성명 대신 가명을 기재할 수 있고, 연락처, 생년월일 및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유의사항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요청인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요청인의 성명 대신 가명을 기재할 수 있고, 연락처, 생년월일 및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개정규정 중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전산관리번호와 관련된 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